



2020
공공기관 현황편람

2020
공공기관 현황편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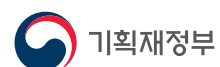
2020 공공기관 현황편람

2020. 10.

www.moef.go.kr

www.kipf.re.kr

2020. 10.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비매품

93320

ISBN 978-89-8191-477-6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공공기관 현황편람

2020. 10.

기 획 재 정 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 간 사

2020년 10월 현재 340개의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전기, 가스, 도로·공항·항만, 금융, 의료·사회복지서비스, 4대보험, 안전 관련 공적검사, R&D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생활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공공기관의 예산규모는 약 649조원으로 국가예산의 약 1.4배이고, GDP 대비 33.8%에 달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7년과 비교해 보면, 2019년 공공기관 예산은 약 355조원이 증가하였고, GDP 대비 비중 또한 27%에서 33.8%로 크게 증가하여 공공기관의 국민경제 기여도가 상당히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특히 글로벌 경기 및 교역 둔화와 내수 부진 상황에서 국내 경기활성화를 위해 주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약 54.1조원이 집행되었으며 2020년에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전년대비 약 7.4조원이 증가한 약 61.5조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국민 생활과 아주 밀접한 공공주택 공급,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등 SOC 분야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송배전 설비, 발전소 건설 및 설비 보강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생산·소비·투자 심리 등이 위축되고 경제·사회구조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직면한 경제·사회적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정부 정책 추진에 있어 공공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사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선도형 경제 구축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관별로 디지털·그린 뉴딜의 취지를 반영한 선도사업을 발굴·추진하고 그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기관의 재원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여가 커질수록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우려도 함께 커지고, 이는 공공기관 부채, 인력, 채용규모, 경영성과 등 구체적인 경영정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통합공시제도의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시스템’, www.alio.go.kr)’을 통해 개별 기관의 경영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현황편람』은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요 정보를 국민이 보다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가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본 책자를 통해 공공기관 일반현황과 최근 시행된 주요 공공기관 관리정책을 소개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다양한 경영정보 중 국민의 관심이 높고 경영관리적 측면에서 유의미한 주요 경영정보(인력·손익·재무현황, 보수수준 및 외부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에 의한 공공기관 모니터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일반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분석 및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매년 공공기관 현황편람을 발간하고 지속적으로 내용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본 책자를 통하여 일반국민의 공공기관 주요 정보로의 접근 용이성과 경영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보다 제고하고 더 나아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확대시켜 향후 공공기관 관리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공공기관 현황편람

목 차

I 2020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1.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 제도	19
가. 공공기관의 지정	19
나. 공공기관의 유형 구분	20
다. 공공기관의 지정 절차	25
2. 2020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26
가. 2020년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 결과	26
나. 전년대비 주요 변동내역	33

II 공공기관 관리정책 주요 동향

1. 공공기관 인력관리정책 주요 동향	39
가.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	39
나.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추진	42
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45
라. 공공부문 공정채용 강화	48
2. 공공기관 재무관리정책 주요 동향	55
가. 공공기관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	55
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62

3.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정책 주요 동향	74
가. 공공기관 혁신 추진경과	74
나. 2020년 공공기관 혁신방향	75
다. 2020년 분야별 추진과제	77
라. 2020년 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87
마. 2020년 공공기관 혁신 점검 및 지원	94
4. 공공기관 안전관리정책 주요 동향	95
가.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도입	96
나.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102
5. 사회적가치 창출 전략 추진	105
가. 추진배경	105
나. 사회적 가치 중점 5대 분야	106
다. 향후 추진계획	110

Ⅲ 2020년도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

1. 일반현황	115
가.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	115
나. 공공기관 설립형태	119
다.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	129
라. 공공기관 부설기관 현황	130
마. 공공기관의 지역별 분포 및 지방이전 현황	134
바. 공공기관 관리 기금 현황	148
사. 상장 공공기관 현황	165
2. 인력현황	183
가. 임직원 수 현황	183
나. 신규채용 현황	190

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현황	196
라. 비정규직 현황 및 정규직 전환 실적	199
3. 재무현황	205
가. 총평	205
나. 부채 현황	208
다. 자산 현황	217
4. 손익현황	222
5. 보수수준	228
가. 직원 평균보수 수준	228
나. 상임임원 연봉 수준	231
다. 복리후생비 수준	238
6. 외부 평가결과	244
가.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244
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81
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301
라.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327
참고문헌	347
〈부록 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현황	355
〈부록 2〉 공공기관 일반현황	361
〈부록 3〉 이전 공공기관별 2019년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적	416
〈부록 4〉 2020년 기금 현황	424
〈부록 5〉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35개 기금 현황	432
〈부록 6〉 공공기관 관리 기금별 개요	435
〈부록 7〉 2019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체계	472

표 차 례

<표 I -1> 공공기관 유형 구분	21
<표 I -2> 「공운법」 제5조 신규 조문 비교	24
<표 I -3> 2020년 공공기관(340개, 2020. 1월 기준)	28
<표 I -4> 2020년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 현황(2020. 1월 기준)	31
<표 I -5> 2020년 연구개발목적기관(69개)	32
<표 I -6>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수 변동(2020. 1월 기준)	34
<표 I -7> 2020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 내역(2020. 1월 기준)	35
<표 I -8> 2020년 신규지정 공공기관	36
<표 II-1> 국가공무원 계획인사교류	41
<표 II-2>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관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	42
<표 II-3>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주요내용	43
<표 II-4> 전체 정규직 전환 결정 및 전환 현황	46
<표 II-5> 정규직 채용방법별 현황	47
<표 II-6> 정규직 전환방식별 현황	47
<표 II-7>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의 주요 내용	48
<표 II-8> 2019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결과	51
<표 II-9> 채용 제도개선 우수사례 예시	53
<표 II-10> 2019년도 및 2020년도 항목별 편성지침 주요내용	58
<표 II-11>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및 제출 근거법령	63
<표 II-12> 연도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64
<표 II-13>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 공공기관의 자산 전망	66
<표 II-14> 총 부채 및 부채비율 전망치 비교	67

<표 II-15>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 공공기관의 부채·부채비율 전망	69
<표 II-16> 금융부채 전망치 비교	69
<표 II-17> 당기순이익 및 이자보상배율 전망	70
<표 II-18> 기관별 주요 재무지표 전망	70
<표 II-19>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 공공기관의 재무 전망(2018~2022년) ..	71
<표 II-20> 2019년 혁신계획 수립 대상 및 제외 대상 공공기관	89
<표 II-21> 기관별 중점과제 수	93
<표 II-22> 안전등급 심사기준(안)	98
<표 II-23> 공공기관 안전등급 및 지표	99
<표 II-24>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기준	101
<표 II-25> 시범사업 대상기관	101
<표 II-26>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총괄평가지표	104
<표 II-27>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분야	106
<표 II-28> 안전분야 공시사항	107
<표 II-29> 공정채용 관련 제도개선 사항	108
<표 II-30> 중점 5대 분야의 목표 지표	110
<표 III-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2020. 1월 기준)	115
<표 III-2> 주무부처별 연구개발목적기관 분포(2020. 1월 기준)	117
<표 III-3> 2019년 주무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수 변동 내역	118
<표 III-4>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32개 기관)	121
<표 III-5>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27개 기관)	122
<표 III-6>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공공기관(64개 기관)	123
<표 III-7> 출자 주체별 보유지분 현황	125
<표 III-8>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구분(설립근거법령 기준)	128
<표 III-9>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26개 기관)	129
<표 III-10> 공공기관 부설기관(분원) 현황(23개 기관)	131
<표 III-11> 지역별 공공기관 분포(2020. 9월 기준)	135
<표 III-12> 2020년도 신규지정 공공기관 소재지	136
<표 III-13> 지역별 이전대상 공공기관 분포	138

<표 III-14>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매각 현황(2020. 7. 15. 기준)	140
<표 III-15>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141
<표 III-16> 이전 공공기관을 제외한 의무채용 대상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	142
<표 III-17>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기관	143
<표 III-18> 2019년 이전 지역별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적	144
<표 III-19> 공공기관 관리 기금 현황	151
<표 III-20>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관리 기금 분포(2020년 기준)	153
<표 III-21>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및 조성 규모	154
<표 III-22> 공공기관 관리 기금 비중(기금 운용 및 조성 규모)	158
<표 III-23>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 규모	159
<표 III-24>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 규모 비중	164
<표 III-25> 상장 공공기관 개요	166
<표 III-26> 상장 공공기관의 주식 소유 현황	167
<표 III-27> 상장 공공기관의 납입자본금 및 주식의 총수	168
<표 III-28> 상장 공공기관의 배당에 관한 사항(2017~2019년)	169
<표 III-29> 상장 공공기관의 손익현황(2017~2019년)	173
<표 III-30> 상장 공공기관의 매출액 및 총포괄손익 변화 추이(2017~2019년)	175
<표 III-31> 상장 공공기관의 주요 재무 비율(2017~2019년)	177
<표 III-32> 2015~2019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국가행정공무원 현황	183
<표 III-33> 2015~2019년 공공기관 유형별 임직원 수 현황	185
<표 III-34> 2015~2019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임직원 수 현황	186
<표 III-35> 2019년 인력증원 100명 이상인 기관	188
<표 III-36> 2019년 인력 감원 기관	190
<표 III-37> 2015~2019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	190
<표 III-38> 2015~2019년 신규 채용 현황	191
<표 III-39> 2015~2019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신규 채용 현황	192
<표 III-40> 2019년 신규 채용 규모 상위 10개 기관	193
<표 III-41> 2019년 신규 채용 100명 이상 증가한 기관	194
<표 III-42> 2015~2019년 사회형평적 채용 규모	195
<표 III-43> 2011~2019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추이	197

<표 III-44> 2015~2019년 청년 신규고용 현황	198
<표 III-45> 2015~2019년 청년고용의무제 이행기관 현황	199
<표 III-46> 2015~2019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200
<표 III-47>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결정 및 전환완료 현황	202
<표 III-48>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결정 및 전환완료 현황	203
<표 III-49> 파견 근로자 정규직 전환결정 및 전환완료 현황	204
<표 III-50>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자산, 부채 및 자본 현황	206
<표 III-51> 최근 5년간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현황	209
<표 III-52>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부채 현황	215
<표 III-53> 2019년도 부채 규모 상위기관 현황	217
<표 III-54>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	218
<표 III-55>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자산 현황	220
<표 III-56> 2019년도 자산 규모 상위기관 현황	221
<표 III-57>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현황	222
<표 III-58> 2019년도 당기순이익·순손실 상위기관 현황	225
<표 III-59> 38개 정부출자기관의 정부배당 현황	226
<표 III-60> 최근 5년간 직원 평균보수 현황(정규직 기준)	229
<표 III-61> 최근 5년간 상임임원 평균연봉 현황	233
<표 III-62> 최근 5년간 기관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현황	238
<표 III-63> 복리후생비 주요항목 현황	242
<표 III-64> 최근 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	243
<표 III-65> 2019년도 기관평가 대상기관(129개)	248
<표 III-66> 2019년도 평가유형별 종합등급 분포(상대평가)	251
<표 III-67> 2019년도 종합등급별 기관 현황(상대평가)	252
<표 III-68> 전년대비 2019년도 평가등급 변동 요약(상대평가)	256
<표 III-69> 전년대비 2019년도 평가등급 변동 현황(상대평가)	257
<표 III-70> 2019년도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평가등급 분포	258
<표 III-71> 2019년도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평가등급 현황(상대평가)	259
<표 III-72> 2019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상대평가, 공기업 유형)	263
<표 III-73> 2019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상대평가,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 ...	264

<표 III-74> 2019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상대·절대평가, 강소형 유형)	265
<표 III-75> 2019년도 평가유형별 평가등급 분포(상대·절대평가)	267
<표 III-76> 2019년도 종합등급별 기관 현황(절대평가)	268
<표 III-77> 2019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절대평가, 공기업 유형)	273
<표 III-78> 2019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절대평가,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 ...	274
<표 III-79> 2019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공기업)	279
<표 III-80> 2019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준정부기관)	280
<표 III-81> 「공운법」 제13조	281
<표 III-82> 고객만족도 조사그룹 분류	283
<표 III-83> PCSI 모델과 PCSI 2.0 모델 비교	284
<표 III-84>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통합조사 경영평가 반영안	286
<표 III-85> 2019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 현황	288
<표 III-86> 2019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2020.1월 기준)	289
<표 III-87> 2019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별 분포	293
<표 III-88> 2019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요약	296
<표 III-89> 전년대비 2019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비교	298
<표 III-90> 전년대비 2019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 변동 현황	298
<표 III-91> 전년대비 2019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 변동 내역	299
<표 III-92> 2019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청렴도 측정 유형별)	302
<표 III-93> 2019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공공기관(「공운법」상 공공기관 기준) ...	309
<표 III-94> 2019년도 유형별 청렴도 측정 대상 공공기관	310
<표 III-95> 2019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유형 변경 현황	312
<표 III-96> 2018년도 및 2019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비교	314
<표 III-97> 2019년도 청렴도 측정 유형별 종합청렴도 등급 현황	315
<표 III-98> 2019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및 전년대비 등급 개선수준	319
<표 III-99> 2019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등급 현황	321
<표 III-100>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의 2019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및 전년 대비 개선 수준	322
<표 III-101>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의 2019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현황	324
<표 III-102> 공공기관 통합공시항목과 관련 「공운법」 조항(2020.9월 기준)	328

<표 Ⅲ-103> 공공기관 통합공시항목 구분(2020. 9월 기준)	330
<표 Ⅲ-104>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별점 부과 체계	334
<표 Ⅲ-105> 통합공시 점검 별점에 따른 사후조치	335
<표 Ⅲ-106> 2019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항목	337
<표 Ⅲ-107> 공공기관 통합공시 별점 현황(2014~2019년)	338
<표 Ⅲ-108> 2019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341
<표 Ⅲ-109> 2019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별점 분포 현황	342
<표 Ⅲ-110>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의 2019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별점 분포 ...	344
<표 Ⅲ-111> 2019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전년대비 변동 현황	345

그림 차례

<그림 I-1> 공공기관 지정 추이(2007~2020년)	27
<그림 II-1> 정규직 전환 추이	45
<그림 II-2>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황(2019. 12. 31.기준)	46
<그림 II-3> 2019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의 개선사항 및 주요결과	50
<그림 II-4> 최근 3년간 채용비위 적발건수 비교	51
<그림 II-5> 공공기관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현황	66
<그림 II-6> 부채 규모 및 부채 비율 전망치 비교	68
<그림 II-7> 2019년 및 2020년 혁신과제 비교	76
<그림 II-8> 안전 등급 심사체계	97
<그림 II-9> 안전등급심사단 구조도	97
<그림 II-10> 안전등급 결정 체계도	99
<그림 II-11>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프로세스	103
<그림 III-1> 공공기관 설립형태 분포(설립근거법령 기준)	120
<그림 III-2>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규모 추이	157
<그림 III-3>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조성 규모 추이	157
<그림 III-4>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유형별 운용 및 조성 규모 비중	159
<그림 III-5> 기금 자산 규모 및 구성항목별 비중	162
<그림 III-6>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유형별 자산 규모 비교	164
<그림 III-7> 상장 공공기관의 현금배당수익률 변동 현황	172
<그림 III-8> 상장 공공기관의 주당 순이익 변동 현황	172
<그림 III-9> 2015~2019년 공공기관 임직원 수 및 국가행정공무원 현황	184
<그림 III-10> 2015~2019년 사회형평적 채용 추이	196

<그림 III-11>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자본 및 부채 규모 추이	207
<그림 III-12> 최근 4년간 공공기관의 자산, 부채 및 자본 증감액 추이	207
<그림 III-13> 최근 5년간 부채 규모 추이	210
<그림 III-14> 최근 4년간 부채 증감 추이	210
<그림 III-15> 최근 5년간 부채비율 추이	211
<그림 III-16> 최근 4년간 부채비율 증감 추이	211
<그림 III-17>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현황	212
<그림 III-18>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증가율 추이	213
<그림 III-19>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현황	214
<그림 III-20>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증감 추이	214
<그림 III-21>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	218
<그림 III-22>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증가율 추이	219
<그림 III-23>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당기순이익 추이	223
<그림 III-24> 최근 5년간 직원 평균보수 추이(정규직 기준)	229
<그림 III-25> 최근 4년간 직원 평균보수 증가율 추이(정규직 기준)	231
<그림 III-26> 최근 5년간 기관장(상임) 평균연봉 추이	235
<그림 III-27> 최근 5년간 상임이사 평균연봉 추이	235
<그림 III-28> 최근 5년간 상임감사 평균연봉 추이	236
<그림 III-29> 최근 4년간 기관장(상임) 평균연봉 증감률	237
<그림 III-30> 최근 4년간 상임이사 평균연봉 증감률	237
<그림 III-31> 최근 4년간 상임감사 평균연봉 증감률	237
<그림 III-32> 최근 5년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현황(무상지원 기준)	240
<그림 III-33> 최근 4년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증감률 추이(무상지원 기준) ...	241
<그림 III-34> 최근 5년간 복리후생비 주요항목 추이	242
<그림 III-35> 최근 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규모	244
<그림 III-36> 전년대비 2019년도 평가등급별 분포(상대평가)	253
<그림 III-37> 최근 3년 평균 대비 2019년도 평가등급별 분포(상대평가)	253
<그림 III-38> 2019년도 평가유형별 등급 분포(상대평가)	255
<그림 III-39> 평가유형별 전년대비 평가등급 분포 비교(상대평가)	255
<그림 III-40> 전년대비 2019년도 평가등급 분포 비교(절대평가)	267

<그림 Ⅲ-41> 2019년도 평가유형별 평가등급 분포(절대평가)	270
<그림 Ⅲ-42> 2019년도 평가등급별 분포(상대·절대평가)	271
<그림 Ⅲ-43>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개편(2018년)	285
<그림 Ⅲ-44> 2019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등급 분포	297
<그림 Ⅲ-45> 종합청렴도 구성 체계	303
<그림 Ⅲ-46>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304
<그림 Ⅲ-47> 2019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306
<그림 Ⅲ-48> 2019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모형	308
<그림 Ⅲ-49> 2019년도 공공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319
<그림 Ⅲ-50> 공공기관 통합공시 평균 별점(2014~2019년)	339
<그림 Ⅲ-51>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2014~2019년)	339
<그림 Ⅲ-52> 2019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별점 분포 현황(전체 기관)	343
<그림 Ⅲ-53> 2019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별점 분포 현황(유형별)	343

I 2020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1.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 제도
2. 2020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2020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1.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 제도

가. 공공기관의 지정

-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함.
 - 「공운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서 개별기관의 설립근거 및 설립주체, 개별기관에 대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지원 형태와 규모 등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시행령 제2조~제6조 및 <별표1>을 통해 공공기관 지정요건별 산정기준 및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음.
- 「공운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에 이르는 공공기관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음.
 - 제1호에 의한 공공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1회 이상)한 기관
 - 제2호에 의한 공공기관: 정부지원액¹⁾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정부지원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
 - 제3호에 의한 공공기관: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제4호에 의한 공공기관: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1) 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

- 제5호에 의한 공공기관: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제6호에 의한 공공기관: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기관이 출연한 기관
- 그러나 「공운법」 제1항 각호의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동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됨.
-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은 「공운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관리의 대상이 됨.
-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공통적으로 동법 제11조의 경영공시, 제12조의 통합공시, 제13조의 고객현장과 고객만족도조사, 제14조의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그리고 제15조의 공공기관의 혁신 등의 적용대상이 됨.
 - 이 외에도 「공운법」 보칙 제53조에서 제53조의3에 이르는 규정과 별칙 조항(제55조 및 제56조)을 적용받음.
 -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된 기관은 「공운법」에 따른 공통된 관리·감독대상이 되지 않고 소관 주무부처의 재량적 관리대상이 됨.

나. 공공기관의 유형 구분

- 「공운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동법 제5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됨.
- 여기서 공공기관의 유형을 구분하는 목적은 공공기관의 업무특성과 중요도를 반영하여 맞춤형 지배구조와 관리·감독 수준을 설계하기 위함임.
 -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라 「공운법」상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짐.

-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상기한 공통사항²⁾ 이 외에도 이사회, 임원 임명 및 구성, 예산회계, 경영감독 등 「공운법」 제16조에서 제52조의6에 이르는 규정과 보칙 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됨.
- 공공기관 유형 구분 요건을 살펴보면 <표 I-1>과 같음.

〈표 I-1〉 공공기관 유형 구분

유형 구분	지정요건
① 공기업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시장형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준시장형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② 준정부기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기금관리형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기술보증기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장학재단 등)
③ 기타공공기관	직원 정원 50인 미만인 공공기관과 이 외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 기관의 성격 및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음

주: 연구개발 목적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분류 근거는 「공운법」 제5조 제4항 개정을 통해 마련(2018.3.27. 개정 법률)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공공기관 현황'을 참고하여 작성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며 자체 수입액 비중, 자산규모, 기금관리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세부유형을 구분함.
- 공기업: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으로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며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유형을 세분함.
 - 시장형 공기업: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5%이상인 공기업
 - 준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기업
- 준정부기관: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며

2) 전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공운법」 조항은 제11조~제15조, 보칙 제53조~제53조3 및 별칙 제55조~제56조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세분함.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공공기관 중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함.

- 직원 정원이 50인 미만인 공공기관
-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나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공기관

□ 기획재정부는 2018년 3월 「공운법」 개정을 통해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 기관을 연구개발목적의 기관으로 세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운법」 개정 전까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세부유형을 구분하는 기준만 「공운법」에 명문화되어 있었음.
- 「공운법」 제5조 제4항3)의 개정을 통해 기타공공기관의 세부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최초로 마련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요건을 정하고 있음.
 - 제1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제2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제3호: 그 밖의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관
- 제3호에 의한 연구개발목적기관은 설립근거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고유업무와 실제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업무의 비중(예산, 인력) 등을 고려하여 분류함.
- 기획재정부는 2019년 공공기관 지정 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세부유형 구분(연구개발목적기관)을 최초 시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안정적인 연구

3) “「공운법」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④기획재정부장은 공공기관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은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하 「공공기관 혁신지침」)」을 개정함.⁴⁾

- 제6조 제5항에 연구개발목적기관의 기능조정 계획 수립 및 경영혁신 추진 시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도록 관련내용을 추가함.
- 제10조 제2항을 신설하여 경영혁신 진단 시에는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실적평가 및 경영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제19조 제2항을 신설하여 고객만족도조사 기본계획 수립 시에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성격과 업무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종전까지는 제22조 제3항에서 직무능력 중심 공정채용의 구현을 위해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채용면접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지침 개정을 통해 연구개발 목적기관은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실적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 혁신지침」에서는 제24조를 통해 비정규직 운영을 제한하고 있는데, 지침 개정을 통해 연구개발목적기관에서 연수를 위해 운영 중인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정규직과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함.
- 연구개발목적기관의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해외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주무기관의 장과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을 협의하여 별도의 주거지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46조 제7항을 신설함.

□ 2021년 공공기관 지정부터는 개정된 「공운법」 제5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의 유형이 구분될 예정임.

- 종전 「공운법」 제5조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을 직원 정원 (50인)만 규정하고 하고 있어 법률 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있음.
- 공공기관 유형에 대한 구분기준 및 방식은 「공운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및 <별표2>에서 명문화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0년 3월 31일 「공운법」 개정을 통해 공기업·준정부 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4)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19. 1. 30. 및 「공공기관 혁신지침」, 2019. 1. 참고

- 앞으로는 종전의 직원 정원 기준(50인)과 함께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되,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기타공공기관의 종류와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은 「공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문화될 예정임.
- 「공운법」 제5조의 개정 사항은 <표 I-2>과 같음.

〈표 I-2〉 「공운법」 제5조 신규 조문 비교

현행 「공운법」(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개정 「공운법」(시행 2021. 1. 1) [법률 제17128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 외의 기관
-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현행 「공운법」(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개정 「공운법」(시행 2021. 1. 1) [법률 제17128호, 2020. 3. 31, 일부개정]
나. 준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나. 준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④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종류와 분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종류와 분류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신구법비교」([http://www.law.go.kr/법령/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17128,20200331\)](http://www.law.go.kr/법령/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17128,20200331)))를 참고하여 작성

다. 공공기관의 지정 절차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운법」 제6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하며,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음.
- 제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설된 경우, 신규 지정함.
-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민영화, 기관의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련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지정 해제 또는 유형구분 변경 지정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침.

2. 2020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⁵⁾

가. 2020년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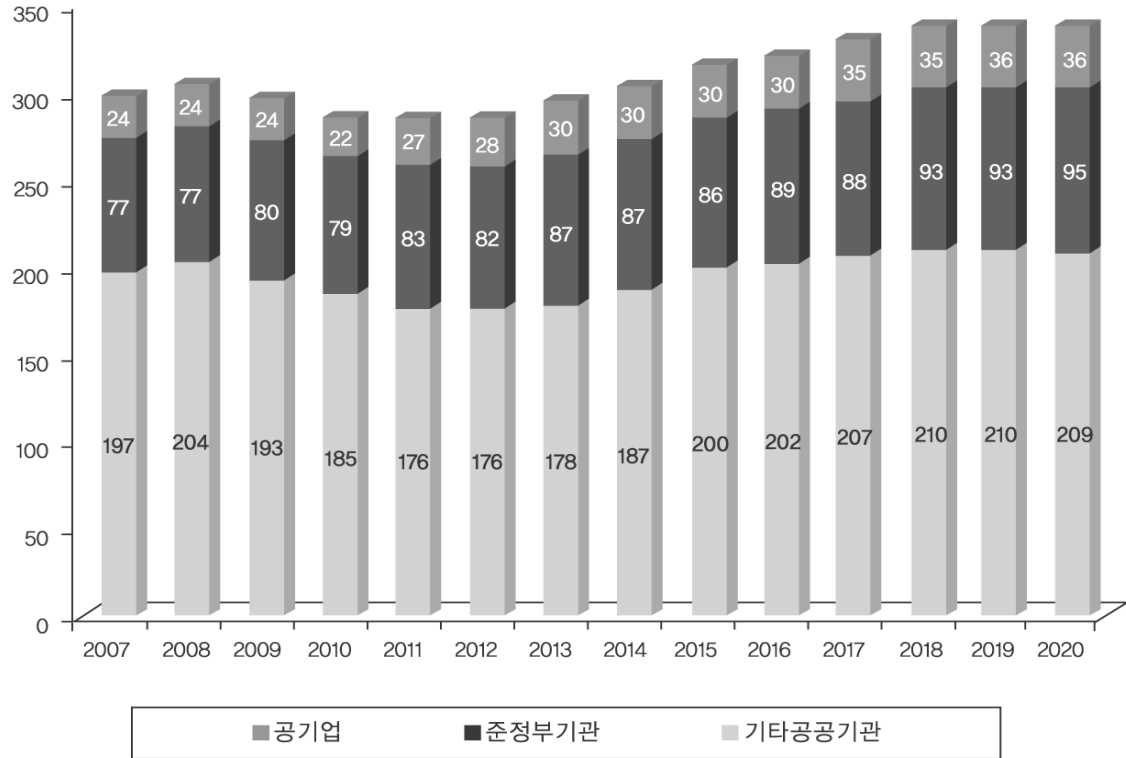
- 2020년 1월 총 340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인 공공기관으로 지정됨.
- 「공운법」이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수의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됨.
 - 2020년 공공기관의 수(340개)는 「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최초로 지정된 2007년의 298개보다 42개 기관이 증가한 것임.
 - 2007년 최초 지정부터 2020년 1월까지의 공공기관 지정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I-1>과 같음.
 - 2020년 공공기관 수는 2019년(339개, 12월 기준) 대비 1개 기관이 증가함.
 - 2019년 공공기관(339개) 중 3개 기관이 2020년에 지정 해제되고 4개 기관⁶⁾이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 수가 전년대비 1개 증가함.
 - 2020년 1월 현재 공공기관(340개)은 <표 I-3>과 같음.

5) 기획재정부, 「2020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0. 1. 29.를 참고하여 작성

6) <표 I-3> 참고

〈그림 I-1〉 공공기관 지정 추이(2007~2020년)

(단위: 개)



자료: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공공기관 현황 편람』, 2019. 10. 및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0. 1. 29.를 참고하여 작성

〈표 I-3〉 2020년 공공기관(340개, 2020. 1월 기준)

유형구분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6개)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강원랜드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0개)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화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개)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화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2개)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화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유형구분	기관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2개)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u>한국건강가정진흥원</u>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철도공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u>한국수목원관리원</u>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청)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 (209개)	(기재부)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유형구분	기관명
기타공공기관 (209개)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안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화부) 재단법인 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의전당, 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농식품부) (재)한식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재)축산환경관리원 (산업부)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세라믹기술원 (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환경부) (주)위터웨이플러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수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진흥공사 (중기부) (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유형구분	기관명
기타공공기관 (209개)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금융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훈처) 88관광개발㈜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단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주: 1. 밑줄 표시된 기관(3개)은 2020년 공공기관 지정 시 공공기관 유형이 변경 지정된 기관임

2. 이탤릭 표시된 기관(4개)은 2020년 1월 신규 지정된 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0. 1. 29.

□ 2020년 9월 현재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 분포(<표 I-4>)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기업은 총 36개 기관으로 이 중 시장형 공기업이 16개 기관이고, 준시장형 공기업이 20개 기관임.
- 준정부기관은 총 95개 기관으로 이 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13개 기관이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82개 기관임.
- 기타공공기관은 209개 기관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61.5%를 차지함.
 -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은 69개로 전체 공공기관 중 20.3%를 차지함.

〈표 I-4〉 2020년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 현황(2020. 1월 기준)

(단위: 개, %)

전체 공공기관	공기업(36개)		준정부기관(93개)		기타공공기관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340 (100)	16 (4.7)	20 (5.9)	13 (3.8)	82 (24.1)	209 (61.5)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0. 1. 29.

□ 2018년 3월 개정된 「공운법」 제5조 제4항에 근거하여 2019년부터는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별도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2020년 기타공공기관 중 69개 기관이 이에 해당함.

- 2019년 연구개발목적기관 중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 2020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신규로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됨.
 -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근거해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
- 연구개발목적기관의 63.8%인 44개 기관이 「정부출연기관법」과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출연기관법」에 근거하여 설립됨.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관 19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과기출연기관법」에 근거하여 설립됨.
- 이 외 25개 기관은 「공운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호에 따라 공운위 의결을 거쳐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임.
 - 이 중 9개 기관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지정한 특정연구기관에 해당함.
- 2020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표 I-5>와 같음.

〈표 I-5〉 2020년 연구개발목적기관(69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기관 (24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속기관 (20개)	부처 직할 연구원 등 기타기관 (25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7)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기관 (24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속기관 (20개)	부처 직할 연구원 등 기타기관 (25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재)중소기업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재)APEC기후센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 1. 연구개발목적기관은 기타공공기관에 해당

2. 밑줄 표시된 기관(1개)은 2020년에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신규 분류된 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19. 1. 29.

나. 전년대비 주요 변동내역

□ 2020년 공공기관은 2019년보다 1개 기관이 증가한 340개임.

- 2019년 공공기관(339개) 중 3개 기관이 2020년에 지정 해제되고 4개 기관⁸⁾이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 수가 전년대비 1개 증가함.

□ 유형별로 기관수 및 기관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은 2019년과 동일함.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됨에 따라 기관 수가 2019년 14개에서 2020년 13개로 1개 감소함.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방사성 폐기물관리기금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나⁹⁾ 사실상 기금의 집행을 주로 수행하는 기관임을 고려하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변경함.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및 한국수목원관리원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전년대비 3개

8) <표 1-3> 참고

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업무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정관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부설 기금관리센터에서 별도로 수행

기관이 증가한 82개임.

- 최초 지정부터 2019년까지 기타공공기관의 지위를 유지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¹⁰⁾과 한국수목원관리원¹¹⁾은 2019년 기준 직원 정원과 기관 운영체계 안정화 수준을 고려하여 2020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변경 지정함.
-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유형 변경(2건), 지정 해제(3건) 및 신규 지정(4건)된 기관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기관수가 1개 감소한 209개임.
 - 2019년 기타공공기관 중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 지정됨.
 - 2019년 말에 기관 해산이 결정된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과 정부지원 비중이 축소된 사단법인 한국산화연합회, 그리고 민간경합 의료기관인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은 2020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됨.
 - 2020년 신규 지정된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축산환경관리원 및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등 4개 기관은 모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
-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 수 변동 현황 및 변동내역은 <표 I-6> 및 <표 I-7>과 같음.

<표 I-6>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수 변동(2020. 1월 기준)

(단위: 개)

유형구분	2019년 말 (A)	2020년 (B)	증감 (B-A)	(전년대비 변동내역)		
				신규	해제	유형 변경
① 공기업	36	36	-	-	-	-
시장형	16	16	-	-	-	-
준시장형	20	20	-	-	-	-
② 준정부기관	93	95	+2	-	-	+2
기금관리형	14	13	△1	-	-	△1
위탁집행형	79	82	+3	-	-	+3
③ 기타공공기관	210	209	△1	+4	△3	△2
계	339	340	+1	+4	△3	-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0. 1. 29.

10)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전신인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2014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으며, 「건강가정진흥법」 개정을 통해 2015년 1월 법정법인으로 전환(동법 제34의2를 신설하여 법적 설립근거 마련)

11)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3에 근거하여 2017년 5월 설립된 기관으로 2018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기관임

〈표 I-7〉 2020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 내역(2020. 1월 기준)

구 분	주무부처	기관명	지정 결과	비고
신규 지정 (4개)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기타 공공기관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농림부	(재)축산환경관리원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해제 (3개)	기상청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지정해제	기관 해산, 정부지원 축소 등을 사유로 지정해제
	중기부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복지부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유형 변경 (3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19) 기타공공기관
	산림청	한국수목원관리원		(2019)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산업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0. 1. 29.

□ 2020년 신규로 공공기관에 지정된 4개 기관은 <표 I-8>과 같음.

- 2020년 신규 지정된 기관 중 보건복지부 산하 2개 기관은 2019년에 신설된 기관임.
 - 이 외 (재)축산환경관리원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2019년 이전 출범한 기관이나 2020년 공공기관으로 최초 지정됨.
- 2020년 신규 지정된 4개 기관은 모두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함.
 -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9년 신설된 기관임.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종전의 중앙자활센터가 해산되고 2019년 신규 출범한 기관임.¹²⁾
 - (재)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전담기관으로 친환경적인 가축 사육환경의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칙(법률 제16239호, 2019. 1. 15.)에 근거하여 종전의 중앙자활센터는 해산되고 신규 출범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종전 기관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함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국가의 등산지원기본계획(2007~2017년)에 따라 건전한 등산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등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 설립된 기관임.

〈표 I-8〉 2020년 신규지정 공공기관

(단위: 명, 백만원)

주무 부처	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설립 시기	설립근거	기관규모('19년말)	
					직원 정원	자산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기타 공공기관	'19. 7월	「아동복지법」 제10조의2	83	2,369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9. 7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	42	147,445
농림부	(재)축산환경관리원		'15. 5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29	67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 지원센터		'08. 7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57	367

주: '직원 정원'은 2020년 4월 말 알리오시스템에 공개된 2019년 말 기준 일반 정규직 정원(무기계약직 정원 불포함)을 기재한 것으로 2020년 9월 현재 정규직 정원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의 기관별 공시정보(2020.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Ⅱ

공공기관 관리정책 주요 동향

1. 공공기관 인력관리정책 주요 동향
2. 공공기관 재무관리정책 주요 동향
3.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정책 주요 동향
4. 공공기관 안전관리정책 주요 동향
5. 사회적가치 창출 전략 추진



II 공공기관 관리정책 주요 동향

1. 공공기관 인력관리정책 주요 동향

가.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¹³⁾

1)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 ☐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도 불구하고 조직 성과 제고, 비효율 개선 등에 대한 국민의 기대·요구는 여전함.
- ☐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제도는 「공운법」 개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된 반면, 업무성과 중심의 직원 인사제도상의 혁신은 다소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공무원의 경우 중앙인사기관(인사처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인사운영상의 혁신을 추진해 왔으나,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미흡하였음.
 -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 조직 운영의 폐쇄성 등은 공공기관 직원 인사제도의 개선과제로 제기됨.
-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인력 확충이 조직의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제도와 특별승진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운영 중인 개방형 계약직제를 강화하기로 함.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공운위의 의결(2020년 4월 24일)을 거친 후 4월 28일에 전체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이를 시달하였음.
- ☐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은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최소

13)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성과 향상 및 개방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인사혁신 3대 과제추진」, 보도자료, 2020. 4. 28. 참고

한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각 기관별로 업무특성과 기관의 상황에 맞게 제도를 마련하도록 함.

- 또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구성원들의 공감대와 수용성 확보가 필수인 만큼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등을 충분히 거쳐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 혁신방안에 따라 공공기관은 각 기관의 내부 인사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2020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 기획재정부는 동 지침과 관련하여 현장의 애로점 및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인사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공공기관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제도 안착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 2021년부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하 「공공기관 경영지침」)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본격 추진할 예정임.

- 2020년 하반기 추진실적은 2020년 경영실적평가 시 간접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나 2021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제도시행 노력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적극 지원할 예정임.

2)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 3대 과제

□ 먼저 공공기관 간 경험과 전문성 등의 공유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 소속 직원을 상호 파견하는 인사교류제도가 도입됨.

- 유관업무 공동수행, 타 기관 업무지원 등을 위한 일방의 파견근무는 다수 기관에서 시행 중이나, 상호교류는 제한적인 상황임.¹⁴⁾
 - 현재 공공기관 인사교류와 관련한 공통 지침이 없어, 기관 간 적극적인 인사교류 추진에 한계가 있음.
- 안전 분야 등 전문성의 상호 활용을 통해 기술개발이 가능한 직위, 복지·대외원조 등 유사업무 수행으로 기능·고객이 중첩되어 상호 정책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위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임.
- 특히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의 인사교류도 가능하도록 추진함.

14) 6개 공공기관(여수광양·인천항만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단지공단, 한국국제협력단·수은)에서 운영 중임

- 이는 상당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된 점을 고려하여 중앙-지방 간 공공기관의 상호협력 기회를 더욱 넓히고 혁신도시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표 II-1〉 국가공무원 계획인사교류

구분	내용
교류유형	부처-부처, 부처-지자체, 부처-교육·연구기관, 부처-공공기관
교류대상	1년 이상 근무한 소속공무원 중 우수인력 선정
교류기간	2년(1년씩 연장, 최대 5년 이내)
인사관리	근평 및 성과급 지급시 우대, 복귀 후 희망보직 부여, 교류수당 및 주택보조비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추진실적	매년 교류직위 수 증가 추세 * 연도별 교류직위 수(개): ('14) 596 → ... ('17) 664 → ('18) 682 → ('19) 760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성과 향상 및 개방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인사혁신 3대 과제추진」, 보도자료, 2020. 4. 28.을 바탕으로 재구성

- ☐ 우선 1개 직위 이상에 대해 인사교류를 실시하며 앞으로 기관 규모 등을 감안해 직위 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상대기관 섭외가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는 인사교류 수요를 제출받아 기관 간 매칭을 지원할 예정임.
- ☐ 승진을 실시함에 있어 근속기간, 최소 승진소요연수 등 연공서열적인 요소를 가능한 배제하고 적극행정, 정책제안 채택·시행과 같은 업무성과를 주요 기준으로 반영하는 특별승진제도를 함께 시행함.
- 현재 다수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해당 제도를 갖추고는 있으나 실제 운영실적은 미미함에 따라 기관별로 연간 승진인원의 2% 이상에 대해 특별승진을 실시토록 하였음.
- 아울러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대상자 선정 또는 심사·의결과정에 외부 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고 블라인드 심사도 도입할 수 있게 함.
- ☐ 개방형 계약직제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권고안('15. 12월)을 통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외부인재 영입 시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핵심직위에 대한 개방이 미흡한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예정임.

- 우선 우수인재 영입을 위해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기본급을 선발예정 직위에 해당하는 금액의 17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우수 성과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심사만을 거쳐 상급 개방형 계약직에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승진 기회도 부여하였음.
- 특히 개방형 직위 중 1개 이상의 직위에 대해서는 기관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민간전문가 전담 직위로 지정하여 민간전문가의 영입을 촉진함.

나.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추진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운위 의결(2020. 6. 5.)을 거쳐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 이를 배포함(2020. 6. 8.).
- 이는 공공서비스 필수인력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라 증가한 공공기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은 이에 따라 중기인력운영계획 및 재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외부 조직진단을 강화하여야 함.
 - 동 제도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2020년 시범실시 후 2021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임.

〈표 II-2〉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관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증원의 절차) <신설>	제6조(증원의 절차)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관장의 중장기 경영목표, 업무소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당해 연도를 포함한 3년 단위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5.>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그 기관의 업무량 증감과 그에 따른 인력수요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다음 연도 정원조정안을 매년 5월 말까지 수립하고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_____. 이 경우 기존 인력의 재배치계획을 정원조정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제6조의2(조직진단) <신설>	제6조의2(조직진단)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조직진단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6.5.]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서 관련 내용 발췌

- 먼저 기획재정부는 조직 전체 및 중장기 관점의 인력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기 인력운영계획 제도를 도입함.
- 기관별로 중장기 경영목표, 사업계획, 경영환경 등과 연계하여 3년 단위 인력수요 전망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그동안의 인력운영 분석, 중기 기본방향 및 계획 등을 포함하여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함.
 - 각 공공기관은 동 계획을 인력운영의 기초로 적극 활용하고, 기획재정부는 증원 협의 등 공공기관 인력 정책 과정에 활용하도록 함.

〈표 II-3〉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주요내용

구분	내용
기관 인력운영 분석	최근 3년간 인력운영 추이, 인력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업무 관련 경영효율화 추진내역 등 포함
중기 인력운영 기본방향	경영환경 분석 및 중기 경영목표를 토대로 중기 방향 수립
중기인력운영계획	기관의 인력배치 전략, 향후 사업량·사업비 변화에 따른 소요인력 전망 등을 기술하고, 사업단위별 인력운영 계획을 제시 * 임금피크제 인력 활용방안, 향후 신규채용 계획, 사회형평적 채용계획 등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2020. 6. 8.

- 중기인력운영계획과 함께 공공기관의 기능·업무량 변동에 대응하여 기존 인력의 일부를 신규 수요 및 현장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는 재배치계획 제도도 함께 도입할 예정임.
- 이는 제4차 산업혁명 및 한국판 뉴딜 선도,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신규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각 기관은 전년도 말 기준 일반 정규직 정원에서 ‘업무성격상 재배치가 곤란한 정원¹⁵⁾을 제외하고, 그 중 일정 비율(예: 1%)¹⁶⁾ 이상에 대해 재배치계획을 수립함.
 - 해당 계획은 증원요구서에 포함하여 제출함.

15) 별정직, 개방형 계약직, 한시정원 등 업무성격상 재배치가 곤란한 정원 제외함

16) 운영성과를 토대로 2021년 이후 단계적으로 비율 확대 검토 예정임

- 계획 수립 시에는 조직진단 등을 거쳐 기능·업무량 감소 분야로부터 재배치가 가능한 정원을 발굴하고 ① 기능 간, ② 본사-지사 간, ③ 지사 간 등 주요 유형별로 재배치 수요, 실행일정 등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는 재배치계획을 기관별 증원요구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한편, 경영평가를 통해 재배치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임.

〈재배치 계획 수립 절차〉

- ① 기획재정부는 매년 정기증원에 앞서 재배치계획 수립 지침·양식 배포(6·10월)
- ② 기관별 특성에 맞게 재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증원요구서에 포함하여 제출 → 기획재정부는 증원소요와 연계하여 검토(7·10월)
- ③ 기관별 재배치계획에 따라 인력 재배치를 연중 자율 실행(연중)
- ④ 경영평가를 통해 재배치계획 실적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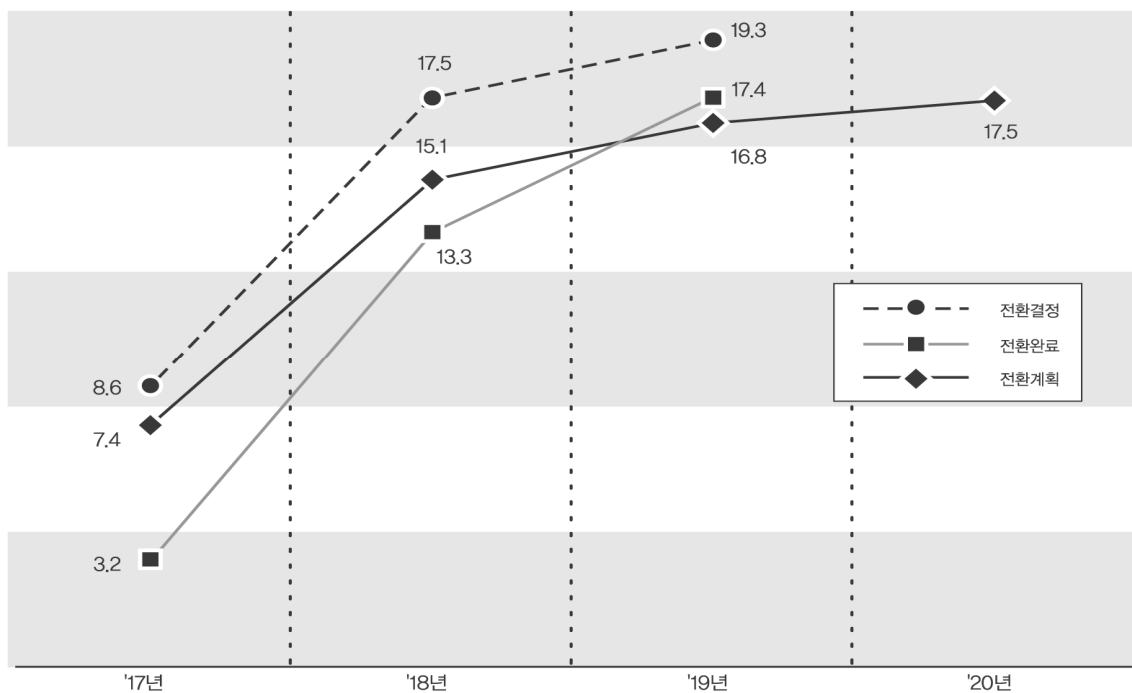
- 또한 인력운영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의무화하여 인력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임.
- 인력운영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기관이라 함은 ① 최근 3년간 매년 정원 증가율이 공공기관 전체 평균 증가율의 200% 이상, ② 경영평가 결과 ‘조직·인사 일반’ 지표가 D0 이하인 기관 등임.
- 기획재정부는 매년 7월 말까지 정기공시 및 경영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직진단 의무 대상기관을 선정·통보하고, 조직진단을 수행한 대상기관은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차년도 중기인력운영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함.
- 동 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며, 2020년 시범실시 후 2021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임.
 - 정부는 운영성과를 토대로 2021년 이후 기타공공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임.
 - 2020년에는 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조직진단을 수행하고, 2021년부터는 기획재정부 예산을 통하여 조직진단 수행을 지원할 것임.

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¹⁷⁾

- 2017년 7월 20일,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2년 6개월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19만 3천명('19.12월 말 기준)이 정규직 전환대상자로 결정됨.
- 2020년까지의 정규직 전환계획인 20만 5천명 대비 94.2%를 달성한 것이며,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9만 3천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7만 4천명(전환결정 인원 대비 90.0%)임.
- 전환 결정 후 전환 완료가 되지 않은 약 2만명은 기존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절차 진행 등이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될 예정임.

〈그림 II-1〉 정규직 전환 추이

(단위: 만명)



자료: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결정 19만 3천명 '20년까지 계획 대비 94.2% 달성」, 보도자료, 2020.2.3.

17)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결정 19만3천명(전환완료 17만 4천명), '20년까지 계획(20만 5천명) 대비 94.2% 달성」, 보도자료, 2020.2.3. 참고

〈표 II-4〉 전체 정규직 전환 결정 및 전환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기 관		인 원			
	대상 기관	전환결정 기관	전환계획 인원*	전환결정인원 (계획대비)	전환완료인원 (결정대비)	
합계	-	- -	174,935	193,252 (110.5)	173,943 (90.0)	
기간제	835	833 (99.8)	72,354	73,430 (101.5)	70,864 (96.5)	
파견용역	656	542 (82.6)	102,581	119,822 (116.8)	103,079 (8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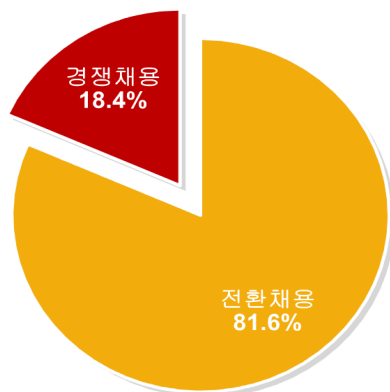
주: 1. 기관별 계획 17만 5천명 + 추가 전환 여지 3만명 = 20.5만명

2. () 안은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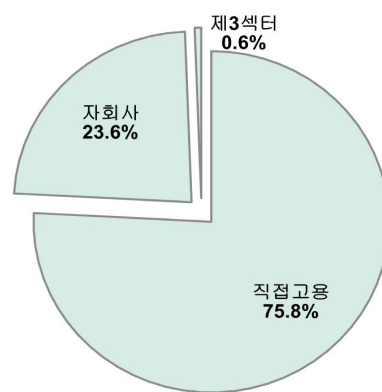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결정 19만 3천명 '20년까지 계획 대비 94.2% 달성」, 보도자료, 2020. 2. 3.

- 정규직 전환방식은 조직 규모,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기관이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음.
- 전환방식은 크게 직접고용, 자회사 전환, 제3섹터(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으로 나뉨.

〈그림 II-2〉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황(2019. 12. 31.기준)



〈채용방법별 현황〉



〈전환방식별 현황〉

자료: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결정 19만 3천명 '20년까지 계획 대비 94.2% 달성」, 보도자료, 2020. 2. 3.

- 채용방법상으로는 전환채용이 81.6%, 경쟁채용이 18.4%를 차지하고 있음.
-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현재 근로자의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직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등은 경쟁채용 방식도 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한 바 있음.
- 공공기관의 경쟁채용 전환비율이 높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표 II-5〉 정규직 채용방법별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대상 기관	전환결정 인원	전환완료 인원					
			합계		전환채용		경쟁채용	
합계	853	193,252	173,943	(90.0)	141,945	(81.6)	31,998	(18.4)
중앙부처	49	23,342	22,480	(96.3)	21,220	(94.4)	1,260	(5.6)
자치단체	245	25,226	23,465	(93.0)	19,347	(82.5)	4,118	(17.5)
공공기관*	334	100,422	85,786	(85.4)	63,741	(74.3)	22,045	(25.7)
지방공기업	149	6,532	5,945	(91.0)	4,731	(79.6)	1,214	(20.4)
교육기관	76	37,730	36,267	(96.1)	32,906	(90.7)	3,361	(9.3)

주: 1. 2017년 기준 「공운법」상 공공기관 340개와 「공운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4개 기관(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은행)을 포함

2. () 안은 비중임

자료: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결정 19만 3천명 '20년까지 계획 대비 94.2% 달성」, 보도자료, 2020.2.3.

□ 정규직 전환자의 75.8%인 13만 1,988명은 기관에 직접 고용되었고, 0.6%는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은 57개소(공공기관 54개, 지방공기업 3개)에 4만 978명으로, 전환완료 인원의 23.6%를 차지함.

○ 공공기관의 경우 다른 공공부문에 비해 자회사로의 전환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6〉 정규직 전환방식별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대상 기관	전환 결정 인원	전환완료 인원					
			합계		직접채용		자회사전환	
합계	853	193,252	173,943	(90.0)	131,988	(75.9)	40,978	(23.6)
중앙부처	49	23,342	22,480	(96.3)	22,480	(100)	0	(0.0)
자치단체	245	25,226	23,465	(93.0)	23,465	(100)	0	(0.0)
공공기관	334	100,422	85,786	(85.4)	44,746	(52.2)	40,397	(47.1)
지방공기업	149	6,532	5,945	(91.0)	5,364	(90.2)	581	(9.8)
교육기관	76	37,730	36,267	(96.1)	35,933	(99.1)	0	(0.0)

주: 1. 2017년 기준 「공운법」상 공공기관 340개와 「공운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4개 기관(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은행)을 포함

2. () 안은 비중임

자료: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결정 19만 3천명 '20년까지 계획 대비 94.2% 달성」, 보도자료, 2020.2.3.

- 정부는 기관이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에,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독립성·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하고 근로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18. 12월)’을 적용하도록 함.
- 기관과 자회사와의 부당·불공정계약에 대한 사전 자율점검(‘19. 8~9월) 결과, 49개 기관에서 경영·인사권 침해, 부당한 업무지시 등 523건이 적발되었고, 이어 집중 점검(‘19. 8~11월)을 실시하였음.
- 또한 자회사가 운영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모델안’의 이행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표 II-7〉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세부내용
① 안정성·공공성 확보	공공성과 종사자 고용 안정이 담보되는 지속 가능한 조직	▶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 마련 ▶ 지속적인 수의계약 보장 ▶ 모회사 100% 출자
② 독립성·책임성 조화	자회사 경영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 모회사와의 소통·연계는 강화	▶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 및 경영 투명성 확보(노사협의회 활성화, 노동이사제 도입 검토 등) ▶ 모·자회사 공동협의회 등 업무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 등 공동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조치
③ 전문성 확보 지향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역량강화와 합리적 임금·승진체계 구비	▶ 교육훈련 등 서비스 역량강화 노력 ▶ 합리적 임금·승진체계 설계

자료: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 2020. 3. 23.

라. 공공부문 공정채용 강화¹⁸⁾

- 저성장·양극화 심화, 인구·산업구조의 변화,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라 일자리 창출은 시급하고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국정과제임.
- 국민이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인 채용의 공정성 확립은 시대적 과제로 부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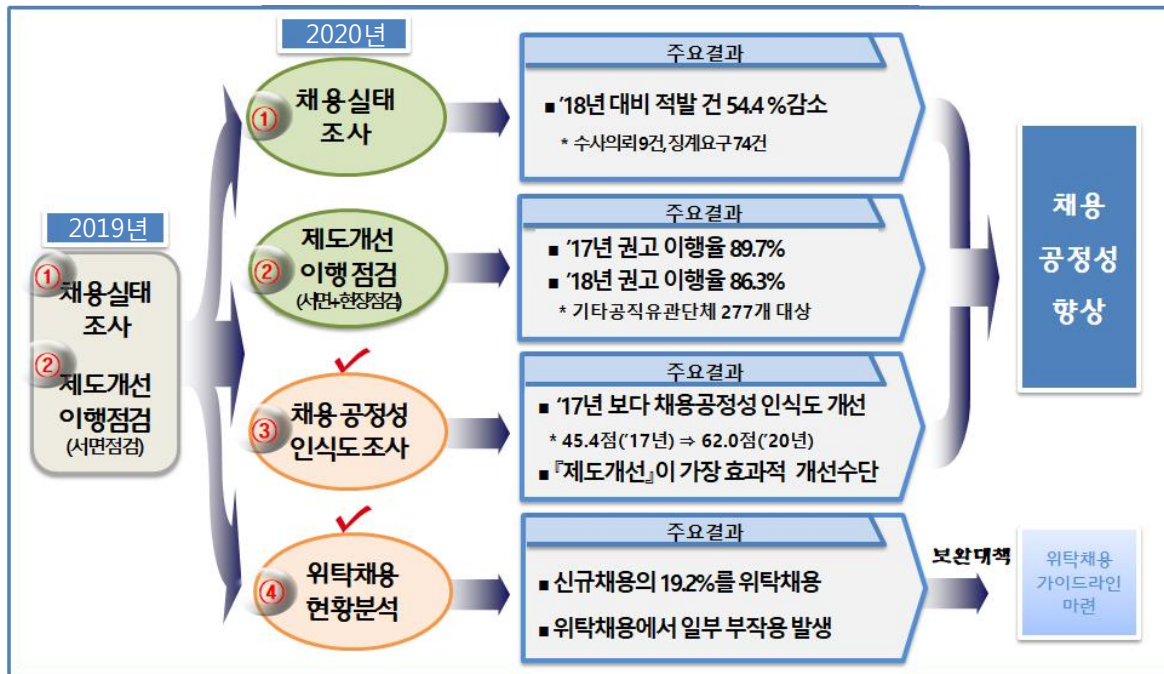
18) 관계부처합동, 「2019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조사 결과 발표」, 보도참고자료, 2020. 7. 24.를 참고하여 작성

- 그동안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설치(‘18. 11월),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등 공공부문 채용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직자들은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채용의 공정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2019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는 지난 2017년 이후 실시된 세 번째 조사이며 2018년 실태조사 이후(2018. 11.~2019. 11.)의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실적이 있는 1,212개 공공기관(「공운법」상 공공기관 333개, 지방공공기관 637개, 기타공직유관단체 242개)을 대상으로 함.
- 2019년 조사에서도 2017년 및 2018년 실태조사와 같이 감독부처가 주관하는 1차 전수조사(1,212개소)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2차 심층조사(24개소)를 실시함.
- 특히 2019년 조사는 이전 조사와 달리 채용비위 적발(채용실태조사) 이 외에도 채용 관련 제도개선 이행 여부 점검방식을 개선하고 공공부문 채용시스템의 운영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다각적 접근을 시도함.
 - 그간 서면 위주로 진행해 온 제도개선 이행점검¹⁹⁾에서 벗어나 현장점검 및 확인 점검을 강화하여 제도의 현장 안착 여부 및 적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채용공정성 모범사례를 수집함.
 - 취업준비생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²⁰⁾으로 한 채용공정성 인식도 조사를 통해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그간 채용비위 대책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한 인식변화를 파악하여 정책 개선에 활용하고자 함.
 - 공공기관의 채용규모·방법·비용 등 채용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위탁 채용의 현황과 이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보완대책을 모색하고자 함.

19) '17년·'18년 채용 제도개선 사항의 사규반영 여부 등(기타공직유관단체 중심)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확인점검 실시

20) 채용공정성 인식도 조사는 취업준비생 500명, 공공기관 종사자 682명 등 총 1,182명을 대상으로 실시

〈그림 II-3〉 2019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의 개선사항 및 주요결과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9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조사 결과 발표」, 보도참고자료, 2020. 7.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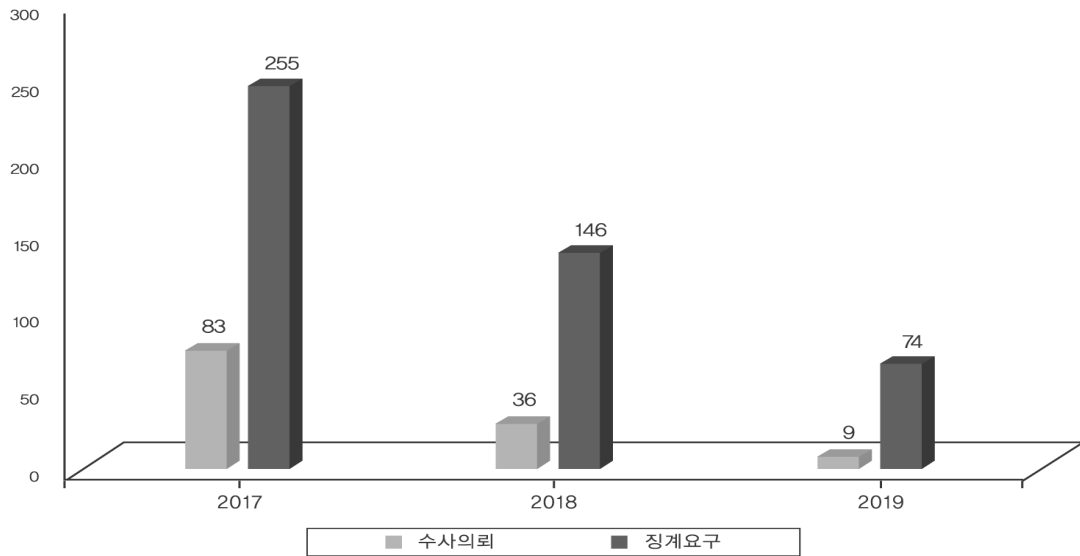
- 2019년 채용비위 적발 건수는 수사의뢰 9건 및 징계요구 74건 등 총 83건임.
 - 2017년 및 2018년 채용비위 적발 건수와 2019년 적발 건수를 비교해 보면, 2018년 182건(수사의뢰 36건, 징계요구 146건) 및 2017년 338건(수사의뢰 83건, 징계요구 255건)에 비해 각각 54.4%, 7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규 채용과 관련된 비위는 75건(수사의뢰 9건, 징계요구 66건)이고, 정규직 전환 관련은 8건(징계요구 8건)임.
 - 그 외 채용과정의 규정적용 단순 오류, 경미한 절차위반 등 업무 부주의 사항도 1,887건 지적됨.
 - 적발된 채용비위 연루자(현직 148명)²¹⁾는 공정한 수사 및 징계처분을 위해 임원 및 인사·감사 담당자는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와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비리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임.
 - 또한 부정합격자(잠정 8명)에 대해서는 수사결과 및 기관별 징계 결과에 따라 합격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채용비위 피해자(잠정 122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구제를 추진할 예정임.

21) 임원 7명, 직원 141명

-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에 대해 채용시 기회를 부여²²⁾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²³⁾을 실시할 예정임.

〈그림 II-4〉 최근 3년간 채용비위 적발건수 비교

(단위: 건)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9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조사 결과 발표」, 보도참고자료, 2020. 7. 24.

〈표 II-8〉 2019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결과

(단위: 개소, 건)

기관유형	조사 대상	적발 기관	수사 의뢰	징계 요구			업무부주의 등		
				계	중징계	경징계	계	주의·경고	기타
계	1,212	856	9	74	18	56	1,887	862	1,025
공공기관	333	259	4	36	8	28	551	206	345
지방공공기관	637	442	3	28	7	21	991	513	478
기타공직유관단체	242	155	2	10	3	7	345	143	202

주: 업무부주의는 규정적용 단순 오류, 경미한 절차 위반, 제도개선 사항 사규 미반영 등이 포함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9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조사 결과 발표」, 보도참고자료, 2020. 7. 24.

22) (예시) 최종 면접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즉시 채용, 필기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는 면접기회 부여 등

23) (예시) 최종 면접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는 피해자 그룹 면접을 재 실시, 필기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는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재 실시 등

- 2019년 채용비위 건수가 앞선 두 번의 조사결과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은 시험위원 위촉요건 강화·특별채용 제한 등 제도개선, 채용비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무관용 원칙, 공공기관들의 적극적 동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채용비위 관련자에 대한 처벌강화로 비위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채용비위 발생 기관은 각종 정부평가²⁴⁾에서 불이익을 부과하여, 채용비위에 따른 '기회비용'을 높임으로써 관행화된 채용청탁을 청산하는 토대를 마련함.
 - 채용비위 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조치로 채용비위자 징계감경 제한, 징계양정 기준 강화, 관련자 업무배제, 승진제한 및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등이 시행됨.
 - 블라인드 채용 도입, 시험위원 위촉요건 강화, 특별채용 제한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을 통하여 공정채용을 위한 원칙과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표준 절차를 확립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운법」, 「지방공기업법」 등을 개정하고 하위 규정인 공공기관 경영지침 및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도 함께 개정하여 채용 투명성 및 채용비위 제재를 강화함.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정채용컨설팅과 워크숍 등을 통해 정부의 채용공정화 대책을 공공기관에 전파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통하여 채용관행 개선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채용문화 혁신을 유도함.
 - 공공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채용공정화 대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019년부터 공정채용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기타공직유관단체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임.
 - 공공기관 스스로 채용비위를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위기요인으로 인식하고, 선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려는 자율적 노력이 확산됨.
 - 일부 공공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사내면접관인증제 등 채용투명성 관련 모범 제도를 엄선하여 공유함으로써 채용비위 근절을 위한 자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이전과 달리 2019년 채용실태조사부터는 그간 정부의 채용 제도개선 사항들에 대한 현장 이행점점을 병행하고 각급 기관의 자율적 채용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함.

24) 정부가 시행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부패방지 시책평가, 청렴도 평가, 정부혁신평가 등에서 불이익 부과

- 공공기관 경영지침 등 통일된 인사운영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기타공직유관단체 27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년간의 채용제도 개선사항의 사규 반영 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들이 개선사항을 사규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됨.
 - 2017년 및 2018년 채용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률은 각각 89.7%와 86.3%임.
 - 권고사항이 미이행된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주무부처 간 원활한 채용계획 사전협의를 위한 부처별 협의부서를 파악하여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단기·일용직 채용 시 외부위원 위촉요건 완화 등 권고사항을 보완하여 시행함.
-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²⁵⁾ 조사결과('19.12월) 및 2019년 전수조사 시 감독부처의 사례 수집 등을 통하여 채용단계별 우수제도 중 효과가 검증되거나 타 부처 전파가 용이한 사례를 선별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시함.
- 또한 채용결과 점검을 위한 채용검증위원회 설치·운영, 인공지능(AI) 기반 자기소개서 표절 검사 및 면접시행 등과 같은 자율적 채용 우수사례는 추후 '채용 우수기관 선발 경진대회' 등을 통해 전체 공공기관에 확산할 예정임.

〈표 II-9〉 채용 제도개선 우수사례 예시

단계	주요 내용
채용전반	▪ 채용 부정청탁 대응 표준매뉴얼 운영 ▪ 모든 채용 시 정규직 채용기준 적용
채용공고	▪ 모바일 지원 쌍방향 '1:1 채용 챗봇' 도입으로 채용정보 제공 강화 ▪ 모바일 오픈채팅방을 통한 채용 관련정보 상시 제공
서류전형	▪ 서류전형 검증위원회 운영을 통한 채용 공정성 제고 ▪ AI 기반 자기소개서 표절검사 및 블라인드화 실시
필기시험	▪ 중복출제 방지를 위하여 최근 18개월 기출문제 검증 의무화 ▪ 문제유출 검증을 위하여 취업준비생 커뮤니티 모니터링
면접전형	▪ AI(인공지능)면접 시행을 통한 채용 공정성 및 타당성 강화 ▪ 면접참관인제(사내·사외) 도입 ▪ 사내전문면접관 양성 및 면접관 인증자격 취득자 우선 위촉
합격자 결정	▪ 모든 채용결과에 대해 채용검증위원회 점검 시행 ▪ 전형별 합격자 발표 시 이의신청 접수창구 신설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9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조사 결과 발표」, 보도참고자료, 2020. 7. 24.

25)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참여 단체 중 하나로 공기업 공동의 부패대응을 위해 국내 주요 공기업 36개사가 모여 2018년 11월 발족

- 2019년 채용실태조사에서는 공공기관 위탁채용 현황분석²⁶⁾을 실시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위탁채용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공공기관 채용의 새로운 운영 방향을 모색함.
- 위탁채용 현황조사결과, 공공기관의 위탁채용 계약은 2017년 367건에서 지난해 3,088건으로 2017년 대비 2,721건(741%)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용대행 업체 역시 2017년 55개소에서 지난해 151개소로 96개소(174.5%)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2019년에 공공기관이 위탁채용에 지출한 비용은 616억원으로, 2017년 144억원 대비 472억원(327.7%)이 증가함.
 - 2019년에 발생한 공공기관 위탁채용(총 3,088건) 중 채용대행 상위 20개 업체가 80.2%(2,477건)를 수주한 반면, 연간 계약 5건 미만을 수주한 업체가 91개소로 전체 채용대행업체의 60.3%를 점유하여 시장양극화 현상이 나타남.
 - 또한 책임성, 전문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 위탁채용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책임성 측면에서는 채용대행업체의 인적·물적 자격·시설요건 및 위탁채용 업무 수행 준수요건을 규정하는 법령과 관련 지침의 정비가 미비함.
 - 전문성 측면에서는 위탁채용 시장이 팽창함에 따라 비전문업체가 급격히 시장으로 유입되어 일부 부적격·역량미달 업체가 위탁계약 수주 후 하도급을 하는 등 시험 관리의 부실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신뢰성 측면에서는 일부 채용대행업체의 출제·채점·집계오류, 기출문제 중복 사용 등 시험운영 관리부실에 따른 채용결과의 신뢰성 저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번 조사에서 일부 채용대행업체의 부실한 서류심사, 채점오류, 기출문제 중복 사용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위탁채용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를 연내 강구할 계획임.
 - 책임성 확보를 위해 필기시험 관리(출제·인쇄오류) 강화 및 관리부실 시 채용대행업체에 불이익 부과, 전형단계별 보안 강화방안 제시, 수탁업무 하도급 제한, 채용대행업체의 자율적 행동지침 마련 유도 등을 추진할 계획임.

26) 위탁채용 현황조사를 통해 기관유형별 채용방법·채용규모·경쟁률과 위탁채용의 경우 위탁방법·형태·업체·위탁 비용 등을 조사

- 신뢰성 강화를 위해 채용대행업체의 업무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신규계약 체결 시 참고요소로 활용하고 우수업체 선정을 위하여 채용대행업체의 업무수행 역량·실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위탁채용 업무 수행 중 문제 발생 시 감액정산 등 제재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함.
-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서류전형위원 경력사항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비전문가에 의한 서류심사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인재 DB 활용²⁷⁾ 또는 면접관 교육이수자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장려하는 동시에, 채용대행업체의 중복위탁용역 수행에 따른 관리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채용비용 절감을 위해 면접위원 수당과 같은 실비정산 항목을 제시하고 관련 증빙 제출을 요구하는 등 채용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 정부는 2020년 4분기 중으로 위탁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임.
 - 위탁채용이 증가함에 따라 위탁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 가이드라인을 통해 위탁채용의 책임성·전문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수사항²⁸⁾을 제시하고 공공기관이 이에 따라 채용대행업체의 업무수행을 관리하도록 함.

2. 공공기관 재무관리정책 주요 동향

가. 공공기관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²⁹⁾

- ☐ 기획재정부는 매년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운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과 집행과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시달하고 있음.³⁰⁾

27) 「공운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은 2020년 하반기부터 국가인재 DB를 활용한 외부면접위원 위촉이 가능해짐

28)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으로 필기시험 관리 및 채용절차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서류·면접위원의 전문성 확보, 채용대행업체의 업무수행 역량정보 공유방안 등이 반영될 예정임

29)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수정)」, 2018. 12. 27. 및 「202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2019. 12. 4., 공공기관에 시달한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2019. 1. 30. 및 「202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2020. 1. 29. 참고

30) “「공운법」 제50조(경영지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

- 예산편성지침은 차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주요 항목별 편성지침 등을 내용으로 하며,³¹⁾ 차년도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확정되어 시달됨.
- 예산집행지침은 기획재정부가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집행과 관련한 일반지침과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등을 내용으로 함.
-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지침 모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함.
 - 기타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른 지침 적용대상은 아니나 예산편성지침과 집행지침에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준용을 명문화하고 있음.

1)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

- 2019년과 2020년의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뒷받침하고, 모범적 고용주로서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영 효율성 제고 및 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것임.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일자리 창출,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실현, 취약계층 지원 강화, 대·중소기업 간 상생 및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해 관련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여야 함.
 - 직무능력중심의 채용을 위한 제도를 확립하고, 고졸·지역인재 등 사회형평적 채용을 지속 추진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및 인사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모범적 고용주로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기관 간 협업 및 투자확대를 통해 민간부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1) 주요 항목으로는 인건비, 경비(경상경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사업비, 자금 및 기타 예산, 예비비 등이 포함

- 정규직 전환자가 불합리한 차별 없이 적정 수준의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수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정현원차 축소, 교대제 변경, 유연근무제, 탄력정원제 실시 등 기관 여건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하여야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임금피크제)에 따라 설정된 신규 채용 목표를 달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경영 효율성 제고 및 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보수체계 합리화를 노사 합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함.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명시된 부채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재무건전성이 적정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함.
 - 기관의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축소하고, 민간경합 사업이나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축소하는 등 경영효율화를 위해 노력함.
 - 복리후생제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을 억제하는 등 방만경영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함.
 -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투자확대 및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 등을 통해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함.
 - 다각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에 따른 절감 재원을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함.
 - 공공기관의 자체자금 외에 민간과의 합작투자 등 민간투자 자금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함.
- 매년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당해 연도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함께 사업비, 인건비, 경비 등 주요 항목에 대한 편성지침을 공공기관에 시달하고 있으며, 2019년도 및 202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된 항목별 편성지침의 주요 내용은 <표 II-10>과 같음.
- 주요 항목별 편성지침은 당해 연도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공공기관 관련 정책 현안을 반영하여 항목별 예산편성 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임.

〈표 II-10〉 2019년도 및 2020년도 항목별 편성지침 주요내용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사업비	- 공공기관의 고유업무와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경기 활성화에 기여 - 경영목표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연계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경영효율화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도록 노력 - 해외사업은 수익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외 경쟁력 및 내부역량을 확보하며,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 -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 관리 및 예방 관련사업에 대한 지원 및 투자를 적극 추진	- 공공기관의 고유업무와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경기활성화에 기여 - 신규 투자사업·자본출자 예산은 관계법령상 기관의 고유목적사업으로 한정 - 해외사업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사업은 국내사업 부문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 - 외부 차입금 축소, 금융비용 최소화, 수익성 강화, 채무보증 축소, 비업무용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재무구조 개선 노력
인건비	2019도 총인건비 예산은 전년대비 1.8% 이내에서 증액 편성 -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 적용 유지 - 산업평균 90% 이하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60% 이하: 3.3%(+1.5%p) - 산업평균 90% 이하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70% 이하: 2.8%(+1.0%p) - 산업평균 110% 이상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 0.8%(△1.0%p) - 공공기관의 R&D 활성화 및 혁신성장 독려를 위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	2020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전년대비 2.8% 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 -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 적용 유지 - 산업평균 90% 이하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60% 이하: 4.3% 이내 - 산업평균 90% 이하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70% 이하: 3.8% 이내 - 산업평균 110% 이상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 1.8% 이내 -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포함)과 부처 직할 연구기관은 차등 인상률 적용을 제외 가능
경비	-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1% 증액 -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부진기관은 경상경비 예산 삭감(△0.5%p~△1%p) - 업무추진비는 '18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 편성	-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1% 증액 -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부진기관은 경상경비 예산 삭감(△0.5%p~△1%p) - 업무추진비는 '19년 예산액 이내에서 편성
기타	임직원의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 강화, 자기개발 및 창업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	임직원의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 강화, 자기개발 및 창업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2019.12.4. 및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수정)」, 2018.12.27.을 참고하여 작성

2) 공공기관 예산집행 지침

- 2019년도 예산집행지침의 기본방향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및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어 집행할 것을 강조함.
 - 전년과 마찬가지로 예산집행 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공공성 및 안전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음.
-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대내외 경기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진하여야 함.
 - 서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지원사업, 대규모 SOC사업, 취약계층 지원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은 별도로 중점 관리하고, 예산집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2018년도 이월사업, SOC 계속사업 등과 같이 집행이 용이한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함.
 - 2019년 신규사업은 사업계획 수립·설계·발주·계약 등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최대한 조속히 추진함.
 - 조기 집행을 위한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인건비를 조기 집행하여야 함.
 - 특히 예산 조기집행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 요인이 최소화되도록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국내 경기부양과 무관한 외자구매 사업 등 외화관련 사업은 환차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 집행함.
 - 공공요금, 사회복지급여 등과 같이 조기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실제 집행소요가 발생한 시기에 집행함.
 -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감사원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 등 감사 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을 적용함.
- 각 공공기관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물가변동 상황에 대응하는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 물품·용역 구매 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민간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비품구입·용역계약 등 예산 집행시 물가안정에 협조하는 업체(가격인하, 옥외가격표시제 등)로부터 우선 구매하는 등 물가안정을 유도하여야 함.
 - 물품·용역 구매 시 가격 인상·급등 품목의 구매를 자제하고, 가격이 하락한 품목을 우선 구매하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함.
- 각 공공기관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에 따른 방만경영 개선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개선 필요사항이 누락되거나 개선이 미흡한 경우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점검·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 그 밖에도 다음의 사항과 관련된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국민·근로자 안전 확보를 강조한 예산편성지침을 고려하여, 각 공공기관 및 기관장은 직접고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간접고용·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절약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각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 7. 20.)에 따라 편성된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함.
-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함.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1조(일자리 창출 노력 및 사회형평적 인력활용)에 따라 청년인턴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경상경비 절감분 등을 활용하여 지출할 수 있음.
- 각 기관은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직원이 단순 업무 등에 활용되지 않고 개개인의 업무역량 제고와 기관업무 효율이 동시에 달성되는 방안을 강구하여 운영하여야 함.

- 각 공공기관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및 인사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각 공공기관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및 인사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함.
- 「공운법」 제50조,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공포하며, 동 행동강령과 연계된 기관 내부 인사·복무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함.
 - 복무규정 등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품수수·향응, 횡령·배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복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수사·조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감사 관련 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처분 요구나 중징계의결을 요구 중인 때에는 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
 - 면직 제한자에 대하여는 청렴의무 위반에 상응하여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징계함으로써, 퇴직금이 실질적으로 감액되도록 하고, 퇴직금 외에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 각 공공기관은 외부기관 지적사항 등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효율성을 강화하여야 함.
 - 국회 및 감사원의 시정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여 집행하고, 외부 회계감사, 경영공시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야 함.
 - 분기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및 집행점검을 강화하여 예산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집행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통하여 경상적 경비가 최대한 절감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각 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체적으로 예산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운용함으로써 예산의 집행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공공기관이 선지급·선결제를 통한 소비지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함.³²⁾

32) 기획재정부, 「양충모 재정관리관,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 개최」, 보도자료, 2020.6.16.

- 코로나 19 확산 등에 따라 투자 여건이 악화되었음에도 공공기관은 1분기에 투자 계획(13.6조원)을 상회하는 13.8조원을 집행하였음.
- 정부는 하반기 투자집행과 관련하여서도 3분기 투자집행을 1.5조원 확대하여 경기 조기회복에 공공기관이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함.
-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일부 교통 분야 공공기관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수입 급감 등으로 투자 여력상 집행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필요시, 공사채 추가 발행 등을 통해 투자집행을 차질 없이 달성해 줄 것을 요청함.
 - 추가 공사채 발행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 영향은 「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등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임.

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³³⁾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 과거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면서 국가재정 부담으로의 전이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으나 공공기관의 부채 등 재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었음.
- 이에 정부는 자산 2조원 이상인 공공기관에 대하여 2012년부터 중장기(5개년)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함(「국가재정법」 제9조의2).
-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향후 5년간의 경영목표 및 투자방향, 부채 등 재무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 계획에는 전년 계획(2018~2022년) 대비 변동 사항, 재무관리 방안 등 종합적 평가·분석이 포함됨.

33) 기획재정부, 「14~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4. 9. 22, 「15~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5. 9. 16, 「16~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6. 9. 2. 및 「17~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7. 8. 30, 「18~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8. 8. 31. 「2019~2023년 공공기관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9. 9. 2. 등 참고

〈표 II-11〉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및 제출 근거법령

- 【「공운법」 제3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규정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
- 【「국가재정법」 제9조의2(재정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

-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수준을 점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공공기관의 재무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 재무건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통한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계기를 마련함.
 - 재무현황과 5년간의 재무관리 방안 등을 보여줌으로써 공공기관 재무상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 시각의 체계적인 재무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또한 3대 신용평가기관의 공기업 신용평가 시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에 대한 주요 판단 기준으로 활용함.
- 2012년 최초로 39개 기관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19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제출된 바 있음.
- 법률상 작성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 규정이 있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해당하는 기관은 <표 II-12>와 같음.
 - 이에 따른 작성대상 기관 수는 2013년 41개, 2014년 40개, 2015년 39개, 2016년 39개, 2017년 38개, 2018년 39개였으며, 2019년에도 39개로 전년과 동일함.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3년에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작성대상 기관에 포함되었으나 자산규모 축소로 인해 2017년에 제외됨.
 - 대한석탄공사는 2013년부터 작성대상에 포함되었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14년부터 대상으로 포함됨.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예탁결제원은 2014년부터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한국거래소는 2015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면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에서도 제외됨.
 - (주)강원랜드는 2018년 공공기관 지정 시, 시장형 공기업으로 유형이 변경됨에 따라 2018년부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하기 시작함.

〈표 II-12〉 연도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구분	2015년(39개)	2016년(39개)	2017년(38개)	2018년(39개)	2019년(39개)
공 기 업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	-	-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
	-	-	-	(주)강원랜드	(주)강원랜드
준 정 부 기 관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구분	2015년(39개)	2016년(39개)	2017년(38개)	2018년(39개)	2019년(39개)
준정부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료: 기획재정부, 「2015~20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5. 9. 16.; 「2016~20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6. 9. 2.; 「2017~20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7. 8. 30.; 「2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8. 8. 31.; 「2019~2023년 공공기관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9. 9. 2. 등을 참고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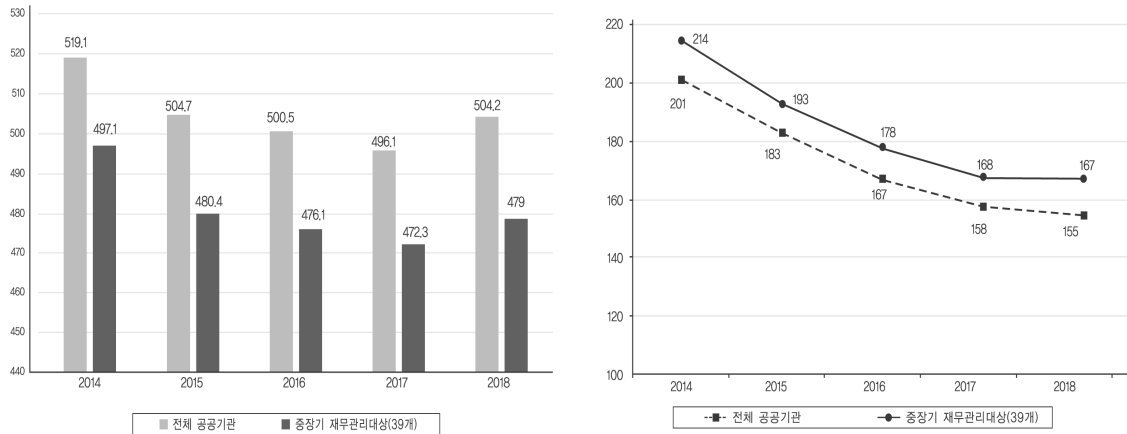
2)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³⁴⁾

- ☐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는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기관별로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 안전 강화에 필요한 중장기 투자 소요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
- ☐ 전체 공공기관(2019년 기준 339개)의 부채규모 및 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중장기 재무관리대상 기관의 부채도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전체 공공기관(339개)의 부채에서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기관(39개)이 차지하는 비중은 95%에 달함.
 - 전체 공공기관과 중장기 재무관리대상기관의 부채규모는 2014년 이후 5년만에 증가로 전환하였으나, 부채비율은 6년 연속 감소하고 있음.

34) 기획재정부, 「'19~'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9. 9. 2.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의 기본 전제 중 경제성장률, 환율 등 거시지표는 '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19~'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일치시키고 에너지(가스·전기 등) 매출액 전망은 장기수급계획 활용하였으며, 분야별 정부 상위 계획 및 국정과제 등을 반영하여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함

〈그림 II-5〉 공공기관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현황

(단위: 조원, %)



주: 전체 공공기관은 2019년 지정된 39개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9. 9. 2.를 참고하여 작성

□ 향후 5년간(2019~2023년) 공공기관의 자산과 부채규모가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2023년까지 168%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자산과 부채규모는 투자 확대 등으로 향후 5년간('19~'23년) 각각 143.0조원, 87.4조원 증가하여, 2023년에는 935.0조원, 586.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국가 인프라 확충으로 향후 5년간 39개 중장기 재무관리대상 공공기관의 자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중심으로 기반시설 확충에 따라 자산 83.1조원이 증가하며, 한국전력공사 그룹사를 중심으로 송배전설비·발전소·에너지 신산업 투자에 따라 자산이 26.2조원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

〈표 II-13〉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 공공기관의 자산 전망

(단위: 조원)

구 분	'18년 (실적)	'19년 (A)	'20년	'21년	'22년	'23년 (B)	증감 (B-A)
■ 자산(39개)	766.2	792.0	818.7	860.7	901.8	935.0	143.0
- SOC(10개)	326.7	334.0	351.4	379.0	402.1	417.1	83.1
- 에너지(12개)	253.6	266.4	271.1	278.7	284.4	292.6	26.2
- 금융(12개)	163.1	167.2	170.7	176.3	187.9	196.6	29.4
- 기타(5개)	22.7	24.4	25.5	26.7	27.4	28.6	4.3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9. 9. 2.참고

- 향후 5년간 부채규모는 87.4조원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2%p 하락할 전망이다.
 - 부채비율은 2019년 170%로 전년대비 3%p 상승하나, 2023년까지 168%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 2019년 이후 부채비율 증가는 회계기준 변경³⁵⁾과 국민건강보험공단³⁶⁾과 한국 전력공사³⁷⁾ 등 일부 기관의 부채증가에 기인함.

〈표 II-14〉 총 부채 및 부채비율 전망치 비교

(단위: 조원)

구 분	'18년 (실적)	'19년 (A)	'20년	'21년	'22년	'23년 (B)	증감 (B-A)
부채비율(%)	167%	170%	167%	167%	168%	168%	△2%
부채규모(조원)	479.0	498.9	511.5	538.9	565.9	586.3	87.4
자본(조원)	287.2	293.1	307.1	321.8	335.9	348.7	55.6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9. 9. 2.

- 2018~2022년 계획대비 2019~2023년 계획을 비교해 보면, 부채규모와 비율이 모두 증가함.
 - 이는 앞서 언급한 2019년 이후의 회계기준 변경과 일부 공공기관의 실적 악화, 주요 기관의 투자확대 등에서 기인함.
 - 다만 2023년까지 168%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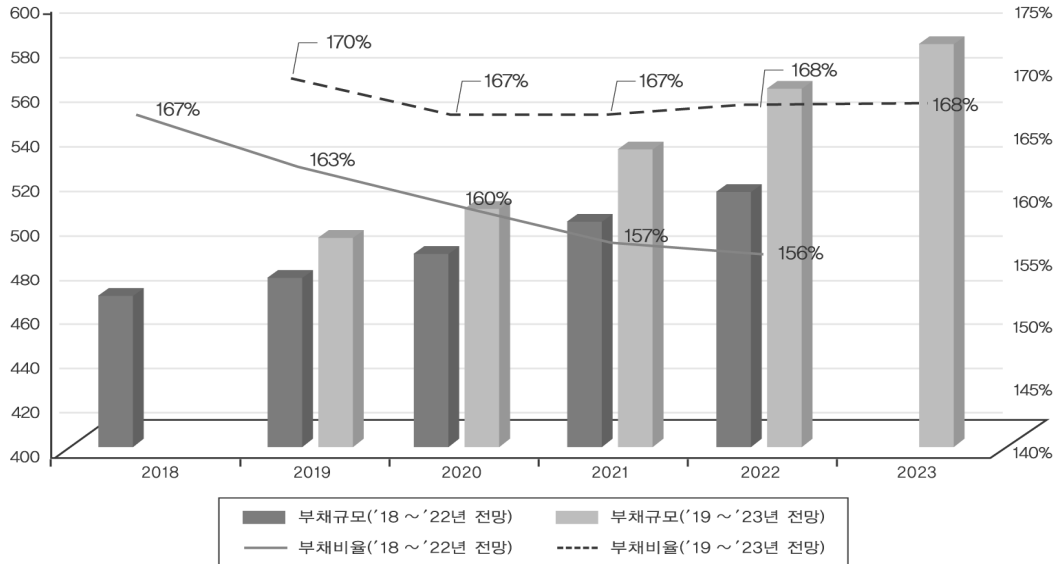
35) '19년 K-IFRS 리스 기준서가 기존 비용으로 처리하던 운영리스를 자산과 부채에 반영하도록 변경됨

36) 고령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 8월), 건강보험 종합계획('19. 5월)에 따라 '23년까지 41.6조원 급여확대가 예정됨

37) 2019년 연료비 및 환율 상승, 설비 확충 등으로 부채규모가 전년대비 12.3조원이 증가하였음(이 중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4.5조원 포함)

〈그림 II-6〉 부채 규모 및 부채 비율 전망치 비교

(단위: 조원, %)



자료: 기획재정부, 「2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8. 8. 31. 및 「2019년~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9. 9. 2. 참고

- 분야별로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금융·기타 부문의 부채비율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SOC·에너지 부문은 상승할 것으로 보임.
- SOC 부문의 부채비율은 2020년까지 179%로 감소하나, 공공주택 공급 지속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23년 186% 수준으로 전망됨.
 - 부채규모는 2019~2023년간 증가(+55.7조원)하여 2019년 215.8조원에서 2023년 271.4조원 수준으로 전망됨.
 - 에너지 부문의 부채비율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발전소 건설 등 신규 투자의 영향으로 2019년 242%에서 2023년 266%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임.
 - 부채규모는 2019~2023년간 증가(+24.0조원)하여 2019년 188.6조원에서 2023년에는 212.6조원 수준으로 전망됨.
 - 금융 부문의 부채비율은 2019년 98%에서 2023년 81%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 부채규모는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증권 만기상환 관련 차입 증가 등으로 2019년 82.6조원에서 2023년 88.2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표 II-15〉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 공공기관의 부채·부채비율 전망

(단위: 조원, %, %p)

분야	'18년 (실적)	'19년 (A)	'20년	'21년	'22년	'23년 (B)	증감 (B-A)
전체(39개) (부채비율)	479.0 167%	498.9 170%	511.5 167%	538.9 167%	565.9 168%	586.3 168%	87.4 △2%p
- SOC(10개)	213.8 189%	215.8 182%	225.4 179%	246.8 187%	262.7 188%	271.4 186%	55.7 4%p
- 에너지(12개)	174.7 221%	188.6 242%	191.5 241%	197.4 243%	203.6 252%	212.6 266%	24.0 24%p
- 금융(12개)	79.6 95%	82.6 98%	81.9 92%	81.3 85%	86.1 85%	88.2 81%	5.6 △17%p
- 기타(5개)	10.9 93%	12.0 96%	12.7 100%	13.4 101%	13.5 97%	14.1 97%	2.1 1%p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9. 9. 2.

- 총자산 대비 금융부채의 비율은 2019~2023년간 47~48%로 안정된 수준을 보임.
- 총부채 대비 금융부채의 비율은 향후 5년간(2019~2023년) 77% 이내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표 II-16〉 금융부채 전망치 비교

(단위: 조원, %)

구 분	'18년 (실적)	'19년 (A)	'20년	'21년	'22년	'23년 (B)
금융부채	366.3	380.5	388.7	412.2	436.4	452.3
(총자산 대비)	48	48	47	48	48	48
(총부채 대비)	76	76	76	76	77	77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9. 9. 2.

- 당기순이익은 2019년 적자가 1.6조원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전년대비 2.3조원이 감소하나, 2020년 이후에는 다시 흑자를 실현하여 연 4.8~6.4조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의 당기순이익 감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적 악화에서 기인함.
-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은 2019년에는 0.8로 하락하나, 2020~2023년에는 1.7~1.9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표 II-17〉 당기순이익 및 이자보상배율 전망

(단위: 조원)

구분	'18년 (실적)	'19년 (A)	'20년	'21년	'22년	'23년 (B)
당기순이익	0.7	△1.6	4.8	6.4	4.9	6.3
영업이익(A)	8.3	6.1	12.0	13.7	12.9	13.1
이자비용(B)	7.0	7.3	7.2	7.1	7.1	7.3
이자보상배율(A/B)	1.2	0.8	1.7	1.9	1.8	1.8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9. 9. 2.

〈표 II-18〉 기관별 주요 재무지표 전망

(단위: 배, %, 억원)

기관명	이자보상배율(배)		부채비율(%)		당기순이익(억원)	
	'19년	'23년	'19년	'23년	'19년	'23년
한국토지주택공사	4.2	12.4	267	263	11,747.5	19,048.7
한국도로공사	1.9	1.2	79	87	1,642.1	1,727.7
국가철도공단	1.2	1.4	무자본특수법인		1,326.0	2,220.0
한국수자원공사	1.7	2.1	170	147	1,509.3	2,196.0
한국철도공사	영업손실	0.2	254	258	△4,223.5	△188.5
인천국제공항공사	20.7	38.6	36	54	8,391.5	10,090.0
부산항만공사	2.7	2.7	54	65	680.7	771.9
인천항만공사	1.1	2.3	53	56	84.9	808.4
한국산업단지공단	2.2	영업손실	92	91	406.8	△66.2
한국전력공사	영업손실		112	154	△12,620.9	△12,963.8
한국수력원자력	0.7	0.6	130	153	△995.5	△1,080.5
한국중부발전	0.7	1.4	232	218	△178.4	1,017.7
한국서부발전	0.9	1.0	178	217	△179.3	1,215.0
한국동서발전	1.1	1.0	108	157	499.1	1,148.5
한국남부발전	1.1	1.6	159	174	453.7	1,300.5
한국남동발전	1.2	1.6	133	168	336.2	1,639.1
한국가스공사	1.5	1.8	369	288	4,300.6	6,181.6
한국석유공사	1.4	2.9	1,219	575	△2,634.2	256.8
한국지역난방공사	0.3	3.0	283	205	△247.3	788.8
한국광물자원공사	영업손실		자본잠식		△5,158.6	△1,158.8
대한석탄공사	영업손실		자본잠식		△1,026.1	△1,293.0
예금보험공사	4.8	12.1	무자본특수법인		17,244.9	20,597.0
한국주택금융공사	3.3	1.7	67	98	3,472.9	3,785.6
한국자산관리공사	2.9	1.1	152	190	542.9	553.2
국민체육진흥공단	798.4	850.5	47	40	△83.8	59.4
주택도시보증공사	81.0	228.2	32	28	3,316.4	4,767.8

주: 1. 국가철도공단과 예금보험공사는 자본금·기본재산이 0인 기관으로 부채비율 산출 불가능

2.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지표는 별도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며, 연결기준으로는 이자보상배율이 ('19년)영업손실, ('23년)영업손실이며, 부채비율은 ('19년)182%, ('23년)233%이고, 당기순이익은 ('19년)△1.2조원, ('23년)△1.0조원임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9. 9. 2.

〈표 II-19〉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 공공기관의 재무 전망(2018~2022년)

(단위: 조원)

구분	기관명	항목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39개 기관 전체		자산	792.0	818.7	860.7	901.8	935.0
		부채	498.9	511.5	538.9	565.9	586.3
		부채비율	170%	167%	167%	168%	168%
1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산	176.2	187.1	206.6	223.6	234.4
		부채	128.1	134.5	150.3	162.6	169.9
		부채비율	267%	256%	267%	267%	263%
2	한국도로공사	자산	65.2	68.6	72.0	75.0	77.7
		부채	28.9	30.6	32.8	34.7	36.2
		부채비율	79%	81%	84%	86%	87%
3	국가철도공단	자산	18.9	19.2	19.7	20.3	20.9
		부채	20.5	20.6	20.9	21.2	21.6
		부채비율	108%	107%	106%	104%	103%
4	한국수자원공사	자산	22.5	23.7	25.0	26.2	27.4
		부채	14.2	14.7	15.3	15.9	16.3
		부채비율	170%	164%	158%	153%	147%
5	한국철도공사	자산	22.3	22.7	23.4	21.8	19.6
		부채	16.0	16.5	17.6	16.3	14.1
		부채비율	254%	267%	307%	300%	258%
6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산	12.6	13.4	14.8	16.6	18.0
		부채	3.4	3.6	4.4	5.6	6.3
		부채비율	36%	37%	42%	51%	54%
7	부산항만공사	자산	6.0	6.3	6.6	6.8	6.8
		부채	2.1	2.4	2.6	2.7	2.7
		부채비율	54%	60%	64%	67%	65%
8	인천항만공사	자산	3.3	3.4	3.5	3.6	3.8
		부채	1.1	1.1	1.3	1.2	1.4
		부채비율	53%	47%	56%	52%	56%
9	한국공항공사	자산	4.7	4.9	5.1	5.8	6.4
		부채	0.4	0.5	0.7	1.3	1.8
		부채비율	10%	11%	15%	28%	39%
10	한국산업단지공단	자산	2.3	2.1	2.3	2.4	2.3
		부채	1.1	0.9	1.1	1.2	1.1
		부채비율	92%	71%	87%	99%	91%
11	한국전력공사	자산	112.0	116.5	120.7	125.1	128.7
		부채	59.2	63.9	68.2	73.1	78.0
		부채비율	112%	121%	130%	140%	154%
12	한국수력원자력	자산	58.1	59.2	60.9	62.4	63.5
		부채	32.8	34.0	35.7	37.2	38.4
		부채비율	130%	135%	142%	148%	153%

구분	기관명	항목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3	한국중부발전	자산	12.6	13.4	13.2	13.2	13.0
		부채	8.8	9.5	9.3	9.2	8.9
		부채비율	232%	247%	236%	230%	218%
14	한국서부발전	자산	10.7	11.1	12.1	12.7	13.3
		부채	6.8	7.2	8.2	8.7	9.1
		부채비율	178%	188%	208%	215%	217%
15	한국동서발전	자산	9.5	9.9	10.5	11.2	12.4
		부채	4.9	5.2	5.7	6.4	7.6
		부채비율	108%	112%	121%	134%	157%
16	한국남부발전	자산	11.5	12.1	12.6	12.8	12.9
		부채	7.0	7.6	8.1	8.1	8.2
		부채비율	159%	169%	177%	175%	174%
17	한국남동발전	자산	11.6	12.0	13.0	13.9	14.3
		부채	6.6	6.9	7.8	8.7	8.9
		부채비율	133%	135%	149%	168%	168%
18	한국가스공사	자산	41.1	38.6	39.4	39.1	38.9
		부채	32.3	29.5	29.9	29.3	28.9
		부채비율	369%	323%	317%	301%	288%
19	한국석유공사	자산	18.7	18.9	18.9	17.6	17.6
		부채	17.2	16.0	16.0	14.9	15.0
		부채비율	1219%	568%	552%	566%	575%
20	한국지역난방공사	자산	5.9	6.2	6.3	6.4	6.5
		부채	4.3	4.5	4.3	4.3	4.4
		부채비율	283%	268%	205%	209%	205%
21	한국광물자원공사	자산	3.8	2.8	1.5	0.8	0.8
		부채	6.3	5.3	3.2	2.5	2.6
		부채비율	자본잠식				
22	대한석탄공사	자산	0.8	0.8	0.8	0.8	0.7
		부채	1.9	2.0	2.0	2.1	2.2
		부채비율	자본잠식				
23	예금보험공사	자산	19.3	20.0	21.7	26.4	30.1
		부채	14.8	11.4	8.6	7.7	6.7
24	한국장학재단	자산	12.2	12.1	12.1	12.0	11.9
		부채	11.4	11.3	11.3	11.2	11.1
2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산	18.8	19.6	20.4	21.0	21.3
		부채	16.2	16.5	16.8	16.9	16.7
26	한국농어촌공사	자산	11.2	12.0	12.7	12.7	13.2
		부채	9.1	9.9	10.5	10.5	11.0
		부채비율	436%	459%	483%	477%	494%
27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산	30.9	29.2	29.4	28.9	29.3
		부채	13.2	14.0	14.8	15.7	16.7
		부채비율	74%	92%	102%	120%	133%

구분	기관명	항목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8	공무원연금공단	자산	17.9	17.8	18.1	19.1	19.5
		부채	7.0	6.5	6.5	7.2	7.2
		부채비율	64%	58%	56%	60%	59%
29	한국주택금융공사	자산	19.2	21.6	23.1	28.4	31.7
		부채	7.7	9.4	9.8	13.9	15.7
		부채비율	67%	77%	74%	95%	98%
30	신용보증기금	자산	9.3	9.0	8.2	7.5	6.8
		부채	3.2	3.3	3.3	3.3	3.3
		부채비율	52%	58%	66%	78%	94%
31	한국무역보험공사	자산	4.3	4.6	4.8	5.0	5.2
		부채	2.6	2.8	2.9	2.9	2.9
		부채비율	150%	151%	149%	139%	128%
32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	4.7	5.0	5.7	6.0	6.4
		부채	2.8	3.0	3.6	3.8	4.2
		부채비율	152%	147%	173%	177%	190%
33	기술보증기금	자산	2.8	2.8	2.8	2.8	2.8
		부채	1.3	1.4	1.3	1.2	1.2
		부채비율	79%	92%	84%	77%	72%
34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산	5.9	6.0	6.3	6.7	7.1
		부채	1.9	1.9	1.9	2.0	2.0
		부채비율	47%	46%	45%	42%	40%
35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산	7.3	7.5	7.7	8.0	8.2
		부채	1.8	1.7	1.7	1.8	1.8
		부채비율	32%	29%	29%	28%	28%
3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자산	20.4	21.5	22.3	22.9	23.2
		부채	0.7	0.7	0.6	0.6	0.5
		부채비율	4%	3%	3%	3%	2%
37	한국마사회	자산	2.6	2.7	2.7	2.7	2.7
		부채	0.1	0.2	0.2	0.2	0.2
		부채비율	5%	6%	6%	6%	6%
3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산	0.2	0.2	0.2	0.2	0.2
		부채	0.1	0.1	0.1	0.1	0.1
		부채비율	175%	174%	174%	173%	172%
39	(주)강원랜드	자산	4.4	4.6	4.8	5.1	5.3
		부채	0.7	0.7	0.7	0.7	0.7
		부채비율	18%	17%	17%	17%	16%

주. 1. 자본금 및 기본재산이 0인 국가철도공단과 예금보험공사는 부채비율 산출이 불가능

2. 한국장학재단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은 정책자금 융자사업 수행기관으로 여타 기관과 부채비율 일괄 비교 곤란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9. 9. 2.

- 정부는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관련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³⁸⁾할 계획임.
- 또한 정부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필수적인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집행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3.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정책 주요 동향³⁹⁾

가. 공공기관 혁신 추진경과

- 기획재정부는 2018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시달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그 성과를 점검·평가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의 추진체계를 마련함.
- 매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다음해에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기관의 혁신 추진 노력 및 성과를 점검하여 평가함.⁴⁰⁾
- 공공기관 혁신의 활성화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매년 혁신·협업·시민참여 등 분야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고 있음.
 - 전년도 말에 당해 연도에 추진할 과제를 공모하여 당해 연도 초에 우선과제를 발굴·확정하고 분기별로 실적 점검을 실시함.
 - 그리고 당해 연도 말에 1년간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분야별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다음해 초에 사례집을 발간하여 전체 공공기관 및 민간에 배포함.
- 지난 2년간 공공기관의 혁신 활동을 통하여 대국민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혁신 사례들이 꾸준히 발굴되고 있음.
- 일부 기관의 경우, 첨단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거나

38) 현재 경영평가 지표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목표 부채비율(계량) 달성 여부, 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노력(비계량) 등 반영

39) 기획재정부, 「20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0. 6. 5.를 참고하여 작성

40) 『2019년도 경영평가편람』 기준, 비계량지표인 ‘혁신노력 및 성과’ 지표(3점)을 통해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혁신 계획 추진실적 등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혁신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함

협업·시민참여를 통해 공공서비스 개선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부산항만공사는 신재생에너지인 해수열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해 부산항을 친환경적 작업장으로 변모시켜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켰으며 국립공원공단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산행 도시락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추구함.

□ 2020년 들어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라는 팬데믹에 직면하면서 공공기관의 역할 변화와 함께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고 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기관 혁신의 가시적 성과를 제고하는 데 집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 전반의 비대면화(Untact)와 디지털 전환 등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제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에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기획재정부는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2020. 3. 24., 관계부처 공동 발표)을 토대로 공공기관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 창출하기 위해 「2020년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나. 2020년 공공기관 혁신방향

□ 2020년 공공기관 혁신의 목표는 혁신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으로 혁신의 지향점을 국민에 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촉진하고자 함.

□ 2020년 혁신 추진방향은 사회적 가치의 확실한 성과 창출, 혁신성장 강화 및 경제 활력 제고, 국민신뢰 제고 등 크게 3대 분야로 구분되며 각 분야별로 5~7개의 세부 혁신과제를 추진함.

- 3대 분야 17개 세부 혁신과제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2020. 12., 기획재정부)과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2020. 3. 24., 관계부처 공동 발표) 등 정부의 주요정책과 2019년 공공기관 혁신과제를 반영하여 발굴함.

□ 2020년 17개 세부 혁신과제는 2019년 8개 혁신과제를 분야별로 재배치하고 9개의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3대 분야별로 배치함.

- 2019년의 ① 사회적 가치 중심의 기관 운영, ② 혁신적 포용국가 선도, ③ 국민신뢰 제고 등 3대 추진방향이 2020년에는 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의 창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설정됨.
- 국민신뢰 제고는 2019년에 이어 그대로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활동은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종전의 혁신성장 지원 및 기반 구축을 넘어선 혁신성장의 강화와 실질적 경제활력에 대한 기여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설정됨.

〈그림 II-7〉 2019년 및 2020년 혁신과제 비교

목표	【2019년 혁신과제】	【2020년 혁신과제】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	
혁신 과제	① 사회적 가치 중심의 기관 운영 ① 고유 업무의 공공성 제고 ② 포용적 공공서비스 제공 강화	① 사회적 가치의 확실한 성과 창출 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 ② 안전관리 체계 강화 ③ 투명·윤리경영 및 공정경제 강화 ④ 사회형평적 인사운영 ⑤ 혁신도시 활성화 등 지역상생
	② 혁신적 포용국가 선도 ③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중심 경제 선도 ④ 혁신성장 지원 ⑤ 공정경제 기반 구축	② 혁신성장 강화 및 경제활력 제고 ⑥ 공공기관의 4차 산업혁명·한국형뉴딜 선도 ⑦ 경제활력 제고의 마중물 역할 강화 ⑧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친기업환경 조성 ⑨ 공공기관 혁신장터 구축 ⑩ 혁신지향 공공조달 확대
	③ 국민신뢰 제고 ⑥ 적극행정 확산 및 조직운영 혁신 ⑦ 투명·윤리경영 강화 ⑧ 국민의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 공헌	③ 국민신뢰 제고 ⑪ 직무중심의 보수체계 확산 ⑫ 임금피크제 대상인력의 효율적 활용 ⑬ 공공기관 투자활성화·재무건전성 관리 ⑭ 공공기관 적극행정 및 업무방식 변화 유도 ⑮ 공공기관 인사운영 3대 혁신 ⑯ 과도한 복지방지 등 방만경영 점검 ⑰ 알리오 및 알리오플러스 사용자 편의성 강화

자료: 기획재정부, 「'20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5.

다. 2020년 분야별 추진과제

1) 사회적 가치의 확실한 성과 창출

□ ‘사회적 가치의 확실한 성과 창출’을 위해 2020년 공공기관이 주력해야 할 과제는 총 5개 과제임.

- 5개 과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 안전관리 체계 강화, 투명·윤리경영 및 공정 경제 강화, 사회적형평 인사운영, 혁신도시 활성화 등 지역상생 등이며 이 중 지역상생 관련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과제는 2019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 하는 과제임.

□ 먼저 공공기관은 2019년에 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을 위해 꾸준히 혁신 활동을 전개해야 함.

- 공공기관은 신규사업 발굴, 정·현원차 최소화,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함.
 -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교대제 변경 및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탄력정원제 등 다양한 제도를 기관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활용해야 함.
- 코로나 19로 지연된 채용일정을 속도감 있게 재개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함.
 -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상반기 채용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취업준비 생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채용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는 것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는 2020년 4월 「코로나 19 상황 하 공공기관 채용관련 대응조치 지침」을 공공기관에 시달한 바 있음.
 - 공공기관은 채용관련 대응조치 지침에 따라 당초 채용규모를 유지하고 영어시험 성적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개별적으로 이행해야 함.
- 공공부문 일자리 질의 개선을 위해 각 기관별로 기 수립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한 고용 안정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함.

□ 두 번째 혁신과제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안전지침 점검, 안전등급제 도입,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등을 추진해야 함.

- 2019년에 이어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지침의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함.

- 공공기관은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2019년 3월 마련된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공공기관 안전관리지침」)」에서 정한 기관별 안전경영 책임계획⁴¹⁾ 수립(매년 1월), 안전관리 중점기관 지정, 안전 인력 및 투자 확대, 기관장 책임 강화 등을 이행하고 그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함.
 - 2020년부터 공공기관 안전등급제가 도입되는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안전등급을 공개함으로써 공공부문에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자발적 경쟁문화를 유도하고자 함.
 -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정착과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2020년 6월 마련된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등급심사단⁴²⁾의 심사⁴³⁾를 거쳐 기관별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공개함.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안전등급제와 함께 2020년 새롭게 시행 되는 제도로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이 있음.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은 안전경영책임 계획의 주요내용 및 점검결과, 중대사고 감축목표, 안전조직 및 인력 현황 등을 반영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함.⁴⁴⁾
- 세 번째 혁신과제인 투명·윤리경영 및 공정경제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은 윤리경영 강화, 채용제도 개선, 공정경제 확산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우선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기관 내부의 각종 적폐 해소를 위한 내부 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 혁신을 추진함.
 - 갑질, 성희롱·성폭력, 직장내 괴롭힘, 고객만족도 조작 등 각종 적폐 해소를 위한 내부 제도 개선과 함께 조직문화를 혁신하는 데 주력해야 함.
 - 한편 채용의 공정성 제고를 친인척·근무경험 관계자 배제 및 블라인드 채용제도 등에 대한 면접관 교육을 실시하고 채용위탁업체 관리를 강화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여야 함.

41) 2020년 6월 공공기관 안전관리지침을 개편을 통해 종전 안전기본계획을 안전경영책임계획으로 변경함

42) 안전등급심사단은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기관(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및 외부 안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매년 안전등급을 심사하여 공공기관에 안전등급을 부여함

43) 안전등급 심사 대상기관은 2020년 기준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37개 및 기타공공기관 52개 등 총 119개 기관임

44) 2020년 6월 개정된 공공기관 안전관리지침에 따르면, 기관별 안전경영책임계획은 매년 1월초 작성되며 차년도 1월에 주무부처가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공공기관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2월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에 공시함

- 이를 위해서 위탁업체 관리 및 면접관 교육 계획을 수립하거나, 통합채용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관 상황에 맞는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함.
 -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확산을 위해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저가계약, 일방적 부담 전가,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등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공정거래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모범거래모델을 도입하여 이행하고자 노력하여야 함.
- 네 번째 혁신과제인 사회형평적 인사운영을 위해 여성, 장애인, 고졸인재 등과 관련한 채용 제도를 정비하고 실적 관리를 강화해야 함.
- 먼저 공공기관은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여성관리자 임용 5개년 계획」에 따라 여성임원 및 관리자 임용 목표비율을 달성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기관 임원 중 여성 비중을 2020년 21.8%, 2021년 22.4%까지 달성해야 하며 여성관리자 비중도 2020년 25.4%, 2021년 26.6%까지 개선해야 함.
 - 공공기관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3.4%)⁴⁵⁾을 준수하기 위해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중증장애인 채용을 확대해 나가야 함.
 - 공공기관은 고졸 채용 활성화를 위해 연도별 고졸 채용목표⁴⁶⁾에 맞게 기관별 목표 반영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그 실적을 점검해야 함.
- 다섯 번째 과제인 혁신도시 활성화 등 지역상생은 2020년 신규로 발굴·추진되는 과제로 지역산업 발전, 지역인재 양성, 지역사회 기여 등의 활동을 강조함.
-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협업 대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클러스터 발전을 유도함.
 - 공공기관 주도로 지역대학 및 기업 등과 협업이 가능하고 혁신성장에 부합하는 과제를 발굴하고 기관별로 3~5년 단위의 추진계획을 작성함.
 - 또한 혁신도시 협의체를 통해 시너지 창출을 모색하고 R&D, 시설·장비 공유, 인력양성, 금융 및 판로 지원 등의 수단을 적극 활용함.
 - 지역대학 기반의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오픈캠퍼스⁴⁷⁾ 및 지역대학 내 별도 전공을 확대하고 지역 신규 R&D 확대 등을 추진하여야 함.

45) 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특례)에서 3.4%로 정하고 있음

46) 공공기관 고졸채용(정규직 전환채용 제외) 비율 목표: ('20년) 9.0% ('21년) 9.3% ('22년) 9.6% ('23년) 10.0%

47) 오픈캠퍼스는 지역대학과 협력·운영하는 대학생 대상 '직무 및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임

-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농산물 공급망 확보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공동 직장 어린이집 투자 활성화 등 민·관 협업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화함.

2) 혁신성장 강화 및 경제활력 제고

□ 「2020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혁신성장 강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5개의 세부 혁신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5개 세부 혁신과제는 공공기관의 4차 산업혁명·한국형 뉴딜 선도, 경제활력 제고의 마중물 역할 강화,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친기업환경 조성, 공공기관 혁신장터 구축, 혁신지향 공공조달 확대 등임.
- 5개 과제 중 6번 과제인 공공기관의 4차 산업혁명·한국형뉴딜 선도와 10번 과제인 혁신지향 공공조달 확대 등 2개 과제는 2019년부터 추진한 혁신과제임.

□ 여섯 번째 혁신과제인 공공기관의 4차 산업혁명·한국형 뉴딜 선도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빅데이터 민간 활용, 신기술 활용, 신산업 육성, 공공서비스의 비대면·디지털화, 기후변화 대응 등의 측면에서 혁신 활동을 전개해야 함.

- 공공기관은 빅데이터 플랫폼 등을 통해 민간에 대한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사업화를 지원하여 민간 부문의 창업 및 벤처 활성화에 기여함.
- 공공기관은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빅데이터·AI·IoT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야 함.
- 바이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BIG3를 중심으로 유망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 노후 국가기반시설 관리, 기관 주요사업 등을 대상으로 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함.
- Post-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대국민 접점 분야의 공공서비스를 비대면 서비스로 제공하고 고유사업의 비대면·디지털 전환을 추진함.
- 공공기관은 4차 산업혁명·한국형 뉴딜 선도를 위해 세부과제와 다른 혁신과제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함.
- 8번 혁신과제인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친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보유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창업초기 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가야 함.

- 9번 혁신과제인 공공기관의 혁신장터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신기술의 상품화 및 판로 개척을 위해 SOC 통합 기술마켓에 참여하고 에너지 기술마켓을 구축함.
- 정부는 공공기관의 4차 산업혁명 및 한국형 뉴딜 선도를 위한 프로세스 및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관련 예산·인력 확보 및 활용을 위한 추진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
- 14번 혁신과제인 디지털 기반의 업무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함.

□ 일곱 번째 혁신과제인 경제활력 제고의 마중물로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투자 및 구매 확대, 임대료 지원 등의 활동을 추진함.

-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절벽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의 선결제·후사용을 확대⁴⁸⁾하고 공공기관의 비축가능 자산을 조기 구매하여 민간 부문의 경기침체 해소에 기여함.
-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2020년 상반기 중 조기 투자집행을 추진 하도록 함.
- 공공기관은 보유 자산에서 입점한 업체를 대상으로 휴업·일시폐쇄 업체에 대한 임대료 면제 및 계약기간 연장, 중소·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인하 확대 등 지원 제도를 시행해야 함.
- 정부가 2020년 2월 28일 제9차 코로나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 활력대책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한 「코로나 19 파급영향 최소화과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은 공공기관의 민간에 대한 임대료 지원 활동을 권고 하고 있음.

□ 여덟 번째 과제인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친기업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수행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기관 기업민원 보호제도를 마련하며 공공 기관 보유자원을 활용한 창업 지원을 확대해 나감.

-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및 혁신성장 도모를 위해 공공기관별 중소기업 규제애로⁴⁹⁾ 해소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현장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함.⁵⁰⁾

48) 2020년 4월 8일 개최된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공공 기관에 시달함

49) 주요 신고사항: 혁신성장 저해 규제, 기업투자 불편·부담 규제애로, 불합리한 공공기관 규제애로, 우월적 지위 남용 등 공공기관 갑질행태, 기업민원 피해 등

- 민원인 보호 및 서비스 질 제고라는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을 통해 안심하고 자유롭게 규제신고를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업민원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기관별 규제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규제혁신의 기반을 구축함.
 -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을 창업·벤처기업의 사업 공간으로 제공하거나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기술·시설·인력 등 자원을 활용하여 창업초기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아홉 번째 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장터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의 SOC 통합 기술마켓 참여를 확대하고 에너지 기술마켓을 활용하는 한편 중소기업콘텐츠기업 육성 및 성장을 위한 통합마켓에 참여하여야 함.
- 플랫폼 단일화, 기술마켓 인증 기술 및 제품 구매 확대, 해외동반진출 지원 등 중소기업 신기술의 상품화 지원을 위한 SOC 통합 기술마켓 참여를 확대해 나감.
 - 중소기업이 개발한 에너지 분야 신기술의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동시에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전문가 검증 등을 통해 조속한 상품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함.
 -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소 콘텐츠 기업과 1인 기업(강사)에 열린 기회를 제공하고 콘텐츠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콘텐츠기업의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공공기관이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는 통합마켓에 참여함.
- 혁신성장 강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마지막 혁신과제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은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혁신구매 목표제를 시행하며 동시에 혁신수요를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우선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 향상 및 혁신성장 산업 초기시장 창출 지원을 위해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확대해야 함.
 - 여기서 혁신제품이라 함은 혁신성이 인정되는 ① 국가 R&D 결과물(패스트트랙 I), ② 민간시제품(패스트트랙 II) 및 ③ 추후 조달정책심의위원회(10월 출범 예정)에서 심의한 제품(패스트트랙 III)을 의미함.

50)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의 개선을 위해 소관 정부부처 협의 및 규제대안 마련 등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해야 함

- 또한 혁신구매목표제를 도입하여 기관별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으로 구매 하여야함.
 - 혁신제품 구매실적은 2020년 정부혁신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평가의 평가지표를 통해 점점·평가될 계획임.
- 공공서비스의 혁신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중 혁신적인 제품을 활용 하였을 때 서비스 개선과 행정효율성 향상이 가능한 사항⁵¹⁾을 중점적으로 검토 하여 함.
 - 이 외에 기관에서 기존에 구매 중이거나 알고 있는 ① 혁신적인 제품 및 ② 유관 제품(혁신제품과 유사한 지정과정을 거치는 제품)을 조사하여 혁신 수요 발굴에 반영함.

3)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 2019년에 이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은 7개의 세부 혁신 과제를 추진해야 함.
 -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혁신과제는 2019년 3개에서 2020년 7개로 크게 확대됨.
 - 7개 세부 혁신과제 중 5개 과제가 2020년 신규 혁신과제에 해당함.
 -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지속 추진하는 세부 혁신과제는 14번 과제인 공공 기관 적극행정 및 업무방식 변화 유도⁵²⁾와 17번 과제인 알리오 및 알리오플러스 사용자 편의성 강화⁵³⁾임.
 - 2020년 신규로 발굴된 세부 혁신과제는 직무중심의 보수체계 확산(11번), 임금 피크제 대상인력의 효율적 활용(12번), 공공기관 투자활성화 재무건전성 관리(13번), 공공기관 인사운영 3대 혁신(15번), 과도한 복지방지 등 방만경영 점검(16번) 등 5개 과제임.
- 열한 번째 과제인 직무중심의 보수체계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의 내부 도입 기반 조성, 직무급 내용의 내실화 및 노사합의를 통한 추진 등을 기관별 혁신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해야 함.

51) (예시) 시를 활용한 대국민 상담서비스, 드론을 활용한 도로·하천·산림 관리, 범죄예측 지능형 CCTV, 고독사 방지 스마트 수도계량기 등

-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종전의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체계에서 벗어나 직무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관 내부적으로 도입 기반을 조성해야 함.
 - 직무급 도입 기반 조성의 첫 단계로 공공기관은 기관업무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동시에 직무가치 등급평가에 따른 보수체계 설계 등을 포함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직무중심 보수체계 설계에 있어 기관별로 생산성과 보수수준을 연계한 직무급을 주요 보수항목으로 개편하여 직무급 내용의 내실화를 모색해야 함.
 - 기관 업무와 여건을 고려하여 직무가치와 보수수준 연계, 기본급 반영, 비간부직(일반직원) 포함 등을 직무급 설계 시 반영함.
 - 공공기관은 기관 내부구성원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직무평가위원회 같은 근로자 참여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실행해야 함.
- 열두 번째 혁신과제는 임금피크제 인력의 효율적 활용으로 공공기관은 이를 위해 별도직군 운영 효율화, 전문인력 활용 활성화, 재취업 지원제도 내실화 등을 추진해야 함.
-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별도직군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별도직군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내부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함.
 - 임금피크제 적합직무⁵²⁾를 발굴하여 운영하고 임금피크제 인력에 대한 복무·성과관리를 체계화하는 동시에 임금피크제 관련 별도정원 중 별도직군의 비중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 인력이 보유한 풍부한 업무 경력 및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현장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제공함.
 -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전문 숙련인력 지원, 지자체·지역대학 등 컨설팅·멘토링, 상기 목적달성을 위한 공공기관 내부 지원조직·TF의 설치·운영 등을 추진함.
 - 근로자 1천명 이상 고용 시 퇴직 전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⁵³⁾에 따라 임금피크제 인력에 대한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업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해야 함.

52) (예시) 장기재직자의 경험·노하우 활용, 일반근로자와 독립·자율적 수행직무 등

5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대상) 참고

- 열세 번째 혁신과제는 공공기관 투자 활성화 및 재무건전성 관리이며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제도 개선, 총사업비 관리 강화 및 출자회사 정비 등이 추진됨.
- 공공기관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개선하여 조사 기간을 5개월 이내로 단축⁵⁴⁾시키고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산출 시 정책 전문가 비중 확대 및 재신청 요건 완화 등을 고려함.
 -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1천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은 과도한 사업비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업단계별로 면밀히 관리되어야 함.
 -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사업 단계별 총사업비의 합리적 관리·조정을 위한 정부 지침(가칭.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2020년 8월에 시행함.⁵⁵⁾
 - 공공기관 출자회사 정비를 위해 기관별로 보유 출자회사를 대상으로 출자목적 달성 여부, 재무건전성, 조직운영 효율성 등에 대한 자율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기관별 출자회사 정비방안을 확정하여 이행해야 함.
- 열네 번째 혁신과제는 공공기관 적극행정 및 업무방식 변화 유도임.
-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지원·면책·보상, 소극행정 혁파 등을 위한 기관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공공기관 내부규정의 입법방식을 유연화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⁵⁶⁾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함.
 - 적극행정 강화를 위해 사전컨설팅 내실화 및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 등 맞춤형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적극행정 면책 및 적극행정 임직원 대상 특별승진·포상 등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하여야 함.
 - 소극적 행정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제도 운영, 기관 홈페이지 내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함.
 - 적극행정 강화를 위한 기관별 실행계획은 기관장 주도하에 현장으로 해결, 긴급 현안 대응 등 공공기관별 특성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여 반영하고 국민체감형

54) 조사기간: (현행) 평균 10.5개월 → (개선) 국내 5개월, 해외 4개월 등으로 단축

55) 기획재정부는 2020년 8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제정함

56) 우선채용-사후 규제 원칙

성과 달성을 목표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 노력은 2021년에 실시될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평가받을 예정임.

- 코로나 19와 같은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공공기관의 업무방식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⁵⁷⁾하고 동시에 근무혁신을 통해 업무효율 제고 및 일·가정 양립의 정착을 지원해 나가야 함.

□ 열다섯 번째 혁신과제는 공공기관 인사운영 3대 혁신으로 공공기관은 2020년 4월 발표된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에 따라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제도 및 기관별 직무특성을 반영한 특별승진제도 도입과 함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개방형 계약직제의 도입 및 활성화를 모색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와 조직운영의 폐쇄성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일’ 중심의 조직 운영, 개방성 확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성과가 제고되도록 2020년 4월 공운위의 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2020년 신규 혁신과제로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이행을 유도하고 있음.
- 공공기관은 인사운영의 혁신을 위해 우선적으로 업무 특성상 기관 간 협조 및 경험 공유 등이 필요한 직위를 선정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함⁵⁸⁾으로써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우수인재 육성에 기여해야 함.
- 또한 공공기관은 연공서열이 중시되는 일반승진제도와 구분되는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특별승진제도⁵⁹⁾를 운영하여야 함.
 - 특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특별승진인원은 연간 승진인원⁶⁰⁾의 2% 이상을 차지해야 함.
- 우수인력 충원과 기관 내외의 경쟁체계 도입을 위해 전문능력이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위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개방형 계약직제’를 도입하여야 함.

57)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영상회의, 보고절차 간소화, 디지털 기반 업무 효율화 등을 기관 운영에 정착시켜야 함

58) 인사교류제도는 공공기관 간에 소속직원을 상호 파견 형태로 일정기간 근무토록 하고 原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는 제도임

59) 적극행정, 직무수행능력 우수, 제단체택·시행 등 구체적인 업무성과를 주요 기준으로 우수성과 창출자를 대상으로 시행

60) 2020년 8월 이후 승진인원

- 특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본부 관리자의 5% 이상(민간전문가 전담직위 1개 이상)을 개방형 계약직으로 충원해야 함.
- 공공기관은 개방형 계약직제의 활성화를 위해 채용예정 직위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민간인재의 상황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를 제공하는 등 지원제도도 함께 운영해야 함.

□ 열여섯 번째 혁신과제는 과도한 복지방지 등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점검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은 복리후생 공시정보에 대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방만경영 신고를 활성화하여야 함.

- 알리오시스템에 공시된 기관별 단체협약, 복리후생비 공시정보 등에 대해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공공기관은 위반사항과 자체점검결과를 반영하여 기관별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기관업무포털의 배너 등을 통해 방만경영 신고의 내용·방법·대상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방만경영에 대한 신고와 개선 제안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함.

□ 마지막으로 열일곱 번째 혁신과제는 2019년에 이어 지속 추진되는 과제로 국민의 알권리 및 편익 증진을 위해 통합공시시스템인 알리오시스템과 혁신포털인 알리오플러스의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는 것임.

-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차장, 연수원 등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민간 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민이 관심 있는 공공기관 정보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알리오플러스의 개편을 추진함.
- 기획재정부는 통합공시시스템인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검색 가능한 공공기관 통계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통합공시자료를 활용한 신규 콘텐츠를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해 나갈 계획임.

라. 2020년 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 2020년 혁신계획의 수립 대상·절차·범위와 혁신 추진체계는 2019년과 대동소이함.

□ 우선 공공기관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년도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2020년 혁신 계획' 및 '2020~2024년 중기혁신방향'을 수립하여야 함.

○ 수립한 혁신계획 및 중기혁신방향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

□ 혁신계획 수립 대상기관은 2020년 340개 공공기관 중 50인 미만 소규모 기타공공기관 (34개)과 연구개발 목적기관(69개)을 제외⁶¹⁾한 237개 기관임.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3개 기관은 2020년 공공기관 지정 시 유형이 변경됨에 따라 2020년 혁신계획 수립 대상 유형이 변경됨.

-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한국수목원관리원은 혁신계획 수립 대상 유형이 2019년 '50인 이상 기타공공기관'에서 2020년 '소규모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되고 혁신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하는 중점과제 수도 종전 1개에서 2개로 늘어남.

- 2020년 연구개발목적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로 편입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19년 '50인 이상 기타공공기관'에서 2020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재분류되어 혁신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제외됨.

○ 2020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최초 지정된 4개 기관은 기관 규모에 따라 혁신계획 수립 대상 유형이 정해짐.

- 직원 정원이 50인 미만인 (재)축산환경관리원은 '50인 미만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여 혁신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제외됨.

- 아동권리보장원, 재단법인 자활복지개발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등 3개 기관은 '50인 이상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중점과제 1개를 포함한 혁신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2019년 혁신계획 수립 대상기관 중 2020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된 (재)한국형 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은 2020년 혁신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됨.⁶²⁾

61) 제외 기관은 주무부처 주관으로 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혁신계획 수립·점검

62)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과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는 2019년에도 연구개발목적기관, 50인미만 기타공공기관 임을 사유로 혁신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아니었음

〈표 II-20〉 2019년 혁신계획 수립 대상 및 제외 대상 공공기관

유형	기관명	비고
공기업 (36개)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중점과제 3개
대규모 준정부기관 (51개)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고용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점과제 3개

유형	기관명	비고
대규모 준정부기관 (51개)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중점과제 3개
소규모 준정부기관 (44개)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문체부)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산업부)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환경부)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해수부) 한국수산자원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보훈처) 독립기념관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u>한국수목원관리원</u>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청)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중점과제 2개
50인 이상 기타 공공기관 (106개)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중점과제 1개

유형	기관명	비고
50인 이상 기타 공공기관 (106개)	(과기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문체부) (재)국악방송, (재)예술의전당, 게임물관리위원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산업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복지부)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아동권리보장원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위터웨이플러스,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새만금개발공사 (해수부)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중기부) (주)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금융위)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식약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단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정보원	중점과제 1개
연구개발 목적기관 (69개)	(교육부)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가이드라인 적용 제외

유형	기관명	비고
연구개발 목적기관 (69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u>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u>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문화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복지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해수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중기부) (재)중소기업연구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가이드라인 적용 제외
50인 미만 기타 공공기관 (34개)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해수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국립해양박물관, 한국해양조사협회 (국토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재)한식진흥원, (재)축산환경관리원 (복지부) 한국한의학진흥원, 재단법인 자활복지개발원 (산업부)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문화부)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정보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세종학당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행안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과기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중기부)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훈처) 88관광개발주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통일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주. 1. 50인 미만 기타공공기관 분류는 2020년 1분기 일반 정규직(무기계약직 제외) 기준임

2. 밑줄 표시된 기관(3개)은 2020년 공공기관 유형 변경에 따라 2020년 혁신계획 수립 대상 유형이 변경된 기관임

3. 이탤릭 표시된 기관(4개)은 2020년 신규 지정 공공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20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5.

- 공공기관은 기관별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모든 대상기관은 17대 과제를 포괄하여 혁신계획을 수립하되, 세부내용은 기관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개발함.
 - 혁신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해 각 기관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되, 공공기관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점과제 수를 달리함.

〈표 II-21〉 기관별 중점과제 수

(단위: 개)

구분	공기업 및 대규모 준정부기관	소규모 준정부기관	50인 이상 기타공공기관
중점과제 수	3	2	1

주: 소규모 준정부기관은 구분기준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명시된 강소형 분류 기준을 준용
 - 위탁집행형: 직원 정원 300인 미만, 기금관리형: 자산 1조원 & 직원 정원 300인 미만
 자료: 기획재정부, 「'20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9. 6. 5.

- 공공기관은 대내외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향식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함.
 - 내부적으로는 임직원 토론, 혁신동아리 등을 통해 다양한 내부 혁신요구를 수렴함.
 - 외부적으로는 시민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과 혁신도시별 혁신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공공기관 간 교류를 통해 혁신계획을 상호 검증하여야 함.
 - 공기업 및 대규모 준정부기관은 시민참여혁신단을 필수로 구성하여야 하고, 그 외 기관은 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구성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함.
 - 시민참여혁신단의 구체적인 운영방식 및 구성·규모 등은 기관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함.
 - 2020년 혁신 가이드라인은 혁신계획 수립 시, 공공기관 교류를 통해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혁신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하는 등 공공기관 간 상호검증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경영평가 시 공공기관 간 교류 실적을 반영하기로 함.
- 혁신의 추진에 있어 각 공공기관은 경영진·실무자 등 내부역량을 집중하여 기관운영 전반을 혁신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함.
 - 기관별 혁신책임관 및 혁신부서를 지정·운영하고, 실무자·경영진 대상 혁신 교육, 직급·업무별 학습그룹 등을 통해 맞춤형 학습을 활성화하며, 기관별 성과관리를 자율적으로 운영함.

- 지자체,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을 활성화 함.
- 기관별 혁신계획은 2020년 7월 말까지 수립하며, 시민참여혁신단 의견 반영, 주무부처 협의 등을 통해 2020년 8월 말까지 보완할 수 있음.

마. 2020년 공공기관 혁신 점검 및 지원

- 주무부처는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별 계획과 성과 등을 점검하고 평가함.⁶³⁾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2021년 실시되는 경영평가의 「혁신노력 및 성과」 지표를 통해, 혁신도시별 기관 간 협업, 신규과제 추진, 혁신 성과 홍보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받음.
 - 혁신계획의 주요과제 추진실적은 그 밖의 유관 평가지표와 연계하여 평가됨.⁶⁴⁾
- 경영평가 외 지원체계로는 공공기관 혁신의 지속적 추진과 혁신 동기부여를 위해 파급·확산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혁신 브랜드로 선정하여 우수기관으로 표창하고 있음.
 - 혁신 브랜드 선정은 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에 대한 자료 심사, 현장검증 및 온라인 심사 등을 통해 선정함.
 - 혁신·협업·시민참여 분야의 우수사례는 우선 포함됨.
-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혁신성과의 확산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위주로 홍보와 공유를 추진함.
 - 국민 체감형 혁신 우수사례를 취재하여 기획보도하고 디지털 영상이나 카드뉴스 제작 등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임.
 - 오프라인 홍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을 통한 혁신사례 공유와 기관별 자체행사 시 관련 영상이나 판넬 제작을 통한 홍보를 모색함.
 - 성과 공유를 위해서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우수기관과 각 기관 시민참여단 등이 참여하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함.

63)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연 1회 경영평가를 통해 점검 및 평가,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에서 혁신계획 및 성과 등 추진실적 평가

64) (예시) '과제1.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는 '일자리 창출' 지표(7점)와 연계

- 혁신 우수사례집 발간과 2020년 수립된 혁신계획의 혁신성과에 대한 점검 및 평가는 2021년 상반기에 추진될 예정임.

4. 공공기관 안전관리정책 주요 동향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사고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는 37명으로 2018년(52명) 대비 2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공공기관의 안전인력은 2018년 대비 6,460명(17.8%) 증가하였고, 안전예산도 전년대비 1.05조원(6.0%) 증가한 18.6조원 수준임.
- 정부는 2020년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경영이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철저한 안전계획의 수립·집행, 협업과 소통, 안전투자, 안전문화 정착 등을 강조하고 있음.⁶⁵⁾
 -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근로환경 개선 미흡 등 현장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안전 문제들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할 계획임.
 - 특히 공공기관은 조도미흡, 안전보호구 미지급, 안전펜스 미설치 등 근로자들에게 민감한 산재위험요인을 즉각적으로 시정하여야 함.
 - 공공기관 안전계획을 착실하게 수립하고 신속하게 집행하여야 함.
 - 모든 공공기관은 자사의 공공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위험성평가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기관의 관리시설, 작업환경 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안전이 취약한 분야를 찾아 우선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인력을 확충하여야 함.
 - 위험작업의 2인 1조 작업환경 확립을 위해 안전인력을 추가로 확충하고, 근로자 안전과 밀접한 보호장비·물품 등에 대한 투자 및 R&D를 확대하여야 함.
 - 정부는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안전경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안전등급제를 통해 이러한 노력을 평가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임.
 - 공공기관은 근로자, 원·하청 노사, 전문가 등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안전경영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 등 안전경영 관리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협력업체,

65) 기획재정부, 「동절기 및 설 명절 연휴 대비 공공기관 특별 안전점검회의 개최」, 보도자료, 2020. 1. 17.

지역사회와의 협업 및 소통을 강화하여 안전경영 관리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기관장으로부터 현장근로자까지 전사적 차원에서 안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생명 존중과 안전제일의 안전문화가 현장에 자리잡도록 노력하여야 함.

가.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도입⁶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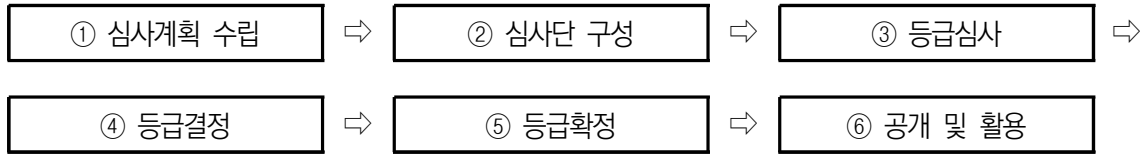
1) 안전등급제 주요내용

-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2019. 3월) 이후 경영평가 안전지표 배점 상향, 기관장 책임 강화,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안전 목표관리제 도입 등 국민안전 중심의 경영체계를 위한 개편이 이루어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락 등 사망사고(32명)가 많은 발주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 안전전담조직 설치, 안전 인력·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자발적 안전수준 향상 등 안전문화를 정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97개 안전관리중점기관은 안전 전담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고, 2019년 기준 안전인력은 6,460명을 확충하였고, 안전투자는 약 1조원으로 확대하였음.
 -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19. 3월)에 따르면,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60%)으로 감축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정착 및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등급제를 2020년 상반기에 도입하여, 매년 기관별 등급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안전전문가로 구성된 등급심사단을 통해 각 공공기관의 안전역량과 각종 시설⁶⁷⁾의 안전수준을 심사하여 기관별 안전등급을 5단계로 부여하기로 함.
 - 안전등급의 심사체계는 <그림 II-8>과 같음.

66) 기획재정부, 「안일환 2차관,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범사업 착수; 심사단 구성 및 착수회의 개최」, 보도자료, 2020. 7. 31.,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기본계획(안)」, 2020. 6. 5.을 토대로 작성함

67) 작업장, 시설물, 건설현장, 연구시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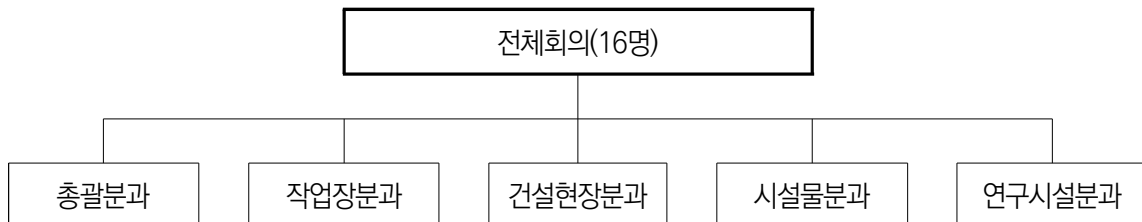
〈그림 II-8〉 안전 등급 심사체계



자료: 기획재정부, 「안일환 2차관,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범사업 착수-심사단 구성 및 착수회의 개최-」, 보도자료, 2020. 7. 31.

- 기획재정부는 외부 안전전문가 등이 주축이 되는 심사단을 구성해 매년 안전등급을 심사하여 공공기관에 안전등급을 부여함.
- 심사단은 관계부처(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 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시설안전공단·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됨.
- 심사대상은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기업(30개), 준정부기관(37개), 기타 공공기관(52개) 등 총 119개 기관임.

〈그림 II-9〉 안전등급심사단 구조도



자료: 기획재정부, 「안일환 2차관,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범사업 착수-심사단 구성 및 착수회의 개최-」, 보도자료, 2020. 7. 31.

- 안전심사는 기 시행 중인 관리대상별 안전평가⁶⁸⁾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할 예정임.
- 작업장, 시설물, 건설현장, 연구시설 등을 심사 대상에 포함해 물적·인적 안전을 모두 심사하며, 중대사고 발생이 많은 발주공사 현장은 시공과정의 안전평가뿐만 아니라 현장 노동자에 대한 안전평가를 모두 활용해 심사를 강화할 것임.

68) ① 작업장 안전활동 수준평가(한국산업안전공단) ② 건설공사 안전 수준평가(시설안전공단) ③ 시설물 안전 평가(한국시설안전공단) ④ 연구시설 안전평가(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안전등급 심사 시에는 공공기관의 실제 안전활동에 대한 안전수준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안전역량, 사고현황 등에 대한 안전가치 등을 심사함.
- 안전수준은 관리대상별로 개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안전역량·안전가치는 모든 기관에 공통 심사기준을 적용함.
 - 심사기준은 기관이 관리하는 작업장·시설물·건설현장·연구시설 등 위험요소별로 각각 달리하되, 기관의 위험 특성 등을 반영하여 기관 간 심사 불평등을 최소화 하도록 함.
 - 위험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실태 및 향후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수준 항목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

〈표 II-22〉 안전등급 심사기준(안)

분야	항목		주요 내용	가중치	방법
안전수준 (500점)	작업장 시설물 건설현장 연구시설	계획(P)	계획 수립 수준	10%(100점)	서면
		점검(C)	성과 평가 수준	12.5%(125점)	서면
		개선(A)	지속적 개선 수준	12.5%(125점)	서면
		실행(D)	현장 작동 수준	15%(150점)	현장
안전역량 (250점)	안전보건방침 수립		방침 수립·공유 및 감축목표 적절성	5%(50점)	서면
	안전조직·인력 수준		전담 조직 및 근무 기간, 전문가 비율	5%(50점)	서면
	안전 예산 수준		안전예산 및 취약분야 투자 증가율	5%(50점)	서면
	위험성평가 실시		제도 규정화 및 관련 교육 이수율	5%(50점)	서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범위	5%(50점)	서면
안전가치 (250점)	안전 책임 이행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심사	5%(50점)	서면
	안전 가치 기여도		안전가치 기여도 조사, 재해 통계	5%(50점)	설문
	산업재해 현황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100점)	서면
	공생협력		안전보건 공생협력 평가 점수	2.5%(25점)	서면
	안전의식		안전의식 수준향상 프로그램 참여	2.5%(25점)	서면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기본계획(안)」, 2020. 6. 5.

- 기관별 안전등급은 안전등급심사단에서 각 기관의 관리대상별 안전수준을 심사하고 이를 종합해 5등급 체계로 결정함.
- 기관 안전등급뿐만 아니라 기관이 관리하는 작업장·시설물·건설현장·연구시설 등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등급도 함께 부여함.

- 사망사고 발생기관은 최종 안전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임.

〈그림 II-10〉 안전등급 결정 체계도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기본계획(안)」, 2020. 6. 5.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표 II-23>과 같이 5개 등급으로 분류함.

〈표 II-23〉 공공기관 안전등급 및 지표

종합등급	수준	안전지표
Cap5  (자가발전 단계)	안전한 수준	- 중대사고 예방능력 및 전문성을 보유: 중대사고 “0” - 지속가능한 안전경영체계 구축 완료 - 전사적 안전문화 성숙 및 사회적 가치에 기여
Cap4 (성숙 단계)	안전수준이 높음	- 중대사고 예방능력 및 전문성이 상당히 높음 - 안전경영체계 안정화(효과적 전문역량 확보) - 전사적 안전문화 정착 및 사회적 가치에 일부 기여
Cap3 (작동 단계)	안전수준이 보통	- 안전관리 수준은 높으나 중대사고 예방능력은 낮음 - 안전경영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 중 - 안전문화 확산(경영진과 안전조직만 안전인식 공유)
Cap2 (기초 단계)	안전수준이 낮음	- 안전관리 수준이 낮고 중대사고 예방능력도 매우 낮음 - 안전경영체계 도입을 시작 - 안전인식 형성(안전조직만 안전인식 공유)
Cap1 (무대응 단계)	안전관리 부재	- 안전관리 수준이 낮고 중대사고 예방능력을 결여 - 안전경영체계가 도입되지 않음 - 경영진의 안전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기본계획(안)」, 2020. 6. 5.

- 기관별 안전등급이 결정되면 공운위에서 이를 확정하고, 기관 홈페이지 및 경영 공시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함.
 - 상위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하위등급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 및 안전수준 향상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공기관의 자발적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로 함.
 - 최고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보고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안전 기관 표창(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부여하고, 최하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취약분야 안전투자 추가 확대, 경영진 안전교육 시간 확대 및 안전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전문기관 안전컨설팅 의무화 등을 시행토록 함.
- 기관별 안전등급 공개로 인한 기관 간 비교 및 이미지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자발적 경쟁을 유도하고, 안전관리에 모든 조직이 참여하는 안전활동이 활성화될 것이 기대됨.
 - 반복적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등급을 하향하고 발주 건설현장의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중대사고 예방노력을 제고하는 한편, 안전등급제가 지방공기업 및 중대사고 발생이 많은 민간분야(건설업, 제조업)로 확대됨으로써 국가 전반의 중대사고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안전수준 향상 노력으로 인해 안전 컨설팅·교육 시장이 활성화되고 안전 분야 전공자·유자격자 등의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궁극적으로 국민의 신뢰회복 및 안전관리를 위한 상시적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2) 시범사업 추진⁶⁹⁾

- 기획재정부는 2021년 본격적인 ‘공공기관 안전등급제’의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등급심사단을 구성하고, 시범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함.
 - 시범사업 대상기관에 대해 8월 초부터 심사를 시작하여 9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함.
 - 심사 완료 후 기관별 안전등급을 공개할 예정이며, 기관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69) 기획재정부, 「안일환 2차관,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범사업 착수; 심사단 구성 및 착수회의 개최」, 보도자료, 2020. 7. 31. 참고하여 작성

□ 2021년 대상기관 중 분야별(위험요소)로 대표성이 있고 심사자료 확보가 가능한 64개 기관을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함.

○ 심사기준 및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표 II-24>, <표 II-25>와 같음.

<표 II-24>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기준

위험요소	선정기준
작업장	▶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설비·공정·시설 등 운영 및 유지·보수업무가 있는 기관 ▶ 검사·진단·시험·검정, 위탁·전시·관람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정원 500명 미만 및 연간 총사업비 1천억원 미만 기관은 제외
건설현장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국민생활과 밀접한 SOC 및 생활 SOC 포함)를 지속 발주하는 기관
시설물	▶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 중 SOC, 다중이용건축물을 소유·관리하는 기관 * 다중이용건축물: 역사, 여객터미널, 연수원, 전시관, 관광숙박, 체육관, 공연장, 임대주택 등
연구시설	▶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 - 전체 연구시설 대비 고위험연구실(정밀안전진단 대상) 비중 50% 이상 기관 - 전체 종사자 대비 연구활동 종사자 비중 50% 이상 기관

자료: 기획재정부, 「안일환 2차관,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범사업 착수, 심사단 구성 및 착수회의 개최」, 보도자료, 2020. 7. 31.

<표 II-25> 시범사업 대상기관

구분	기관명
공기업 (30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PS, 해양환경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마사회
준정부기관 (25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독립기념관, 국립생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국가철도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타공공기관 (9개)	국방과학연구소,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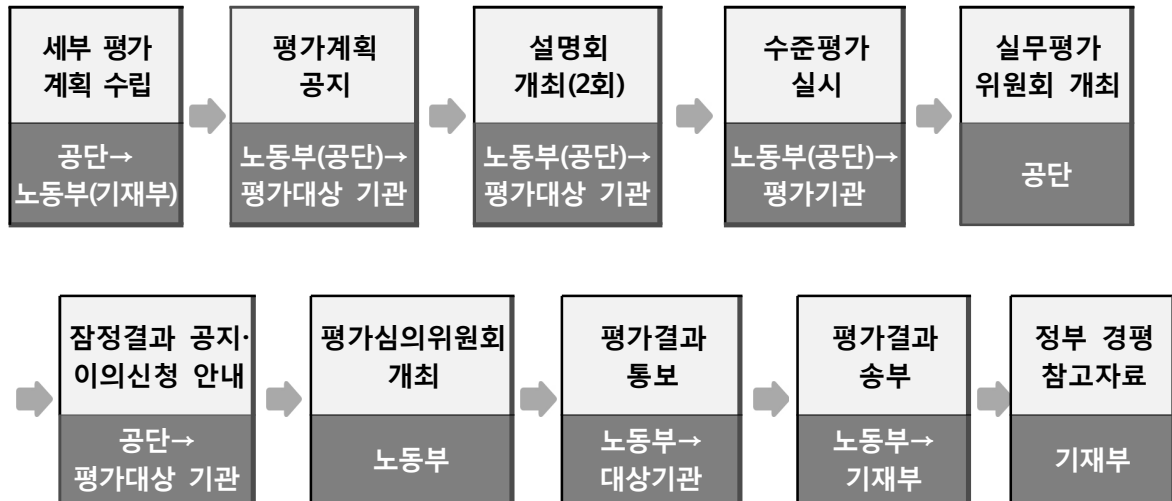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안일환 2차관,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범사업 착수, 심사단 구성 및 착수회의 개최」, 보도자료, 2020. 7. 31.

나.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 공공기관은 이익보다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민간의 안전활동 수준까지 제고하기 위한 선도적 역할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및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의결을 통해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 반영함.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란, 공공기관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보건활동 및 그 수준에 대해 평가하는 것임.
 -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함.
 -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P-D-C-A⁷⁰⁾ 관점에서 ① 안전보건체제, ② 안전보건활동 계획, ③ 안전보건활동 수준, ④ 안전보건활동 성과 등에 대해 공공기관 유형 및 특성별로 평가함.
 - 총 34개 평가지표이며, 공공기관 공통 평가지표(26개), 발주 및 수급업체 관리 특화 평가지표(8개)로 구성되어 있음.
 - 소방·환경·건축 등 관련 개별법상 주요항목(화재·폭발·붕괴 등)을 안전보건활동 수준 지표에 반영함으로써 대국민 안전을 확보하도록 함.
 - 평가대상은 「공운법」상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본사 128개소임.
 - 평가시기는 2019년 기획재정부 주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20년 1월~2월 실시함.
 - 3월 중순경, 잠정 평가결과 공지 및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3월 말에 최종 평가 결과를 통보함.
 - 평가방법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현장작동성 확인을 위해 합동평가반이 평가대상 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실시함.
 -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위해 필요 시 평가대상인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안전활동 수준평가의 객관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합동평가반은 학계,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5인으로 구성·운영되며, 평가대상 공공기관 1개소별로 2일간 평가를 실시함.

70) Plan(계획 수립) - Do(실행 및 운영) - Check(점검 및 시정조치) - Action(개선)

〈그림 II-11〉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프로세스



자료: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 향상을 위한 '19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계획」, 2019. 11.

-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하도록 함.
 - 평가심의위원회는 10인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평가담당 부서장으로, 위촉직 위원은 노동계·경영계·변호사·공인노무사·학계·민간 전문가 등으로 함.
- 이러한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경영평가단에 제공됨.
 -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상 ‘경영관리 범주’ - ‘사회적 가치 구현’ - ‘안전과 환경’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됨.
 -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해당기관에도 송부됨.

〈표 II-26〉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총괄평가지표

분야	분야별 배점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안)			
			(1)	(2)	(3)	(4)
A 안전보건체제 (System) • 4개 항목	250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활동 수준	100	100	100	100
		②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수준	50	50	50	50
		③ [안전관리 중점기관] 안전보건경영 조직 활동 수준	50	50	50	50
		④ 안전보건경영 투자 수준	50	50	50	50
B 안전보건활동 계획(Plan) • 2개 항목	100	① 안전관리규정 작성	50	50	50	50
		② 안전기본계획 수립	50	50	50	50
C 안전보건활동 수준[4개 영역] (Activity Level) • 26개 항목	500	C-1 【공동 안전보건관리】	200	200	200	300
		① 일반 작업안전 관리	15	15	15	25
		② 노동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수준	10	10	10	15
		③ 사업장 시설 점검기준 수립 및 이행	10	10	10	15
		④ 위험성평가	30	30	30	45
		⑤ 안전보건교육	20	20	20	30
		⑥ 노동자 안전보건활동 참여수준	30	30	30	45
		⑦ 위험작업 안전관리(안전작업허가제도)	15	15	15	20
		⑧ 재해조사 및 재발방지	20	20	20	30
		⑨ 비상시 대비 및 대응	10	10	10	15
		⑩ 대국민 이용시설 안전관리 체계	20	20	20	30
		⑪ 안전문화 확산 노력도	20	20	20	30
		C-2 【발주 안전보건관리】	100	150		
		① 발주 계획 단계의 안전보건 확보(50억원 이상 공사)	20	30		
		②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치 준수(50억원 이상 공사)	20	30		
		③ 시공사 선정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평가	20	30		
		④ 공사 안전보건감독 계획 및 수행	20	30		
		⑤ 건설현장 안전보건 환경 조성	20	30		
		C-3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100		150	
		① 도급절차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40		60	
		② 수급업체 작업장 산업재해 예방조치 실행 수준	30		45	
		③ 안전보건 교육 등 인프라 지원	30		45	
		C-4 【현장 안전보건관리】	100	150	150	200
		① 일반 현장 안전보건관리	20	30	30	40
		② 기계·기구·설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10	15	15	20
		③ 전기기계·기구로 인한 위험방지	10	15	15	20
		④ 추락·낙하·붕괴 등 시설물 위험방지 조치	20	30	30	40
		⑤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및 누출 위험방지 조치	10	15	15	20
		⑥ 화학물질 중독 및 질식사고 예방 활동 수준	20	30	30	40
		⑦ 작업환경 관리 수준	10	15	15	20
D 안전보건활동 성과 (Achievement) • 2개 항목	150	① 성과측정 및 시정조치	80	80	80	80
		② 산업재해 감축 노력도	70	70	70	70
합 계	1,000		1,000			

자료: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 향상을 위한 '19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계획」, 2019. 11.

5. 사회적가치 창출 전략 추진⁷¹⁾

가. 추진배경

- 정부는 국정과제인 ‘사회적 가치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옴.
- 그 결과, 일자리·안전·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음.
 - 일자리 측면에서, 안전, 보건의료 등 사회적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필수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확대하였으며 이로 인해 2017~2019년간 공공기관 일자리가 3.4만명 증가하였음.
 - 공공기관 안전종합대책 및 안전지침 제정(‘19.3월) 등을 통해 국민 생명을 최우선하는 공공기관 안전 경영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기관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2017년 59명에서 2019년 37명으로 감소함.
 - 공공기관 채용비위 근절을 위한 관련 전수조사, 후속 제도개선, 갑질 근절방안 마련 등을 통해 윤리경영을 도모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청렴도 점수도 2017년 8.29점에서 2019년 8.46점으로 개선되는 성과를 보임.
 -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 지역인재 의무채용⁷²⁾ 및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 등 일자리 정책의 틀을 마련하였고,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비율도 2017년 2.9%에서 2019년 3.2%으로 개선됨.⁷³⁾
 - 그러나 이러한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성과 창출을 위한 기본 전략을 마련함.

71)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 전략 추진; 중점 5대 분야 가시적 성과 목표 설정·이행」, 보도자료, 2020. 7. 21. 및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 전략」,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보고안건자료, 2020. 7. 16.를 참고하여 작성함

72) 여성임원(‘17)11.8→(‘19)21.1%), 지역인재 채용비율(‘17)13.9→(‘18)23.4%) 확대

73)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 개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2017. 1. 1.~2018. 12. 31.: 1천분의 3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이 변경되었음

- 해당 전략은 핵심분야의 선정, 성과지표의 설정, 기관별 추진계획 수립·이행·점검 등으로 이루어짐.

나. 사회적 가치 중점 5대 분야

- 정부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 중 핵심 5대 분야를 선정하고, 공공기관에 목표지표를 제시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공공기관 관련성 및 가시적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① 일자리, ② 안전, ③ 윤리·공정, ④ 사회적 형평성, ⑤ 지역상생 5개 분야를 선정하였음.
 - 분야별 목표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을 기준으로 임기내(~2022년) 추진할 목표로 설정함.
 -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기관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일자리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서비스 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2022년까지 6만명 수준(2017년 누적)의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안전 및 소재·부품·장비,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한국형 뉴딜 추진, 중소기업 육성 등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을 충원할 예정임.
 - 아울러 중기인력운영계획 및 재배치계획 등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임.
 - 공공기관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도록 함.
 - 예를 들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한국토지주택공사), 창업 재도전 기회 제공(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통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나감.

〈표 II-27〉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분야

분야	세부내역
공공서비스	보건의료, 생활안전, 재난방지, 검역 등
안전 및 소재·부품·장비	안전인력 확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출연연 연구인력 등
중소기업 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 전략 추진: 중점 5대 분야 가시적 성과 목표 설정·이행」, 보도자료, 2020. 7. 21.

- 안전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사망 사고자수 60% 감축을 목표로 안전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안전등급제는 2020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부터 시행하고, 등급 공개와 함께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⁷⁴⁾·페널티⁷⁵⁾를 부여할 계획임.
- 또한 기관별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수립을 의무화하여 2021년 4월 국민에게 공시할 예정임.

〈표 II-28〉 안전분야 공시사항

공시 대상	공시 시기
재해·사고 현황, 안전관리 대상 시설 및 사업장, 안전조직 및 인력 현황, 안전투자 현황,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목표 등	주무부처의 이전연도 보고서 이행실적 점검 후 익월(4월)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 전략 추진: 중점 5대 분야 가시적 성과 목표 설정·이행」, 보도자료, 2020. 7. 21.

- 윤리·공정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채용실태조사 채용비위 건수를 80%로 감축하고,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조사 지수를 8.8점 이상 달성할 계획임.
- 정부합동(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주무부처, 경찰청 등)으로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비위 연루 임·직원에 대한 엄정제재를 단행한 바 있음.
- 채용위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전문 우수인력 선발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공정 채용을 강화할 것임.
 - 공공기관의 위탁채용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위탁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능력중심 채용의 안착을 지원하고, 연구 등 전문분야 우수인력 선발 방안 검토 등을 추진함.
- 공정경영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의 갑질해소 및 모범거래모델을 확산하기로 함.
 - 신규계약 체결 시 협력업체, 임차인 등 계약상대방에게 기관의 갑질신고 제도 (신고방법, 처리절차 등)를 안내하도록 공공기관 경영지침 개정을 완료하였고, 자체·외부기관을 통해 접수된 갑질신고의 내용과 처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하고 감독부처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74) 안전조치 실적점검 한시적 면제, 시상 등

75) 취약분야 안전투자 확대, 안전 컨설팅 의무화, 경영진 안전교육 등

-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위한 모범거래모델 도입을 활성화⁷⁶⁾하기 위해, 경영실적 평가에 해당사항을 반영함.
- 「공공기관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반기별(6월, 12월)로 마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규제를 혁파하고 갑질행위를 원천 차단할 것임.
-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서 임원 결격사유 적용을 확대하고 부패 근절규정을 강화하기로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결격사유를 모든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운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
 - 「공공기관 경영지침」 개정을 통해 채용·입찰비리·갑질 관련 행위시 징계를 가중 처분하고, 승진제한 가중기간을 상향(3→6개월)하는 등 공무원 수준으로 징계를 강화하고 인사감사 대상기관 확대(연간 3→10개 기관)와 더불어 기관 내부감사를 강화함.
 - 공공기관 혁신지침 개정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를 강화함.⁷⁷⁾

〈표 II-29〉 공정채용 관련 제도개선 사항

제도개선 사항	상세 내용
공정성 확보	서류심사 오류방지, 시험문제 타당성 확보, 전형관리 전문성 확보 등
단계별 관리기준	제안서 심사요건, 전형단계별 관리기준, 신뢰성 검증 등
통합채용 제도 도입	기능이 유사한 공공기관의 필요 인력 통합채용 도입 추진
면접관 Pool제 도입	인사혁신처 인재DB 활용 지원
모니터링 효과성 제고	블라인드 채용 모니터링 항목 확대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 전략 추진; 중점 5대 분야 가시적 성과 목표 설정·이행」, 보도자료, 2020. 7. 21.

- 사회적 형평성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여성임원 비율을 2배 확대하고, 2021년까지 장애인 고용비율 법정 의무수준(3.4%)을 준수하는 한편, 2023년까지 고졸인재 신규 채용비율 10%를 달성할 계획임.
-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확대 관련 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를 강화할 것임.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20~24년 임원임명 목표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76) 현재 도입기관은 7개이나 2020년 내에 22개 기관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임

77) 2020년 8월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경영지침 및 혁신지침 개정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340개 공공기관에 시달함

여성 미임용 기관을 중점 관리하며, 기타공공기관은 여성임용 실적을 정부혁신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기관에 대해 종합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임.
 - 중증장애인 채용 시, 기관 초과현원으로 인정하도록 「공공기관 경영지침」을 개정함.
 - 2년 연속 의무고용률 미달 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임.
- 고졸채용 확대를 위해서 기관별 목표설정 등 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채용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반영을 강화할 예정임.
 - 모든 공공기관은 연도별 고졸 채용목표에 맞게 기관별 목표를 설정하는 등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점검을 추진해야 함.

□ 지역상생 분야에서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기관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것임.

- 이를 위해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수를 1,800개로 확대하고, 이전공공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30% 및 지역물품 우선구매비율 20%를 달성할 계획임.
- 지역 중소기업에 대상 금융지원, 공동 R&D 등을 통해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공공 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장비 공유,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창업인프라를 공유할 것임.
- 지역대학과 협업하여 맞춤형 인력을 양성·채용하는 등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할 계획임.
 - 지역대학과 협업하여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고, 기관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한편 지역 청년 대상 직무 체험형 인턴을 운영하여 실무 체험 및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할 계획임.
- 지역사회와 상생을 통해 정주여건 및 지역경제 개선을 해나갈 예정임.
 - 이전기관-지자체-생산자단체 연계를 통해 이전기관 구내식당에 지역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임직원의 자발적 기부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 취약계층 지원 목적의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활성화함.
 -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협동조합의 물품 및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함.

〈표 II-30〉 중점 5대 분야의 목표 지표

5대 분야	목표 지표	2017년	2019년	2022년
일자리	공공기관 일자리(만명)	0.9	3.4	6.0
안전	공공기관 사망 사고자 수(명)	59	37	25 미만
윤리·공정 분야	채용비위 건수(건)	170	50 미만	30 미만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조사지수	8.29	8.46	8.8 이상
사회적 형평성	여성임원 비율(%)	11.8	21.1	23.0 이상
	장애인고용 비율(%)	2.9	3.2	3.6
	고졸인재 신규채용 비율(%)	8.4	8.4	9.6
지역상생 분야	혁신도시 입주기업 수(개)	412	1,425	1,800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비율(%)	17.7	25.9	30
	지역물품 우선구매 비율(%)	8.8	13.4	20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 전략 추진; 중점 5대 분야 가시적 성과 목표 설정·이행」, 보도자료, 2020. 7. 21.을 참고하여 재구성

다. 향후 추진계획

-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의 핵심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공공기관은 기관별 혁신 책임관 및 혁신 부서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 시 ‘사회적 가치의 확실한 성과창출’을 주요 혁신과제로 반영하고, 기관별로 구성되는 ‘시민참여혁신단’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 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의견 반영을 확대하기로 함.
 - 기관 내부 확산을 위해 실무자·경영진 대상 교육, 직급·업무별 학습그룹 등 맞춤형 학습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사회적기업 간 협업을 강화할 것임.
 - 또한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모니터링·보완하는 등 제도 안착과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 주요과제 추진실적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하여 점검·평가하고, 파급·확산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향후 ‘사회적 가치 성과보고 대회’ 등을 통해 포상을 수여할 계획임.
- 2020년 8월까지 기관별 사회적 가치창출 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이행실적을 점검한 후, 2021년에 실시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에 반영할 계획임.



2020년도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

1. 일반현황
2. 인력현황
3. 재무현황
4. 손익현황
5. 보수수준
6. 외부 평가결과



III

2020년도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

- 제3장에서는 2020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일반현황, 인력, 손익 및 재무현황과 외부평가결과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제시하고 주요특징을 살펴보고자 함.
 - 2020년도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는 340개 공공기관(2020년 1월 기준)과 23개 부설기관이 2020년 4월 말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정기 공시한 경영정보⁷⁸⁾⁷⁹⁾를 기준으로 작성함.
 - 또한 2019년도 경영평가결과,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청렴도 측정결과 등 외부평가결과는 주관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참고함.
 - 이 외에도 개별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수한 정보 등이 분석에 활용됨.
- 일반현황은 관계부처 및 기관 홈페이지,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 공공기관 설립형태,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 부설기관 현황, 지역별 분포 및 지방이전 현황⁸⁰⁾, 공공기관 관리 기금 현황⁸¹⁾, 상장 공공기관 현황⁸²⁾ 등을 정리함.
- 인력, 손익 및 재무현황은 2020년 4월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내용과 알리오시스템의 주요통계 및 기관별 통합공시 내용 등을 분석하여 정리함.
- 외부평가결과는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그리고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에 대한 분석과 주요 특징을 정리함.

78)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0. 4. 29.

79) 2020년 1월 지정된 340개 공공기관 및 그 부설기관(23개)은 「공운법」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2020년 4월 말까지 2019년 말 기준의 경영정보를 정기공시 하여야 함

80)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혁신도시 홈페이지(Innocity, <http://innocity.molit.go.kr/v2/>) 및 기관 홈페이지 참고

81) 기획재정부, 『2020 기금현황』, 2020. 4. 21. 참고

82)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보고서(2019) 참고

- 먼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는 「공운법」 제48조에 근거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실시되고 있는 기관 경영실적평가의 주요 결과를 정리함.⁸³⁾
 - 따라서 주무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는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공운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 고객만족도조사와 주무부처 주관 자체 고객만족도조사에 대한 결과를 포함함.
 - 알리오시스템에 공시된 201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⁸⁴⁾를 참고하여 주요 특징을 분석함.⁸⁵⁾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청렴도 평가 중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또는 공공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일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청렴도 측정결과임.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청렴도 측정결과를 토대로 전년대비 특징 등을 분석하여 정리함.⁸⁶⁾
-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는 「공운법」에 따라 알리오시스템에 공시된 경영정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점검한 결과를 정리함.
 - 기획재정부는 2014년부터 전년도 통합공시에 대한 정확성과 충분성 등에 대해 점검하여 그 결과를 발표⁸⁷⁾하고 있으며, 발표된 점검결과를 토대로 항목별 점검 결과, 벌점현황, 전년대비 개선 수준 등을 분석하여 정리함.

83) 외부평가결과 중 기관 평가결과는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도자료, 2020. 6. 19. 참고

84) 매년 1분기 정기공시(매년 4월 말) 시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4.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을 통해 공개되는 전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작성

85) 주무부처 주관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이라 할지라도 주무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알리오시스템에 해당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공시되지 않은 기관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86)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중 「청렴조사평가」 부분에 공개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2019. 2. 28.,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9., 「2019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보도자료, 2019. 12. 23. 및 「2019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보도자료, 2019. 12. 23.을 활용하여 작성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자료실: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03>)

87)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0. 3. 31. 및 「19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0. 3. 31.을 활용하여 작성

1. 일반현황

가.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⁸⁸⁾

□ 「공운법」에 따라 2020년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40개 기관⁸⁹⁾의 주무부처별 분포를 살펴보면, 총 35개 정부 부처가 산하에 공공기관을 보유하고 있음.

- 35개 부처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 공공기관 수가 가장 많고 인사혁신처,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등 6개 부처는 산하 공공기관이 1개임.
- 35개 부처 중 23개 부처가 산하에 10개 미만의 공공기관이 있음.
-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수 및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III-1>과 같음.

<표 III-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2020. 1월 기준)

(단위: 개)

구 분	계 (340개)	시장형 공기업 (16개)	준시장형 공기업 (20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2개)	기타 공공기관 (209개)
기획재정부	4	0	1	0	1	2
교육부	22	0	0	1	2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5	0	0	0	10	35
외교부	3	0	0	0	1	2
통일부	2	0	0	0	0	2
법무부	3	0	0	0	0	3
국방부	3	0	0	0	0	3
행정안전부	3	0	0	0	1	2
문화체육관광부	32	0	1	2	4	25
농림축산식품부	12	0	1	0	5	6
산업통상자원부	40	12	5	1	13	9
보건복지부	27	0	0	1	8	18
환경부	11	0	1	0	4	6
고용노동부	11	0	0	1	4	6
여성가족부	5	0	0	0	3	2
국토교통부	25	2	7	0	6	10

88)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현황(유형별 분포 현황)은 <부록 1> 참고

89) 2020년 1월 공공기관 지정 이후 연중 지정해제, 유형변경 등이 발생하지 않아 2020년 9월 현재 공공기관 수는 1월 지정된 기관 수(340개)와 동일

구 분	계 (340개)	시장형 공기업 (16개)	준시장형 공기업 (20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2개)	기타 공공기관 (209개)
해양수산부	16	2	3	0	4	7
중소벤처기업부	11	0	0	2	3	6
국무조정실	24	0	0	0	0	24
방송통신위원회	2	0	1	0	1	0
원자력안전위원회	3	0	0	0	0	3
금융위원회	8	0	0	4	0	4
공정거래위원회	2	0	0	0	1	1
국가보훈처	3	0	0	0	2	1
인사혁신처	1	0	0	1	0	0
식품의약품안전처	4	0	0	0	1	3
관세청	1	0	0	0	0	1
방위사업청	2	0	0	0	0	2
경찰청	1	0	0	0	1	0
소방청	1	0	0	0	1	0
문화재청	1	0	0	0	0	1
산림청	4	0	0	0	3	1
농촌진흥청	1	0	0	0	1	0
특허청	5	0	0	0	1	4
기상청	2	0	0	0	1	1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0.1.29.를 참고하여 작성

□ 산하 공공기관이 30개 이상인 정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임.

○ 3개 부처 소관의 공공기관 수는 117개로 전체 공공기관의 34.4%를 차지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은 분야 특성상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0개 기관)과 기타공공기관(35개 기관)만 분포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중 28개 기관이 '연구개발목적기관'에 해당함.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은 2019년 대비 1개 기관 감소한 40개 기관이며 전체 공공기관 유형에 골고루 분포해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기업의 가장 많이 보유한 정부 부처로 36개 공기업 중 17개 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임.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중 (주)강원랜드를 제외한 16개 기관은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에 해당함.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은 32개이며 이 중 25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임.
-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은 2019년부터 별도 분류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 공공기관 지정 시에는 14개 부처의 69개 기관이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됨.
- 2019년 대비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수는 동일하나 2020년 공공기관 지정 시 전년 대비 1개 기관이 지정 해제되고 1개 기관이 신규로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됨.
 -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 2019년 연구개발목적기관이었으나 2020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20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신규로 분류됨.
- 연구개발목적기관의 대부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 산하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목적기관은 28개로, 이 중 20개 기관이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임.
 - 국무조정실 소관 연구개발목적기관은 24개 기관으로 모두 「정부출연기관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임.
- 연구개발목적기관의 부처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2>와 같음.

<표 III-2> 주무부처별 연구개발목적기관 분포(2020. 1월 기준)

(단위: 개)

주무부처	기관수	주무부처	기관수
교육부	1	해양수산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7	중소벤처기업부	1
국방부	1	국무조정실	24
문화체육관광부	1	원자력안전위원회	2
산업통상자원부	2	방위사업청	2
보건복지부	3	특허청	1
환경부	1	기상청	1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0. 1. 29.를 참고하여 작성

□ 2019년 대비 2020년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분포를 살펴보면, 6개 부처에서 산하 공공기관 수 변화가 발생함.

-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 3개 부처는 신규 공공기관 지정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소관 기관수가 1~2개 수준으로 증가함.
- 기상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는 공공기관 지정해제로 인해 전년대비 소관 공공기관 수가 1개씩 감소함.
- 2019년 대비 2020년 소관 공공기관에 변화가 있던 부처와 부처별 변동내역을 정리하면, <표 III-3>과 같음.

〈표 III-3〉 2019년 주무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수 변동 내역

구 분	기관수		전년대비 변동내역	
	'19년	'20년	제외(지정 해제)	추가(신규 지정)
기상청	3	2 (△1)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단	-
산업통상자원부	41	40 (△1)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
중소벤처기업부	12	11 (△1)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	-
농림축산식품부	11	12 (+1)	-	(재)축산환경관리원
보건복지부	25	27 (+2)	-	아동권리보장원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산림청	3	4 (+1)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0.1.29.를 참고하여 작성

나. 공공기관 설립형태

1) 설립 근거법령에 따른 설립형태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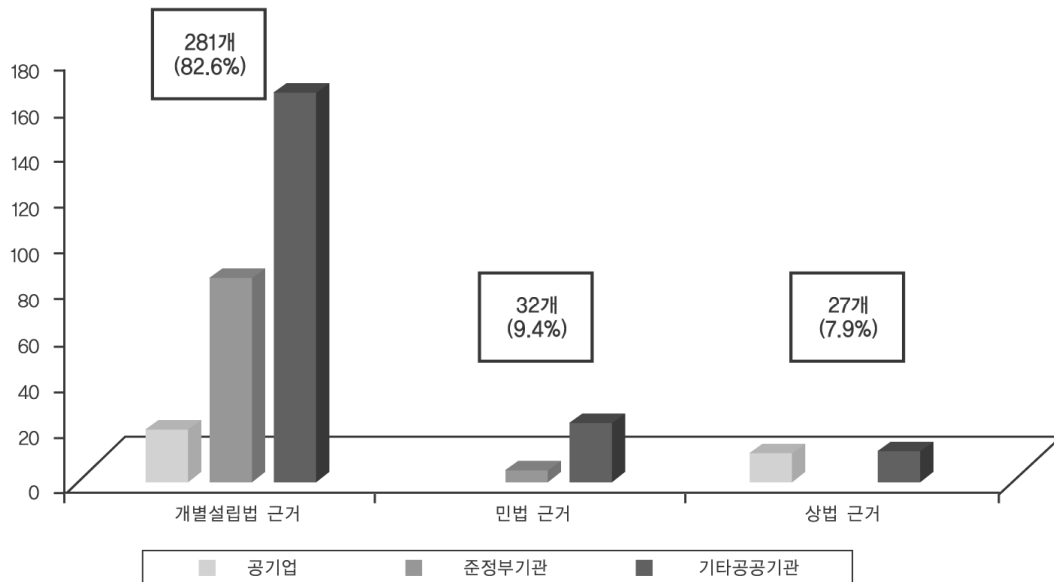
- 공공기관의 설립형태는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형태의 기관
 -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⁹¹⁾
- 공공기관 설립형태를 살펴보면, <그림 III-1>과 같음.
 - 340개 공공기관의 82.6%인 281개 기관이 개별설립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전체의 17.1% 미만임.
 - 공기업은 개별 설립근거법령 또는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됨.
 - 개별설립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기업은 전체 36개 기관 중 23개임.
 -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기업 13개 중 12개 기관은 한국가스공사(1개), 한국전력공사(9개), 한국철도공사(1개) 및 한국관광공사(1개)의 자회사에 해당함.⁹²⁾
 - 반면 준정부기관은 전체 95개 기관 중 89개 기관(93.7%)이 개별설립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임.
 -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없으며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은 6개 기관임.
 - 기타공공기관은 대부분의 기관(169개, 80.9%)이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따라 설립됨.
 - 「민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은 26개이며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은 14개임.

90) 기관별 설립근거는 <부록 2> 참고

91) 다른 법률에 설립근거 없이 상법에만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을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분류

92) <표 III-9>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 참고

〈그림 III-1〉 공공기관 설립형태 분포(설립근거법령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 일반현황'의 기관별 공시내용(2020. 4. 29.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형태의 공공기관은 281개(82.6%)로 법령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법률상 명문화된 기관 설립근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은 통상적으로 특수법인으로 일컬으며,⁹³⁾ 법령상 기관 설립근거는 특정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서 특정기관의 설립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조문에 근거하는 경우로 구분됨.
 -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등이 전자에 해당함.
 - 다른 법률에 설립근거 조항을 둔 기관으로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41조에 각각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 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 대표적임.
- 2020년 공공기관 중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관계법령 개정⁹⁴⁾에 따라 「민법」상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기관임.

93) 개별 법률에 설립근거는 있으나 법조문상 기관명이 명문화되지 않은 경우는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예: 한국벤처투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9에 따라 '전담회사'로 설립되었으나 해당 조문은 전담회사 설립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이므로 개별 설립근거법령으로 보기 힘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2018. 12. 18. 개정, 2019. 12. 19. 시행)을 통해 동법 제46조의2에 기관 설립근거를 마련함.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발명진흥법」 개정(2020. 2. 4. 개정, 2020. 8. 5. 시행)을 통해 동법 제55조의2에 기관 설립근거를 마련함.
- 2020년에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4개)은 모두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임.

□ 개별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형태의 공공기관은 32개 기관(9.4%, <표 Ⅲ-4>)임.

-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 중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31개 기관은 「민법」상 재단법인에 해당함.

<표 Ⅲ-4>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32개 기관)

구 분	기관명	
재단법인 (31개)	준정부기관 (6개)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기타 공공기관 (25개)	(재)APEC기후센터,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중소기업연구원,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재)한식진흥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노사발전재단, 재단법인 국악방송,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사단법인 (1개)	기타 공공기관 (1개)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 일반현황'의 기관별 공시내용(2020. 4. 29. 기준)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 설립형태 중 개별 설립근거법령이나 「민법」이 아닌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2019년과 마찬가지로 27개 기관(7.9%, <표 Ⅲ-5>)임.

- 「상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은 개별 설립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민간 부문의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임.
- 준정부기관 중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은 없음.
-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은 13개 공기업과 14개 기타공공기관임.
 - (주)강원랜드⁹⁴⁾ (주)한국건설관리공사⁹⁵⁾ 88관광개발(주)⁹⁶⁾ 등 3개 기관을 제외한 24개 기관은 공공기관 자회사로 모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표 III-5〉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27개 기관)

구 분	기관명
공기업 (13개)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주식회사 에스알, (주)강원랜드
기타공공기관 (14개)	(주)위더웨이플러스,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벤처투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주)한국건설관리공사, 88관광개발(주)

주: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 자회사가 아닌 기관(3개)은 이탤릭으로 처리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 일반현황'의 기관별 공시내용(2020. 4. 29. 기준)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2) 설립재원 조달방식에 따른 설립형태 구분

- ☐ 공공기관의 설립형태는 설립재원 조달방식에 따라 자본금을 출자받아 설립하는 기관과 이 외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자본금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민간 등으로부터 납입받은 자금으로 구성함.
 - 일부 기관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근거하여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주식 발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함.
 - 자본금 출자가 아닌 다른 재원조달 방식으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94) (주)강원랜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보유한株式이 36.3%(2019년 12월 기준)이나 사실상 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자회사로 구분하지 않음

95) (주)한국건설관리공사는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기관이므로 특정 기관의 자회사로 구분하지 않음

96) 88관광개발(주)는 국가보훈처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정부출자기관임

및 기타 민간 등의 출연을 통해 기본재산을 구성하여 기관을 설립하는 경우와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로 기관을 설립하는 경우⁹⁷⁾가 있음.

□ 외부기관의 출자를 통해 설립된 공공기관(<표 III-6>)은 전체 공공기관 중 64개 기관이며 2019년과 동일함.

- 64개 기관 중 공기업은 33개, 준정부기관은 7개, 기타공공기관은 24개 기관임.
 - 전체 공기업 36개 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마사회, 해양환경공단 등 3개 기관을 제외한 33개 공기업은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기관임.
- 64개 기관 중 46개 기관이 설립근거법령 또는 기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고 주식을 발행하고 있음.⁹⁸⁾
 - 기관은 설립근거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수만큼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출자자는 출자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됨.
- 주식을 발행하는 46개 기관 중 상장기관은 8개 기관임.
 -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전력 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 (주)강원랜드(이상 공기업), 중소기업은행(기타공공기관) 등이 이에 해당함.

<표 III-6>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공공기관(64개 기관)

구 분	주식 발행 기관(46개)	출자증권(증서) 교부 기관(18개)
공기업 (33개)	(주)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22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1개)

97)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4조 제1항에 규정에 따라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기관 설립 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함

98)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18개 공공기관의 출자자는 출자금에 해당하는 출자증권 또는 출자증서를 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음

구 분	주식 발행 기관(46개)	출자증권(증서) 교부 기관(18개)
준정부기관 (7개)	한국관광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2개)	대한무역투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5개)
기타공공기관 (24개)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주)위터웨이플러스, (주)한국건설관리공사, 88관광개발(주), 서민금융진흥원, 주택관리공단(주),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 (22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2개)

주: 상장 공공기관(8개)은 이탤릭으로 표시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1. 자본금 및 주주현황'의 기관별 공시내용(2020. 4. 29. 기준)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출자 주체는 정부, 「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자치
단체와 이 외 민간 등 기타로 구분할 수 있음(<표 III-7>).

○ 정부가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은 14개 기관임.

- 공기업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
광고진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7개 기관이 이에 해당함.
- 준정부기관 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3개 기관이 이에 해당함.
- 기타공공기관 중 88관광개발(주),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4개 기관이 이에 해당함.

○ 전체 지분 중 공공기관이 출자한 지분이 30% 이상인 기관은 35개 기관으로 이 중
26개 기관은 공공기관 자회사에 해당함.

-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보유한 지분이 50% 이상이거나 보유지분이 30~50% 미만
이나 지분 보유 공공기관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을 공공기관
자회사로 분류함.
- 공공기관 출자지분이 30% 이상인 기관 중 공공기관 자회사가 아닌 기관은 (주)강원

랜드, (주)한국건설관리공사(이상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상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 등 9개 기관임.

- 2018년 6월 9개 기관이 공동 출자⁹⁹⁾하여 설립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 공사는 2019년 중앙정부의 보유 지분이 추가됨에 따라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분이 2018년 말 84.1%에서 2019년 말 87.2%로 증가함.
- 한국예탁결제원은 2015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한국거래소의 자회사임.

〈표 Ⅲ-7〉 출자 주체별 보유지분 현황

(단위: %)

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출자 주체별 보유지분율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기타
(주)강원랜드	시장형 공기업	-	36.27	9.86	53.88
부산항만공사	시장형 공기업	87.31	12.69	-	-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장형 공기업	100	-	-	-
인천항만공사	시장형 공기업	80.7	19.3	-	-
한국가스공사	시장형 공기업	26.15	20.47	7.93	45.45
한국공항공사	시장형 공기업	100	-	-	-
한국광물자원공사	시장형 공기업	99.86	0.14	-	-
한국남동발전(주)	시장형 공기업	-	100	-	-
한국남부발전(주)	시장형 공기업	-	100	-	-
한국동서발전(주)	시장형 공기업	-	100	-	-
한국서부발전(주)	시장형 공기업	-	100	-	-
한국석유공사	시장형 공기업	100	-	-	-
한국수력원자력(주)	시장형 공기업	-	100	-	-
한국전력공사	시장형 공기업	18.2	40.78	-	41.02
한국중부발전(주)	시장형 공기업	-	100	-	-
한국지역난방공사	시장형 공기업	34.55	30.08	10.36	25.01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	100	-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준시장형 공기업	-	51	-	49
대한석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00	-	-	-
여수광양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71.2	28.8	-	-

99)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한국수출입은행 등 8개 공공기관(보유 지분율 84.1%)과 건설공제조합(보유 지분율 15.9%)가 공동 출자자임

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출자 주체별 보유지분율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기타
울산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87.3	12.7	-	-
주식회사에스알	준시장형 공기업	-	100	-	-
주택도시보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68.25	-	-	31.75
한국감정원	준시장형 공기업	49.4	30.6	-	20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86.85	13.13	-	0.0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00	-	-	-
한국수자원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93.16	6.76	0.08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준시장형 공기업	-	67.84	-	32.16
한국조폐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00	-	-	-
한국철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00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86.64	13.36	-	-
한전KDN(주)	준시장형 공기업	-	100	-	-
한전KPS(주)	준시장형 공기업	-	61.31	-	38.69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56.84	34	-	9.16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67.9	-	-	32.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00	-	-	-
한국관광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55.2	44.46	-	0.3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00	-	-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00	-	-	-
한국전력거래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99.99	-	-
(주)공영홈쇼핑	기타공공기관	-	50	-	50
(주)위터웨이플러스	기타공공기관	-	100	-	-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기타공공기관	-	100	-	-
88관광개발(주)	기타공공기관	100	-	-	-
새만금개발공사	기타공공기관	100	-	-	-
서민금융진흥원	기타공공기관	-	12.21	-	87.86
주택관리공단(주)	기타공공기관	-	100	-	-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공공기관	-	100	-	-
중소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52.16	10.68	-	37.16
코레일관광개발(주)	기타공공기관	-	60.8	-	39.2
코레일네트웍스(주)	기타공공기관	-	99	-	1
코레일로지스(주)	기타공공기관	-	97.27	-	2.73
코레일유통(주)	기타공공기관	-	100	-	-
코레일테크(주)	기타공공기관	-	97.98	-	2.02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기타공공기관	-	100	-	-

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출자 주체별 보유지분율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기타
한국벤처투자	기타공공기관	-	100	-	-
한국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100	-	-	-
한국수출입은행	기타공공기관	66.43	23.76	-	9.81
한국예탁결제원	기타공공기관	-	-	-	100
한국체육산업개발(주)	기타공공기관	-	100	-	-
한국투자공사	기타공공기관	100	-	-	-
한국해양진흥공사	기타공공기관	53.1	44.7	-	2.2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기타공공기관	19.26	67.9	-	12.84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기타공공기관	-	100	-	-

주: 출자 주체는 중앙정부(정부), 공공기관(「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및 기타(민간, 우리스주, 외국인투자자 등 포함)로 구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1. 자본금 및 주주현황'의 기관별 공시내용(2020. 4. 29.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을 설립근거법령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표 Ⅲ-8>),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27개)과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37개)으로 구분됨.

-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준정부기관은 7개 기관으로 모두 개별 설립근거법령이 있는 기관임.
-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공기업(33개) 중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은 20개 기관임.
 - 「상법」상 주식회사¹⁰⁰⁾인 공기업은 13개 기관으로 이 중 (주)강원랜드를 제외한 12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에 해당함.
-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기타공공기관(24개) 중 10개 기관이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임.
 - 상법상 주식회사인 기타공공기관은 14개 기관으로 (주)한국건설관리공사와 88관광개발(주)를 제외한 12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회사에 해당함.

100)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주식을 발행하는 기관을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분류함

〈표 III-8〉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구분(설립근거법령 기준)

구 분	공기업 (33개)	준정부기관 (7개)	기타공공기관 (24개)
개별 설립 법령 근거 (37개)	(주식 발행)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9)	(주식 발행) 한국관광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2)	(주식 발행) 새만금개발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의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8)
	(출자증권·증서 교부)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1)	(출자증권·증서 교부) 대한무역투자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5)	(출자증권·증서 교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2)
상법 근거 (27개)	(주식 발행) (주)강원랜드,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13)	-	(주식 발행)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주)위터웨이플러스, (주)한국건설관리공사, 88관광개발(주),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테크(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로지스(주),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벤처투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14)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1. 자본금 및 주주현황'의 기관별 공시내용(2019. 4. 30. 기준) 및 기관 정관을 참고하여 작성

다.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

- 2020년 1월 기준 340개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 자회사는 2019년과 마찬가지로 26개 기관이며 자회사를 보유한 공공기관은 10개 기관임(<표 Ⅲ-9>).
- 공공기관 자회사란 「공운법」에 근거한 공공기관 중 모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 자회사인 기관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였거나, 모기관의 소유지분이 50% 미만이나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임원임면권 등 실질지배력을 가진 공공기관을 의미함.
 - (주)강원랜드와 (주)한국건설관리공사와 같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분이 30~50% 사이이나 실질적 지배력이 확보되지 않은 기관은 자회사로 분류하지 않음.
- 자회사를 보유한 10개 기관의 공공기관 유형을 살펴보면, 5개 기관이 공기업 유형이고 준정부기관 유형이 3개 기관이며 기타공공기관 유형은 2개 기관임.
 - 5개 공기업은 에너지 및 SOC 분야 공기업에 해당함.¹⁰¹⁾
- 공공기관인 자회사가 있는 10개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3개 기관을 제외한 7개 기관은 공공기관인 자회사를 1개씩 보유하고 있음.
- 26개 공공기관 자회사 중 절반에 해당하는 13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 유형임.
 - 공공기관 자회사 중 공기업은 12개이고 준정부기관은 1개 기관(한국전력거래소)임.
 - 공기업 유형에 속하는 공공기관 자회사 중 9개 기관이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이고 나머지 3개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임.

<표 Ⅲ-9>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26개 기관)

모기업		공공기관 자회사인 기관(26개)	
기관명	유형	기관수	기관명
한국전력공사	시장형 공기업	11개	▪ (시장형 공기업)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전력거래소 ▪ (기타공공기관)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101) 자회사를 보유한 에너지 분야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2개 기관이며, SOC 분야 공기업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개 기관임

모기업		공공기관 자회사인 기관(26개)	
기관명	유형	기관수	기관명
한국가스공사	시장형 공기업	1개	▪ (준시장형 공기업)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철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6개	▪ (준시장형 공기업) 주식회사 에스알 ▪ (기타공공기관)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수자원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개	▪ (기타공공기관) (주)위터웨이플러스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개	▪ (기타공공기관) 주택관리공단(주)
한국관광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개	▪ (준시장형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개	▪ (기타공공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개	▪ (기타공공기관)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타 공공기관	1개	▪ (기타공공기관)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공공기관	1개	▪ (기타공공기관)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주. 1. 공공기관 자회사 중 「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국한하여 자료 작성

2. 주식회사 에스알은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한 지분은 41%로 50% 미만이나 한국철도공사가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자회사로 분류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3. 투자 및 출자현황'의 기관별 공시내용(2020. 4. 29.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라. 공공기관 부설기관 현황

□ 2020년 1월 현재 340개 공공기관 중 19개 기관이 23개 부설기관에 대한 경영정보를 알리오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으며 이는 2019년과 동일함.

○ 알리오시스템에 부설기관 정보를 공시한 19개 공공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 유형에 해당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임.

○ 19개 공공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과학기술원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각 1개의 부설기관을 설치하여 운영 중임.

- 한국과학기술원은 산하에 3개의 부설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2개 기관은 산하에 각 2개의 부설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일부 기관은 부설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알리오 시스템에 부설기관 정보를 공시하지 않음.
- 2020년 1월 현재 공공기관 부설기관 현황¹⁰²⁾을 요약하면, <표 III-10>과 같음.

〈표 III-10〉 공공기관 부설기관(분원) 현황(23개 기관)

부설기관명	주무부처	모기관인 공공기관	
		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육부	서울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기초과학연구원	기타공공기관
한국뇌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기타공공기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타공공기관
녹색기술센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타공공기관
고등과학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원	기타공공기관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재료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기계연구원	기타공공기관
국가핵융합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기타공공기관
세계김치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식품연구원	기타공공기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원자력의학원	기타공공기관
안전성평가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화학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02)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 부설기관을 대상으로 정리

부설기관명	주무부처	모기관인 공공기관	
		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서울요양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극지연구소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타공공기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수산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무조정실	국토연구원	기타공공기관
KDI국제정책대학원	국무조정실	한국개발연구원	기타공공기관
육아정책연구소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타공공기관
특허정보진흥센터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기타공공기관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 일반현황'의 기관별 공시내용(2019. 4. 30. 기준)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 부설기관을 설치한 공공기관의 대부분이 연구개발목적기관에 해당함.

○ 부설기관을 설치한 19개 공공기관 중 16개 기관이 연구기관에 해당함.

-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3개 기관은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임.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5개 기관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임.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 등 3개 기관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임.
-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5개 기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임.¹⁰³⁾

○ 연구기관이 아닌 기관은 3개 기관으로, 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학교병원은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고 한국특허정보원은 특허 분야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임.

□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부설기관(분원)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본원 정관에 규정되어 있음.¹⁰⁴⁾

103)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4개 기관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도 해당

104) 부설기관의 설립근거는 <부록 2> 참고

- 23개 부설기관 중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기관은 8개 기관임.
 - 나노종합기술원·한국과학영재학교(한국과학기술원 부설기관),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서울대학교병원 분원), 서울요양원(국민건강보험공단 부설기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부설기관), 세계김치연구소(한국식품연구원 부설기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기관), 한국뇌연구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설기관) 등이 이에 해당함.
 - 부설기관(분원)의 설치에 대한 사항¹⁰⁵⁾은 상급기관인 본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통상적으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 정관에서는 본원의 소재지 관련 조항이나 부설기관 운영에 대한 별도 조항을 통해 부설기관(분원)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공공기관의 부설기관(분원)은 독립된 법인 형태는 아니나 본원(또는 상급기관)과 분리되어 별도의 독립적 조직으로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예산·회계 및 인력·조직(인사) 관리상 독립성을 보장받음.
- 부설기관은 일반적으로 본원 정관과 별도로 부설기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며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등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함.
 - 예컨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정관」 제27조의3 제2항에서 분당병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병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분당병원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부설기관의 장과 임원은 본원 정관 및 직제 규정상 임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임.
 - 23개 공공기관 부설기관 중 부설기관의 장 및 임원이 본원의 임원에 해당하는 기관은 한국특허정보원(기타공공기관)의 부설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 1개 기관 뿐임.¹⁰⁶⁾
- 2021년에는 공공기관 부설기관 수가 현재 23개에서 20개로 감소할 예정임.
- 2020년 5월, 「과기출연기관법」 및 「정부출연기관법」 별표 개정(2020. 11. 20. 시행 예정)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인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와 한국

105) 부설기관 부지·건물의 확보, 인력·예산운영 등 사업추진계획 등

106) 한국특허정보원 정관 제5조(임원) 제1항 제3호에서 부설기관 소속 대표 3인(부설기관장 포함)은 한국특허정보원의 임원이 됨을 규정하고 있음

기초과학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 그리고 국무조정실 산하인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각각 독립법인으로 신설 출범될 예정임.

- 국내 첨단 원천소재 기술개발 및 실용화 역량을 결집하고, 연구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허브 및 리더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현재 한국기계연구원 부설인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하기로 함.
-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핵융합에너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인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승격하기로 함.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물리적 토대이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와 문화자긍심의 원천인 건축·도시공간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하여 국토연구원 부설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도시공간연구원'으로 승격하기로 함.
- 2020년 11월 말, 개정 「과기출연기관법」 및 「정부출연기관법」 시행에 따라 2020년 말 기준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수는 19개에서 21개로,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수는 23개에서 24개로 늘어날 예정임.
- 재료연구소, 국가핵융합연구소 및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공공기관 부설기관에서 제외될 예정임.

마. 공공기관의 지역별 분포 및 지방이전 현황¹⁰⁷⁾

1) 공공기관 지역별 분포 현황

- 2020년 9월 현재 340개 공공기관의 지역별 분포(<표 III-11>)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에 116개(34.1%) 공공기관이 소재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분포율을 보임.
- 공공기관 분포율이 높은 상위 5개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34.1%), 대전(10.3%), 경기(7.6%), 세종(6.5%), 부산(6.2%) 순이며 5개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전체 공공기관 중 64.6%를 차지함.
- 공공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17개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공기업은 광주, 세종, 충북, 전북을 제외한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107)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홈페이지(<http://innocity.molit.go.kr/v2/>)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 공기업은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소재 기관의 비중(7개 기관¹⁰⁸, 19.4%)이 낮는데, 이미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다수의 기관¹⁰⁹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였기 때문이다.
- 준정부기관은 수도권 지역 소재 기관 비중이 33.7%임.
- 기타공공기관은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나 여전히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에 소재한 기관이 전체의 49.3%를 차지함.
- 한국수목원관리원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경우, 소재지가 2019년(9월 기준)과 2020년(9월 기준)이 상이함.¹¹⁰
 - 한국수목원관리원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위치한 경북 봉화 지역에서 2020년 하반기 개원 예정인 국립세종수목원이 위치한 세종 지역으로 소재지를 이전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기관으로 당초 이전 예정일 보다 늦은 2019년 12월 말 충북 음성 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함.

〈표 III-11〉 지역별 공공기관 분포(2020. 9월 기준)

(단위: 개,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116 (34.1)	21 (6.2)	15 (4.4)	6 (1.8)	4 (1.2)	35 (10.3)	10 (2.9)	22 (6.5)	26 (7.6)	13 (3.8)	13 (3.8)	7 (2.1)	10 (2.9)	14 (4.1)	10 (2.9)	13 (3.8)	5 (1.5)
· 공기업 (36개)	5 (13.9)	3 (8.3)	2 (5.6)	2 (5.6)	0 (0.0)	4 (11.1)	3 (8.3)	0 (0.0)	2 (5.6)	3 (8.3)	0 (0.0)	2 (5.6)	0 (0.0)	4 (11.1)	3 (8.3)	2 (5.6)	1 (2.8)
· 준정부기관 (95개)	25 (26.3)	6 (6.3)	6 (6.3)	1 (1.1)	1 (1.1)	7 (7.4)	4 (4.2)	4 (4.2)	7 (7.4)	7 (7.4)	7 (7.4)	2 (2.1)	4 (4.2)	8 (8.4)	2 (2.1)	3 (3.2)	1 (1.1)
· 기타공공기관 (209개)	86 (41.1)	12 (5.7)	7 (3.3)	3 (1.4)	3 (1.4)	24 (11.5)	3 (1.4)	18 (8.6)	17 (8.1)	3 (1.4)	6 (2.9)	3 (1.4)	6 (2.9)	2 (1.0)	5 (2.4)	8 (3.8)	3 (1.4)

주: 1. () 안은 각 지역별 공공기관 비중

2. 공공기관별 상세 소재지(본사 기준)는 <부록 2> 참고

자료: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홈페이지(<http://innocity.molit.go.kr/v2/>)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 2020년 1월 신규로 지정된 3개 기관은 서울, 대전 및 세종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

○ 아동권리보장원은 2019년 7월 신설된 기관이고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108)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5개 기관은 서울에 소재하며 한국마사회 및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경기 지역에 소재함.

109) 공기업 중 지방 이전한 기관은 18개 기관임

110) 알리오시스템 '1. 일반현황'에 공시된 소재지 정보를 기준으로 비교

2019년 7월 (재)중앙자활센터와 한국자활연수원이 통합하여 신설된 기관으로 서울에 소재함.

- 2008년 7월 설립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주무부처인 산림청이 소재한 대전 지역에 위치함.
- 2015년 설립된 (재)축산환경관리원은 2019년 11월 대전에서 세종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임.
- 2019년 신규 지정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살펴보면 <표 III-12>와 같음.

〈표 III-12〉 2020년도 신규지정 공공기관 소재지

구 분	기관수	기관명
서 울	2개	아동권리보장원,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대 전	1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세 중	1개	(재)축산환경관리원

자료: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2)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2003년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함.
 - 2003년 정부의 기본구상 발표를 시작으로 2005년 혁신도시 및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지정·발표하였으며, 2007년 10개 혁신도시 및 세종특별시의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거쳐 개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함.¹¹¹⁾
 - 공공기관 이전대상 기관은 정부부처(소속조직 포함)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153개 기관으로 이 중 「공운법」상 공공기관은 108개 기관¹¹²⁾임.
-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전기관을 최대한 유사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일 기능군으로 분류하여 10개 혁신도시 및 세종특별시로 이전할 지역별 대상기관을 선정함.

111) 국토교통부,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 보도자료, 2019. 12. 25.

112) 당초 이전대상 기관(정부 소속기관 포함)은 154개로 이 중 공공기관은 109개였으나, 이 중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됨에 따라 2020년 공공기관 기준 108개 기관이 이전대상임

- 부산 혁신도시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해양수산 분야, 금융산업 분야, 영화진흥 분야의 공공기관이 이전대상 기관으로 선정됨.
 - 대구 혁신도시는 산업진흥 분야, 교육·학술진흥 분야, 가스산업 분야의 공공기관이 이전대상 기관으로 선정됨.
 -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전력산업 유관 공공기관과 농림수산 분야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으로 선정됨.
 - 울산 혁신도시로는 에너지산업 분야, 근로복지 및 산업안전 등 분야의 공공기관이 이전기로 함.
 - 강원 혁신도시로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광업진흥 및 관광 분야 공공기관과 건강생명 유관 공공기관이 이전기로 함.
 - 충북 혁신도시는 정보통신 분야 공공기관과 인력개발 및 과학기술 분야 유관 공공기관이 이전대상으로 선정됨.
 - 전북 혁신도시는 식품연구 관련 공공기관과 국민연금 관련 공공기관 등이 이전대상 으로 선정됨.
 - 경북 혁신도시로는 도로교통 관련 공공기관 등이 이전기로 함.
 - 경남 혁신도시로는 주택건설 관련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진흥 관련 공공기관, 그리고 국방·산업기술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기로 함.
 - 제주 혁신도시는 국제교류 관련 공공기관 등이 이전대상으로 선정됨.
 - 세종특별시로는 정부부처와 밀접한 업무관계가 있는 국책연구기관 등이 이전대상 으로 선정됨.
- 「공운법」상 지역별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표 Ⅲ-13>과 같으며 108개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2019년 12월 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충북 혁신도시 이전이 완료되며 마무리됨.
- 이로써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공공 기관 지방이전이 2003년 기본구상 발표 이후 16년 만에 모두 완료됨.

〈표 III-13〉 지역별 이전대상 공공기관 분포

(단위: 개)

구 분	합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이전대상 공공기관수	108	18	47	43
· 부산	11	한국남동발전(주)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대구	9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 광주/전남	13	한국전력공사 한전KPS(주) 한전KDN(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울산	7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 강원	10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관광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
· 충북	10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구 분	합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충남	2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	-
· 전북	6	-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 경북	8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
· 경남	10	한국남동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¹¹³⁾ 한국시설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주택관리공단(주)
· 제주	3	-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 세종	19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 정보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토연구원

주: 밑줄 친 기관은 2019년 중 지방이전을 완료한 기관임
 자료: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홈페이지(<http://innocity.molit.go.kr/v2/>)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113) 2016년 7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통합되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신설 출범함

3)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미매각 종전 부동산 현황

-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현재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¹¹⁴⁾ 중 매각되지 않은 부동산은 8건으로 <표 III-14>와 같음.
- 2019년 11월에서 2020년 7월 사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서초동 소재 부동산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안산 소재 부동산이 매각됨에 따라 미매각 종전 부동산은 10건에서 8건으로 감소함.
 - 미매각 부동산을 보유한 공공기관은 공기업 2개, 준정부기관 4개 및 기타공공기관 2개 기관이며, 미매각 부동산 8건 중 서울 소재 부동산이 4건, 경기도 소재 부동산이 4건임.
 - 국토교통부는 종전 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투자설명회 개최 등 홍보와 더불어 미매각 부동산의 매각 장애요인 개선, 매각방식 다양화, 부동산별 맞춤형 매각전략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음.¹¹⁵⁾

<표 III-14>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미매각 현황(2020. 7. 15. 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소재지	이전지역	면적(m ²)		매각 예정액
				부지	건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안양	광주/ 전남	376	1,413	48
한국광해관리공단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종로	강원	3,464	20,856	1,650
한국교육개발원	기타공공기관	서초	충북	60,037	12,353	74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서초	광주/ 전남	4,063	13,562	703
한국산업단지공단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구로	대구	7,396	27,494	1,016
한국예탁결제원	기타공공기관	고양	부산	6,928	22,976	506
한국전력기술(주)	공기업 (준시장형)	용인	경북	8,924	45,180	575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준시장형)	성남	경남	37,998	72,011	4,492

주: 매각예정액은 매각 대상인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균)평가액임
 자료: 국토교통부, 「종전 부동산 매각 현황(2020. 7. 15 기준)」, 2020. 7. 15.

114) 종전 부동산이란 수도권에 있는 이전 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함

115) 국토교통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보유 19개 종전부동산 새주인 찾는다」, 보도자료, 2019. 7. 2.

4)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 이전 공공기관은 2018년부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이전지역의 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고 있음.
- 여기서 지역인재는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의미함.
- 이전 공공기관은 기관별 채용규모, 이전 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채용 비율 및 기준 등에 따라 지역인재를 채용하여야 하며 정부는 매년 이전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함.
-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0조의2(이전 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및 <별표1>에 규정되어 있음.

〈표 III-15〉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단위: %)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채용비율	18.0	21.0	24.0	27.0	30.0

자료: 「혁신도시법 시행령」 <별표1>의 '1.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 최근 정부는 「혁신도시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채용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그간 혁신도시가 없어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을 받지 못하던 대전·충남 학생들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2019년 1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하여 이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법」 시행 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까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이에 후속하여 2020년 5월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0조의2 개정을 통해 신규 의무채용 대상범위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수도권에 소재하거나 있었던 기관의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받아 현재 지방에 있는 기관 등으로 규정함.
-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기관은 현재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과 동일한 체계를 따르게 되나, 기존 대상 기관과 시행시기의 차이가 있어 연도별 의무채용 비율은 다르게 적용함.

- 신규 대상기관에 적용되는 의무채용 비율은 「혁신도시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되어 있음.

〈표 Ⅲ-16〉 이전 공공기관을 제외한 의무채용 대상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단위: %)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이후
채용비율	18.0	21.0	24.0	27.0	30.0

자료: 「혁신도시법 시행령」 <별표1>의 '2. 이전공공기관을 제외한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 2020년 5월 27일 개최된 제27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기관은 총 21개 기관임.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15개 기관으로 과거에는 서울에 소재하였으나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대전, 세종 및 충남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임.
- 수도권에 소재하거나 했었던 기관의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받아 현재 지방에 있는 기관은 6개 기관으로 현재 부산, 대전 및 충북에 소재함.
 -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는 과거 정부부처였던 철도청의 이전(서울→대전) 후 업무를 분할 승계받아 2004년과 2005년 출범한 기관임.
 - 코레일테크(주)는 구 코레일트랙(대전 소재)과 구 코레일전기(서울 소재)가 통합하여 2004년 12월 신설된 기관으로 두 기관의 업무를 포괄 승계받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구 산업기술정보원(서울 소재)과 구 연구개발정보센터(서울 소재)가 통합하여 2001년 1월 신설된 기관으로 두 기관의 업무를 포괄 승계받음.
 - 기술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서울 소재)의 업무를 일부 이관받아 1989년 4월 신설된 기관임.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구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경기 소재)과 식품안전관리원(대전 소재)의 업무를 이관받아 2017년 2월 신설 출범한 기관임.
- 신규 대상기관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전 지역에 소재한 기관이 17개로 가장 많으며 이 외 부산, 세종, 충북 및 충남 지역에 소재한 기관은 각 1개 기관임.

〈표 Ⅲ-17〉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기관

구분	기관명	소재지	이전시기 또는 변경설립 시기	주무부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5개)	국방과학연구소	서울 → 대전	'83. 1월	방사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울 → 대전	'90. 7월	과기부
	한국수자원공사	서울 → 대전	'74. 10월	환경부
	한국조폐공사	서울 → 대전	'73. 4월	기재부
	한국한의학연구원	서울 → 대전	'04. 2월	과기부
	한국과학기술원	서울 → 대전	'89. 7월	과기부
	한국원자력연구원	서울 → 대전	'85. 12월	과기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 → 대전	'76. 5월	과기부
	한국화학연구원	서울 → 대전	'78. 4월	과기부
	한국가스기술공사	서울 → 대전	'10. 11월	산업부
	한국특허정보원	서울 → 대전	'14. 4월	특허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서울 → 대전	'13. 3월	중기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울 → 충남	'97. 5월	과기부
	한국향로표지기술원	서울 → 세종	'18. 2월	해수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서울 → 대전	'10. 2월	산림청
수도권에 소재하거나 했었던 기관의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받아 현재 지방에 있는 기관 (6개)	한국철도공사	대전	'05. 1월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대전	'04. 1월	국토부
	코레일테크(주)	대전	'04. 12월	국토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전	'01. 1월	과기부
	기술보증기금	부산	'89. 4월	중기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충북	'17. 2월	식약처

자료: 국토교통부, 「철도공사·수자원공사 등 21개 기관에서도 지역인재 뽑는다」, 보도자료, 2020. 5. 27.

□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 채용 실적¹¹⁶⁾을 살펴보면, 108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¹¹⁷⁾은 25.9%로 2019년 법정 채용비율인 21%를 초과하여 달성함.

116)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보도자료, 2020. 2. 19.

117)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률은 지역본부별 채용 등 의무채용 예외규정에 따른 인원을 제외한 의무 채용 대상 중 지역인재 채용인원으로 산출함

- 2019년 이전 공공기관의 총 신규채용은 1만 3,524명으로 이 중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채용 대상은 5,886명이었으며, 이 중 1,527명을 이전지역 출신 학생들로 채용함.
- 총 신규채용 중 의무채용 예외규정¹¹⁸⁾ 및 정규직 전환에 해당하는 채용인력은 7,638명임.
 - 의무채용 예외는 주로 지역본부·지사별 채용에 기인하였고, 이러한 기관들은 지역본부·지사 인원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여 본사 소재 지역(이전지역) 인재를 채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이전지역 인재 대신 지역본부·지사가 소재한 지역 출신 학생들을 많이 채용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실적을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의무채용 비율이 목표치인 21%를 모두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도시 중 지역인재 채용 풀(pool)이 가장 넓은 부산(35.7%)이 가장 높은 달성률을 보임.
 - 세종은 지역인재 채용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연구기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무채용 대상이 없음.
- 기관별 실적¹¹⁹⁾을 살펴보면, 전체 108개 기관 중 60개 기관은 목표를 달성했으며, 2개 기관은 신규 채용이 없었고 46개 기관은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이 없음.

〈표 Ⅲ-18〉 2019년 이전 지역별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적

(단위: 명, %)

이전 지역	기관 수	2018년도						2019년도					
		전체 신규 채용			지역인재 의무채용			전체 신규 채용			지역인재 의무채용		
		전체 채용 인원	지역 채용 인원	비율	대상 인원	채용 인원	비율	전체 채용 인원	지역 채용 인원	비율	대상 인원	채용 인원	비율
합계	109	14,324	2,006	14.0	6,076	1,423	23.4	13,524	2,084	15.4	5,886	1,527	25.9
부산	11	666	211	31.7	511	164	32.1	575	187	32.4	431	154	35.7
대구	9	655	171	26.1	512	142	27.7	687	169	24.5	426	122	28.7
광주· 전남	13	3,181	485	15.2	1,698	359	21.1	3,166	549	17.3	1,611	396	24.6

118) 연구·경력직(석·박사 학위, 직장경력 등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경우), 지역본부·지사별 채용(지역본부·지사 차원에서 별도로 인력 채용을 진행하거나 5년 이상 지역본부·지사 근무를 조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소수 모집(시험실시 분야별 연 채용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최저기준 미달(지역인재의 채용시험 점수가 이전 기관의 장이 정한 합격 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

119) <부록3> 참고

이전 지역	기관 수	2018년도						2019년도					
		전체 신규 채용			지역인재 의무채용			전체 신규 채용			지역인재 의무채용		
		전체 채용 인원	지역 채용 인원	비율	대상 인원	채용 인원	비율	전체 채용 인원	지역 채용 인원	비율	대상 인원	채용 인원	비율
울산	7	2,055	143	6.9	492	117	23.8	1,126	115	10.2	371	101	27.2
강원	11	2,878	290	10.1	497	145	29.1	3,196	293	9.2	650	166	25.5
충북	10	296	44	14.7	151	32	21.2	448	89	19.8	212	58	27.4
전북	6	1,208	164	13.6	610	119	19.5	1,024	154	15.1	400	102	25.5
경북	8	1,019	207	20.3	613	144	23.5	1,052	232	22.1	711	184	25.8
경남	10	1,437	221	15.3	816	165	20.2	1,487	226	15.2	822	185	22.5
제주	3	93	12	13.0	31	6	19.4	64	6	9.4	23	5	21.7
충남	2	308	43	14.0	146	32	21.9	358	65	18.0	230	55	23.9
세종	19	531	17	3.2	-	-	-	342	1	0.3	-	-	-

- 주: 1. 전체채용인원은 임원, 정규직, 정규직 전환된 인원 및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
 2. 지역채용인원은 채용인원 중 최종학력이 이전지역 고등·대학교인 인원
 3. 지역인재의무화 채용인원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예외를 제외한 인원 중 최종학력이 이전지역 고등·대학교인 신규채용 인원
 4. 국토교통부 발표자료 중 「공운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한국지방행정연구원(강원 지역 소재) 실적은 제외
 5. 기관별 지역인재 채용실적은 <부록3> 참고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보도자료, 2020. 2. 19.를 참고하여 작성

5)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별 지역발전계획 주요내용¹²⁰⁾

□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법」 제29조의3에 근거하여 이전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

○ 기관별 지역발전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 지역인재 채용 및 산학협력사업을 포함한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 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0) 국토교통부, 「국토부·이전기관 맞손, 올해 지역 발전사업 본격 추진」, 보도자료, 2020. 3. 24.

□ 2020년 3월 국토교통부는 이전 공공기관의 2020년 지역발전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함.

○ 국토교통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 153개 기관은 개별 혁신도시에서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 주민지원(지역공헌), 지역물품 우선구매 등 지역발전을 위해 총 8,717건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 특히 지역산업 육성(28.0%)과 지역경제 기여(31.1%, 지역물품 구매) 부문 투자가 다수 계획되어 있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전 공공기관이 10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2020년 중 추진할 지역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부산 혁신도시는 금융·해양 분야 이전 공공기관의 특성을 살린 지역발전 기여사업이 시행될 예정임.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설립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지원기금(BEFF) 10.4억원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임.

- 한국남부발전(주)는 중소기업 생산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공장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영화진흥위원회는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을 연계한 청소년영화교육 시범학교를 부산영도초등학교에 운영할 계획임.

○ 대구 혁신도시의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역공헌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한국가스공사는 노숙인, 쪽방거주민 등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임.

-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역주민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를 2019년(302대)에 이어 1,024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임.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구 지역 4개 학교 등과 협력해 2022년까지 총 3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행복기숙사 건립(4곳)을 추진할 계획임.

○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전력 분야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추진할 예정임.

- 한국전력공사는 57억원의 비용을 들여 광주시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12곳) 구축 사업을 추진함.

- 한국KPS(주)는 지역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임.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광주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을 위해 광주시와 함께 민관합의체를 운영하여 활성화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
- 울산 혁신도시는 에너지 분야 이전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기관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임.
 - 한국동서발전(주)는 울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의 국산화를 통해 울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근로복지공단은 혁신도시로 이전해 온 직원들의 육아를 위해 정부의 지원 없이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을 직접 건립할 계획임.
 - 한국에너지공단은 울산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 무료컨설팅을 연중 실시할 계획임.
- 강원 혁신도시는 관광지로서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발전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임.
 - 한국관광공사는 평창올림픽 준치시설을 활용한 방한 동계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임.
 - 국립공원공단은 치악산 구룡지구에 전기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마을주민, 노약자, 탐방객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할 계획임.
 - 한국광해관리공단과 대한석탄공사는 낙후된 탄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에코잡시티 태백'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충북 혁신도시는 교육 분야 공공기관이 다수 이전해 있는 지역으로 지역 교육수요 충족에 기여하고자 함.
 - 한국교육개발원은 지역 주민과 유관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연 등 찾아가는 생거진천 혁신대학을 운영할 계획임.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충북지식산업진흥원과 함께 충북대학교(오창)에 AR·VR 제작 인프라와 교육장을 구축할 계획임.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과 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KISDI 쏘카존을 운영하고자 함.
- 전북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별 기능과 특성에 맞는 지역사업을 전개할 계획임.
 - 한국식품연구원이 지역기업 및 연구기관·사업화지원기관 등과 식품분석기술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임.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 출판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 출판 콘텐츠 창작·유통·홍보 지원 등을 통해 지역출판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북대학교 등 지역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측량장비 등 장비운용 교육을 연중 실시할 계획임.
- 경북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산업 육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임.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첨단자동차검사 연구센터 건립, 드론 전용 비행장 조성 및 면허시험장 구축에 적극 참여하여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한국도로공사는 경북지역에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을 지역에 환원할 계획임.
- 경남 혁신도시는 지역주민 선호에 부합하는 다양한 지역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임.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남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공사용 지급자재를 우선 구매¹²¹⁾할 계획임.
 -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경남지역 상수도시설에 대해 지역기관 등과 상수도시설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 한국세라믹기술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공동으로 경남지역 혁신클러스터 산업육성을 위한 오픈랩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제주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과 합심하여 지역경제 활력에 주력할 예정임.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 대상 은퇴지원교육을 위해 지역 숙박업소 및 식당 등 시설을 임차하여 활용할 계획임.
 - 재외동포재단은 한글교육 취약지역의 차세대 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집중캠프를 실시할 계획임.

바. 공공기관 관리 기금 현황¹²²⁾

1) 공공기관 관리 기금 개요

☐ 정부는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별도의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121) 약 200억원 규모 전망

122) 기획재정부, 『2020 기금현황』, 2020. 4. 21. 참고

있을 때에 국한하여 「국가재정법」 제5조 및 동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기금이란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을 의미함.
 -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음.
 - 기금의 설치목적 및 운용형태에 따라 사회보험성 기금, 금융성 기금, 사업성 기금, 계정성 기금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¹²³⁾
-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으며 정부가 직접 설치하여 운용하거나 정부가 아닌 공공기관 등이 직접 설치하여 운용하기도 함.
 - 정부가 직접 설치한 기금 중 일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등 정부가 아닌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기도 함.
 - 예를 들어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 제101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하고 동법 제102조 제6항¹²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탁하고 있음.

□ 2020년 9월 현재 「국가재정법」 제5조 및 동법 <별표2>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은 총 67개로 <부록 4>와 같음.

- 2017년 국제질병퇴치기금과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이 신설된 이래 2020년 현재 까지 신규로 설치된 기금은 없음.
- 67개 기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성 기금이 6개, 금융성 기금이 8개, 사업성 기금이 48개, 계정성 기금이 5개임.
- 67개 기금의 관리방식을 살펴보면, 정부가 소속 조직이나 소관 위원회 등을 통해 직접 관리하는 기금은 23개로 67개 기금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함.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금은 총 35개로, 직접 관리하는 기금이 16개이고 공공기관이 정부를 대신하여 위탁 관리하는 기금은 19개임.
 -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공운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이 직접 설치하고 운용하는 기금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¹²⁵⁾으로, 농협중앙회가 기금의 주체임.

123) 기획재정부, 『2020 나라살림 개요』, 2020. 2. p. 283

124)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6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12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4조 제1항에 근거

-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이 기금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기금은 총 8개¹²⁶⁾이며, 위탁관리기관은 한국은행, 농협경제지주¹²⁷⁾,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손해보험협회¹²⁸⁾ 등 4개 기관이 있음.

□ 67개 기금 중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정부가 설치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위탁하여 관리하는 기금은 총 35개(<표 III-19>)로 전체 기금(67개) 중 52.2%를 차지함.¹²⁹⁾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금 중 사회보험성 기금은 3개, 금융성 기금은 6개, 사업성 기금은 26개임.¹³⁰⁾
 - 금융성 기금(6개)은 모두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음.
- 관리방식에 따라 구분해 보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기금은 16개이고, 공공기관이 정부를 대신하여 위탁 관리하는 기금은 19개¹³¹⁾임.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35개 기금은 16개 정부 부처 소관으로 부처별로는 1~5개 이내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음(<표 III-20>).
 -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관 기금 수가 5개로 정부 부처 중 설치 기금 수가 가장 많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각 4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음.
 -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고,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기금을 직접 또는 위탁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30개 기관으로 이 중 13개 기관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함.
 - 이 외 공기업이 2개 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8개 기관, 기타공공기관이 7개 기관임.

126)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외국환평형기금(이상 한국은행 위탁관리), 농어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축산발전기금(이상 농협경제지주 위탁관리), 수산발전기금(수협중앙회 위탁관리),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손해보험협회 위탁관리)

127) 「농협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농협중앙회로부터 분리되어 설립된 기관임

128) 「보험업법」 제175조(보험협회)에 근거하여 손해보험회사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와 손해보험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설립된 민간기관임

129) 공공기관이 직접 또는 위탁 관리하는 기금 현황 및 기금별 개요는 <부록 5>과 <부록 6> 참고

130)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금 중 계정성 기금은 없음

131) 원자력기금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과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 중이며,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각각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음

- 신용보증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등 6개 기관은 관리 기금이 2개이고 나머지 24개 기관¹³²⁾은 각 1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음.

〈표 Ⅲ-19〉 공공기관 관리 기금 현황

구 분	기금명	공공기관 관리방식	주무부처	공공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사회 보험성 기금 (3개)	공무원연금기금	직접관리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민연금기금	위탁관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직접관리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금융성 기금 (6개)	기술보증기금	직접관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무역보험기금	직접관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직접관리	기획재정부	신용보증기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신용보증기금	직접관리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	직접관리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직접관리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사업성 기금 (26개)	과학기술진흥기금	위탁관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직접관리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유재산관리기금	위탁관리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제교류기금	직접관리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기타공공기관
	국제질병퇴치기금	위탁관리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근로복지진흥기금	직접관리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남북협력기금	위탁관리	통일부	한국수출입은행	기타공공기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위탁관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32) 원자력기금 중 연구개발계정과 안전규제계정으로 구분하여 공공기관에 위탁되어 관리되고 있음. 원자력기금 중 연구개발계정은 한국연구재단이 위탁 관리하고, 안전규제계정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위탁 관리함

구 분	기금명	공공기관 관리방식	주무부처	공공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사업성 기금 (26개)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위탁관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기타공공기관
	농지관리기금	위탁관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대외경제협력기금	위탁관리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기타공공기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직접관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기타공공기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위탁관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방송통신발전기금	위탁관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통통신위원회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사학진흥기금	직접관리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기타공공기관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위탁관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위탁관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언론진흥기금	직접관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영화발전기금	직접관리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기타공공기관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위탁관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기타공공기관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기금	위탁관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전력산업기반기금	위탁관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시장형 공기업
	정보통신진흥기금	위탁관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주택도시기금	위탁관리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직접관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지역신문발전기금	위탁관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주: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관리되며 이 중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관리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0 기금현황』, 2020. 4. 21.를 참고하여 작성

〈표 Ⅲ-20〉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관리 기금 분포(2020년 기준)

(단위: 개)

주무부처	소관 기금	
	개수	기금명
문화체육관광부	5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 문화예술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농림축산식품부	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지관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산업통상자원부	4	무역보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과학기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관리), 정보통신진흥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기획재정부	3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3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금융위원회	3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교육부	2	사학진흥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외교부	2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고용노동부	1	근로복지진흥기금
국토교통부	1	주택도시기금
보건복지부	1	국민연금기금
통일부	1	남북협력기금
방송통신위원회	1	방송통신발전기금(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관리)
원자력안전위원회	1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인사혁신처	1	공무원연금기금
16개 부처	35개 기금	

주: 원자력기금은 2개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으므로 16개 부처의 소관 기금 수는 35개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0 기금현황』, 2020. 4. 21.를 참고하여 작성

2)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및 조성 규모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35개 기금의 운용 및 조성 규모를 살펴보면, <표 III-21>과 같음.

<표 III-21>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및 조성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기금명	공공기관 관리		기금 운용			기금 조성			
		관리 방식	공공기관명	'18 (실적)	'19 (실적)	'20 (계획)	'18말 (누계)	'19말 (누계)	'20계획 (당년)	'20계획 (누계)
2020년도 기금 전체(67개 기금)				5,762,678	6,335,893	7,247,626	17,210,805	18,155,225	1,258,994	19,414,219
공공기관 관리 기금 전체(35개 기금)				2,965,092	3,115,345	3,215,480	9,773,412	10,337,517	494,400	10,831,917
사회 보험성 기금 (3개)	공무원연금기금	직접	공무원 연금공단	218,045	209,621	229,758	103,523	100,240	△172	100,068
	국민연금기금	위탁	국민연금 공단	1,350,128	1,454,176	1,329,189	5,655,446	6,063,088	405,366	6,468,45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직접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90,137	93,280	124,312	184,561	207,045	12,682	219,727
	사회보험성 기금 소계			1,658,310	1,757,077	1,683,259	5,943,530	6,370,373	417,876	6,788,249
금융성 기금 (6개)	기술보증기금	직접	기술보증 기금	30,670	28,510	27,686	16,761	16,751	△1,264	15,487
	무역보험기금	직접	한국무역 보험공사	31,900	30,662	37,423	14,766	19,696	1,474	21,170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직접	신용보증 기금	7,027	6,488	6,570	7,754	8,027	359	8,386
	신용보증기금	직접	신용보증 기금	81,187	77,544	76,427	50,909	53,377	△4,899	48,478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직접	예금보험 공사	58,989	26,436	40,503	△33,632	△31,769	11,893	△19,876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	직접	한국주택 금융공사	40,244	56,582	65,760	90,110	100,142	6,373	106,515
	금융성 기금 소계			250,017	226,222	254,369	146,668	166,224	13,936	180,160
사업성 기금 (26개)	과학기술진흥기금	위탁	한국연구 재단	1,751	1,818	2,625	298	396	50	446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직접	국민체육 진흥공단	19,796	29,708	26,073	16,225	25,012	3,427	28,439
	국유재산관리기금	위탁	한국자산 관리공사	13,619	19,772	16,095	14,585	9,386	△2,955	6,431
	국제교류기금	직접	한국국제 교류재단	2,079	1,503	1,936	1,975	1,864	34	1,898

구 분	기금명	공공기관 관리		기금 운용			기금 조성			
		관리 방식	공공기관명	'18 (실적)	'19 (실적)	'20 (계획)	'18말 (누계)	'19말 (누계)	'20계획 (당년)	'20계획 (누계)
사업성 기금 (26개)	국제질병퇴치기금	위탁	한국국제 협력단	827	868	1,004	449	460	△136	324
	근로복지진흥기금	직접	근로복지 공단	3,082	3,411	3,552	3,842	4,055	140	4,195
	남북협력기금	위탁	한국수출입 은행	6,411	4,008	19,027	29,606	29,741	2,319	32,060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위탁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23,852	23,390	24,808	39,286	38,407	△554	37,853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	위탁	농업정책 보험금융원	1,782	4,136	4,988	1,676	617	1,172	1,789
	농지관리기금	위탁	한국농어촌 공사	38,680	35,017	32,642	86,031	90,300	3,050	93,350
	대외경제협력기금	위탁	한국수출입 은행	9,224	12,781	14,125	54,585	62,085	9,894	71,979
	문화예술진흥기금	직접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3,152	4,321	5,439	921	1,604	651	2,255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위탁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41,787	48,480	57,196	67,745	73,130	3,920	77,050
	방송통신발전기금	위탁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11,874	12,429	12,085	5,541	4,354	△2,381	1,973
	사학진흥기금	직접	한국사학 진흥재단	5,319	3,983	5,605	15,291	15,829	1,240	17,069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위탁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1,749	2,033	2,203	827	755	△348	407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위탁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29,878	33,533	33,087	2,003	3,456	-	3,456
	언론진흥기금	직접	한국언론 진흥재단	251	291	313	36	75	26	101
	영화발전기금	직접	영화진흥 위원회	2,933	2,637	2,695	3,556	3,472	△391	3,081
	원자력기금 (전체 계정)	위탁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 안전재단	3,887	4,342	4,647	1,256	1,699	85	1,784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위탁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6,608	6,647	5,999	12,370	13,081	11	13,092

구 분	기금명	공공기관 관리		기금 운용			기금 조성			
		관리 방식	공공기관명	'18 (실적)	'19 (실적)	'20 (계획)	'18말 (누계)	'19말 (누계)	'20계획 (당년)	'20계획 (누계)
사업성 기금 (26개)	전력산업기반기금	위탁	한국전력 공사	33,275	31,536	49,696	50,964	55,649	7,021	62,670
	정보통신진흥기금	위탁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12,128	12,731	11,377	7,084	4,890	△2,447	2,443
	주택도시기금	위탁	주택도시 보증공사	693,213	745,935	844,191	3,081,926	3,163,386	26,795	3,190,181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직접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89,510	86,634	96,340	185,115	197,188	11,975	209,163
	지역신문발전기금	위탁	한국언론 진흥재단	98	102	104	21	29	△10	19
	사업성 기금 소계			1,056,765	1,132,046	1,277,852	3,683,214	3,800,920	62,588	3,863,508

주: 1. 기금운용은 기금수입 중 수납순액을 의미

2. 기금조성은 총 조성액에서 사용액을 제외한 순조성액을 의미

3. 원자력기금은 한국연구재단이 위탁관리하는 원자력연구개발계정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위탁관리하는 원자력 안전규제계정을 합산하여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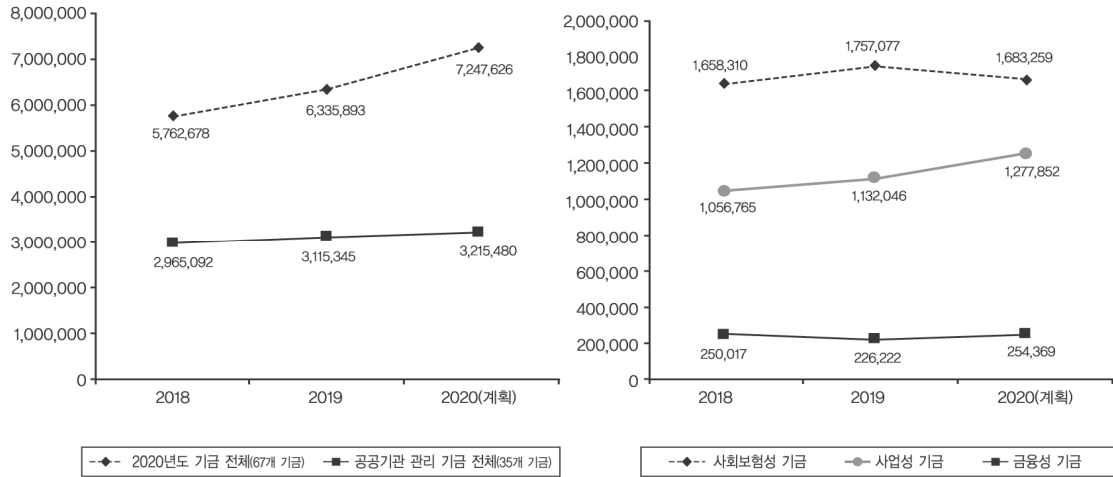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20 기금현황』, 2020. 4. 21.를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최근 3년간 운용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III-2>와 같음.

-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규모는 기금 전체(67개 기금)와 비슷한 추이를 보임.
 - 전체 기금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는 2019년보다 가파르게 운용 규모가 증가함.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35개 기금도 2020년까지 운용 규모가 꾸준히 증가함.
- 기금 유형별 운용 규모 추이는 유형별로 모두 상이한 모습을 보임.
 - 사회보험성 기금은 국민연금기금의 영향으로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9.9조원이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7.4조원이 감소하였음.
 - 금융성 기금은 2019년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 2020년에는 2018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운용규모가 증가함.
 - 사업성 기금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이 위탁 관리하는 남북협력기금은 2019년 대비 2020년 증가율이 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2〉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규모 추이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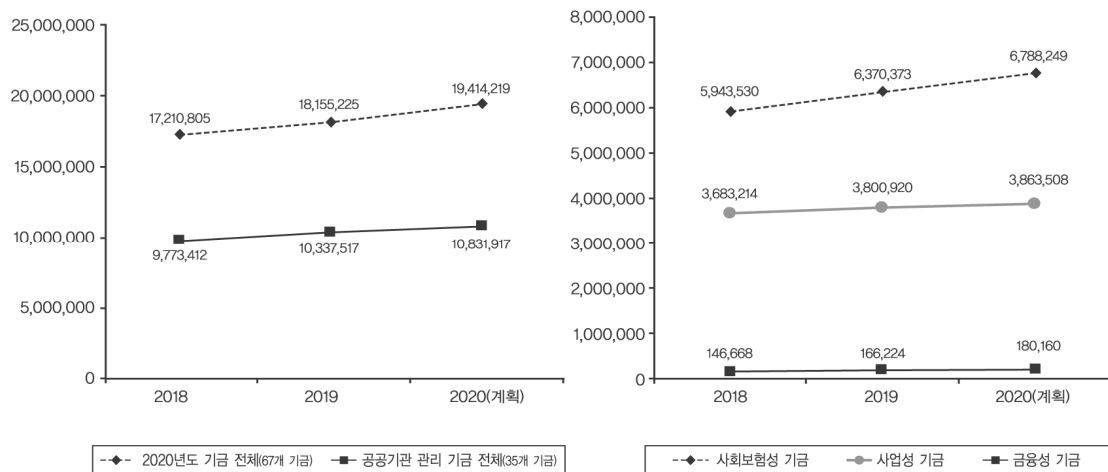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20 기금현황』, 2019. 4. 21.를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최근 3년간 기금 조성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Ⅲ-3>과 같음.

- 기금 조성 규모는 전체 기금과 공공기관 관리 기금 모두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이러한 증가 추세는 기금 유형별 조성 규모 추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 사회보험성 기금과 금융성 기금, 사업성 기금 모두 조성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과 2020년 증가세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Ⅲ-3〉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조성 규모 추이

(단위: 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2020 기금현황』, 2020. 4. 21.를 참고하여 작성

-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관리 기금이 전체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매 회계연도별 공공기관 관리 기금 중 기금 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표 Ⅲ-22>)과 같음.
- 기금 운용 규모 측면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67개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에 소폭 하락(51.5% → 49.2%)하였으며, 2020년 계획상 규모는 큰 폭으로 하락(49.2% → 44.4%)하는 모습임.
 - 전체 기금 조성 규모에서 공공기관 관리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기금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및 조성에 있어 기금 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사회보험성 기금이 최근 3개년 모두 50% 이상을 차지하여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사업성 기금은 40% 내외를 차지하고 금융성 기금은 10%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여 3개 유형 중 비중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 관리 기금 대비 기금 유형별 비중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기금 운영 규모와 기금 조성 규모의 비중 추이가 다른 모습을 보임.
 - 기금 운용 규모 측면에서 공공기관 관리기금의 기금 유형별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사회보험성 기금은 2019년 소폭 상승(0.5%p)했다가 2020년에는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4.1%p)하였고 사업성 기금은 2019년 비중이 소폭 증가(0.7%p)했다가 2020년에 크게 증가(3.4%p)하였음.
 - 기금 조성 규모 측면에서 공공기관 관리기금의 기금 유형별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사회보험성 기금과 금융성 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고 사업성 기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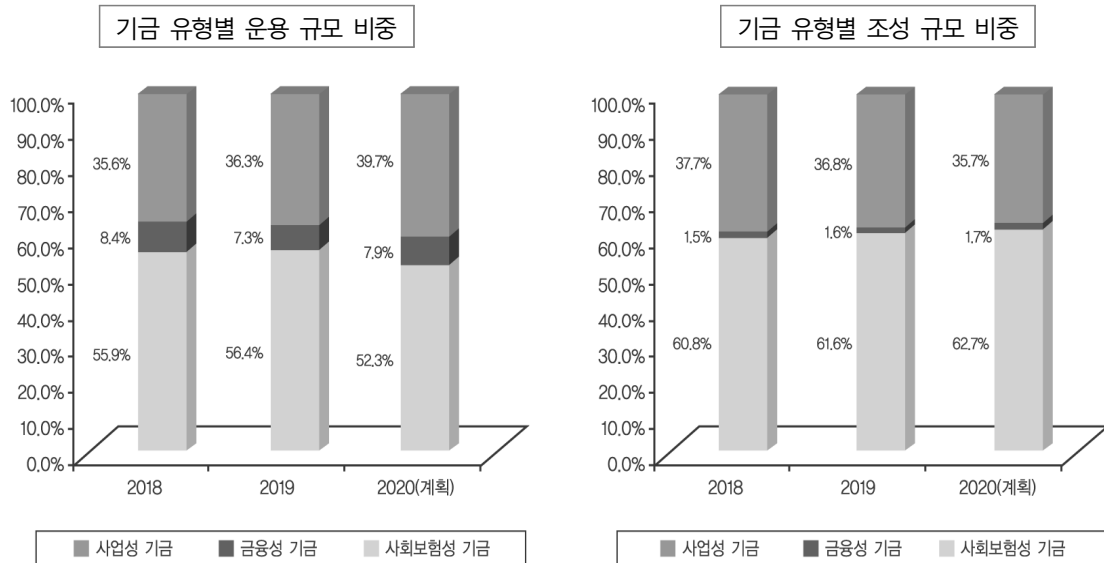
〈표 Ⅲ-22〉 공공기관 관리 기금 비중(기금 운용 및 조성 규모)

(단위: %)

구 분	기금 운용			기금 조성			
	'18 (실적)	'19 (실적)	'20 (계획)	'18말 (누계)	'19말 (누계)	'20계획 (당년)	'20계획 (누계)
1. 전체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기금 비중							
▪ 35개 공공기관 관리기금	51.5	49.2	44.4	56.8	56.9	39.3	55.8
2. 공공기관 관리 기금 중 기금유형별 비중							
▪ 사회보험성 기금	55.9	56.4	52.3	60.8	61.6	84.5	62.7
▪ 금융성 기금	8.4	7.3	7.9	1.5	1.6	2.8	1.7
▪ 사업성 기금	35.6	36.3	39.7	37.7	36.8	12.7	35.7

자료: 기획재정부, 『2020 기금현황』, 2020. 4. 21.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4〉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유형별 운용 및 조성 규모 비중



자료: 기획재정부, 『2020 기금현황』, 2020. 4. 21.를 참고하여 작성

3)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규모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35개 기금의 자산규모와 2019년 결산 기준 자산 구성항목별 규모를 살펴보면, <표 Ⅲ-23>과 같음.

〈표 Ⅲ-23〉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기금명	공공기관 관리방식		'18말 (실적)	'19말(실적)				
		방식	공공기관명		합계	금융 자산	정부 내부거래	부동산	기타
2020년도 기금 전체(67개 기금)				18,041,205	20,023,619	12,365,585	6,646,548	183,048	828,436
공공기관 관리 기금 전체(35개 기금)				9,487,270	10,653,127	10,050,062	182,839	124,526	295,699
사회 보험성 기금 (3개)	공무원연금기금	직접	공무원 연금공단	182,138	188,770	88,900	100	49,656	50,144
	국민연금기금	위탁	국민연금 공단	6,389,118	7,367,754	7,361,650	-	-	6,10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직접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192,565	214,495	183,619	-	21,764	9,112
	사회보험성 기금 소계			6,763,821	7,771,019	7,634,169	100	71,420	65,330

구 분	기금명	공공기관 관리방식		'18말 (실적)	'19말(실적)				
		방식	공공기관명		합계	금융 자산	정부 내부거래	부동산	기타
금융성 기금 (6개)	기술보증기금	직접	기술보증 기금	29,422	29,535	22,275	1,950	1,387	3,923
	무역보험기금	직접	한국무역 보험공사	43,264	41,176	34,633	-	1,593	4,950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직접	신용보증 기금	8,243	8,624	8,585	-	-	39
	신용보증기금	직접	신용보증 기금	78,187	80,789	66,712	-	4,606	9,471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직접	예금보험 공사	41,485	35,845	5,577	-	-	30,268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	직접	한국주택 금융공사	78,213	89,396	81,061	-	-	8,335
	금융성 기금 소계			278,814	285,365	218,843	1,950	7,586	56,986
사업성 기금 (26개)	과학기술진흥기금	위탁	한국연구 재단	284	399	399	-	-	-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직접	국민체육 진흥공단	30,793	36,109	3,974	5,700	3,410	23,025
	국유재산관리기금	위탁	한국자산 관리공사	14,676	12,577	9,557	3,000	-	20
	국제교류기금	직접	한국국제 교류재단	1,997	2,005	975	900	44	86
	국제질병퇴치기금	위탁	한국국제 협력단	449	460	460	-	-	-
	근로복지진흥기금	직접	근로복지 공단	4,843	5,321	3,661	600	817	243
	남북협력기금	위탁	한국수출입 은행	29,606	29,741	28,153	-	589	999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위탁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39,704	38,690	4,703	-	2,686	31,301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	위탁	농업정책 보험금융원	1,676	617	617	-	-	-
	농지관리기금	위탁	한국농어촌 공사	130,655	136,358	79,269	18,616	29,843	8,630
	대외경제협력기금	위탁	한국수출입 은행	54,892	62,116	318	-	-	61,798
	문화예술진흥기금	직접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5,682	6,746	2,143	-	4,529	74

구 분	기금명	공공기관 관리방식		'18말 (실적)	'19말(실적)				
		방식	공공기관명		합계	금융 자산	정부 내부거래	부동산	기타
사업성 기금 (26개)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위탁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67,745	73,130	31,984	15,000	-	26,146
	방송통신발전기금	위탁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8,406	7,400	2,944	3,500	428	528
	사학진흥기금	직접	한국사학 진흥재단	15,528	16,102	15,921	-	173	8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위탁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1,039	1,136	861	120	-	155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위탁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65,057	74,395	71,688	-	300	2,407
	언론진흥기금	직접	한국언론 진흥재단	96	60	59	-	-	1
	영화발전기금	직접	영화진흥 위원회	5,099	5,133	3,241	1,690	110	92
	원자력기금 (전체 계정)	위탁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 안전재단	1,256	1,699	1,699	-	-	-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위탁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12,381	13,090	615	-	-	12,475
	전력산업기반기금	위탁	한국전력 공사	50,964	55,649	13,034	40,300	-	2,315
	정보통신진흥기금	위탁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7,505	5,162	2,353	2,500	-	309
	주택도시기금	위탁	주택도시 보증공사	1,713,139	1,821,892	1,731,358	88,863	-	1,670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직접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181,145	190,728	187,036	-	2,591	1,101
	지역신문발전기금	위탁	한국언론 진흥재단	18	28	28	-	-	-
사업성 기금 소계				2,444,635	2,596,743	2,197,050	180,789	45,520	173,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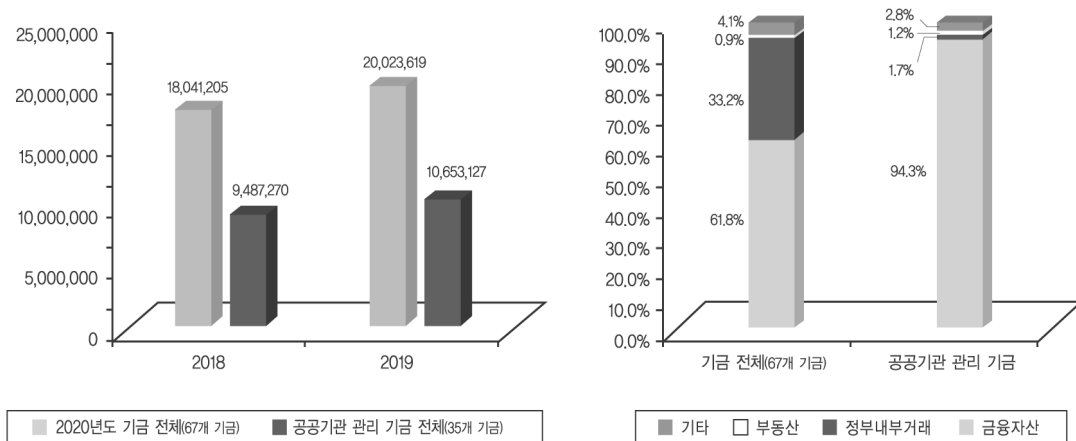
- 주. 1. 금융자산은 한은 예치, 예금은행 예치, 비통화 금융기관(채권, 주식 이 외), 채권, 주식, 기타 민간융자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
 2. 정부내부거래는 타회계 및 타기금 위탁금을 합산한 금액
 3. 기타 자산은 금융자산, 정부내부거래 및 부동산을 제외한 무형자산 등을 합산한 금액
 4. 원자력기금은 한국연구재단이 위탁관리하는 원자력연구개발계정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위탁관리하는 원자력 안전규제계정을 합산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2020 기금현황』, 2020. 4. 21.를 참고하여 작성

- 2018년 대비 2019년 말 기금 자산 규모는 전체 기금과 35개 공공기관 관리 기금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III-5>).
- 67개 전체 기금은 전년대비 증가율이 11.0%이고 35개 공공기관 관리 기금은 12.3%로 급격한 증가세가 나타남.
 - 2018년 전체 기금 자산의 증가율은 3.9%이고 공공기관 관리 기금 자산의 증가율은 3.5%임.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금의 유형별 자산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사회보험성 기금, 금융성 기금과 사업성 기금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전체 기금과 35개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 구성항목별 분포를 살펴보면, 금융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유사하나 구성항목별 비중은 큰 차이를 보임.¹³³⁾
 - 67개 기금의 자산 중 금융자산이 61.8%, 정부내부거래가 33.2%, 부동산이 0.9%, 기타 항목이 4.1%를 차지함.¹³⁴⁾
 - 반면, 공공기관 관리 기금은 금융자산이 94.3%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기타 항목이 2.8%, 나머지 정부내부거래와 부동산은 각각 1.7%, 1.2%를 차지함.

〈그림 III-5〉 기금 자산 규모 및 구성항목별 비중

(단위: 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2020 기금현황』, 2020. 4. 21.를 참고하여 작성

133) 금융자산은 한은 예치, 예금은행 예치, 비통화 금융기관(채권, 주식 이 외), 채권, 주식, 기타 민간용자 등으로 구성됨

134) 정부내부거래는 타 회계나 타 기금 위탁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기타 항목은 금융자산, 정부내부거래 및 부동산을 제외한 무형자산 등을 합산한 금액임

- 2018년 대비 2019년말 공공기관 관리 기금 자산 규모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III-24>).
- 67개 전체 기금의 자산 중 35개 공공기관 관리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52.6%에서 2019년 53.2%로 증가함.
 - 2018년과 2019년 자산 중 각 기금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사회보험성 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금융성 기금이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함(<그림 III-6>).
 - 사회보험성 기금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금융성 기금과 사업성 기금은 전년대비 비중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 관리 기금을 기금 유형별로 구분하여 자산 구성내역을 비교해보면, 항목별 비중 분포상 차이를 보임(<표 III-24>).
- 사회보험성 기금은 금융자산이 98.2%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부동산이 0.9%, 기타 항목이 0.8%를 차지함.
 - 사회보험성 기금은 정부 내부거래가 0%임.
 - 금융성 기금은 금융자산이 76.7%를 차지하고 기타 항목이 20.0%를 차지함.
 - 다른 기금 유형은 기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나 금융성 기금은 20.0%로 다소 높은 수준임.
 - 이 외 부동산이 2.7%, 정부 내부거래가 0.7%를 차지함.
 - 사업성 기금도 금융성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편으로 84.6%를 차지함.
 - 사업성 기금은 다른 기금 유형에 비해 타 회계나 타 기금의 예탁 등 정부내부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7.0%)이 다소 높음.
 - 이 외 기타 항목이 6.7%, 부동산이 1.8%를 차지함.

〈표 III-24〉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 규모 비중

(단위: %)

구 분	자산 규모 비중		'19말(실적) 자산 구성항목별 비중			
	'18말 (실적)	'19말 (실적)	금융 자산	정부 내부거래	부동산	기타
1. 전체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기금 비중						
▪ 35개 공공기관 관리기금	52.6	53.2	81.3	2.8	68.0	35.7
2. 공공기관 관리 기금 중 기금유형별 비중						
▪ 사회보험성 기금	71.3	72.9	76.0	0.1	57.4	22.1
▪ 금융성 기금	2.9	2.7	2.2	1.1	6.1	19.3
▪ 사업성 기금	25.8	24.4	21.9	98.9	36.6	58.6
3. 공공기관 관리 기금 유형의 자산 내역별 비중						
▪ 사회보험성 기금	-	-	98.2	0.0	0.9	0.8
▪ 금융성 기금	-	-	76.7	0.7	2.7	20.0
▪ 사업성 기금	-	-	84.6	7.0	1.8	6.7

주: 1. '전체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기금 비중'은 67개 기금 대비 35개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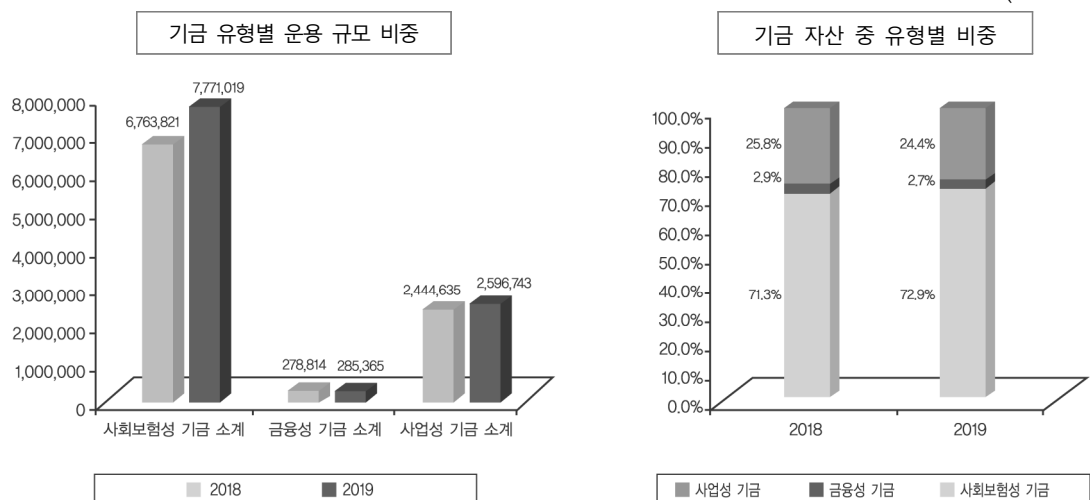
2. '공공기관 관리 기금 중 기금유형별 비중'은 당해 연도 자산 규모에서 각 기금유형이 차지하는 비중(금융자산, 정부내부거래, 부동산, 기타 등도 자산 내역별 소계에서 각 기금 유형별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3. '공공기관 관리 기금 유형의 자산 내역별 비중'은 2019년 각 유형별 자산규모 중 금융자산, 정부내부거래, 부동산, 기타 등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

자료: 기획재정부, 『2020 기금현황』, 2020. 4. 21.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6〉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유형별 자산 규모 비교

(단위: 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2020 기금현황』, 2020. 4. 21.를 참고하여 작성

사. 상장 공공기관 현황¹³⁵⁾

- 공공기관 중 일부기관의 경우 주식발행을 통해 자본금을 형성하여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기관이 있으며, 그중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 상장된 공공기관은 8개 기관이 있음.
- 상장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공운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한국거래소가 정한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규정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일반기업의 상장은 규모요건, 분산요건, 경영성과 요건, 안정성 및 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나, 공공기관을 상장하는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1조 제1항의 ‘공적법인 등과 지주회사에 관한 특례’를 적용함.
 -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특례에 따라 공공법인과 민영화 대상 공기업은 양도제한 요건만을 적용하고,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은 분산요건, 양도제한 요건만을 적용하고 있음.
- 2020년 기준으로 상장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인 중소기업은행을 제외한 7개 기관이 공기업에 해당함.
 - 상장 공기업 7개 중 시장형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주)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개 기관이고, 준시장형 공기업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 등 3개 기관임.
 - 주무부처별로 분류해보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강원랜드,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 등 6개 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이고, 나머지 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중소기업은행은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임.
 - 8개 상장 공공기관에 대한 개요는 <표 III-25>와 같음.

135)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결산서(2019) 및 사업보고서(2019) 참고

〈표 III-25〉 상장 공공기관 개요

(단위: 명, 백만원)

기관명	부처	유형	설립연도 (설립근거(법))	상장일	임직원 총계	총자산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시장형 공기업	1982년 (「한국전력공사법」)	1989.08.10.	23,331	197,597,792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시장형 공기업	1983년 (「한국가스공사법」)	1999.12.15.	4,272	39,311,855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시장형 공기업	1985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	2010.01.29.	2,129	5,892,614
(주)강원랜드	산업통상자원부	시장형 공기업	1998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2003.09.04.	3,744	4,438,119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산업통상자원부	준시장형 공기업	1975년 (「상법」 제317조)	2009.12.24.	2,371	735,207
한전KPS(주)	산업통상자원부	준시장형 공기업	1984년 (「상법」 제317조)	2007.12.24.	6,601	1,359,433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문화체육관광부	준시장형 공기업	2005년 (「상법」 및 카지노 영업허가)	2009.11.19.	1,880	909,431
중소기업은행	금융위원회	기타 공공기관	1961년 (「중소기업은행법」)	2003.12.24.	13,339	318,111,038

주: 임직원 총계(상임임원+정규직 정원+무기계약직 정원)와 총자산은 2019년 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20. 4. 30. 기준) 및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 상장 공공기관의 소유구조를 살펴보면, (주)강원랜드를 제외한 7개 상장 공공기관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보유 지분율이 40% 이상을 차지함.

○ (주)강원랜드는 공공기관의 보유 지분이 전체의 36.27%를 차지함.

-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주)강원랜드의 전체 주식 중 36.27%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 기관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출자회사 성격을 지님.

○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상장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소기업은행이며, 이 중 중소기업은행은 정부 보유지분이 52.16%로 다른 기관에 비해 정부 지분율이 높음.

- 이 외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등 4개 기관은 정부 지분 없이 공공기관과 지자체·외국인·기타주주 등으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음.

- 상장 공공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는 한국전력공사가 해당 기관의 지분을 일정 비율 보유하고 있음.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와 한전KPS(주)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지분율이 각각 65.77%, 51%를 차지함.

〈표 III-26〉 상장 공공기관의 주식 소유 현황

(단위: %)

기관	정부	공공기관		기타	
한국전력공사	18.20	한국산업은행 국민연금공단	32.90 7.88	외국인 기타	24.12 16.90
한국가스공사	26.15	한국전력공사	20.47	지자체 우리사주조합 외국인 자기주식 일반주주	7.93 3.32 11.20 5.07 25.96
한국지역난방공사	34.55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19.55 10.53	서울시 우리사주조합 일반	10.36 4.12 20.89
(주)강원랜드	-	한국광해관리공단	36.27	강원도개발공사 자사주 지자체 기타	4.89 5.24 9.86 43.75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65.77 2.07	기타	32.16
한전KPS(주)	-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51.00 10.31	우리사주조합 기타	0.26 38.43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한국관광공사	51.00	기타주주	49.00
중소기업은행	52.16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8.50 2.18	기타주주	37.16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20. 4. 30. 기준),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보고서(2019)를 참고하여 작성

- 상장 공공기관 중 납입자본금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중소기업은행으로 납입자본금이 약 3조 3,756억원 규모이고, 납입자본금이 가장 작은 상장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로 약 76억원 규모임.

- 한국전력공사와 중소기업은행은 납입자본금이 3조원 이상임.

- 반면에 납입자본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100억원 이하) 기관으로는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와 한전KPS(주)가 있음.

〈표 III-27〉 상장 공공기관의 납입자본금 및 주식의 총수

(단위: 백만원, 주)

기관	납입자본금	주식의 총수	
		발행할 주식	발행한 주식
한국전력공사	3,209,820	1,200,000,000	641,964,077
한국가스공사	461,565	200,000,000	92,313,000
한국지역난방공사	57,894	40,000,000	11,578,744
(주)강원랜드	106,970	1,000,000,000	213,940,500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7,644	300,000,000	38,220,000
한전KPS(주)	9,000	300,000,000	45,000,000
그랜드코리아레저(주)	30,928	120,000,000	61,855,670
중소기업은행	3,375,646	2,000,000,000	675,129,299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20. 4. 30. 기준),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보고서(2019)를 참고하여 작성

□ 배당과 관련하여 상장 공공기관의 현금배당수익률과 주당순이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현금배당수익률과 주당순이익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받음.
 - (주)강원랜드,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 2개 기관은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 현금배당수익률과 주당순이익 또한 증가함.
 - 한국가스공사는 2016년부터 2년간 현금배당을 실현하지 못하였으나, 2018년 흑자로 전환되어 현금배당을 실현함.
 -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년 연속 현금배당을 실현하지 못함.
- 2019년에 현금배당수익률이 상승한 기관은 (주)강원랜드,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중소기업은행 등 4개 기관임.
 - 중소기업은행은 현금배당수익률이 2015년부터 5년간 꾸준히 증가하였고,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현금배당수익률이 2017년부터 3년간 꾸준히 증가함.

- 이와 반대로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개 기관은 현금배당수익률이 2015년부터 3년간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8년부터는 현금배당을 시행하지 못함.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중소기업은행 등 2개 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현금배당 수익률과 주당 순이익은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랜드코리아레저(주)와 중소기업은행은 전년대비 현금배당수익률이 증가하였으나, 주당순이익은 전년대비 감소함.
- (주)강원랜드와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는 현금배당수익률과 주당순이익이 함께 증가하고, 한국가스공사와 한전KPS(주)는 현금배당수익률과 주당순이익이 동시에 감소하였음.
-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8년부터 주당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여 현금배당수익률이 계속 0임.
- 정부출자기관 중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정부 배당을 실현하지 못하였으며, 중소기업은행과 한국가스공사는 정부 배당금 규모가 전년대비 감소하였음.¹³⁶⁾
-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여 정부 배당을 실현하지 못함.
- 중소기업은행의 정부배당금은 2019년 1,872억원에서 2020년 1,662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한국가스공사는 2019년 2,328억원에서 92억원으로 감소함.

〈표 III-28〉 상장 공공기관의 배당에 관한 사항(2017~2019년)

기관	구분	'17년	'18년	'19년
한국전력공사	주당액면가액(원)	5,000	5,000	5,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298,719	△1,314,567	△2,263,535
	주당순이익(원)	2,023	△2,048	△3,654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507,152	-	-
	(연결)현금배당성향(%)	39.20	-	-
	현금배당수익률(%)	2.00	-	-
	주당현금배당금(원)	79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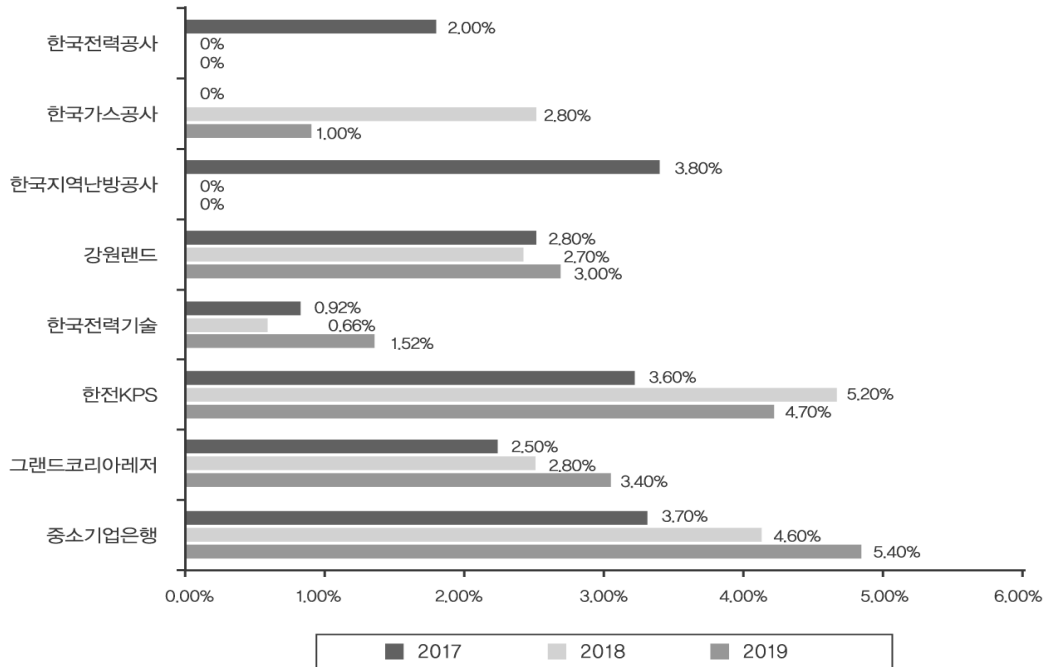
136)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의미하여, 상기 내용은 기획재정부 「20년 정부출자기관 배당 결과 공표-정부배당금 1조 4,040억원, 평균 배당성향 32.5%」, 보도자료, 2020. 5. 20.을 참고

기관	구분	'17년	'18년	'19년
한국가스공사	주당액면가액(원)	5,000	5,000	5,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021,611	526,745	58,269
	주당순이익(원)	△13,802	5,766	395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119,187	33,302
	(연결)현금배당성향(%)	-	22.63	85.90
	현금배당수익률(%)	-	2.80	1.00
	주당현금배당금(원)	-	1,360	380
한국 지역난방공사	주당액면가액(원)	5,0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69,878	-	-
	주당순이익(원)	6,035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32,652	-	-
	(연결)현금배당성향(%)	46.70	-	-
	현금배당수익률(%)	3.80	-	-
	주당현금배당금(원)	2,820	-	-
(주)강원랜드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437,541	297,237	334,654
	주당순이익(원)	2,159	1,467	1,651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200,712	182,465	182,465
	(연결)현금배당성향(%)	45.87	61.39	54.52
	현금배당수익률(%)	2.80	2.70	3.00
	주당현금배당금(원)	990	900	900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주당액면가액(원)	200	200	2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32,454	12,937	26,398
	주당순이익(원)	853	340	694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8,370	5,326	11,793
	(연결)현금배당성향(%)	25.80	41.20	44.70
	현금배당수익률(%)	0.92	0.66	1.52
	주당현금배당금(원)	220	140	310

기관	구분	'17년	'18년	'19년
한전KPS(주)	주당액면가액(원)	200	200	2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35,959	161,331	153,331
	주당순이익(원)	3,021	3,585	3,407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66,150	80,550	86,400
	(연결)현금배당성향(%)	48.70	49.90	56.30
	현금배당수익률(%)	3.60	5.20	4.70
	주당현금배당금(원)	1,470	1,790	1,920
그랜드 코리아레저(주)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80,539	77,741	72,396
	주당순이익(원)	1,302	1,257	1,170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45,155	43,917	40,763
	(연결)현금배당성향(%)	56.10	56.60	56.60
	현금배당수익률(%)	2.50	2.80	3.40
	주당현금배당금(원)	730	710	659
중소기업은행	주당액면가액(원)	5,000	5,000	5,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508,528	1,764,278	1,614,261
	주당순이익(원)	2,178	2,531	2,242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405,956	410,107	382,614
	(연결)현금배당성향(%)	26.91	25.73	28.02
	현금배당수익률(%)	3.70	4.60	5.40
	주당현금배당금(원)	617(617)	690(690)	670(우선주67)

주: () 안은 우선주를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20. 4. 30.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 보고서(2019)를 참고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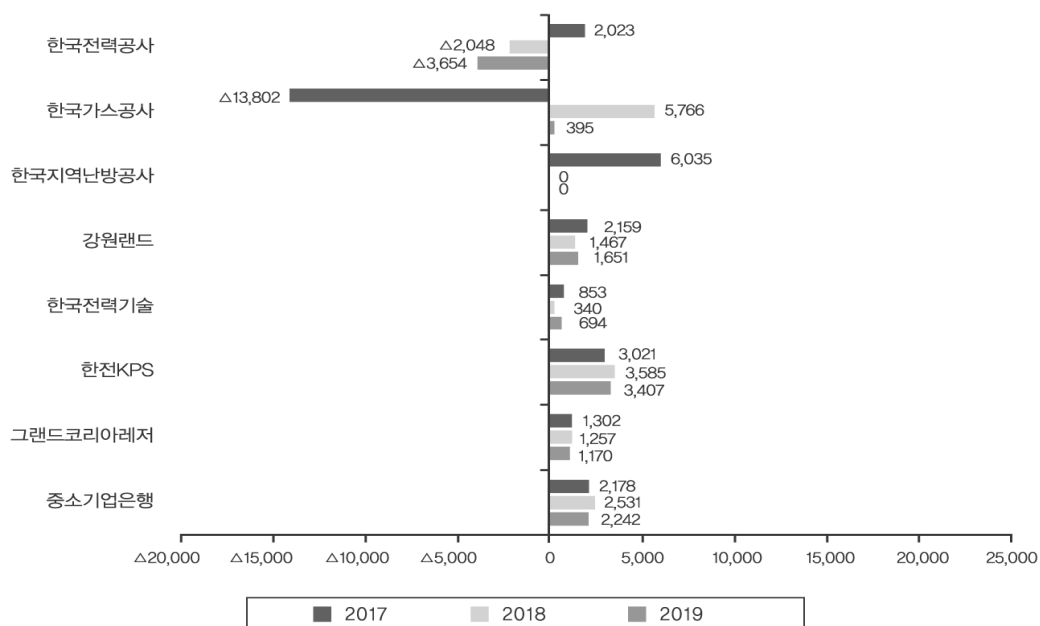
〈그림 Ⅲ-7〉 상장 공공기관의 현금배당수익률 변동 현황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20. 4. 30.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 보고서(2019)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8〉 상장 공공기관의 주당 순이익 변동 현황

(단위: 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20. 4. 30.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 보고서(2019)를 참고하여 작성

- 매출액과 총포괄손익을 중심으로 상장 공공기관의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8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중소기업은행으로 전년대비 8.1%의 증가율을 보임.
 - 2018년 대비 2019년 매출액이 가장 높은 비율로 감소한 기관은 한국지역난방공사로 전년대비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전KPS(주)는 상장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2016년부터 3년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다소 감소하였음.
 - (주)강원랜드,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중소기업은행 등 5개 기관은 2018년 대비 2019년 매출액이 증가하였음.
 - 이 중 (주)강원랜드,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 등 3개 기관은 총포괄손익도 증가한 반면,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중소기업은행 등 2개 기관은 총포괄손익이 감소하였음.
 - 이에 비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2018년 대비 2019년 매출액과 총포괄손익이 모두 감소하였음.

〈표 Ⅲ-29〉 상장 공공기관의 손익현황(2017~2019년)

(단위: 백만원, %)

기관	구분	'17년	'18년	'19년	전년대비 증감률(%)	
					'18년	'19년
한국전력공사	매출액	59,814,862	60,627,610	59,172,890	1.4	△2.4
	영업이익	4,953,152	△208,001	△1,276,521	△104.2	513.7
	당기순이익	1,441,394	△1,174,498	△2,263,535	△181.5	92.7
	지배지분순이익	1,298,720	△1,314,567	△2,345,517	△201.2	78.4
	총포괄손익	1,346,678	△1,281,423	△2,128,339	△195.2	66.1
한국가스공사	매출액	22,172,168	26,185,038	24,982,640	18.1	△4.6
	영업이익	1,035,163	1,276,859	1,334,514	23.3	4.5
	당기순이익	△1,191,735	526,745	58,269	△144.2	△88.9
	지배지분순이익	△1,205,110	509,350	38,764	△142.3	△92.4
	총포괄손익	△1,544,709	407,688	116,852	△126.4	△71.3
한국지역난방공사	매출액	-	2,487,331	2,367,906	-	△4.8
	영업이익	-	14,521	42,213	-	190.7
	당기순이익	-	△226,524	△25,580	-	△88.7
	지배지분순이익	-	△226,524	△25,580	-	△88.7
	총포괄손익	-	△234,718	△30,755	-	△86.9

기관	구분	'17년	'18년	'19년	전년대비 증감률(%)	
					'18년	'19년
(주)강원랜드	매출액	1,547,772	1,438,059	1,520,080	△7.1	5.7
	영업이익	530,897	430,700	501,153	△18.9	16.4
	당기순이익	437,541	297,237	334,654	△32.1	12.6
	지배지분순이익	437,615	297,326	334,658	△32.1	12.6
	총포괄손익	449,220	286,295	326,152	△36.3	13.9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매출액	490,193	433,701	448,635	△11.5	3.4
	영업이익	18,054	21,499	44,069	19.1	105.0
	당기순이익	21,222	12,937	26,398	△39.0	104.1
	총포괄손익	39,297	12,718	36,159	△67.6	184.3
한전KPS(주)	매출액	1,236,779	1,242,452	1,246,950	0.5	0.4
	영업이익	164,053	191,519	193,939	16.7	1.3
	당기순이익	135,959	161,331	153,331	18.7	△5.0
	지배지분순이익	135,959	161,331	153,331	18.7	△5.0
	총포괄손익	145,908	145,212	159,832	△0.5	10.1
그랜드코리아 레저(주)	매출액	501,296	480,339	490,752	△4.2	2.2
	영업이익	108,169	105,058	96,802	△2.9	△7.9
	당기순이익	80,539	77,741	72,396	△3.5	△6.9
	지배지분순이익	80,539	77,741	72,396	△3.5	△6.9
	총포괄손익	75,182	75,189	71,225	0.0	△5.3
중소기업은행	매출액	19,326,542	17,871,430	19,317,448	△7.5	8.1
	영업이익	2,028,323	2,396,435	2,227,915	18.1	△7.0
	당기순이익	1,508,528	1,764,278	1,614,261	17.0	△8.5
	지배지분순이익	1,501,454	1,754,243	1,605,847	16.8	△8.5
	총포괄손익	1,502,934	1,711,329	1,627,255	13.9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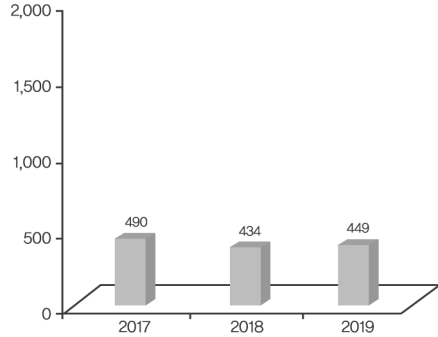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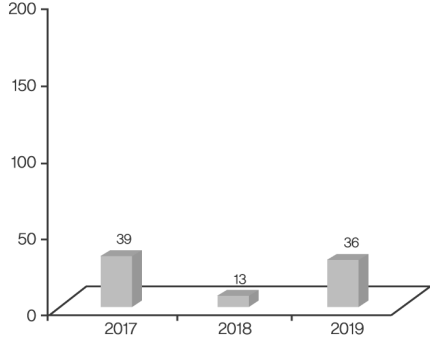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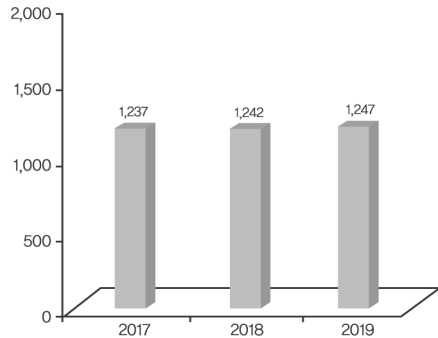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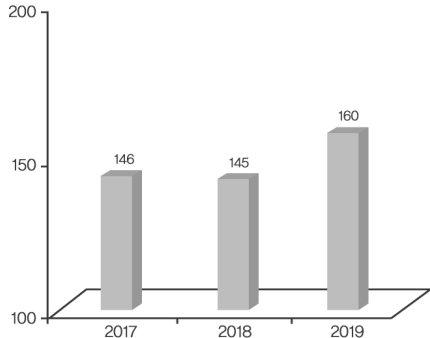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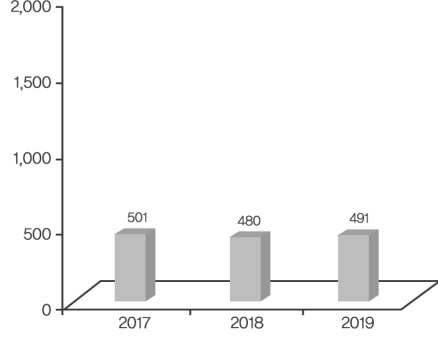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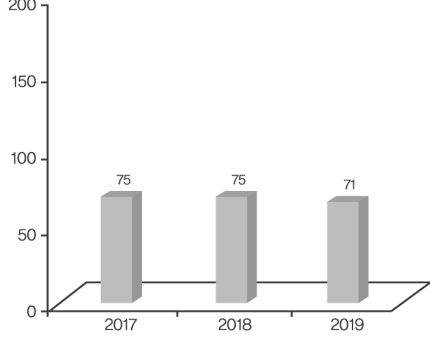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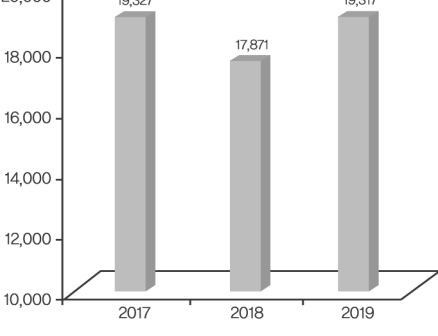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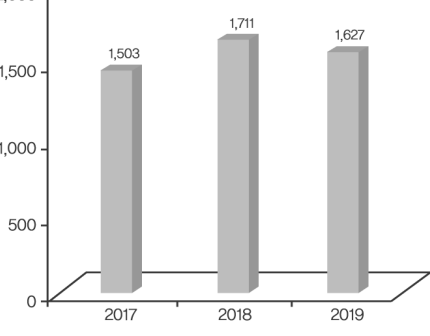
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8. 12월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지역난방플러스(주), 지역난방안전(주) 등 2개의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이에 따라 2018년도 결산부터 연결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음. 동 표는 자료의 연속성을 위해 별도 손익계산서로 작성된 2017년 손익현황 자료를 제외하고 작성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20 4. 30.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 보고서(2019)를 참고하여 작성

〈표 Ⅲ-30〉 상장 공공기관의 매출액 및 총포괄손익 변화 추이(2017~2019년)

(단위: 십억원)

기관	매출액	총포괄손익																
한국전력공사	<table><tr><th>연도</th><th>매출액</th></tr><tr><td>2017</td><td>59,815</td></tr><tr><td>2018</td><td>60,628</td></tr><tr><td>2019</td><td>59,173</td></tr></table>	연도	매출액	2017	59,815	2018	60,628	2019	59,173	<table><tr><th>연도</th><th>총포괄손익</th></tr><tr><td>2017</td><td>1,347</td></tr><tr><td>2018</td><td>-1,281</td></tr><tr><td>2019</td><td>-2,128</td></tr></table>	연도	총포괄손익	2017	1,347	2018	-1,281	2019	-2,128
연도	매출액																	
2017	59,815																	
2018	60,628																	
2019	59,173																	
연도	총포괄손익																	
2017	1,347																	
2018	-1,281																	
2019	-2,128																	
한국가스공사	<table><tr><th>연도</th><th>매출액</th></tr><tr><td>2017</td><td>22,172</td></tr><tr><td>2018</td><td>26,185</td></tr><tr><td>2019</td><td>24,983</td></tr></table>	연도	매출액	2017	22,172	2018	26,185	2019	24,983	<table><tr><th>연도</th><th>총포괄손익</th></tr><tr><td>2017</td><td>-1,545</td></tr><tr><td>2018</td><td>408</td></tr><tr><td>2019</td><td>117</td></tr></table>	연도	총포괄손익	2017	-1,545	2018	408	2019	117
연도	매출액																	
2017	22,172																	
2018	26,185																	
2019	24,983																	
연도	총포괄손익																	
2017	-1,545																	
2018	408																	
2019	117																	
한국 지역난방공사	<table><tr><th>연도</th><th>매출액</th></tr><tr><td>2017</td><td>0</td></tr><tr><td>2018</td><td>2,487</td></tr><tr><td>2019</td><td>2,368</td></tr></table>	연도	매출액	2017	0	2018	2,487	2019	2,368	<table><tr><th>연도</th><th>총포괄손익</th></tr><tr><td>2017</td><td>0</td></tr><tr><td>2018</td><td>-235</td></tr><tr><td>2019</td><td>-31</td></tr></table>	연도	총포괄손익	2017	0	2018	-235	2019	-31
연도	매출액																	
2017	0																	
2018	2,487																	
2019	2,368																	
연도	총포괄손익																	
2017	0																	
2018	-235																	
2019	-31																	
(주)강원랜드	<table><tr><th>연도</th><th>매출액</th></tr><tr><td>2017</td><td>1,548</td></tr><tr><td>2018</td><td>1,438</td></tr><tr><td>2019</td><td>1,520</td></tr></table>	연도	매출액	2017	1,548	2018	1,438	2019	1,520	<table><tr><th>연도</th><th>총포괄손익</th></tr><tr><td>2017</td><td>449</td></tr><tr><td>2018</td><td>286</td></tr><tr><td>2019</td><td>326</td></tr></table>	연도	총포괄손익	2017	449	2018	286	2019	326
연도	매출액																	
2017	1,548																	
2018	1,438																	
2019	1,520																	
연도	총포괄손익																	
2017	449																	
2018	286																	
2019	326																	

기관	매출액	총포괄손익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table><tr><th>연도</th><th>매출액</th></tr><tr><td>2017</td><td>490</td></tr><tr><td>2018</td><td>434</td></tr><tr><td>2019</td><td>449</td></tr></table>	연도	매출액	2017	490	2018	434	2019	449	 <table><tr><th>연도</th><th>총포괄손익</th></tr><tr><td>2017</td><td>39</td></tr><tr><td>2018</td><td>13</td></tr><tr><td>2019</td><td>36</td></tr></table>	연도	총포괄손익	2017	39	2018	13	2019	36
연도	매출액																	
2017	490																	
2018	434																	
2019	449																	
연도	총포괄손익																	
2017	39																	
2018	13																	
2019	36																	
한전KPS(주)	 <table><tr><th>연도</th><th>매출액</th></tr><tr><td>2017</td><td>1,237</td></tr><tr><td>2018</td><td>1,242</td></tr><tr><td>2019</td><td>1,247</td></tr></table>	연도	매출액	2017	1,237	2018	1,242	2019	1,247	 <table><tr><th>연도</th><th>총포괄손익</th></tr><tr><td>2017</td><td>146</td></tr><tr><td>2018</td><td>145</td></tr><tr><td>2019</td><td>160</td></tr></table>	연도	총포괄손익	2017	146	2018	145	2019	160
연도	매출액																	
2017	1,237																	
2018	1,242																	
2019	1,247																	
연도	총포괄손익																	
2017	146																	
2018	145																	
2019	160																	
그랜드 코리아레저(주)	 <table><tr><th>연도</th><th>매출액</th></tr><tr><td>2017</td><td>501</td></tr><tr><td>2018</td><td>480</td></tr><tr><td>2019</td><td>491</td></tr></table>	연도	매출액	2017	501	2018	480	2019	491	 <table><tr><th>연도</th><th>총포괄손익</th></tr><tr><td>2017</td><td>75</td></tr><tr><td>2018</td><td>75</td></tr><tr><td>2019</td><td>71</td></tr></table>	연도	총포괄손익	2017	75	2018	75	2019	71
연도	매출액																	
2017	501																	
2018	480																	
2019	491																	
연도	총포괄손익																	
2017	75																	
2018	75																	
2019	71																	
중소기업은행	 <table><tr><th>연도</th><th>매출액</th></tr><tr><td>2017</td><td>19,327</td></tr><tr><td>2018</td><td>17,871</td></tr><tr><td>2019</td><td>19,317</td></tr></table>	연도	매출액	2017	19,327	2018	17,871	2019	19,317	 <table><tr><th>연도</th><th>총포괄손익</th></tr><tr><td>2017</td><td>1,503</td></tr><tr><td>2018</td><td>1,711</td></tr><tr><td>2019</td><td>1,627</td></tr></table>	연도	총포괄손익	2017	1,503	2018	1,711	2019	1,627
연도	매출액																	
2017	19,327																	
2018	17,871																	
2019	19,317																	
연도	총포괄손익																	
2017	1,503																	
2018	1,711																	
2019	1,627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20. 4. 30.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 보고서(2019)를 참고하여 작성

□ 상장 공공기관의 주요 재무 비율 지표를 살펴보면 <표 III-31>과 같음.

<표 III-31> 상장 공공기관의 주요 재무 비율(2017~2019년)

(단위: %, %p)

기관	지표		'17년	'18년	'19년	증감(%p)	
						'18년	'19년
한국 전력공사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2.2	1.9	6.7	△0.3	4.8
		유형자산증가율	3.5	1.2	7.8	△2.3	6.6
		영업수익(매출액) 증가율	△0.6	1.4	△2.4	2	△3.8
		순이익증가율	△79.8	△181.5	△92.7	△101.7	88.8
	수익성	영업수익(매출액) 영업이익률	8.3	△0.3	△2.2	△8.6	△1.9
		영업수익(매출액) 순이익률	2.1	△1.9	△3.8	△4	△1.9
		총자본순이익률	0.8	△0.6	△1.2	△1.4	△0.6
		자기자본순이익률	1.8	△1.9	△3.4	△3.7	△1.5
	안정성	유동비율	81.7	90.4	80.4	8.7	△10
		부채비율	149.15	160.57	186.83	11.42	26.26
		자기자본비율	40.1	38.4	34.9	△1.7	△3.5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비율	276.78	△11.13	△62.37	△287.91	△51.24
	생산성	부가가치액 (백만원)	21,213,145	15,940,192	16,378,601	-	-
		부가가치율	35.5	26.3	27.7	△9.2	1.4
		노동소득분배율	25.3	33.6	37.5	8.3	3.9
		총자본투자효율	11.8	8.7	8.6	△3.1	△0.1
		설비투자효율	17.4	12.8	12.6	△4.6	△0.2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81.98	85.28	85.9	3.3	0.62
		총자본회전율	0.3	0.3	0.3	0	0
한국 가스공사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7.25	6.87	△0.95	14.12	△7.82
		유형자산증가율	△5.07	0.17	△1.56	5.24	△1.73
		영업수익(매출액) 증가율	5.04	18.1	△4.59	13.06	△22.69
		순이익(손실)증가율	94.58	△144.2	△88.94	△238.78	55.26

기관	지표		'17년	'18년	'19년	증감(%p)	
						'18년	'19년
한국 가스공사	수익성	영업수익(매출액) 영업이익률	4.66	4.88	5.34	0.22	0.46
		영업수익(매출액) 순이익률	△5.37	2.01	0.23	7.38	△1.78
		총자본순이익률	△3.09	1.37	0.15	4.46	△1.22
		자기자본순이익률	△14.03	6.36	0.48	20.39	△5.88
	안정성	유동비율	115.05	100.54	103.73	△14.51	3.19
		부채비율	356.24	367.05	382.56	10.81	15.51
		자기자본비율	21.92	21.41	20.72	0.95	△0.69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비율	1.25	1.63	1.66	0.38	0.03
	생산성	부가가치액 (백만원)	1,989,204	3,918,713	3,424,035	-	-
		부가가치율	8.97	14.97	13.71	6	△1.26
		노동소득분배율	25.96	13.8	17.85	△12.16	4.05
		총자본투자효율	5.15	10.2	8.67	5.05	△1.53
		설비투자효율	8.72	17.49	14.97	8.77	△2.52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272.37	308.13	306.67	35.76	△1.46
		총자본회전율	0.57	0.68	0.63	0.11	△0.05
한국 지역난방 공사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6.7	35.6	△4.8	28.9	△40.4
		영업이익증가율	△25.9	△87.9	191	△62	278.9
	수익성	매출액순이익률	3.81	△9.1	△1.08	△12.91	8.03
	안정성	부채비율	212.70	262.66	285.29	49.96	22.63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100.26	159.43	154.83	59.17	△4.6
(주)강원랜드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5.19	1.09	4.89	△4.1	3.8
		유형자산증가율	△1.35	1.24	4.3	2.59	3.06
		매출액증가율	△5.83	△7.09	5.7	△1.26	12.79
		순이익증가율	△3.74	△32.07	12.59	△28.33	44.66

기관	지표		'17년	'18년	'19년	증감(%p)	
						'18년	'19년
(주)강원랜드	수익성	영업수익(매출액) 영업이익률	34.3	29.95	32.97	△4.35	3.02
		영업이익(매출액) 순이익률	28.27	20.67	22.02	△7.6	1.35
		총자본수익률	10.72	7.06	7.72	△3.66	0.66
		자기자본(지배지분) 순이익률	12.96	8.39	9.16	△4.57	0.77
	안정성	유동비율	317.65	276.57	288.36	△41.08	11.79
		부채비율	19.55	17.97	19.38	△1.58	1.41
		자기자본비율	83.65	84.77	83.77	1.12	△1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비율	224,182.49	183,465.68	25,555.99	△40,716	△157,910
	생산성	부가가치액(백만원)	1,018,201	865,017	953,349	-	-
		부가가치율	65.78	60.15	62.72	△5.63	2.57
		노동소득분배율	27.63	33.41	30.6	5.78	△2.81
		총자본투자효율	24.94	20.55	21.99	△4.39	1.44
		설비투자효율	82.42	69.36	72.76	△13.06	3.4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45.83	40.09	40.89	△5.74	0.8
한국 전력기술 주식회사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3.11	1.22	△4.7	4.33	△5.92
		유형자산증가율	△4.19	△4.35	△3.4	△0.16	0.95
		매출액증가율	△3.13	△11.52	3.44	△8.39	14.96
		순이익증가율	19.25	△39.04	104	△58.29	143.04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3.68	4.96	9.82	1.28	4.86
		매출액순이익률	4.33	2.98	5.88	△1.35	2.9
		총자본순이익률	2.74	1.69	3.5	△1.05	1.81
		자기자본순이익률	4.83	2.82	5.53	△2.01	2.71
	안정성	유동비율	116.08	113.28	115.24	△2.8	1.96
		부채비율	66.76	67.21	49.37	0.45	△17.84
		자기자본비율	59.96	59.8	66.95	△0.16	7.15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비율	8,801.02	2,938.45	68,020.07	△5,863	65,082

기관	지표		'17년	'18년	'19년	증감(%)	
						'18년	'19년
한국 전력기술 주식회사	생산성	부가가치액(백만원)	222,031	220,182	247,063	-	-
		부가가치율	45.29	50.77	55.07	5.48	4.3
		노동소득분배율	74.3	77.89	73.09	3.59	△4.8
		총자본투자효율	28.67	28.71	32.8	0.04	4.09
		설비투자효율	69.12	71.6	83.61	2.48	12.01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107.26	94	91.15	△13.26	△2.85
한전 KPS(주)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9.8	6.7	6.1	△3.1	△0.6
		자기자본증가율	14.6	8.7	8.1	△5.9	△0.6
		매출액 증가율	1.1	0.5	0.4	△0.6	△0.1
		순이익 증가율	54.0	18.7	△5.0	△35.3	△23.7
	수익성	영업이익률	13.3	15.4	15.6	2.1	0.2
		영업수익(매출액) 순이익률	10.99	12.98	12.3	1.99	△0.68
		총자산순이익률	11.9	13	11.6	1.1	△1.4
		자기자본이익률	16	17.1	15	1.1	△2.1
	안정성	유동비율	226.1	235.3	314.6	9.2	79.3
		부채비율	32.59	30.16	27.84	△2.43	△2.32
		당좌비율	225.5	234.8	314.1	9.3	79.3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136.65	126.25	117.26	△10.4	△8.99
		총자산회전율	1.1	1	0.9	△0.1	△0.1
		매출채권회전율	9.1	9	9.8	△0.1	0.8
그랜드코리아 레저(주)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0.24	4.63	18.76	4.39	14.13
		유형자산증가율	△5.76	△7.85	△5.79	△2.09	2.06
		영업수익(매출액) 증가율	△8.56	△4.18	2.17	4.38	6.35
		순이익증가율	△29.56	△3.47	△6.87	26.09	△3.4

기관	지표		'17년	'18년	'19년	증감(%p)	
						'18년	'19년
그랜드코리아 레저(주)	수익성	영업수익(매출액) 영업이익률	21.58	21.87	19.73	0.29	△2.14
		영업수익(매출액) 순이익률	16.07	16.18	14.75	0.11	△1.43
		총자본순이익률	11.02	10.38	8.64	△0.64	△1.74
		자기자본순이익률	15.33	14.21	12.62	△1.12	△1.59
	안정성	유동비율	333.95	270.26	215.84	△64	△54.42
		부채비율	37.56	36.24	55.41	△1.32	19.17
		자기자본비율	72.69	73.40	64.34	0.71	△9.06
	생산성	부가가치액(백만원)	299,099	306,090	-	-	-
		부가가치율	59.67	59.25	-	△0.42	-
		노동소득분배율	46.94	45.96	-	△0.98	-
		총자본투자효율	40.91	38.01	-	△2.9	-
		설비투자효율	315.03	320.92	-	5.89	-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94.22	85.46	83.86	△8.76	△1.6
중소기업 은행	수익성	영업수익(매출액) 순이익률	7.81	9.87	8.36	2.06	△1.51
		총자산순이익률	0.57	0.63	0.53	0.06	△0.1
		자기자본이익률	7.97	8.72	7.27	0.75	△1.45
	안정성	부채비율	1,284.07	1,272.46	1,296.65	△11.61	24.19
		BIS비율	14.20	14.50	14.47	0.3	△0.03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97.6	84.72	84.81	△12.88	0.09

주: 1.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2019년도 결산서에 2018년도 생산성지표까지만 작성하고, 2019년도 생산성지표를 작성하지 않음
 2. 기업의 활동성 지표 중 자기자본회전율은 알리오시스템 공시자료(2020. 4. 30. 기준)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며, 기관의 결산서와는 수치가 다를 수 있음. 알리오에서 작성한 기준에 따르면, 자기자본회전율 = (순매출액/자본총계)×100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20. 4. 30. 기준)과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결산서(2019), 사업보고서(2019) 및 IR정보를 참고하여 작성

-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강원랜드,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등은 2019년도 결산서 및 IR, 2019년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주요 재무비율지표에 대한 변동 원인 및 추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음.
- 한국가스공사의 유동비율은 유가 하락 등에 따른 천연가스 도입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매입채무가 감소하여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유지하였으나, 2019년에는 도입단가 상승 등에 따른 매입채무 증가의 영향으로 인해 소폭 상승함.
 - 안정성 지표 중 자기자본비율은 2016년, 2017년 및 2019년 해외자원개발 손상차손 등에 따라 점차 감소함.
 - 2019년 해외자원개발 손상차손 발생 등에 따라 생산성 지표는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인건비가 증가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하였음.¹³⁷⁾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동절기 외기온도 상승으로 인한 열 판매량 감소와 전력수요 감소에 따른 전기 판매량 감소의 영향으로 매출액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 매출 감소 요인에 비해 연료단가 하락에 따른 생산비용 감소효과의 상대적 우위로 인해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음.¹³⁸⁾
 - (주)강원랜드는 2019년 상품판매 증가 및 카지노 입장객 증가의 영향으로 매출액이 증가하였음.¹³⁹⁾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는 매출 증가와 판매비 및 관리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순이익이 전년대비 증가하여, 순이익증가율이 104.1%임.
 - EPC사업¹⁴⁰⁾ 매출 증가 등으로 매출액이 증가하고, 계속사업 매출 증가 및 신규사업 매출대응에 따라 매출원가가 증가하였으며, 손해배상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판매비와 관리비가 감소하였음.¹⁴¹⁾
 -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전년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수익성지표가 전년대비 모두 감소하였음.
 - 전년대비 고객수 증가(총 고객수 16.4%, VIP 고객수 9.3% 증가)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나, VIP 고객 관련 마케팅활동비 및 자회사 인건비 등 종업원급여

137) 한국가스공사, 『결산서(2019)』, 2020. 3. 참고

138) 한국지역난방공사, 『IR(2019년 4분기 경영실적)』, 2020. 2. 참고

139) 강원랜드, 『결산서(2019)』, 2020. 3. 참고

140) EPC사업은 설계(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의 영문 첫 글자를 딴 말로, 대형 건설 프로젝트나 인프라사업 계약을 따낸 사업자가 설계와 부품·소재 조달, 공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을 의미함(『한경 경제용어사전』 참조, <https://dic.hankyung.com/economy.view?seq=5504>, 검색일자: 2020. 9. 25.)

141)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결산서(2019)』, 2020. 3. 참고

증가분, 리스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의 영향이 더 커서 영업이익이 감소함.¹⁴²⁾

2. 인력현황¹⁴³⁾

가. 임직원 수 현황

- 2019년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정원 기준)¹⁴⁴⁾는 약 41만 1천명으로 국가행정공무원 정원 약 66만 3천명의 62%에 해당하는 규모임.
- 국가행정공무원 정원 대비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19년에는 전년대비 약 3.1%p 증가함.

〈표 III-32〉 2015~2019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국가행정공무원 현황

(단위: 천명, %, %p)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A)	'19년 (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공공기관 임직원(a)	314	328	346	383	411	28	7.3%
국가행정공무원(b)	626	629	639	649	663	14	2.2%
비중(a/b)	50.2	52.1	54.1	58.9	62.0	3.1*	

주: *는 %p단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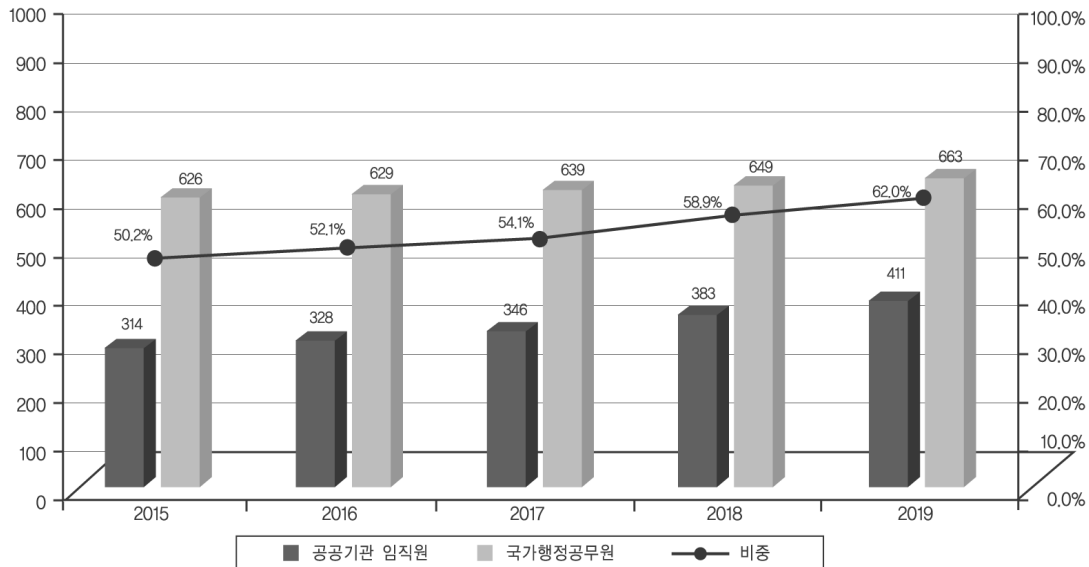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직원 현황'(2020. 4. 29. 기준) 및 나라지표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추이'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6)를 참고하여 작성

142) 그랜드코리아레저㈜, 『결산서(2019)』, 2020. 3. 참고

143)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0. 4. 29. 및 알리오시스템 유관항목 참고

144)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의 상임임원, 정규직 직원(무기계약직 및 임금피크제 별도 정원 포함)에 대한 총 정원

〈그림 III-9〉 2015~2019년 공공기관 임직원 수 및 국가행정공무원 현황
(단위: 천명, %)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직원 현황'(2020. 4. 29. 기준) 및 나라지표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추이'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6)를 참고하여 작성

- 2019년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필수 분야 신규 증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라 전년에 비해 2만 7,572명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 정원 증가율은 2018년 10.7% 보다 3.4%p 낮아진 7.3% 수준임.
 - 2019년 증원 인력 중 1.2만명(무기계약직 0.9만명, 일반직 0.3만명)이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력에 해당함.
 - 그 외에 사회적 수요가 높은 보건의료 분야(0.6만명), SOC 분야(0.2만명) 및 에너지 분야(0.2만명) 등을 중심으로 1.6만명이 증원됨.
- 최근 5년간 모든 유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 및 현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기타공공기관 유형의 2019년 임직원 정원은 전년대비 1만 3,684명(10.6%) 증가한 14만 2,694명으로 전체 공공기관 유형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기타공공기관 중 인력증원의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코레일테크(주)(4,346명)이고 정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관도 역시 코레일테크(주)(656.5%)로 나타남.
 - 공기업 유형의 2019년 임직원 정원은 14만 7,113명으로 가장 큰 규모이지만, 정원 증가율은 5.2%로 준정부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 유형에 비해서 낮음.

- 시장형 공기업의 2019년 정원 증가율은 2.6%, 현원 증가율은 3.7%로 전체 공공기관 유형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임.
- 준시장형 공기업의 임직원 정원은 전년대비 5,617명(7.4%) 증가했으며 인력증원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철도공사(2,459명)로 준시장형 공기업 증원의 43.8%를 차지함.
- 준정부기관 유형의 2019년 임직원 정원은 전년대비 5.8%(6,634명) 증가한 12만 788명으로 공기업 유형보다는 높고 기타공공기관보다는 낮은 정원 증가율을 보임.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임직원 정원은 전년대비 1,085명(3.8%) 증가했으며 인력증원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근로복지공단(615명)으로 기금관리형 증가분의 56.7%를 차지함.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정원 증가율은 6.5%(5,549명)으로 나타남.

〈표 III-33〉 2015~2019년 공공기관 유형별 임직원 수 현황

(단위: 명,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A)	'19년 (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314,215 (294,911)	328,043 (308,007)	346,134 (324,239)	383,022 (359,775)	410,594 (385,534)	27,572 (25,759)	7.2 (7.2)
공기업	122,444 (117,116)	126,931 (121,343)	132,590 (127,057)	139,857 (133,939)	147,113 (141,368)	7,256 (7,429)	5.2 (5.5)
· 시장형	57,151 (55,359)	59,883 (57,758)	62,094 (60,035)	64,127 (61,601)	65,766 (63,854)	1,639 (2,253)	2.6 (3.7)
· 준시장형	65,293 (61,757)	67,048 (63,585)	70,496 (67,022)	75,730 (72,338)	81,347 (77,513)	5,617 (5,175)	7.4 (7.2)
준정부기관	88,611 (84,125)	93,698 (88,449)	100,669 (94,081)	114,154 (107,168)	120,788 (114,672)	6,634 (7,504)	5.8 (7.0)
· 기금관리형	21,606 (20,319)	22,517 (21,214)	24,493 (22,559)	28,280 (26,446)	29,365 (27,821)	1,085 (1,375)	3.8 (5.2)
· 위탁집행형	67,005 (63,806)	71,181 (67,235)	76,176 (71,522)	85,874 (80,722)	91,423 (86,851)	5,549 (6,129)	6.5 (7.6)
기타공공기관	103,160 (93,670)	107,414 (98,215)	112,876 (103,102)	129,010 (118,668)	142,694 (129,494)	13,684 (10,826)	10.6 (9.1)

주: 1. () 안의 수치는 현원 기준

2. 현원의 경우 소수 반올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직원 현황'(2020. 4. 29.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2019년 공공기관 임직원 수(정원 기준) 현황을 주무부처별로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8만 8,937명(40개 기관)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7만 8,569명(25개 기관), 교육부 4만 4,966명(23개 기관) 순으로 나타남.
- 임직원 수 증가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1만 298명 증원), 다음으로 교육부 산하 기관(3,750명 증원),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3,225명 증원) 순임.

〈표 III-34〉 2015~2019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임직원 수 현황

(단위: 명, %)

구 분	기관수	'15년	'16년	'17년	'18년 (A)	'19년 (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기획재정부	4	2,648	2,908	2,971	3,188	3,262	74	2.3
교육부	23	32,783	34,378	36,047	41,216	44,966	3,750	9.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9	24,009	24,754	25,330	30,343	31,686	1,343	4.4
외교부	3	597	611	672	735	796	61	8.3
통일부	2	72	78	83	208	216	8	3.8
법무부	3	1,114	1,148	1,155	1,249	1,307	58	4.6
국방부	3	546	559	604	633	728	95	15
행정안전부	3	1,108	1,122	1,314	1,527	1,594	67	4.4
문화체육관광부	32	7,715	7,638	8,683	9,343	9,862	519	5.6
농림축산식품부	12	9,439	9,828	10,184	12,589	13,003	413	3.3
산업통상자원부	40	77,154	80,649	83,634	86,366	88,937	2,571	3
보건복지부	29	30,295	32,396	34,556	38,561	41,786	3,225	8.4
환경부	11	9,812	10,327	10,977	13,366	14,023	657	4.9
고용노동부	11	12,266	12,833	14,420	17,845	19,049	1,204	6.7
여성가족부	5	615	720	760	996	1,025	29	2.9
국토교통부	25	57,787	59,514	63,675	68,271	78,569	10,298	15.1
해양수산부	18	2,994	3,311	3,448	4,098	4,663	565	13.8
중소벤처기업부	11	3,506	3,637	3,849	4,604	4,942	338	7.3
국무조정실	27	3,461	3,617	3,677	4,500	5,003	503	11.2
방송통신위원회	2	391	420	425	529	541	12	2.3
원자력안전위원회	3	617	685	685	732	795	63	8.6
금융위원회	8	20,685	21,383	22,341	22,996	23,718	722	3.1
공정거래위원회	2	449	485	515	543	586	43	7.9
국가보훈처	3	4,878	5,119	5,413	6,609	7,042	433	6.5
인사혁신처	1	531	550	576	655	662	7	1.1

구 분	기관수	'15년	'16년	'17년	'18년 (A)	'19년 (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식품의약품안전처	4	167	191	468	505	528	23	4.6
관세청	1	50	50	50	50	50	0	0
방위사업청	2	3,440	3,665	3,719	4,258	4,425	167	3.9
경찰청	1	2,534	2,595	2,609	2,934	2,996	62	2.1
소방청	1	204	213	226	271	291	20	7.4
문화재청	1	250	345	335	376	389	13	3.5
산림청	4	145	340	580	774	940	166	21.4
농촌진흥청	1	225	228	292	291	315	24	8.2
특허청	6	1,509	1,525	1,632	1,628	1,663	35	2.1
기상청	2	219	221	231	234	238	4	1.7
합 계	363	314,215	328,043	346,134	383,022	410,594	27,572	7

주: 2020년 4월 29일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시한 340개 공공기관(2020년 1월 지정기준)과 그 부설기관(23개 기관)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수 반올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임직원수' 항목의 기관별 공시자료(2020. 4. 29.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19년 임직원 수(정원 기준)의 증감을 기관 단위로 살펴보면¹⁴⁵⁾ 총 47개 기관에서 전년대비 100명 이상의 인력이 증원됨.

- 47개 기관에서 총 2만 1,696명이 증원되었으며 이는 2019년 전체 인력증원 규모(2만 7,572명)의 약 78.7%를 차지함.
- 가장 큰 규모로 인력이 증원된 기관은 코레일테크(주)로 전년대비 4,346명이 증원되어 임직원 정원이 2018년 662명에서 2019년 5,008명으로 증가함.
- 코레일테크(주)에 이어 전년대비 정원이 가장 크게 증원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로 전년대비 2,459명이 증원됨.
- 두 기관의 정원 증가는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생명·안전 업무 종사자는 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청소·경비·시설관리 업무 종사자는 공사의 계열사인 코레일테크(주)에서 고용해 용역근로자들을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결과임.¹⁴⁶⁾

145) 2020년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 중 아동권리보장원과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모두 2019년 7월에 신규 출범한 기관으로 전년대비 인력증원 규모를 비교할 수 없음

146) 『대전일보』, 한국철도공사 비정규직 '0명' 정규직 전환 완료, 2018. 8. 26., http://www.daeje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31787, 검색일자: 2020. 9. 21.

〈표 III-35〉 2019년 인력증원 100명 이상인 기관

(단위: 명)

번호	기관명	유형	증원 규모	번호	기관명	유형	증원 규모
1	코레일테크(주)	기타공공기관	4,346	25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0
2	한국철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459	26	가축위생방역지원 본부	기타공공기관	196
3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637	27	전남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184
4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059	28	한국환경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74
5	충남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1,043	29	국가철도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73
6	경북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678	30	한전KDN(주)	준시장형 공기업	166
7	한국전력공사	시장형 공기업	625	31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기타공공기관	162
8	근로복지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615	32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54
9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562	33	아시아문화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53
10	국립암센터	기타공공기관	558	34	국립중앙의료원	기타공공기관	152
11	부산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536	35	한국가스공사	시장형 공기업	151
12	중소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468	36	한국남부발전(주)	시장형 공기업	148
13	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29	37	제주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143
14	충북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393	38	한국콘텐츠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34
15	대한적십자사	기타공공기관	390	39	한국가스안전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33
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66	40	국민연금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2
17	한전KPS(주)	준시장형 공기업	352	41	한국정보화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28
18	코레일관광개발(주)	기타공공기관	339	42	한국남동발전(주)	시장형 공기업	127
19	서울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273	4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20

번호	기관명	유형	증원 규모	번호	기관명	유형	증원 규모
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71	44	한국뇌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14
21	한국수력원자력(주)	시장형 공기업	267	45	울산과학기술원	기타공공기관	107
22	한국수자원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34	46	한국교통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05
2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타공공기관	220	47	한국국토정보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05
24	주택관리공단(주)	기타공공기관	215				

주: 1. 2019년 인력증원 규모는 2018년 임직원 정원 대비 2019년 임직원 정원 차이임

2.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기타공공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의 부설기관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설기관이며 한국뇌연구원은 기타공공기관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 임직원수' 항목의 공시자료(2020.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반면 전년대비 임직원 정원이 감소한 기관은 12개 기관으로, 감소한 정원을 합하면 총 242명인 것으로 나타남.

○ 임직원 정원이 가장 크게 감소한 기관은 대한석탄공사로 2019년 정원이 전년대비 133명 감소한 1,002명으로 집계되었음.

- 이는 기관 기능조정계획에 따라 생산량을 감축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력 감원으로 인한 것임.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2019년 임직원 정원은 전년대비 55명 감소한 551명으로, 이는 기관 기능조정계획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력 감원에 따른 것임.

○ 한국산업은행의 2019년 임직원 정원은 전년대비 21명 감소한 3,305명으로, 2021년까지 정원의 10%(약 300명)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2016년 자체 혁신방안에 따른 것임.

〈표 III-36〉 2019년 인력 감원 기관

(단위: 명)

번호	기관명	유형	감원 규모	번호	기관명	유형	감원 규모
1	대한석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33	7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5
2	한국광물자원공사	시장형 공기업	55	8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
3	한국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21	9	88관광개발(주)	기타공공기관	2
4	한전원자력연료 주식회사	기타공공기관	7	10	산업연구원	기타공공기관	2
5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6	11	한국행정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
6	(재)예술경영지원 센터	기타공공기관	5	12	(재)APEC기후센터	기타공공기관	1

주: 2019년 인력감원 규모는 2018년 임직원 정원 대비 2019년 임직원 정원 차이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 임직원수' 항목의 공시자료(2020.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나. 신규채용 현황

- 2019년에는 보건의료·안전·고용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이루어졌으며 채용인원은 전년대비 269명 감소(△0.8%)한 3만 3,447명으로 나타남.
- 2019년 신규채용 인력 중 정규직 전환에 따른 신규채용 인력(0.3만명)을 제외한 순 신규채용 규모는 3.1만명으로 처음으로 3만명 수준을 상회함.

〈표 III-37〉 2015~2019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

(단위: 만명,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A)	'19년 (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신규채용	1.92	2.09	2.22	3.37	3.34	△0.03	△0.8
순신규채용	1.92	2.09	2.12	2.65	3.09	0.44	16.6

주: 소수 반올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0. 4. 29.

-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은 2015년(1.9만명)부터 2018년(3.4만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 3.3만명으로 처음으로 전년대비 감소함.

- 2019년 신규채용 증가율을 살펴보면, 준시장형 공기업이 43.4%(전년대비 2,113명 증가)로 가장 높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38.2%(전년대비 1,021명 감소)로 가장 낮은 수준임.
- 2019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이유는 신규 사업 축소, 퇴직자 감소 등으로 채용 여력이 줄어들었기¹⁴⁷⁾ 때문으로 보임.

〈표 Ⅲ-38〉 2015~2019년 신규 채용 현황

(단위: 명,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A)	'19년 (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19,202	20,908	22,195	33,716	33,447	△269	△0.8
공기업	5,826	5,995	6,807	9,079	11,283	2,204	24.3
· 시장형	3,663	3,669	3,666	4,212	4,303	91	2.2
· 준시장형	2,164	2,325	3,141	4,867	6,980	2,113	43.4
준정부기관	4,956	6,137	6,929	9,923	9,228	△695	△7.0
· 기금관리형	989	1,112	1,790	2,672	1,651	△1,021	△38.2
· 위탁집행형	3,967	5,025	5,140	7,251	7,576	325	4.5
기타공공기관	8,420	8,777	8,458	14,714	12,937	△1,777	△12.1

주: 소수 반올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0. 4. 29. 및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4. 신규 채용」 항목의 기관별 공시자료(2020.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19년도 공공기관 신규 채용 현황을 주무부처별로 살펴보면, <표 Ⅲ-39>과 같음.
- 2019년 신규채용 규모가 큰 부처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7,206명), 교육부(6,958명), 산업통상자원부(5,704명), 보건복지부(3,917명) 순임.
- 전년대비 신규채용 증가 규모는 국토교통부(2,414명), 보건복지부(555명), 환경부(383명), 산업통상자원부(81명)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35개 부처 중 16개 부처¹⁴⁸⁾ 산하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감소(전년대비 1,199명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147) 『이데일리』, “공공부문이 앞장” 文 당부에도... 공공기관 절반 채용 줄었다, 2020. 5. 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07046625766952&mediaCodeNo=257&OutLnkChk=Y>, 검색일자: 2020. 9. 21.

148) 과학기술정보통신부(△1,199명), 고용노동부(△834명), 교육부(△799명), 국무조정실(△370명), 행정안전부(△225명), 국보훈처(△156명), 문화체육관광부(△118명), 농림축산식품부(△115명), 기획재정부(△46명), 중소벤처기업부(△43명), 산림청(△17명), 문화재청(△12명), 여성가족부(△6명), 법무부(△3명), 인사혁신처(△1명), 식품의약품안전처(△1명)

〈표 III-39〉 2015~2019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신규 채용 현황

(단위: 명, %)

구 분	기관 수	'15년	'16년	'17년	'18년 (A)	'19년 (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기획재정부	4	159	304	141	251	205	△46	△18.3
교육부	23	3,646	4,382	4,124	7,757	6,958	△799	△1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9	1,168	1,398	1,199	2,955	1,757	△1,199	△40.6
외교부	3	31	30	61	87	87	1	0.6
통일부	2	16	12	7	6	10	4	69.6
법무부	3	62	67	55	94	91	△3	△2.7
국방부	3	40	32	29	22	33	11	50
행정안전부	3	70	37	85	352	127	△225	△63.9
문화체육관광부	32	360	391	343	481	363	△118	△24.5
농림축산식품부	12	427	337	662	666	551	△115	△17.2
산업통상자원부	40	5,025	4,717	4,502	5,623	5,704	81	1.4
보건복지부	29	1,970	2,707	3,135	3,362	3,917	555	16.5
환경부	11	525	619	617	784	1,166	383	48.8
고용노동부	11	734	832	1,292	2,154	1,320	△834	△38.7
여성가족부	5	103	60	56	64	58	△6	△9.4
국토교통부	25	1,589	2,357	3,121	4,792	7,206	2,414	50.4
해양수산부	18	461	275	242	345	385	40	11.6
중소벤처기업부	11	477	266	269	512	469	△43	△8.4
국무조정실	27	332	308	238	681	311	△370	△54.3
방송통신위원회	2	55	55	33	35	37	2	5.7
원자력안전위원회	3	86	84	18	54	79	25	47
금융위원회	8	910	600	1,022	881	906	25	2.8
공정거래위원회	2	46	45	50	64	72	8	12.5
국가보훈처	3	367	314	262	828	671	△156	△18.9
인사혁신처	1	28	37	55	50	49	△1	△2
식품의약품안전처	4	46	36	28	71	70	△1	△1.4
관세청	1	10	3	14	3	8	5	166.7
방위사업청	2	177	150	146	371	389	18	4.9
경찰청	1	44	116	81	83	137	54	65.1
소방청	1	31	25	18	25	31	6	24
문화재청	1	16	7	11	28	16	△12	△42.9
산림청	4	15	129	163	167	151	△17	△9.9
농촌진흥청	1	12	20	29	8	25	17	212.5
특허청	6	137	137	67	43	67	25	57.6
기상청	2	29	21	25	22	23	1	3.4
합 계	363	19,202	20,908	22,195	33,716	33,447	△269	△0.8

주: 2020년 4월 29일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시한 340개 공공기관(2020년 1월 지정 기준)과 그 부설기관(23개 기관)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수 반올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4. 신규채용' 항목의 기관별 공시자료(2020.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19년에 신규 채용이 100명 이상 이루어진 기관은 63개이며 이 중 상위 10개 기관의 총 신규채용 규모(1만 2,900명)가 전체 신규채용(3만 3,447명)의 약 38.56%를 차지함.
- 신규채용이 많이 이루어진 10개 기관은 사회적 수요 증가에 따라 2019년 임직원 수 증원이 주로 이루어진 보건의료 분야, SOC 분야 및 에너지 분야의 공공기관에 해당함.

〈표 III-40〉 2019년 신규 채용 규모 상위 10개 기관

(단위: 명)

번호	기관명	유형	신규 채용	번호	기관명	유형	신규 채용
1	한국철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3,966	6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기타 공공기관	885
2	한국전력공사	시장형 공기업	1,773	7	전남대학교병원	기타 공공기관	720
3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288	8	한전KPS(주)	준시장형 공기업	713
4	서울대학교병원	기타 공공기관	1,188	9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667
5	부산대학교병원	기타 공공기관	1,038	10	충남대학교병원	기타 공공기관	663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4. 신규채용' 항목의 기관별 공시자료(2020.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신규 채용 규모를 전년대비 증감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철도공사 등 17개 기관에서 2019년 신규채용 규모가 전년대비 100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철도공사는 2019년 전체 공공기관 중 신규채용 규모(3,966명)가 가장 크고 전년대비 신규 채용 증가인원(1,781명)도 가장 많음.
- 2019년에 안전 강화를 위해 해당 분야와 관련된 증원이 있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퇴사한 인력(정원)만큼 신규 채용을 실시했기 때문임.
- 서울대학교병원은 전년대비 421명 증가한 1,188명을 신규로 채용함.
- 이 중 일부는 미화, 주차관리, 시설 유지·보수, 보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파견 용역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함.
- 충남대학교병원은 세종충남대병원 신규 개원을 위해 투입될 간호사 등의 인력을 채용하면서 2019년 전년대비 102%(334명) 증가한 663명을 채용함.

- 한국환경공단은 2019년 신규 채용 증가율(261%)이 가장 높은 기관으로 전년대비 264명이 증가한 365명을 신규 채용함.
- 신규 사업으로 정원이 늘어났고 정원과 현원 간에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채용을 실시함.

〈표 Ⅲ-41〉 2019년 신규 채용 100명 이상 증가한 기관

(단위: 명, %)

번호	기관명	유형	'18년 신규채용 (A)	'19년 신규채용 (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1	한국철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185	3,966	1,781	81
2	서울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767	1,188	421	55
3	충남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329	663	334	102
4	한국환경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01	365	264	261
5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432	667	235	54
6	한전KPS(주)	준시장형 공기업	482	713	231	48
7	한국공항공사	시장형 공기업	214	425	211	99
8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689	885	196	29
9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108	1,288	180	16
10	전남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557	720	163	29
11	대한적십자사	기타공공기관	282	433	151	54
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76	512	137	36
13	한국남부발전(주)	시장형 공기업	134	270	136	102
14	국가철도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06	237	131	123
15	코레일관광개발(주)	기타공공기관	76	193	117	154
16	국방기술품질원	기타공공기관	43	156	113	263
17	한국수자원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366	478	113	31

주: 1.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기타공공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의 부설기관임

2. 전년대비 증감률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4. 신규채용' 항목의 기관별 공시자료(2020.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에 따라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을 확대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공공기관의 사회형평적 채용 실적이 크게 개선됨.
-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함.
 - 청년 채용규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년과 비슷한 수준(2.7만명)을 유지함.
 - 여성 채용 역시 청년 채용과 유사하게 2018년까지 증가하다가 2019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2019년에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음.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으로 인해 5개 대학병원¹⁴⁹⁾의 2018년 여성 채용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¹⁵⁰⁾했으나 2019년에는 2017년보다는 많지만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적은 인원을 채용함에 따라 전체 여성 채용인원 감소에 영향을 미침.

〈표 III-42〉 2015~2019년 사회형평적 채용 규모

(단위: 명,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A)	'19년 (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 장애인	255	267	373	688	791	103	15.0
· 이전지역인재	1,024	1,132	1,467	1,948	2,080	132	6.8
· 비수도권 지역인재	9,959	11,071	11,897	18,584	19,600	1,016	5.5
· 청년	15,607	17,255	18,934	27,461	27,436	△25	△0.1
· 여성	7,542	8,526	9,603	15,327	14,309	△1,018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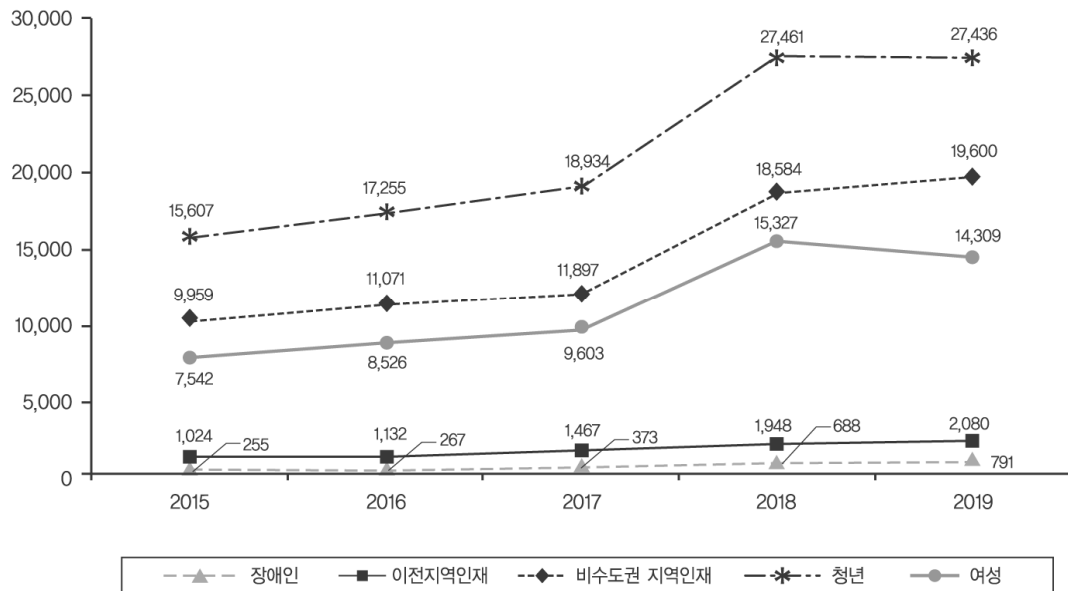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0. 4. 29.

149) 부산대, 경북대, 경상대, 충북대, 강원대 등 5개 대학병원

150) (2017) 1,148명 → (2018) 3,473명 → (2019) 1,991명(전년대비 △1,482)

〈그림 III-10〉 2015~2019년 사회형평적 채용 추이

(단위: 명)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0. 4. 29.를 참고하여 작성

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현황¹⁵¹⁾

- 정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하여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이를 민간부문으로 파급함으로써 청년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고용의무제도를 시행함.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¹⁵²⁾에 청년 미취업자(연령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2019년 기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기관은 442개이며 이 중 「공운법」상 공공기관은 303개이고 지방공기업은 139개임.
- 정부는 청년 신규고용률이 3%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하고 청년 신규고용 실적을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151) 고용노동부, 「2019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비율 89.4%로 역대 최고 수준 달성」, 보도자료, 2020. 2. 20. 참고

15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 준정부기관,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

- 2020년부터는 이 외에도 우수사례 공유, 미이행기관 유형별 점검회의 개최, 이행 상황 중간점검 실시 등 의무이행기관비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기로 함.

□ 2019년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신규고용비율과 의무이행기관 비율이 전년대비 모두 개선되었음.

- 442개 적용대상기관의 2019년 청년 신규고용 인원은 2만 8,689명으로 2018년 2만 5,676명보다 11.7%(3,013명) 증가함.
 - 이 인원은 공공기관 정원의 7.4%에 해당하며 최초로 정원의 7%를 초과함.
- 2019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기관(442개소) 중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기관의 비율은 89.4%(395개소), 미이행한 기관의 비율은 10.6%(47개소)로 나타남.
 - 2019년 의무이행기관비율(89.4%)은 2018년(82.1%)에 비해 7.3%p 상승한 수치로 2016년에 80%대로 진입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임.

〈표 III-43〉 2011~2019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추이

(단위: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청년신규고용비율	3.0	3.3	3.5	4.8	4.8	5.9	5.9	6.9	7.4
의무이행기관비율	42.3	48.1	51.3	72.1	70.1	80.0	80.0	82.1	89.4

주: 1. 청년의무고용 적용대상인 「공운법」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체 실적임

2. 2013년까지는 '고용노력의무'의 대상을 만 15~29세로 함

자료: 고용노동부,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준수율 82.1%」, 보도자료, 2019. 2. 28.,

고용노동부, 「2019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비율 89.4%로 역대 최고 수준 달성」, 보도자료, 2020. 2. 20.

□ 「공운법」상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청년 신규고용 및 청년고용의무제 이행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44>와 <표 III-45>와 같음.

- 「공운법」상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고용률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¹⁵³⁾했고, 의무 이행기관 비율도 2017년을 제외하면 매년 전년대비 증가함.¹⁵⁴⁾
 - 지속적인 증가세로 인해 「공운법」상 공공기관의 2019년 청년 신규고용률(7.8%)과 의무 이행기관 비율(89.1%)은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함.

153) 2015년 5.2% → 2016년 5.8%(0.6%p 증가) → 2017년 6.0%(0.2%p 증가) → 2018년 7.2%(1.2%p 증가) → 2019년 7.8%(0.6%p 증가)

154) 2015년 76.1% → 2016년 82.8%(12.7%p증가)→ 2017년 77.5%(5.3%p 감소) → 2018년 82.8%(5.3%p 증가) → 2019년 89.1%(6.3%p)

- 유형별 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청년 신규고용률은 기타공공기관(8.4%)이 가장 높고 의무 이행기관 비율은 공기업(97.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청년 신규고용율의 경우, 기타공공기관은 매년 전체 대상기관 실적과 「공운법」상 공공기관 실적을 모두 상회하는 수준인 반면, 공기업 유형은 전체 대상기관 실적이나 다른 공공기관 유형의 실적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임.
- 의무 이행기관 비율의 경우, 준정부기관은 최저 80%대이고 2018년부터는 2년 연속 95%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기타공공기관은 2018년까지는 80% 미만으로 전체 대상기관 실적이나 「공운법」상 공공기관 실적보다 낮은 수준임.

〈표 III-44〉 2015~2019년 청년 신규고용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기관 수	정원 (A)	청년 고용 (B) (B/A)	기관 수	정원 (A)	청년 고용 (B) (B/A)	기관 수	정원 (A)	청년 고용 (B) (B/A)	기관 수	정원 (A)	청년 고용 (B) (B/A)	기관 수	정원 (A)	청년 고용 (B) (B/A)
합 계	408	323,843	15,576 (4.8)	409	326,774	19,236 (5.9)	404	322,123	18,937 (5.9)	447	373,416	25,676 (6.9)	442	385,862	28,689 (7.4)
공운법상 공공기관	276	277,359	14,387 (5.2)	279	281,993	16,326 (5.8)	276	290,800	17,358 (6.0)	308	320,994	23,225 (7.2)	303	332,388	25,786 (7.8)
공기업	30	103,517	3,826 (3.7)	30	105,371	4,646 (4.4)	33	120,468	6,152 (5.1)	35	131,016	7,555 (5.8)	34	135,516	9,601 (7.1)
준정부 기관	85	77,775	3,823 (4.9)	85	80,074	4,761 (5.9)	86	85,219	5,274 (6.2)	92	94,602	7,803 (8.3)	91	96,232	7,716 (8.0)
기타 공공기관 (30인이상)	161	96,067	6,738 (7.0)	164	96,548	6,919 (7.2)	157	85,113	5,932 (7.0)	181	95,376	7,867 (8.3)	178	100,640	8,469 (8.4)
지방 공기업	132	46,484	1,189 (2.6)	130	44,781	2,910 (6.5)	128	31,323	1,579 (5.0)	139	52,422	2,451 (4.7)	139	53,474	2,903 (5.4)

주: () 안은 정원 대비 청년고용 비율

자료: 고용노동부, 「2019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비율 89.4%로 역대 최고 수준 달성」, 보도자료, 2020. 2. 20.

〈표 Ⅲ-45〉 2015~2019년 청년고용의무제 이행기관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기관 수	청년 고용			기관 수	청년 고용			기관 수	청년 고용			기관 수	청년 고용			기관 수	청년 고용		
		달성	미달	없음		달성	미달	없음		달성	미달	없음		달성	미달	없음		달성	미달	없음
합 계	408	286 (70.1)	122 (29.9)	37	409	327 (80.0)	82 (20.0)	25	404	323 (80.0)	81 (20.0)	15	447	367 (82.1)	80 (17.9)	19	442	395 (89.4)	47 (10.6)	18
공운법상 공공기관	276	210 (76.1)	66 (23.9)	15	279	231 (82.8)	48 (17.2)	15	276	214 (77.5)	62 (22.5)	14	308	255 (82.8)	53 (17.2)	11	303	270 (89.1)	33 (10.9)	13
공기업	30	22 (73.3)	8 (26.7)	1	30	23 (76.7)	7 (23.3)	2	33	29 (87.9)	4 (12.1)	1	35	29 (82.9)	6 (17.1)	2	34	33 (97.1)	1 (2.9)	0
준정부 기관	85	72 (84.7)	13 (15.3)	0	85	79 (92.9)	6 (7.1)	1	86	75 (87.2)	11 (12.8)	0	92	88 (95.7)	4 (4.3)	0	91	87 (95.6)	4 (4.4)	0
기타 공공기관 (30인이상)	161	116 (72.0)	45 (28.0)	14	164	129 (78.7)	35 (21.3)	12	157	110 (70.1)	47 (29.9)	13	181	138 (76.2)	43 (23.8)	9	178	150 (84.3)	28 (15.7)	13
지방 공기업	132	76 (57.6)	56 (42.4)	22	130	96 (73.8)	34 (26.2)	10	128	109 (85.2)	19 (14.8)	1	139	112 (80.6)	27 (19.4)	8	139	125 (89.9)	14 (10.1)	5

주: () 안은 청년고용달성 기관수 비율임

자료: 고용노동부, 「2019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비율 89.4%로 역대 최고 수준 달성」, 보도자료, 2020. 2. 20.

라. 비정규직 현황 및 정규직 전환 실적¹⁵⁵⁾

□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2017. 10월)」에 따라 기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면서 공공기관 전체 인력 중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2017. 10월)」은 2020년까지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¹⁵⁶⁾, 지방공기업 및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20만 5천명¹⁵⁷⁾을

155)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자료(4차)」, 2020. 1. 31. 및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결정 19만 3천명(전환완료 17만4천명), '20년까지 계획(20만 5천명) 대비 94.2% 달성」, 보도자료, 2020. 2. 3.을 참고하여 작성

156)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2017. 10월)」의 '공공기관'은 2017년 기준 「공운법」상 공공기관 340개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정함.

-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년도에 이어 공공기관 근로자의 고용안정성과 전환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있으며 정규직 고용 관행이 확산되고 있음.

□ 2020년 알리오시스템 공시정보 기준, 340개 공공기관의 2019년 말 비정규직 수는 전년대비 580명(2.2%) 감소한 2만 5,629명임.

- 시장형 공기업(348명, △16.4%),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404명, △22.4%), 기타공공기관(1,166명, △7.1%) 유형의 비정규직 수는 전년대비 감소함.
- 반면 준시장형 공기업(1,085명, 39.5%)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53명, 8.0%) 유형의 비정규직 수는 전년대비 증가함.

〈표 III-46〉 2015~2019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단위: 명,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A)	'19년 (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43,769	38,374	34,992	26,209	25,629	△580	△2.2
공기업	12,851	8,430	6,566	4,876	5,613	737	15.1
· 시장형	2,246	2,377	2,230	2,125	1,777	△348	△16.4
· 준시장형	10,605	6,053	4,336	2,751	3,836	1,085	39.5
준정부기관	7,367	6,004	5,043	4,971	4,820	△151	△3.0
· 기금관리형	1,113	981	846	1,801	1,397	△404	△22.4
· 위탁집행형	6,254	5,023	4,198	3,170	3,423	253	8.0
기타공공기관	23,551	23,940	23,382	16,362	15,196	△1,166	△7.1

주: 2020년 지정된 3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0.4.29. 및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임직원수-비정규직계' 항목의 기관별 공시자료(2020.4.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공운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4개 기관(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은행)을 포함한 334개 기관임

157) 기관별 계획 17만 5천명 및 추가전환 여지 3만명 포함

- 2020년 1월 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2017. 10월)」에 따른 정규직 전환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20년 「공운법」상 공공기관(340개)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에 포함된 기관은 321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 340개의 공공기관 중 2018~2020년에 신규지정 된 19개의 공공기관은 대상기관에서 제외됨.
 - 321개 공공기관 기준,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10만명으로 계획인원 대비 전환결정 비율은 105.2%이고, 이 중 실제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8.5만명으로 결정인원 대비 전환완료 비율은 85.4%로 나타남.
 - 전환결정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준시장형 공기업(123.9%)이었으며 가장 낮은 유형은 기타공공기관(81.9%)임.
 - 전환완료 비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96.2%)이 가장 높았고 시장형 공기업(67.5%)은 가장 낮았으며 다른 유형이 모두 90%를 초과한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321개 공공기관 기준, 비정규직 중 기간제 근로자의 전환결정 인원은 2.6만명으로 계획인원 대비 전환결정 비율은 101.1%이며 전환완료 인원은 2.5만명으로 결정인원 대비 전환완료 비율은 96.8%임.
 - 321개 공공기관 기준, 파견 근로자의 전환결정 인원은 7.4만명, 계획인원 대비 전환결정 비율은 106.7%, 전환완료 인원은 6만명, 결정인원 대비 전환완료 비율은 81.4%임.
 - 계획인원 대비 전환결정 비율은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모두 100%를 초과했으며 결정인원 대비 전환완료 비율은 기간제 근로자(96.8%)가 파견 근로자(81.4%)에 비해서 더 높게 나타남.

〈표 III-47〉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결정 및 전환완료 현황

(단위: 명, %)

구 분	총 인원 ¹⁾	상시 인원 ²⁾	전환계획 인원 ³⁾ (A)	전환결정 인원 ⁴⁾ (B)	전환결정 비율 (B/A)	전환완료 인원 ⁵⁾ (C)	전환완료 비율 (C/B)
합 계 ⁶⁾	147,337	131,105	95,011	99,917	105.2	85,343	85.4
공기업	72,287	69,284	48,601	57,808	118.9	46,482	80.4
· 시장형	35,954	34,759	25,673	29,409	114.6	19,851	67.5
· 준시장형	36,333	34,525	22,928	28,399	123.9	26,631	93.8
준정부기관	26,127	23,547	19,228	19,848	103.2	18,747	94.5
· 기금관리형	7,847	7,281	6,161	6,846	111.1	6,245	91.2
· 위탁집행형	18,280	16,266	13,067	13,002	99.5	12,502	96.2
기타공공기관	48,923	38,274	27,182	22,261	81.9	20,114	90.4

주: 1. 총인원은 2017년 6월 말 기준 기간제 및 파견·용역 근로자 현원(2017년 특별실태조사)임

2. 상시인원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임

3. 전환계획인원은 2017년 10월 25일 연차별 전환계획상 인원으로, 개별 기관 자체 판단에 따른 잠정적인 정규직 전환계획 인원임

4. 전환결정인원은 전환결정기구(기간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파견용역: 노사전문가협의)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인원임

5. 전환완료인원은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채용)을 완료한 인원임

6. 고용노동부 자료(334개 기관 기준) 중 2020년 「공운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3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산출 (「공운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4개 기관(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은행)과 2018~2020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된 9개 기관(사단법인한국기술자격검정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재)한국형수치예보 모델개발사업단, (재)정동극장, IOM이민정책연구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의료재단법인한일병원, (주)부산 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0. 1. 29. 및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자료(4차)」, 2020. 1. 31.을 참고하여 작성

〈표 Ⅲ-48〉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결정 및 전환완료 현황

(단위: 명, %)

구 분	총 인원 ¹⁾	상시 인원 ²⁾	전환계획 인원 ³⁾ (A)	전환결정 인원 ⁴⁾ (B)	전환결정 비율 (B/A)	전환완료 인원 ⁵⁾ (C)	전환완료 비율 (C/B)
합 계 ⁶⁾	46,333	33,108	25,642	25,914	101.1	25,073	96.8
공기업	10,905	9,269	8,147	8,178	100.4	8,159	99.8
· 시장형	1,306	772	466	455	97.6	447	98.2
· 준시장형	9,599	8,497	7,681	7,723	100.5	7,712	99.9
준정부기관	8,244	6,301	5,384	5,254	97.6	5,168	98.4
· 기금관리형	2,038	1,539	1,223	1,224	100.1	1,201	98.1
· 위탁집행형	6,206	4,762	4,161	4,030	96.9	3,967	98.4
기타공공기관	27,184	17,538	12,111	12,482	103.1	11,746	94.1

주: 1. 총인원은 2017년 6월 말 기준 기간제 및 파견·용역 근로자 인원(2017년 특별실태조사)임

2. 상시인원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임

3. 전환계획인원은 2017년 10월 25일 연차별 전환계획상 인원으로, 개별 기관 자체 판단에 따른 잠정적인 정규직 전환계획 인원임

4. 전환결정인원은 전환결정기구(기간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파견·용역: 노사전문가협의)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인원임

5. 전환완료인원은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채용)을 완료한 인원임

6. 고용노동부 자료(334개 기관 기준) 중 2020년 「공운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3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산출(「공운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4개 기관(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은행)과 2018~2020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된 9개 기관(사단법인한국기술자격검정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정동극장, IOM이민정책연구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의료재단법인한일병원, (주)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0. 1. 29. 및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자료(4차)」, 2020. 1. 31.을 참고하여 작성

〈표 III-49〉 파견 근로자 정규직 전환결정 및 전환완료 현황

(단위: 명, %)

구 분	총 인원 ¹⁾	상시 인원 ²⁾	전환계획 인원 ³⁾ (A)	전환결정 인원 ⁴⁾ (B)	전환결정 비율 (B/A)	전환완료 인원 ⁵⁾ (C)	전환완료 비율 (C/B)
합 계 ⁶⁾	101,004	97,997	69,369	74,003	106.7	60,270	81.4
공기업	61,382	60,015	40,454	49,630	122.7	38,323	77.2
· 시장형	34,648	33,987	25,207	28,954	114.9	19,404	67
· 준시장형	26,734	26,028	15,247	20,676	135.6	18,919	91.5
준정부기관	17,883	17,246	13,844	14,594	105.4	13,579	93
· 기금관리형	5,809	5,742	4,938	5,622	113.9	5,044	89.7
· 위탁집행형	12,074	11,504	8,906	8,972	100.7	8,535	95.1
기타공공기관	21,739	20,736	15,071	9,779	64.9	8,368	85.6

주: 1. 총인원은 2017년 6월 말 기준 기간제 및 파견·용역 근로자 현원(2017년 특별실태조사)임

2. 상시인원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임

3. 전환계획인원은 2017년 10월 25일 연차별 전환계획상 인원으로, 개별 기관 자체 판단에 따른 잠정적인 정규직 전환계획 인원임

4. 전환결정인원은 전환결정기구(기간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파견·용역: 노사전문가협의)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인원임

5. 전환완료인원은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채용)을 완료한 인원임

6. 고용노동부 자료(334개 기관 기준) 중 2020년 「공운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3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산출(「공운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4개 기관(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은행)과 2018~2020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된 9개 기관(사단법인한국기술자격검정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정동극장, IOM이민정책연구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의료재단법안한일병원, (주)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0. 1. 29. 및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자료(4차)」, 2020. 1. 31.을 참고하여 작성

3. 재무현황¹⁵⁸⁾

가. 총평

- 공공기관 자산규모는 861.1조원으로 발전설비 투자·대출 채권 증가 등의 이유로 전년대비 32.8조원(4.0% 증가)이 증가하였음.
 - 한국전력공사(연결재무제표 기준)의 발전설비 투자 증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채권 증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자산 증가, 한국도로공사의 건설중 개발 자산 증가 등이 공공기관 자산증가에 영향을 줌.
- 2013년 말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영향으로 공공기관 부채규모가 2014년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이래 2017년까지 4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 증가로 전환되어 2019년까지 부채규모가 계속 증가함.
 - 2019년 부채 규모는 525.1조원으로 2018년 503.7조원 대비 약 21.4조원이 증가함.
 - 공기업 부채는 전년대비 16.9조원 증가(4.6% 증가)하였고, 준정부기관 부채는 전년대비 2.0조원 증가(1.7% 증가), 기타공공기관 부채는 전년대비 2.5조원 증가(16.5% 증가)하여,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전 유형에서 증가하였음.

158)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기관별 공시자료(2020. 4. 29. 기준)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0. 4. 29. 참고

〈표 III-50〉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자산, 부채 및 자본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15년	'16년	전년대비 증감 (증가율)	'17년	전년대비 증감 (증가율)	'18년	전년대비 증감 (증가율)	'19년	전년대비 증감 (증가율)
◇ 부채	504.7	500.4	△4.2 (△0.8)	495.2	△5.2 (△1.0)	503.7	8.5 (1.7)	525.1	21.4 (4.3)
· 공기업	365.3	363.0	△2.3 (△0.6)	364.1	1.1 (0.3)	371.2	7.1 (2.0)	388.1	16.9 (4.6)
· 준정부기관	125.4	123.4	△2.0 (△1.6)	117.6	△5.8 (△4.7)	117.7	0.0 (0.0)	119.7	2.0 (1.7)
· 기타공공기관	13.9	14.0	0.1 (0.5)	13.5	△0.5 (△3.8)	14.9	1.4 (10.3)	17.3	2.5 (16.5)
◇ 자본	276.4	299.3	22.9 (8.3)	314.9	15.6 (5.2)	324.6	9.7 (3.1)	336.0	11.3 (3.5)
· 공기업	190.3	200.0	9.7 (5.1)	204.9	5.0 (2.5)	208.1	3.2 (1.5)	212.2	4.1 (1.9)
· 준정부기관	68.0	78.3	10.3 (15.2)	87.4	9.1 (11.7)	89.6	2.2 (2.5)	95.8	6.3 (7.0)
· 기타공공기관	18.2	21.0	2.9 (15.8)	22.5	1.5 (7.1)	26.9	4.4 (19.5)	27.9	1.0 (3.8)
◇ 자산	781.1	799.8	18.7 (2.4)	810.1	10.3 (1.3)	828.3	18.3 (2.3)	861.1	32.8 (4.0)
· 공기업	555.6	563.0	7.4 (1.3)	569.0	6.0 (1.1)	579.3	10.3 (1.8)	600.3	21.0 (3.6)
· 준정부기관	193.4	201.7	8.3 (4.3)	205.1	3.3 (1.7)	207.2	2.2 (1.1)	215.5	8.3 (4.0)
· 기타공공기관	32.1	35.0	2.9 (9.2)	36.0	1.0 (2.7)	41.8	5.8 (16.1)	45.3	3.5 (8.3)

주: 1.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2.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2015~2019년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료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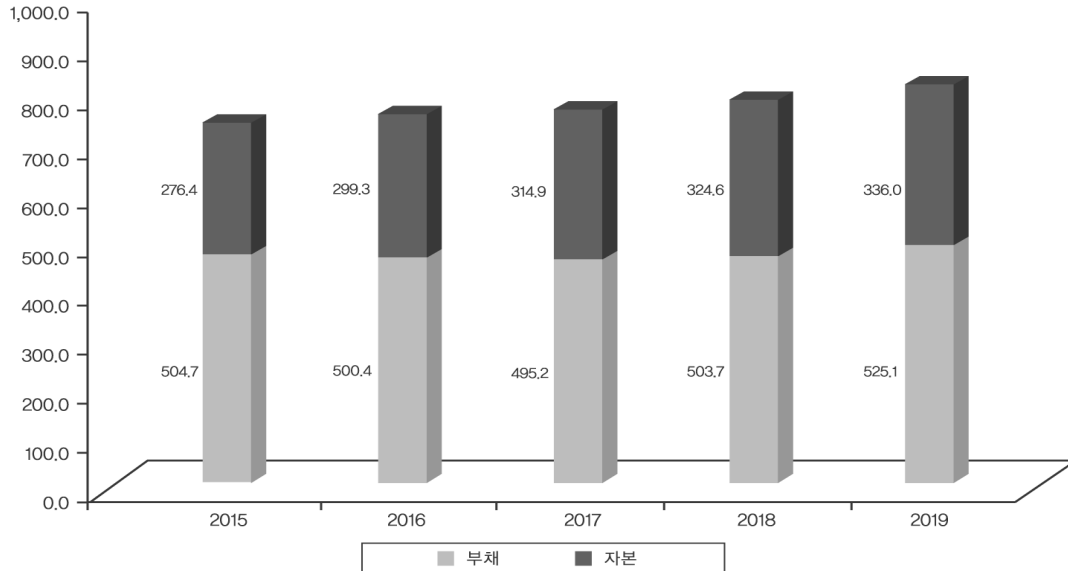
3.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관 고유계정 및 기금계정(직접관리기금)을 모두 포함하여 금액 산출. 다만, 기타공공기관 중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산출대상에서 제외

4. 소수점 반올림과 증감 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6. 요약재무상대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0.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11〉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자본 및 부채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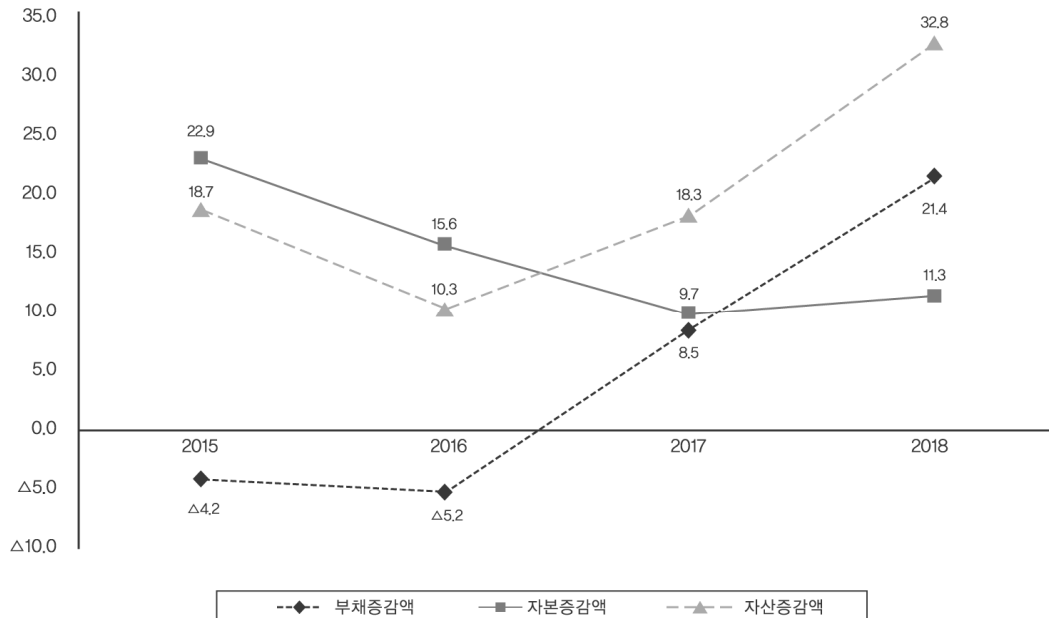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6.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0.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12〉 최근 4년간 공공기관의 자산, 부채 및 자본 증감액 추이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6.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0.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나. 부채 현황

- 2015년 이후 2017까지 매년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감소세를 유지하였으나, 2018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9년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525.1조원으로 전년대비 21.4조원 증가하였음.
- 부채 증가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연결재무제표 기준)로 전년대비 약 14.6조원의 부채가 증가하였음.
 - 연료비·환율 상승, 설비 확충 등을 비롯하여 저소득층 요금 할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 비용 및 에너지 전환 비용 등이 부채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서민주택대출채권 증가로 인해 부채규모가 전년대비 3조원 증가하였음.
- 준정부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채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의 증가와 건강보험 보장항목의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1조원 증가함.
- 「공운법」 제39조의2 및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39개 기관¹⁵⁹⁾의 2019년 부채규모는 497.2조원으로 전년대비 18.1조원 증가하였고, 부채비율은 167.1%로 전년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음.
- 부채규모는 작년에 수립된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2019년 전망치인 498.9조원보다 약 1.7조원 가량 개선된 실적임.
-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은 28%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여¹⁶⁰⁾ 2009년 이후 최저수준을 나타냄.

159)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농어촌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마사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강원랜드

160) GDP대비 비중(%): ('09) 29, ('12~'13) 36, ('14) 35, ('15) 32, ('16) 30, ('17) 29, ('18) 28, ('19) 28

〈표 Ⅲ-51〉 최근 5년간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15년	'16년	전년대비 증감	'17년	전년대비 증감	'18년	전년대비 증감	'19년	전년대비 증감
부채	504.7 (183)	500.4 (167)	△4.2 (△15)	495.2 (157)	△5.2 (△10)	503.7 (155)	8.5 (△2)	525.1 (156)	21.4 (1)
공기업	365.3 (192)	363.0 (182)	△2.3 (△10)	364.1 (178)	1.1 (△4)	371.2 (178)	7.1 (1)	388.1 (183)	16.9 (5)
· 시장형	172.7 (167)	169.7 (158)	△3.0 (△9)	172.2 (163)	2.5 (5)	180.4 (176)	8.2 (13)	196.2 (196)	15.8 (20)
· 준시장형	192.6 (222)	193.3 (209)	0.7 (△13)	191.9 (194)	△1.4 (△16)	190.8 (181)	△1.1 (△13)	191.9 (171)	1.1 (△10)
준정부기관	125.4 (184)	123.4 (158)	△2.0 (△27)	117.6 (135)	△5.8 (△23)	117.7 (131)	0.0 (△3)	119.7 (125)	2.0 (△6)
· 기금관리형	69.7 (195)	67.1 (153)	△2.6 (△41)	60.9 (117)	△6.2 (△37)	57.8 (100)	△3.0 (△17)	57.8 (85)	△0.1 (△14)
· 위탁집행형	55.7 (173)	56.3 (163)	0.6 (△10)	56.8 (161)	0.4 (△2)	59.8 (190)	3.0 (29)	61.9 (220)	2.1 (30)
기타공공기관	13.9 (77)	14.0 (67)	0.1 (△10)	13.5 (60)	△0.5 (△7)	14.9 (55)	1.4 (△5)	17.3 (62)	2.5 (7)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39개)	480.4 (193)	476.1 (177)	△4.3 (△15.6)	472.3 (168)	△3.7 (△10)	479.0 (167)	6.7 (△1)	497.2 (167)	18.1 (0)

주: 1. () 안은 부채비율(부채/자본)임

2.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2015~2019년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료 작성

3.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관 고유계정 및 기금계정(직접관리기금)을 모두 포함하여 금액 산출. 다만, 기타 공공기관 중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산출대상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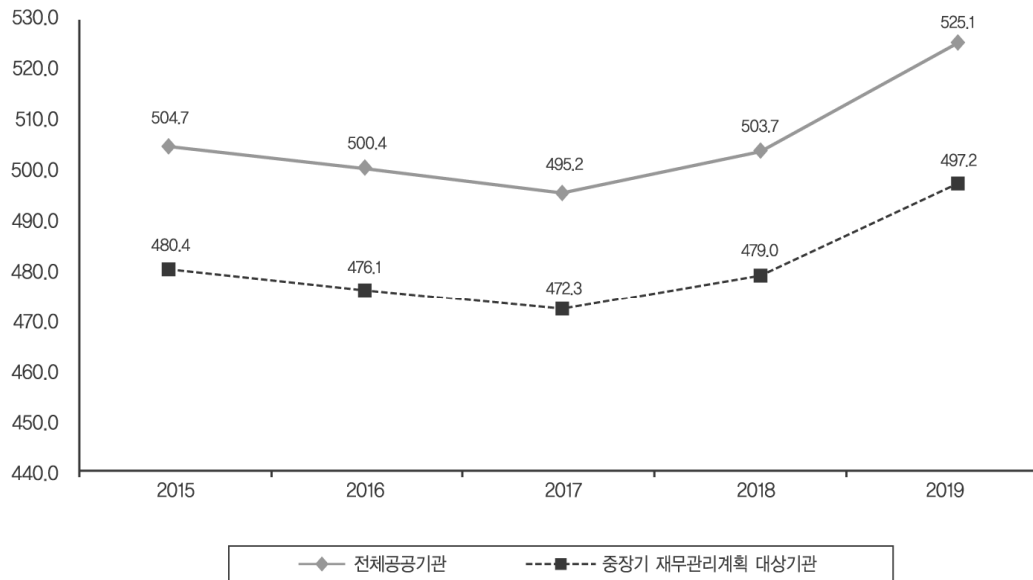
4. 소수점 반올림과 증감 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5.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은 2019년(39개)을 기준으로 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6. 요약재무상대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0.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13〉 최근 5년간 부채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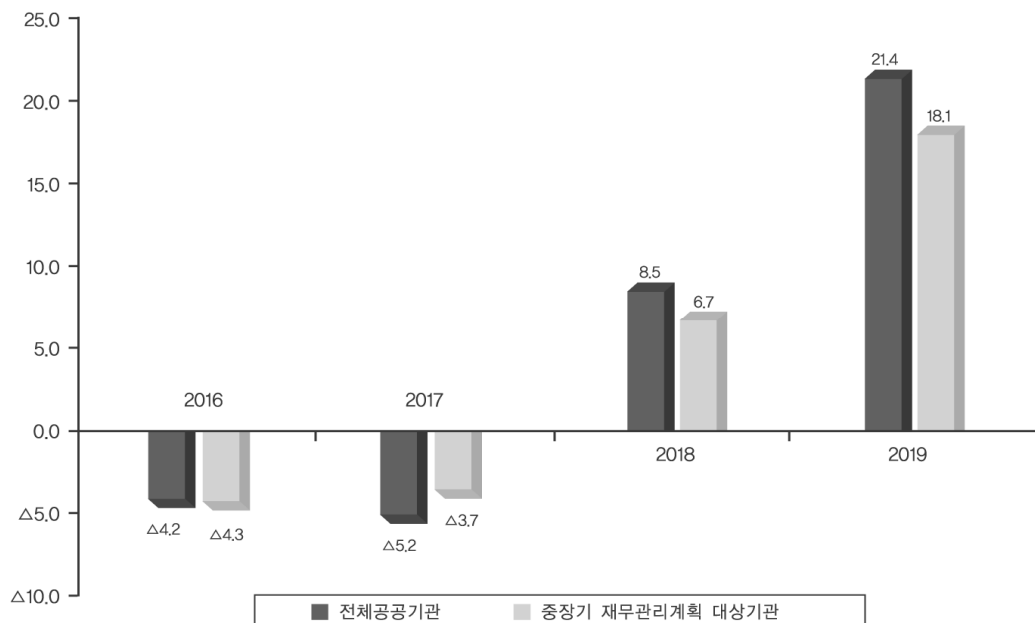
(단위: 조원)



주: 작성 시점에 따라 전체공공기관 개수 및 규모 변동 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6. 요약재무상대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0.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14〉 최근 4년간 부채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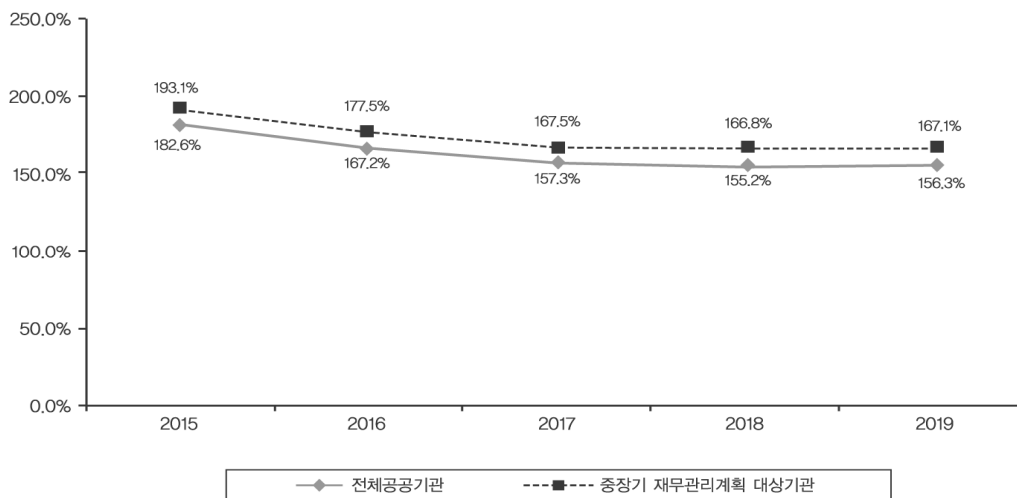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6. 요약재무상대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0.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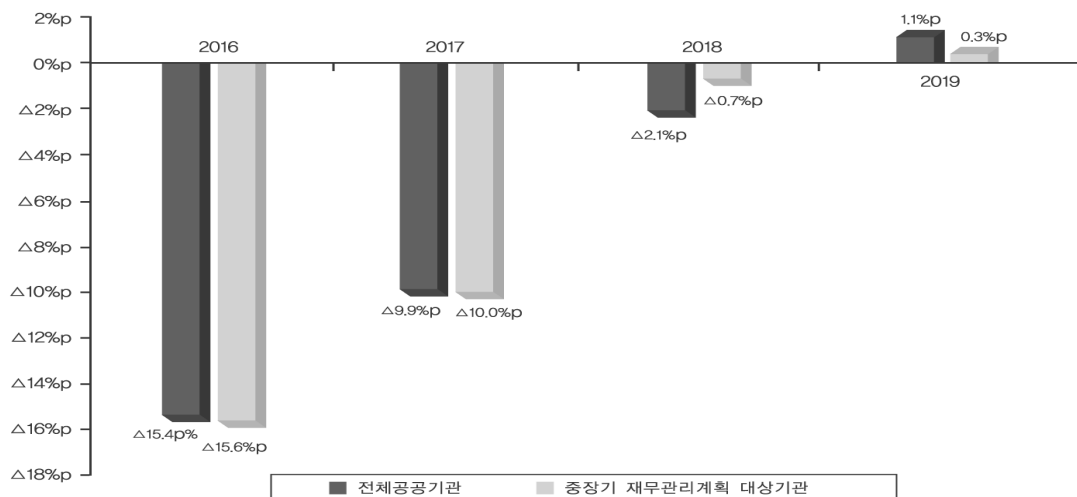
-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¹⁶¹⁾은 2013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6년 연속 감소세¹⁶²⁾를 유지하다가 2019년에는 전년대비 1.1%p 상승한 156.3%를 보임.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인 공공기관 39개의 부채비율 역시 2018년 166.8%로 하락세였다가, 2019년에는 167.1%로 전년대비 0.3%p 상승하였음.

〈그림 III-15〉 최근 5년간 부채비율 추이



주: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표 III-51>의 부채비율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6.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0.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16〉 최근 4년간 부채비율 증감 추이



주: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표 III-51>의 부채비율 증감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6.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0.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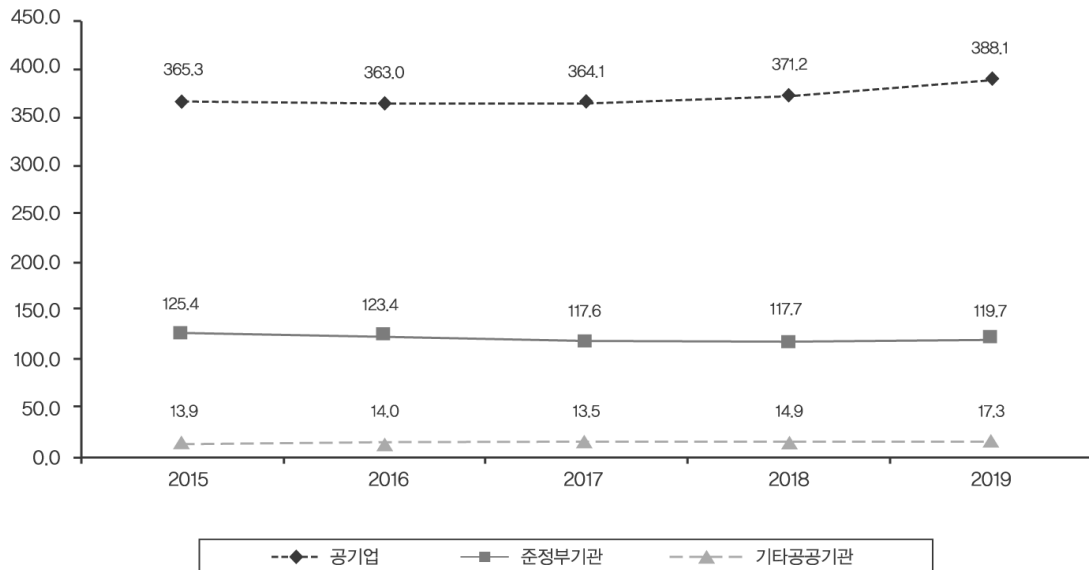
161) 부채비율: 부채/자본

162) 부채비율(%): ('12) 220, ('13) 217, ('14) 201, ('15) 183, ('16) 167, ('17) 158, ('18) 155, ('19) 156

- 공공기관 유형별로 부채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은 최근 3년간 꾸준히 부채규모가 상승했으며, 준정부기관은 최근 2년간 부채규모가 상승했고, 기타공공기관은 최근 5년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임.
- 부채 규모면에서 보면, 전체 공공기관 부채 증가액(21.4조원)의 대부분이 공기업의 부채 증가에 기인함.
 - 공기업의 경우, 전년도보다 16.9조원의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는데, 이는 시장형 공기업의 부채가 전년도 대비 15.8조원 증가한 데에 기인함.
 - 준정부기관은 전년대비 2조원의 부채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부채는 0.1조원 감소한 반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부채가 전년대비 2.1조원 증가한 결과임.
 - 부채증가율의 경우, 공기업은 2016년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고,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은 2017년 이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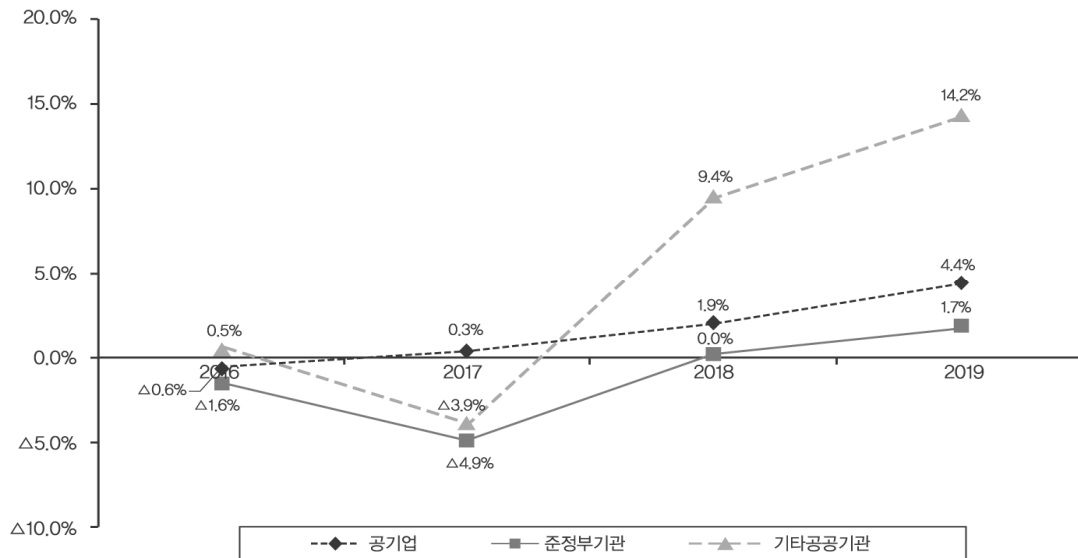
〈그림 III-17〉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현황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6.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0.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18〉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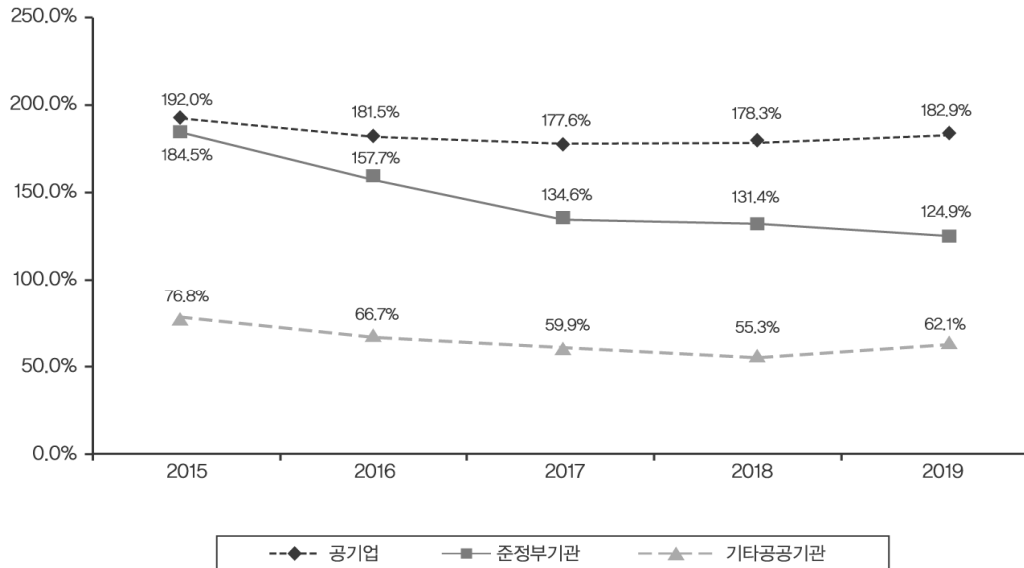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6.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0.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 유형별로 부채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공기업은 2015년 이후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18년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였으며, 준정부기관은 2015년 이후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기타공공기관은 2015년 이후 하락하다가, 2019년 다시 상승함.
-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다소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하는 반면 준정부기관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부채비율이 감소하고 있음.
- 기타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016년 하락세로 전환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¹⁶³⁾를 유지하다가 2019년에는 부채비율이 상승하여 62.1%로 나타남.

163) 2017년 전년대비 6.7%p 감소, 2018년 전년대비 6.6%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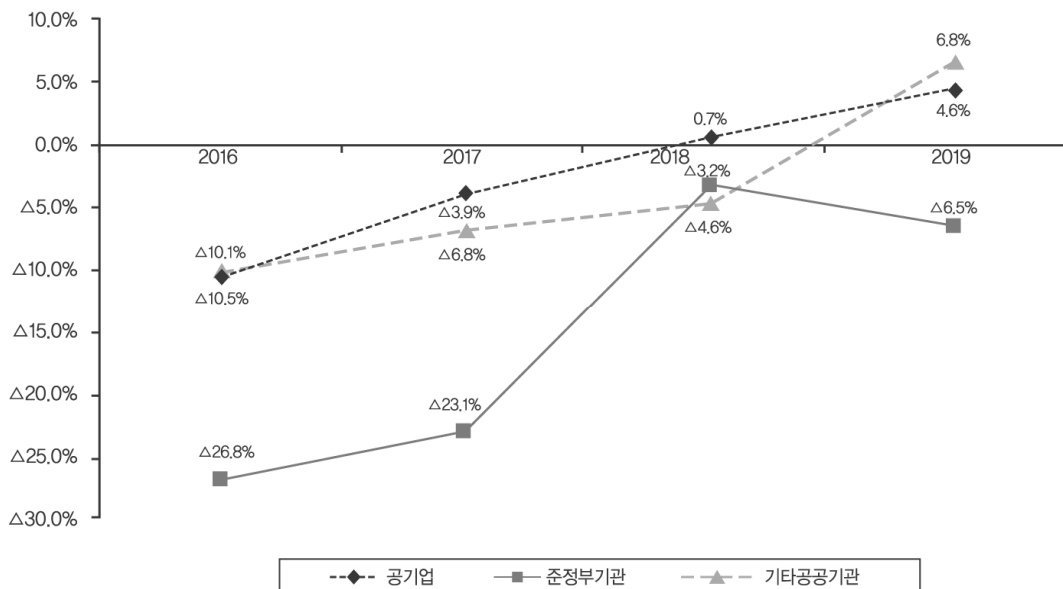
〈그림 III-19〉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현황



주: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표 III-51>의 부채비율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6. 요약재무상대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0.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20〉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증감 추이

(단위: %p)



주: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표 III-51>의 부채비율 증감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6. 요약재무상대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0.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19년 공공기관 부채 규모를 주무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채가 약 199조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채는 약 197.4조원으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나타남.
-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채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37.9%와 37.6%를 차지하고 있음.
 - 2019년 중 부채 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전년대비 약 15조원 증가(8.4% 증가)하였으며, 부채 규모가 가장 크게 감소한 부처는 인사혁신처로 전년대비 약 0.5조원 감소(7.3% 감소)함.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부채가 크게 급증한 것은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분야 공기업의 부채가 전년대비 증가함¹⁶⁴⁾에 기인함.
 - 인사혁신처 소관 공공기관의 부채 감소는 공무원연금공단의 부채 감축 실적(0.5조원)에서 기인함.

〈표 Ⅲ-52〉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부채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기관 수	'15년	'16년	'17년	'18년 (A)	'19년 (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기획재정부	4	1,298	1,324	1,378	1,456	2,448	992	68.1%
교육부	23	176,948	178,506	174,705	175,308	175,980	672	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9	35,971	34,871	31,487	27,936	29,881	1,945	7.0%
외교부	3	1,710	1,215	1,043	1,248	1,107	△141	△11.3%
통일부	2	31	30	30	34	123	89	265.3%
법무부	3	464	481	638	693	700	6	0.9%
국방부	3	254	309	310	274	289	14	5.2%
행정안전부	3	232	318	438	468	540	71	15.2%
문화체육관광부	32	21,604	23,580	21,478	24,375	23,187	△1,188	△4.9%
농림축산식품부	12	90,871	93,281	99,153	101,121	107,084	5,963	5.9%
산업통상자원부	40	1,751,759	1,719,060	1,737,214	1,820,874	1,974,678	153,805	8.4%
보건복지부	29	88,954	97,374	88,492	124,844	136,326	11,481	9.2%
환경부	11	148,993	152,232	151,795	155,527	154,759	△768	△0.5%
고용노동부	11	7,481	7,442	7,904	9,238	10,506	1,268	13.7%
여성가족부	5	50	69	66	87	116	29	33.4%
국토교통부	25	1,999,768	2,009,803	2,006,509	1,982,908	1,990,910	8,001	0.4%

164) 한국전력공사(14.6조)

구 분	기관 수	'15년	'16년	'17년	'18년 (A)	'19년 (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해양수산부	18	34,569	34,542	34,353	42,006	63,909	21,903	52.1%
중소벤처기업부	11	163,945	163,360	165,857	174,021	184,316	10,295	5.9%
국무조정실	27	5,171	4,890	4,066	3,934	4,348	414	10.5%
방송통신위원회	2	3,886	3,587	2,713	2,370	2,351	△19	△0.8%
원자력안전위원회	3	570	494	421	440	435	△4	△1.0%
금융위원회	8	429,557	394,043	343,432	301,876	306,348	4,473	1.5%
공정거래위원회	2	111	86	77	92	91	△1	△1.1%
국가보훈처	3	1,193	1,185	753	877	903	26	3.0%
인사혁신처	1	71,546	73,309	68,052	73,759	68,341	△5,418	△7.3%
식품의약품안전처	4	34	59	150	197	359	161	81.7%
관세청	1	2	4	3	3	3	△0	△10.3%
방위사업청	2	7,036	7,301	7,861	9,441	9,313	△129	△1.4%
경찰청	1	1,284	267	247	444	584	140	31.6%
소방청	1	132	147	152	118	119	1	1.0%
문화재청	1	138	116	107	82	93	11	13.8%
산림청	4	2	139	41	64	189	125	194.6%
농촌진흥청	1	66	56	79	137	155	18	13.2%
특허청	6	926	872	850	844	900	55	6.6%
기상청	2	44	48	62	36	17	△19	△52.9%
합 계	363	5,046,601	5,004,398	4,951,917	5,037,132	5,251,405	214,273	4.3%

주: 1.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관 고유계정 및 기금계정(직접관리기금)을 모두 포함하여 금액 산출. 다만, 기타공공기관 중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소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금융위원회 소관)은 산출대상에서 제외
 2.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합계, 증감액, 증감률에 오차 발생 가능
 3. 2020년 4월 말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시한 340개 공공기관(2020년 1월 지정 기준) 및 그 부설기관(23개 기관)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6.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0.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19년 기준 부채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은 2018년 부채 상위 10개¹⁶⁵⁾ 기관과 동일하며 일부 순위변동만 있음.

○ 10개 기관 모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기관이며 이 중 예금보험공사와 국가철도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기관은 에너지 및 SOC 분야 공기업에 해당함.

-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제외한 9개 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기관임.

165) 2018년도 부채 상위 10개 기관의 순위: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전력공사, 3. 한국가스공사, 4. 한국도로공사, 5. 국가철도공단, 6. 예금보험공사, 7. 한국석유공사, 8. 중소기업진흥공단, 9. 한국철도공사, 10. 한국수자원공사

〈표 Ⅲ-53〉 2019년도 부채 규모 상위기관 현황

(단위: 조원, %, %p)

순위	기관명	2018년	2019년(A)	증감액	증감률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전망치(B)	전망치 대비 초과감축(B-A)
1	한국전력공사	114.2 (161)	128.7 (187)	14.6 (26)	12.7 (-)	126.1 (126)	△2.61 (△61)
2	한국토지주택공사	128.1 (283)	126.7 (254)	△1.4 (△29)	△1.1 (-)	128.1 (267)	1.42 (13)
3	한국가스공사	31.2 (367)	31.2 (383)	△0.0 (16)	△0.1 (-)	32.3 (369)	1.13 (△14)
4	한국도로공사	28.1 (81)	29.5 (81)	1.3 (0)	4.8 (-)	28.9 (79)	△0.55 (△2)
5	국가철도공단	20.0	20.3	0.4	1.8 (-)	20.5	0.17
6	한국석유공사	17.5 (2,287)	18.1 (3,021)	0.7 (734)	3.8 (-)	17.2 (1,219)	△0.93 (△1,802)
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5 (584)	16.3 (596)	0.9 (12)	5.6 (-)	16.2 (623)	△0.13 (27)
8	한국철도공사	15.6 (237)	16.3 (258)	0.8 (21)	5.0 (-)	16 (254)	△0.33 (△4)
9	예금보험공사	17.9	14.4	△3.5	△19.4	14.8	0.37
10	한국수자원공사	14.0 (180)	13.9 (167)	△0.1 (△13)	△0.6 (-)	14.2 (170)	0.28 (3)

주: 1. () 안은 부채비율(=부채/자본)임

2.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

3. 예금보험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은 자본금·기본재산이 0인 기관으로 부채비율 산출 불가능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융자사업 수행기관으로 여타기관과 부채비율 일괄 비교 곤란

5. 소수점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증감액 및 증감률 계산하는데 일부 오차 발생 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6.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0.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다. 자산 현황

□ 2019년 공공기관 자산 총액은 861.1조원으로 발전설비 투자(한국전력공사), 대출 채권 증가(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따라 전년대비 4.0% 증가(32.8조원)함.

□ 공공기관 자산 규모 증가 추이를 공공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600.3조원, 전년대비 21조원 증가)과 준정부기관(215.5조원, 전년대비 8.3조원 증가), 기타공공기관(45.3조원, 전년대비 3.5조원 증가) 모두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 유형 중 기타공공기관 자산 증가율이 8.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유일하게 1.2조원 감소하여 전년대비 1.3% 감소함.

□ <그림 III-21>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에서 자산이 꾸준히 상승하였음.

〈표 III-54〉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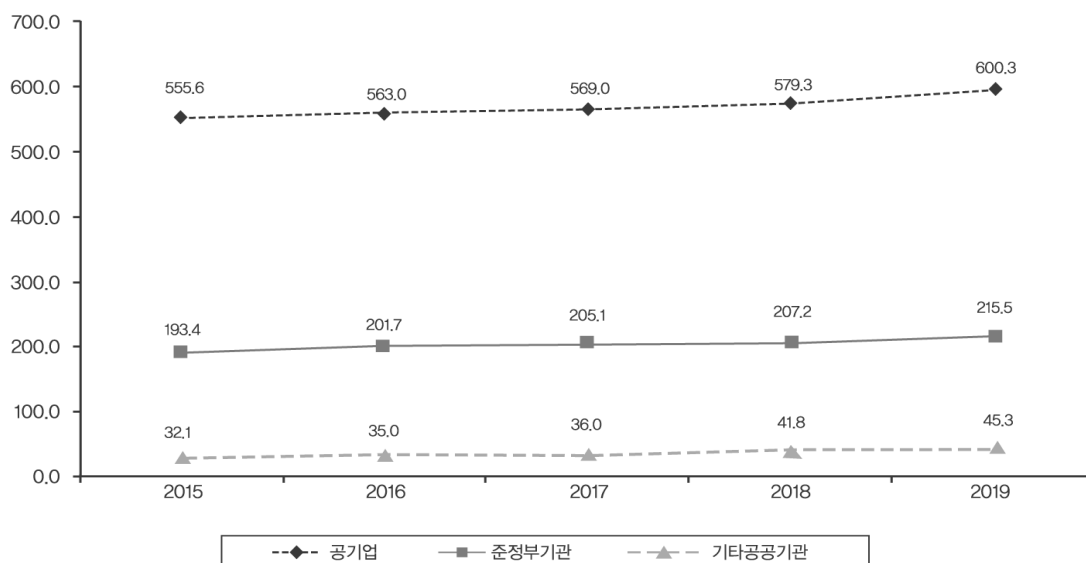
(단위: 조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A)	'19년 (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781.1	799.8	810.1	828.3	861.1	32.8	4.0
공기업	555.6	563.0	569.0	579.3	600.3	21.0	3.6
· 시장형	276.2	277.3	278.0	283.0	296.3	13.3	4.7
· 준시장형	279.4	285.7	291.0	296.3	304.0	7.7	2.6
준정부기관	193.4	201.7	205.1	207.2	215.5	8.3	4.0
· 기금관리형	105.5	110.9	113.1	116.0	125.4	9.5	8.2
· 위탁집행형	87.8	90.8	92.0	91.3	90.1	△1.2	△1.3
기타공공기관	32.1	35.0	36.0	41.8	45.3	3.5	8.3

주: 소수점 반올림 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액의 합과 합계가 일부 오차 발생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6.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0.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21〉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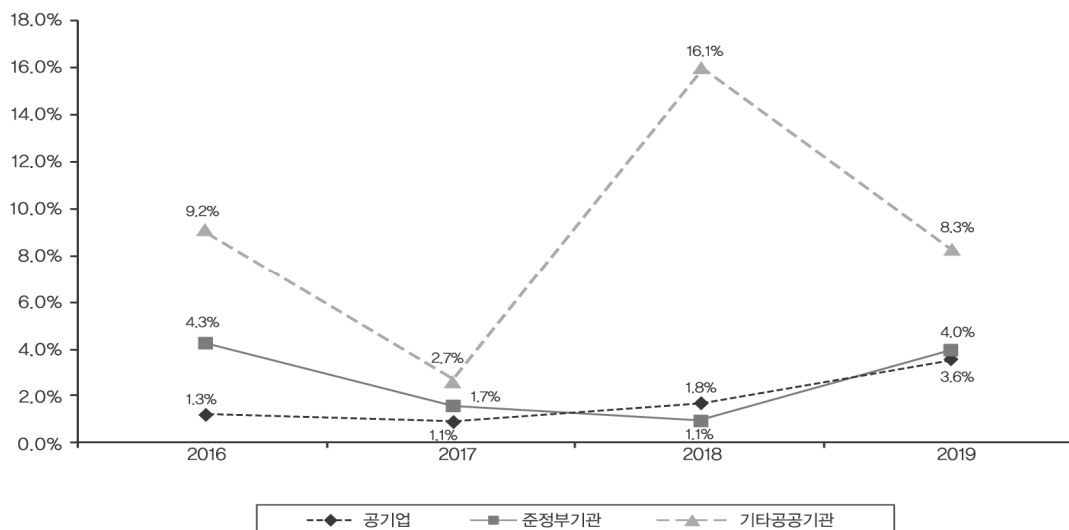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6.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0.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 유형별로 자산증가율을 살펴보면, 2018년에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은 증가율이 반등한 반면 준정부기관은 하락하였고, 2019년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증가율이 상승한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함.
- 공기업의 자산증가율은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3.6%의 자산 증가율을 기록함.
- 준정부기관은 자산증가율이 2017년 1.7%, 2018년 1.1%로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2019년에는 4.0%의 증가율을 기록함.
- 기타공공기관은 2017년 자산증가율이 2.7%로 상당히 감소하였다가, 2018년에 대폭 상승하여 16.1%를 기록하였고, 2019년에는 대폭 감소하여 8.3%의 증가율을 보임.

〈그림 III-22〉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증가율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6.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0.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19년 공공기관 자산 현황을 주무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의 자산 규모가 약 312조원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자산이 약 282조원으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함.
-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은 전체 공공기관 자산의 36.3%, 32.8%로 총 69%에 육박함.
- 자산 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전년대비 약 12.7조원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부처는 보건복지부로 전년대비 약 2.2조원 감소하였음.

〈표 III-55〉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자산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기관 수	'15년	'16년	'17년	'18년 (A)	'19년 (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기획재정부	4	6,205	6,367	6,644	6,869	8,287	1,418	20.6%
교육부	23	365,591	377,151	393,275	396,337	420,625	24,288	6.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9	114,183	122,548	124,540	123,660	126,834	3,175	2.6%
외교부	3	3,306	2,931	2,941	3,205	3,109	△97	△3.0%
통일부	2	135	112	108	118	204	86	73.4%
법무부	3	2,075	2,130	2,185	2,217	2,233	15	0.7%
국방부	3	556	595	607	848	867	18	2.2%
행정안전부	3	494	746	969	990	1,021	31	3.1%
문화체육관광부	32	76,657	79,440	79,111	89,052	94,687	5,634	6.3%
농림축산식품부	12	138,435	143,165	149,957	148,982	155,000	6,018	4.0%
산업통상자원부	40	2,660,147	2,658,961	2,650,823	2,696,783	2,824,542	127,760	4.7%
보건복지부	29	343,341	369,302	364,828	360,776	338,311	△22,466	△6.2%
환경부	11	214,927	222,097	227,335	236,620	241,471	4,851	2.1%
고용노동부	11	18,192	18,464	18,638	20,415	22,286	1,871	9.2%
여성가족부	5	187	197	191	189	220	31	16.5%
국토교통부	25	2,853,014	2,924,357	2,992,601	3,050,580	3,127,709	77,130	2.5%
해양수산부	18	121,233	122,692	124,616	156,352	177,907	21,555	13.8%
중소벤처기업부	11	210,680	210,662	219,913	228,345	237,145	8,800	3.9%
국무조정실	26	9,703	9,751	9,437	9,392	9,687	295	3.1%
방송통신위원회	2	7,342	6,961	5,964	5,518	5,367	△151	△2.7%
원자력안전위원회	3	1,182	1,069	964	1,058	1,116	58	5.5%
금융위원회	8	472,967	506,736	512,302	524,901	584,877	59,975	11.4%
공정거래위원회	2	909	831	752	717	683	△34	△4.7%
국가보훈처	3	4,090	4,137	4,013	4,173	4,046	△126	△3.0%
인사혁신처	1	159,089	176,520	177,557	182,138	188,770	6,632	3.6%
식품의약품안전처	4	49	75	167	212	357	145	68.4%
관세청	1	19	24	28	33	38	5	14.7%
방위사업청	2	18,720	21,226	22,313	24,514	25,357	843	3.4%
경찰청	1	3,535	3,365	3,214	3,209	2,942	△267	△8.3%
소방청	1	967	1,113	1,257	1,337	1,400	63	4.7%
문화재청	1	170	150	146	125	147	22	17.7%
산림청	4	14	1,172	768	774	886	113	14.6%
농촌진흥청	1	215	236	190	212	247	34	16.2%
특허청	6	2,166	2,153	2,241	2,475	2,510	35	1.4%
기상청	2	71	78	95	71	53	△17	△24.5%
합 계	362	7,810,564	7,997,513	8,100,689	8,283,196	8,610,940	327,744	4.0%

주: 1.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관 고유계정 및 기금계정(직접관리기금)을 모두 포함하여 금액 산출 다만, 기타공공기관 중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소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금융위원회 소관)은 산출대상에서 제외

2.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합계, 증감액, 증감률에 오차 발생 가능

3. 2020년 4월 말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시한 340개 공공기관(2020년 1월 지정 기준) 및 그 부설기관(23개 기관)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6.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0.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19년도 공공기관 자산 상위 10개 기관을 살펴보면, 2018년도 자산규모 상위 10개 기관¹⁶⁶⁾과 2개 기관에서 차이가 나타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기관은 모두 부채 상위 10개 기관에 포함됨.
- 한국주택금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19년 공공기관 자산 상위 10개 기관으로 새롭게 편입됨.
 - 상위 10개 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제외한 8개 기관이 전년 대비 자산이 증가함.
 - 전체 공공기관 중 자산 증가액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약 123조원, 6.7% 증가)이며, 자산 증감률이 가장 큰 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약 44조원, 30.2% 증가)이고, 자산 감소액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약 26조원, 7.6% 감소)임.
 - 한국전력공사는 그룹사 발전설비 투자 증가로 인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 채권 증가로 인해 자산 증가액 규모가 큼.

〈표 Ⅲ-56〉 2019년도 자산 규모 상위기관 현황

(단위: 억원, %)

순위	기관명	2018년	2019년	증감액	증감률
1	한국전력공사	1,852,491	1,975,978	123,487	6.7%
2	한국토지주택공사	1,733,331	1,765,151	31,820	1.8%
3	한국도로공사	629,212	657,814	28,602	4.5%
4	한국가스공사	396,897	393,119	△3,778	△1.0%
5	국민건강보험공단	341,244	315,207	△26,037	△7.6%
6	한국철도공사	221,168	226,606	5,438	2.5%
7	한국수자원공사	217,968	222,548	4,580	2.1%
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92,565	214,495	21,930	11.4%
9	한국주택금융공사	146,507	190,805	44,298	30.2%
1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81,145	190,728	9,583	5.3%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6. 요약재무상대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0.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166)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4. 손익현황¹⁶⁷⁾

- 최근 공공기관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에 5.3조원 규모의 순이익을 실현하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이후, 7년 연속 흑자를 실현중이었으나 2017년부터 전년대비 증감은 마이너스를 기록함.
-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2016년 15.4조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큰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으나 2017년, 2018년 각각 7.2조원, 0.7조원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2019년에는 당기순이익이 0.5조원으로 하락함.
- 공공기관 유형별로 당기순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당기순이익이 전년도(2018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30%이상 감소하였고, 그중 시장형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0.4조원 감소하여 37%의 감소율을 보임.
- 준정부기관의 경우 2019년도 약 0.7조원의 손실을 기록, 전년대비 0.3조원 손실이 줄어들음.
 - 특히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당기순이익이 0.5조원 증가하였음.
- 기타공공기관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절대적인 규모는 작지만 2017년,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당기순손실이 발생함.

〈표 III-57〉 최근 5년간 당기순손익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15년	'16년	전년대비 증감	'17년	전년대비 증감	'18년	전년대비 증감	'19년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12.5	15.4	3.0	7.2	△8.2	0.7	△6.5	0.5	△0.1 (△21.3)
공기업	4.9	9.0	4.1	4.2	△4.8	2.0	△2.2	1.4	△0.6 (△30.9)
· 시장형	8.8	6.3	△2.5	1.0	△5.3	△1.1	△2.1	△1.5	△0.4 (37.6)
· 준시장형	△3.9	2.8	6.6	3.2	0.4	3.1	△0.1	2.9	△0.2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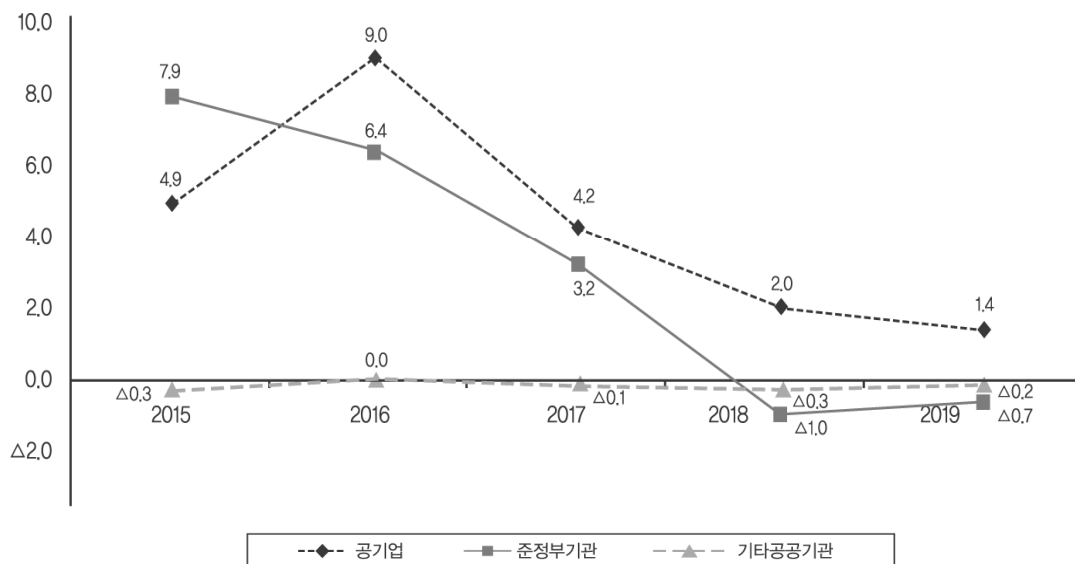
167)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기관별 공시자료(2020. 4. 29. 기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0. 4. 29., 「20년 정부출자기관 배당 결과 공표-정부배당금 1조 4,040억원, 평균 배당성향 32.5%」, 보도자료, 2020. 5. 20. 등 참고

구 분	'15년	'16년	전년대비 증감	'17년	전년대비 증감	'18년	전년대비 증감	'19년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준정부기관	7.9	6.4	△1.5	3.2	△3.2	△1.0	△4.2	△0.7	0.3 (△32.3)
· 기금관리형	2.2	3.1	0.8	2.4	△0.7	2.7	0.3	2.5	△0.2 (△6.9)
· 위탁집행형	5.7	3.3	△2.3	0.8	△2.5	△3.7	△4.4	△3.1	0.5 (△13.8)
기타공공기관	△0.3	0.0	0.3	△0.1	△0.2	△0.3	△0.2	△0.2	0.2 (△46.7)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39개)	12.2	14.8	2.7	6.9	△7.9	0.7	△6.2	0.5	△0.2 (△30.7)

주: 1.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2015~2019년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료 작성
 2.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관 고유계정을 대상으로 금액 산출
 3. 공무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공공기관은 국가회계기준 적용으로 당기순이익이 산출되지 아니하여 상기 수치에서 제외
 4. 소수점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증감액 및 증감률 오차 발생가능
 5.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은 2019년(39개)을 기준으로 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7. 요약손익계산서(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0.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23〉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7. 요약손익계산서(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0.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19년에 순이익을 실현한 상위 10개 공공기관은 2018년 대상기관¹⁶⁸⁾과 1개 기관 차이를 보임.
- 한국토지주택공사, 예금보험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4개 기관은 2018년과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 1, 2, 3, 4위를 유지함.
 - 주택도시보증공사(6 → 5위), (주)강원랜드(6 → 7위), 국가철도공단(10 → 7위), 한국마사회(9 → 8위), 한국수자원공사(8 → 9위)로 변동함.
 - 2018년에 순이익 5위였던 한국가스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손상차손 증가로 전년도에 비해 당기순이익이 약 4,600억 감소하여 대상에서 제외됨.
 - 2019년에 신규 편입된 한국공항공사는 10위에 해당함.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년과 동일하게 순이익 3위를 기록하였으나, 당기순이익 규모는 전년대비 약 23% 감소함.
 - 당기순이익 상위 10개 기관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한 7개 기관¹⁶⁹⁾의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 2019년에 순손실이 발생한 상위 10개 공공기관은 2018년 대상기관¹⁷⁰⁾과 차이를 보임.
- 2018년 순손실 상위 1, 2위였던 한국전력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9년에도 순손실 상위 1, 2위를 차지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3.6조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2018년 대비 당기순손실 규모는 2천억원 감소하였음.
 - 한국전력공사는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한 환경 비용과 에너지 전환비용 등으로 인해 2.2조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이는 2018년 대비 1조원(92%상승) 증가한 수치임.
 - 한국광물자원공사(4 → 3위), 서민금융진흥원(5 → 4위), 한국해양진흥공사(7 → 5위), 대한석탄공사(8 → 6위), 한국석유공사(3 → 7위)로 순위가 변동함.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철도공사, 근로복지공단 등 3개 기관이 2019년에 신규로 편입됨.

168) 한국토지주택공사, 예금보험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강원랜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마사회, 국가철도공단

169) 예금보험공사(△388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2,574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701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1,292억원), 한국마사회(△379억원), 한국수자원공사(△1,096억원), 한국공항공사(△250억원)

170)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장학재단

- 2018년에 순손실이 발생한 상위 10개 기관 중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연료 단가의 하락과 운영경비 절감 등을 통한 영업이익 증가로 상위 10개 기관에서 제외됨.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장학재단 또한 당기순손실 상위 10개 기관에서 제외됨.

〈표 III- 58〉 2019년도 당기순이익·순손실 상위기관 현황

(단위: 억원, %)

순 위	기관명	2018년	2019년	증감액	증감률
순이익	1 한국토지주택공사	20,767	22,447	1,680	8.1
	2 예금보험공사	19,798	19,410	△388	△2.0
	3 인천국제공항공사	11,209	8,634	△2,574	△23.0
	4 한국주택금융공사	6,226	5,525	△701	△11.3
	5 주택도시보증공사	5,128	3,836	△1,292	△25.2
	6 (주)강원랜드	2,972	3,347	374	12.6
	7 국가철도공단	1,652	1,717	65	4.0
	8 한국마사회	1,828	1,449	△379	△20.7
	9 한국수자원공사	2,402	1,306	△1,096	△45.6
	10 한국공항공사	1,259	1,009	△250	△19.9
순손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38,954	△36,266	2,688	△6.9
	2 한국전력공사	△11,745	△22,635	△10,890	92.7
	3 한국광물자원공사	△6,861	△5,638	1,223	△17.8
	4 서민금융진흥원	△3,360	△2,406	953	△28.4
	5 한국해양진흥공사	△1,955	△1,674	281	△14.4
	6 대한석탄공사	△823	△1,221	△397	48.3
	7 한국석유공사	△11,595	△849	10,746	△92.7
	8 신용보증재단중앙회	72	△561	△634	△875.6
	9 한국철도공사	△1,050	△469	581	△55.3
	10 근로복지공단	278	△462	△740	△265.8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7. 요약손익계산서(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0.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20년 5월 정부는 39개 출자기관 중 2020년 배당이 결정된 22개 출자기관의 배당금 1조 4,040억원을 수납하여 확정하였으며, 전년과 비교하여 342억원 감소하였으나, 평균 배당성향¹⁷¹⁾은 0.10%p 상승함.¹⁷²⁾

171) 평균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 %): ('16) 30.25 → ('17) 31.98 → ('18) 34.98 → ('19) 32.48(△2.5%p) → ('20) 32.58(0.10%p)

- 39개 정부출자기관 중 한국방송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2019년 무배당기관에서 2020년 유배당기관으로 추가되었으며, 88관광개발은 2020년 적자로 전환되어 배당대상에서 제외함.
- 소관·회계별로는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6,069억원, 주무부처 소관 특별회계·기금 7,971억원임.
- 2020년 5월까지 18개 기관이 배당금 9,307억원을 국고에 수납하였고,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총 4,732억원)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현금흐름 악화로 납입 기한을 10월까지로 연장함.
- 정부는 2020년 처음으로 출자기관의 성실 배당을 장려하기 위해 배당 성향, 배당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공항공사 3개 기관을 우수 배당기관으로 선정하여 표창함.

〈표 III-59〉 38개 정부출자기관의 정부배당 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배당			'20년 배당		
		일반 회계	특별 기금	소계	일반 회계	특별 기금	소계
1	한국토지주택공사	1,556	1,769	3,325	1,671	2,248	3,920
2	중소기업은행	1,872	-	1,872	1,662	-	1,662
3	한국산업은행	1,328	120	1,449	1,030	90	1,120
4	한국주택금융공사	518	47	565	0	0	0
5	한국수출입은행	409	7	415	713	11	724
6	한국가스공사	282	46	328	79	13	92
7	한국공항공사	178	166	344	209	195	404
8	한국도로공사	1	259	260	1	332	334
9	부산항만공사	143	-	143	201	-	201
10	한국자산관리공사	145	-	145	139	-	139
11	울산항만공사	95	0.1	95	107	0.1	107
12	인천항만공사	41	15	56	15	5	21
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3	-	43	11	-	11
14	한국조폐공사	37	-	37	39	-	39

172) 기획재정부, 「'20년 정부출자기관 배당 결과 공표-정부배당금 1조 4,040억원, 평균 배당성향 32.5%」, 보도자료, 2020. 5. 20.

기관명		'19년 배당			'20년 배당		
		일반 회계	특별 기금	소계	일반 회계	특별 기금	소계
1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9	-	29	13	-	13
16	한국감정원	18	-	18	13	-	13
17	한국방송공사	-	-	-	1	-	1
18	한국농어촌공사	-	-	-	165	-	165
19	한국전력공사	-	-	-	-	-	-
20	한국관광공사	-	-	-	-	-	-
21	한국교육방송공사	-	-	-	-	-	-
2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	-	-	-
23	한국수자원공사	-	-	-	-	-	-
24	한국석유공사	-	-	-	-	-	-
25	한국광물자원공사	-	-	-	-	-	-
26	한국철도공사	-	-	-	-	-	-
27	서울신문사	-	-	-	-	-	-
28	여수광양항만공사	-	-	-	-	-	-
29	한국해양진흥공사	-	-	-	-	-	-
30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	-	-	-	-	-	-
31	새만금개발공사	-	-	-	-	-	-
32	인천국제공항공사	-	3,755	3,755	-	3,994	3,994
33	주택도시보증공사	-	1,229	1,229	-	707	707
34	한국투자공사	-	262	262	-	367	367
35	대한송유관공사	-	10	10	-	8	8
36	88관광개발주식회사	-	0.5	0.5	-	-	-
37	한국지역난방공사	-	-	-	-	-	-
38	공항철도주식회사	-	-	-	-	-	-
39	대한석탄공사	-	-	-	-	-	-
합 계		6,696 (16개)	7,685 (14개)	14,382 (21개)	6,069 (18개)	7,971 (13개)	14,040 (22개)

주: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서울신문사, 대한송유관공사, 공항철도주식회사는 「공운법」상 공공기관이 아님
 자료: 기획재정부, 「'20년 정부출자기관 배당 결과 공표 - 정부배당금 1조 4,040억원, 평균 배당성향 32.5%」, 보도자료, 2020. 5. 20.

5. 보수수준¹⁷³⁾

가. 직원 평균보수 수준

- 2019년 전체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¹⁷⁴⁾의 평균보수는 약 6,779만원 수준으로 유형별 평균보수 수준은 공기업(약 7,942만원), 기타공공기관(약 6,744만원), 준정부기관(약 6,438만원) 순으로 높음.¹⁷⁵⁾
- 공기업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약 7,942만원)는 전체 공공기관 평균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보다 높음.
 - 시장형 공기업의 직원 평균보수(약 8,426만원)는 2019년 전체 기관 유형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는 약 1,647만원, 준정부기관보다 약 1,988만원, 기타공공기관보다 약 1,682만원 정도 높은 수준임.
- 준정부기관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6,438만원)는 3개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약 341만원 정도 낮으며 기타공공기관 대비 약 306만원 적음.
 - 특히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정규직 직원 평균보수는 약 6,222만원 수준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약 557만원 낮은 수준임.

173)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0. 4. 29. 및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20. 4. 29. 기준) 참고

174)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의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일반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함

175) 직원 평균보수는 각 회계연도별로 상시종업원 전체에게 지급된 총 보수지급액을 상시종업원 수로 나눈 값임 (여기서 상시종업원은 각월 급여지급일 현재 급여 지급대상 정규직원 수의 연간 합계를 12월로 나눈 인원임). 기관별 직원 평균보수는 알리오시스템 공시항목 중 '6. 직원 평균보수 및 신입사원 초임 현황'-'1. 직원 평균보수'항목에 공시된 '1인당 평균 보수액' 정보를 활용하여 산출함. 알리오시스템의 '1인당 평균보수액'은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 성과급, 기타성과상여금 등의 세부항목으로 지급된 총 금액으로 산출

〈표 Ⅲ-60〉 최근 5년간 직원 평균보수 현황(정규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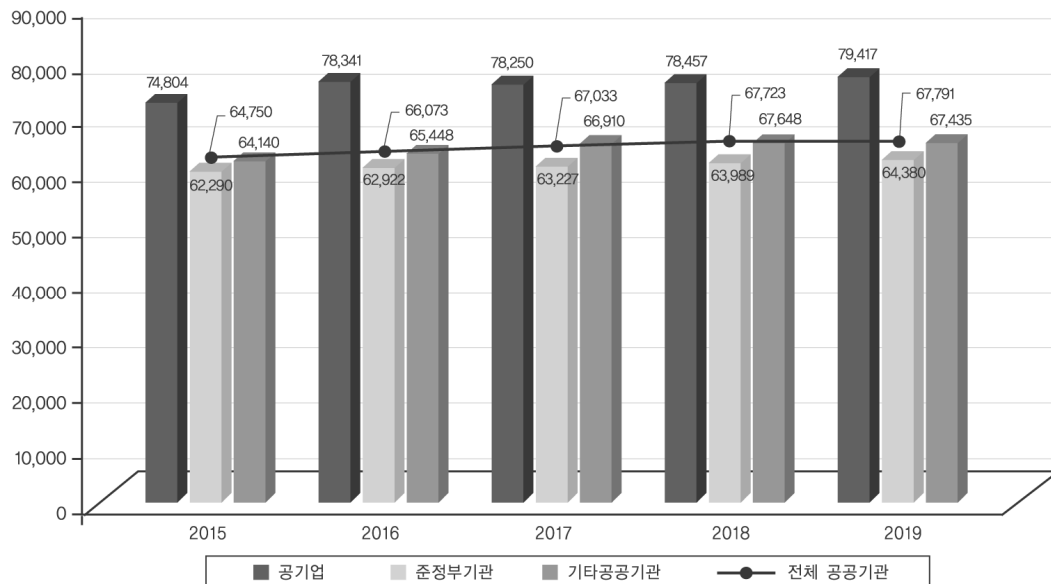
(단위: 천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A)	'19년 (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64,750	66,073	67,033	67,723	67,791	68	0.1
공기업	74,804	78,341	78,250	78,457	79,417	960	1.2
· 시장형	76,720	81,228	81,867	82,587	84,256	1,669	2.0
· 준시장형	73,271	76,031	75,356	75,153	75,546	393	0.5
준정부기관	62,290	62,922	63,227	63,989	64,380	391	0.6
· 기금관리형	74,636	76,677	76,947	77,700	78,665	965	1.2
· 위탁집행형	60,308	60,794	61,152	61,916	62,221	305	0.5
기타공공기관	64,140	65,448	66,910	67,648	67,435	△213	△0.3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직원 평균보수'(2020.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24〉 최근 5년간 직원 평균보수 추이(정규직 기준)

(단위: 천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직원 평균보수'(2020.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19년 공공기관 전체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는 전년대비 0.1%(약 7만원) 상승했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은 직원 평균보수가 전년대비 0.5~2.0% 수준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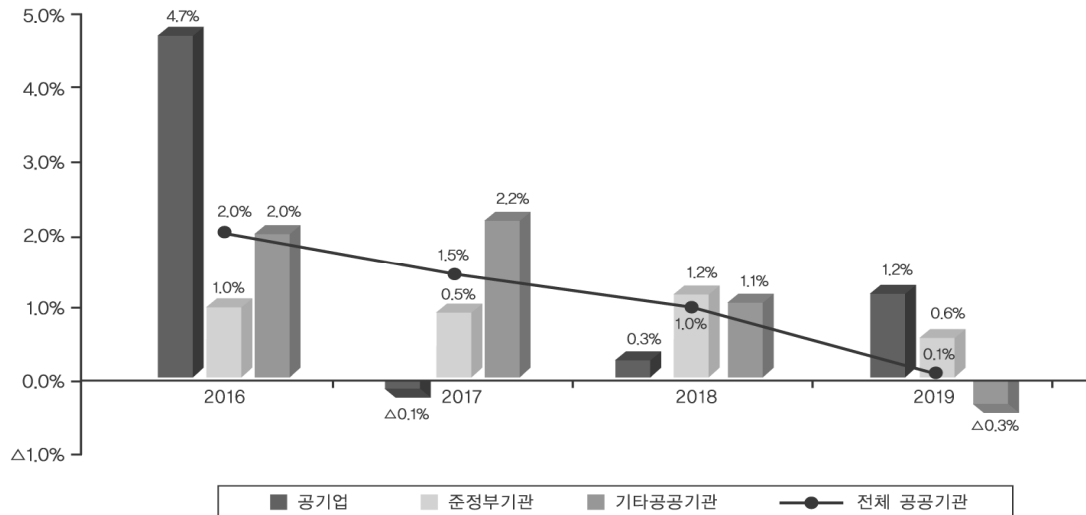
- 전년대비 직원 평균보수 상승률이 가장 높은 유형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년대비 2.0%(약 167만원) 증가함.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2019년 직원 평균보수 수준이 가장 낮은 유형이나 전년대비 상승 수준은 0.5%(약 31만원)로 준시장형 공기업과 동일한 상승률 수준을 보임.
- 다른 유형과 달리 기타공공기관은 전년대비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가 감소(약 21만원, $\Delta 0.3\%$)한 것으로 나타남.
 - 기타공공기관 중 100개 기관이 전년대비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감소율이 5% 이상인 기관은 새만금개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21개 기관임.
 - 21개 기관 가운데 15개 기관¹⁷⁶⁾이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기관 및 과기출연연기관으로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대부분 유형에서 직원 평균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준시장형 공기업은 2016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9년에 소폭 상승함.¹⁷⁷⁾
 - 2019년 준시장형 공기업의 직원 평균보수는 소폭 반등(39만원, 0.5%)하였으며, 기타공공기관은 소폭 감소($\Delta 21$ 만원, $\Delta 0.3\%$)한 모습을 보임.
 - 나머지 유형은 직원 평균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상승률은 다소 둔화되는 모습임.
- 공공기관 유형별 직원 평균보수 인상률과 2019년도 예산편성지침상의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¹⁷⁸⁾을 비교해 보면, 모든 유형이 지침상의 상한선(2.6%)을 준수함.

17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산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재료연구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177) 2016년 7,603만원 → 2017년 7,536만원($\Delta 67$ 만원) → 2018년 7,515만원($\Delta 21$ 만원)

178) 201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2019년도 총인건비 예산 편성 시 2018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8% 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하도록 함. 다만, 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2016년도 정규직(무기계 약직 포함) 직원의 1인당 평균 임금 수준과 해당 산업 평균과 비교하여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기관법」, 「과기출연연기관법」 등에 따라 운영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포함)과 부처 직할 연구기관은 총인건비 차등인상률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그림 III-25〉 최근 4년간 직원 평균보수 증가율 추이(정규직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직원 평균보수'(2020.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나. 상임임원 연봉 수준¹⁷⁹⁾

□ 공공기관 상임임원(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의 보수에 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¹⁸⁰⁾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관련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음.

○ 임원 보수지침은 상임임원의 기본연봉 책정 시 준수해야 할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한해 적용함.

- 기관장의 기본연봉은 매년 정무직 공무원 중 차관의 연봉과 연계하여 책정하며 기관장의 기본연봉이 해당 연도 차관의 연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관의 연봉과 동액으로 설정하고 이하인 경우는 매년 차관의 연봉 인상률에 따라 기본연봉을 인상하도록 함.
-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기본연봉은 기관장 기본연봉의 100분의 80을 상한으로 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는 기관장 연봉의 100분의 80과 동액으로 하고 100분의

179) 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등 상임임원에 대한 연봉은 알리오시스템에 공시된 '5. 임원연봉'과 주요통계 중 '임원 평균연봉' 자료를 활용함. 알리오시스템상 상임임원에 대한 연봉은 연도말 결산기준으로 상임임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총보수액을 의미하며 총보수액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 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산출

180) 2018. 3월 공공기관 관련 지침 전면 개정에 따라 종전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이 개정된 것으로 임원 보수지침의 적용범위를 공공기관 전체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제한

80 이하인 경우는 매년 기관장의 연봉 인상률에 따라 기본연봉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함.

-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2018년부터 임원 보수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기타공공기관 중 5개 금융 분야 기관¹⁸¹⁾은 「공공기관 혁신지침」 제5조(보수) 제2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을 준용하여 상임임원의 보수를 책정하여야 함.

□ 2019년 기관장(상임),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 상임임원의 평균연봉 수준을 살펴 보면, <표 III-61>과 같음.

- 전체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연봉은 약 1억 7,467만원 수준임.
-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연봉이 약 2억 922만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3,456만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장형 공기업(약 2억 2,802만원)이 준시장형 공기업 기관장 평균연봉(약 1억 9,512만원)보다 약 3,290만원 높은 수준임.
 - 시장형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연봉은 전체 공공기관 유형 중 기금관리형 준정부 기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 준정부기관 기관장 평균연봉은 약 1억 8,060만원으로 공기업보다는 2,862만원 낮으나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는 약 594만원 높은 수준임.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평균연봉(약 2억 3,811만원)은 전체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데,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약 6,345만원 높은 편임.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관장 평균연봉 수준이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은 1억 7,149만원 수준임.
-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 평균연봉(약 1억 6,626만원)은 공공기관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체 평균보다 841만원 낮음.
 - 기타공공기관 유형의 기관장 평균연봉은 공기업보다 약 4,296만원 낮은 수준이고 준정부기관보다 약 1,434만원 정도 낮은 수준임.

181)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표 Ⅲ-61〉 최근 5년간 상임임원 평균연봉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A)	'19년 (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기 관 장	전체 평균	160,194	165,190	166,207	169,378	174,665	5,287	3.1
	공기업	188,192	204,521	199,670	197,042	209,221	12,179	6.2
	준정부기관	166,558	172,932	171,744	174,940	180,602	5,662	3.2
	기타공공기관	152,321	154,811	157,955	162,251	166,259	4,008	2.5
상 임 이 사	전체 평균	135,521	139,901	141,760	145,955	149,572	3,617	2.5
	공기업	140,319	152,308	148,914	150,116	157,151	7,035	4.7
	준정부기관	137,630	142,022	141,926	145,855	148,494	2,639	1.8
	기타공공기관	129,845	129,466	136,807	143,391	145,957	2,566	1.8
상 임 감 사	전체 평균	144,765	150,631	149,982	155,591	160,338	4,747	3.1
	공기업	141,778	154,010	152,083	152,880	161,193	8,313	5.4
	준정부기관	152,714	158,071	152,989	161,165	162,096	931	0.6
	기타공공기관	140,559	142,432	146,150	153,217	158,407	5,190	3.4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원 평균연봉'(2020. 4. 29.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최근 5년간의 상임임원 평균연봉 현황은 <그림 Ⅲ-26>, <그림 Ⅲ-27>, <그림 Ⅲ-28>과 같음.

- 기관장과 상임이사가 최근 5년 내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상임감사는 2017년에만 소폭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유지함.
- 기관장 평균연봉의 경우, 2017년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음.
 - 공기업의 기관장 평균연봉은 최근 5년 동안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2019년에는 다른 유형의 기관장 평균연봉에 비해 전년대비 가장 많은 액수(1,218만원)가 인상됨.
 -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평균연봉은 2017년 소폭 하락했지만 2018년 이후 하락폭 이상을 만회하였으며, 2019년 기관장 평균연봉이 1억 8,060만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1억 7,467만원)보다 594만원 높은 수준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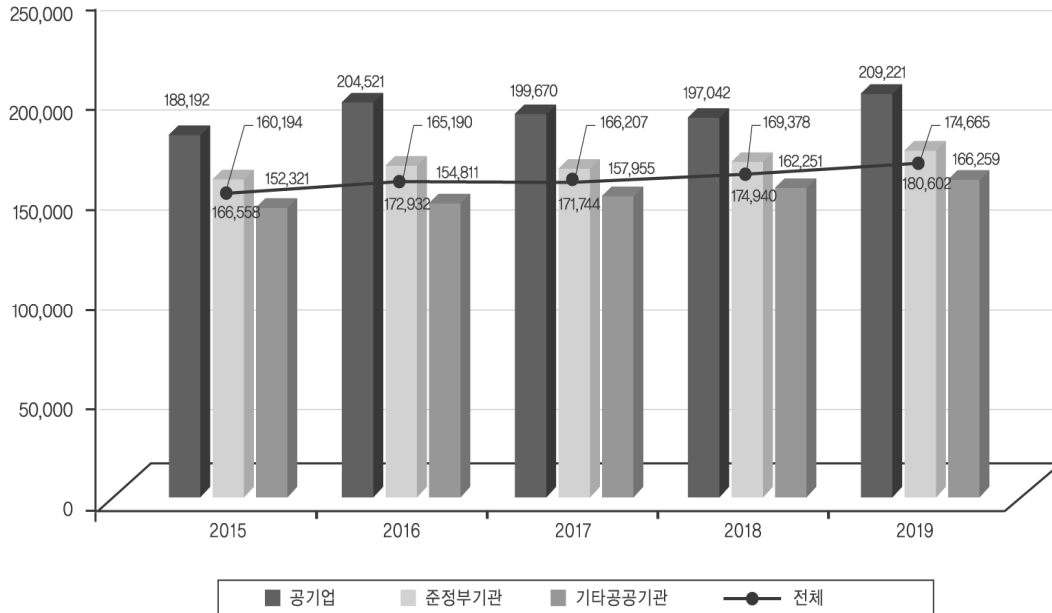
- 기타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연봉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인상률 또한 2016~2018년 사이 매년 증가하는 모습이었으나 2019년에 인상률이 다소 둔화¹⁸²⁾됨.
- 상임이사 평균연봉의 최근 5년간 추이는 기관장 평균연봉과 유사한 모습으로 평균연봉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 둔화된 평균연봉 인상률이 2018년 다시 증가하였다가, 2019년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임.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의 평균연봉은 2015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오다가 2017년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8년에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임.
 - 2016~17년간 각 유형별 인상률 차이로 인해 2017년까지 각 유형 간 격차가 심화되었으나, 2018년에는 격차가 완화되어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 간 격차가 672만원 수준까지 개선됨.
 - 공기업의 경우, 상임이사 평균연봉 상승폭이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2019년 기준 평균연봉 인상률이 4.7%임.
- 전체 상임감사 평균연봉의 경우, 2015년 이후 상승하다 2017년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8년에 크게 상승하여 2016년 수준을 상회¹⁸³⁾하였으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기관장과 동일한 평균연봉 인상률(2019년 기준 3.1%)을 기록함.
 - 2018년까지 준정부기관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임감사의 연봉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9년에는 공기업 상임감사 연봉이 전년대비 831만원(5.4%) 상승하면서 전체 유형 중 전년대비 인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상임감사 평균연봉의 5년 추이를 보면 2019년에 준정부기관 상임감사 평균연봉은 전년대비 0.6% 수준 상승하면서 인상률이 둔화되었으나,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인상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유형별 상임감사 평균연봉 격차가 다소 줄어들음.

182) 2016년 1.6% → 2017년 2.0%(0.4%p) → 2018년 2.7%(0.7%p) → 2019년 2.5%(△0.2%p)

183) 2015년 1억 4,477만원 → 2016년 1억 5,603만원(587만원) → 2017년 1억 4,998만원(△65만원) → 2018년 1억 5,559만원(561만원) → 2019년 1억 6,034만원(475만원)

〈그림 Ⅲ-26〉 최근 5년간 기관장(상임) 평균연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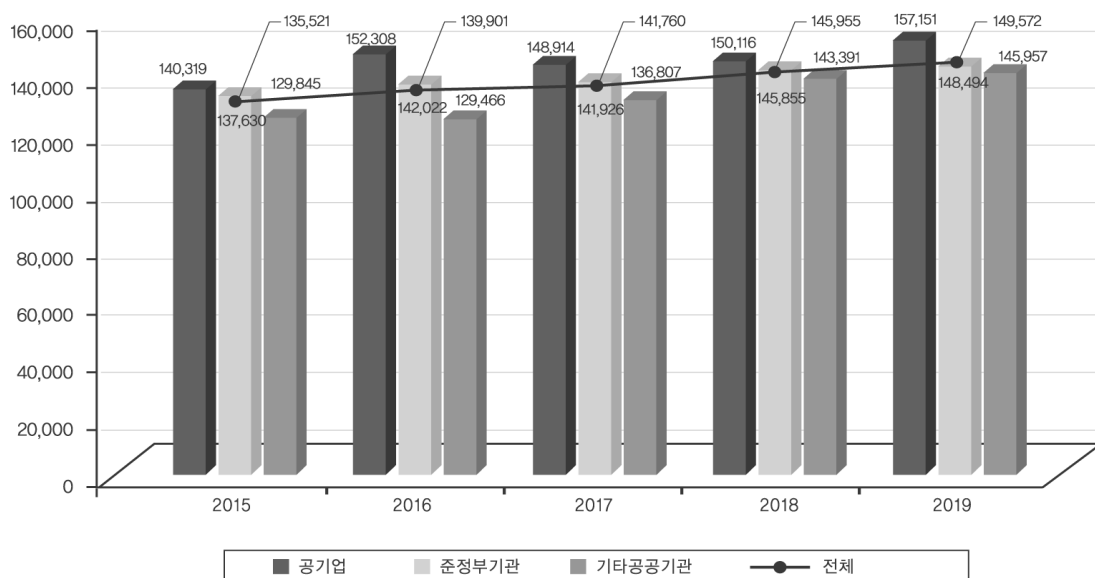
(단위: 천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원 평균연봉'(2020. 4. 29.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27〉 최근 5년간 상임이사 평균연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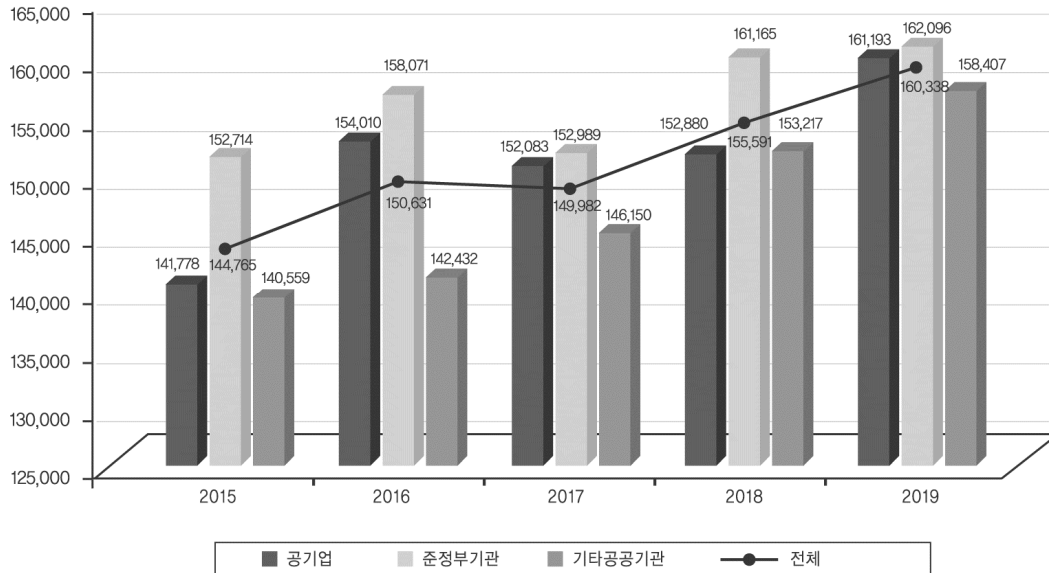
(단위: 천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원 평균연봉'(2020. 4. 29.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28〉 최근 5년간 상임감사 평균연봉 추이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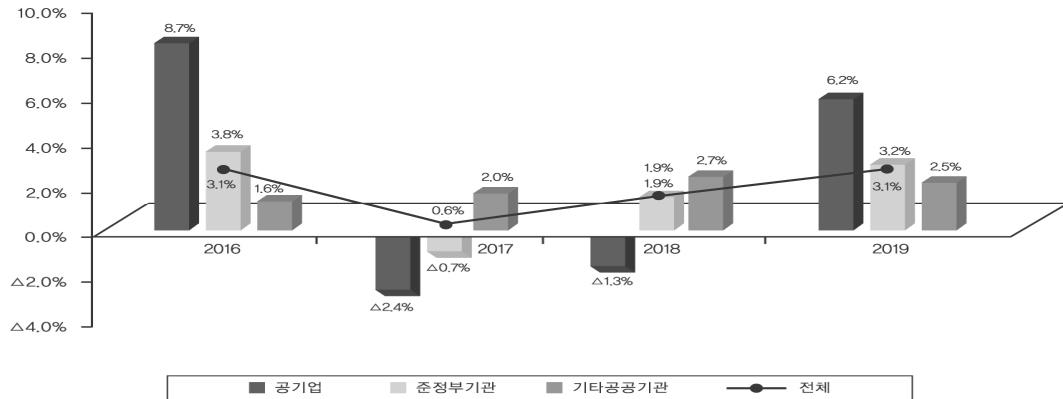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원 평균연봉'(2020. 4. 29.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상임임원 평균연봉 수준의 변화를 전년대비 증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림 III-29>, <그림 III-30>, <그림 III-31>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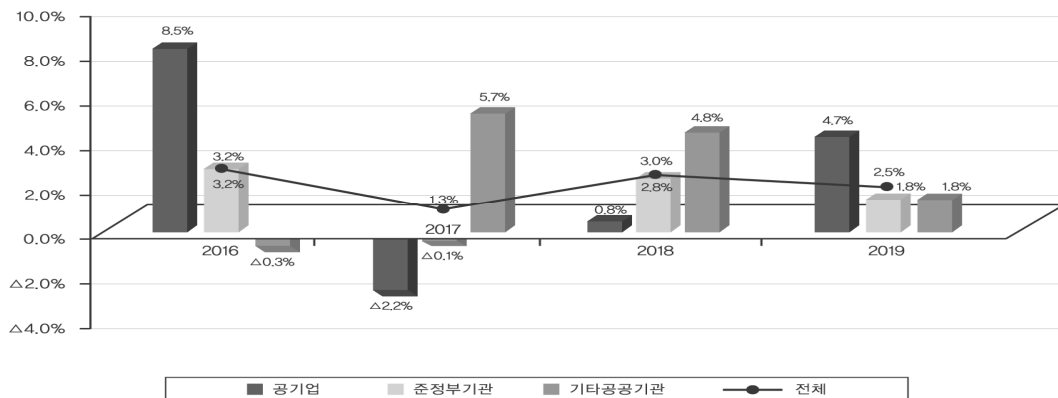
- 전반적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중 전년대비 상임임원 평균연봉 증가율이 가장 높은 회계연도는 2016년임.
- 2017년까지는 평균연봉 증가 추세(증가율)가 둔화되는 모습이다가 2018년에 다시 평균연봉 증가율이 전년대비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2017년에 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의 평균연봉이 전년대비 감소하여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다 2018년에 다시 증가 추세로 회복됨.
- 2019년에는 기관장을 제외하면 상임이사, 상임감사는 평균연봉 증가추세가 전년대비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임.
- 전년대비 상임임원 평균연봉 증가율은 2016년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순으로 높았으나 2017년 이후부터 임원 유형에서 따라 다른 추세를 보임.

〈그림 Ⅲ-29〉 최근 4년간 기관장(상임) 평균연봉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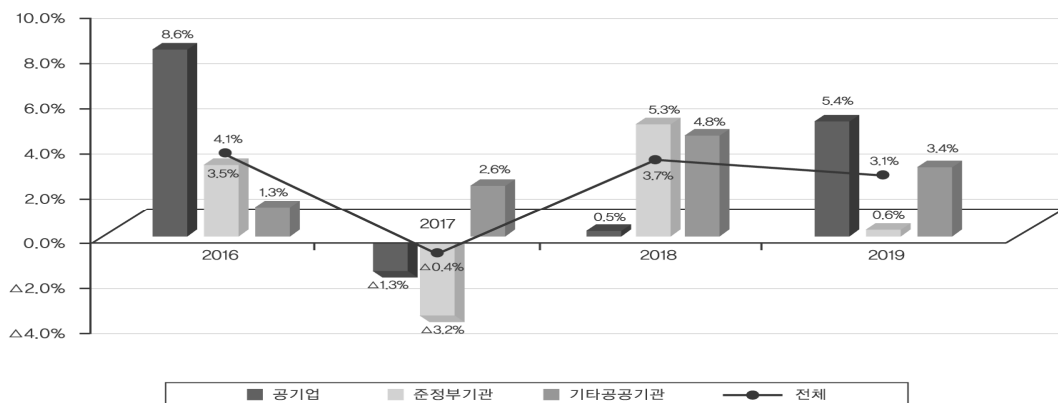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원 평균연봉'(2020. 4. 29.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30〉 최근 4년간 상임이사 평균연봉 증감률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원 평균연봉'(2020. 4. 29.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31〉 최근 4년간 상임감사 평균연봉 증감률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원 평균연봉'(2020. 4. 29.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다. 복리후생비 수준

- 2019년 중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포함)에게 지급된 무상지급 형태의 복리후생비 총 규모는 약 9,114억원임.
-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복리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2019년 임직원 수가 전년대비 7.2%(27,572명)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비 지원규모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162억원, 1.8%)하였음.
 - 공공기관 유형별로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이 4,180억원, 준정부기관이 2,025억원,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이 2,909억원 수준임.
 - 전체 공공기관의 총 복리후생비 중 각 유형별 복리후생비 비중을 살펴보면, 공기업이 45.9%, 기타공공기관이 31.9%, 준정부기관이 22.2%를 차지함.
 -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는 공공기관 유형별 임직원 수 규모의 영향을 받음.
 - 2019년 정원 기준 공공기관 유형별 임직원 수 규모를 비교하면, 공기업(14만 7,113명), 기타공공기관(14만 2,694명), 준정부기관(12만 788명) 순임.
 - 이는 유형별 복리후생비 지급규모와 동일한 모습으로 복리후생비가 임직원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II-62〉 최근 5년간 기관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A)	'19년 (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7,859	8,078	8,179	8,952	9,114	162	1.8%
공기업	3,732	3,765	3,786	4,271	4,180	△91	△2.1%
· 시장형	2,042	2,107	2,135	2,301	2,312	11	0.5%
· 준시장형	1,690	1,658	1,651	1,971	1,868	△103	△5.2%
준정부기관	1,824	1,865	1,848	1,946	2,025	79	4.1%
· 기금관리형	508	520	535	576	608	32	5.6%
· 위탁집행형	1,317	1,344	1,314	1,370	1,417	47	3.4%
기타공공기관	2,303	2,448	2,544	2,735	2,909	174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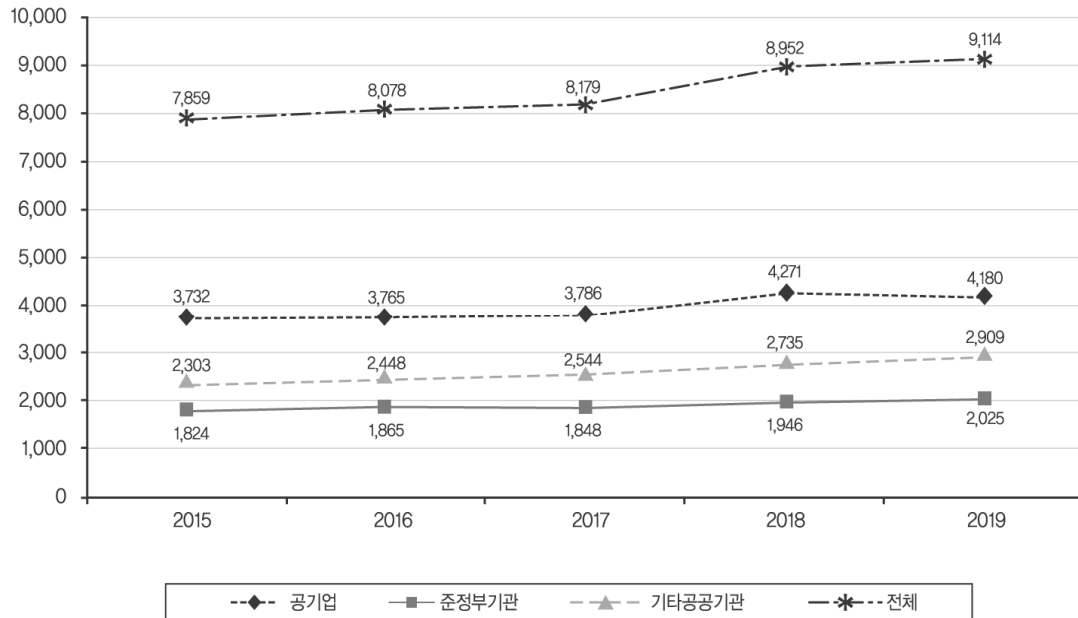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2020. 4. 29.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최근 5년간 무상지급된 복리후생비 총액 추이(<그림 III-32>)를 살펴보면, 전체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유사한 증가추이를 보임.
- 전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총액은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 약 8,952억원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나(전년대비 9.5% 증가), 2019년에는 상승폭이 둔화됨(전년대비 1.8% 증가).
 - 전체 복리후생비 중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체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추이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2019년의 경우 준시장형 공기업의 복리후생비가 감소(전년대비 5.2%)함에 따라 2019년 공기업의 복리후생비가 감소한 것으로 보임.
 - 공공기관 유형별로 복리후생비 무상지급액 지원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시장형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은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인 반면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2017년 소폭 감소했다 2018년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임.
 - 공기업은 2018년까지 다른 유형에 비해 지원 규모 수준이나 증가율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2019년에는 준시장형 공기업의 복리후생비 감소에 따라 공기업 전체 복리후생비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91억원, △2.1%).
 - 준정부기관의 경우, 복리후생비 무상지급액 규모의 변화가 3개 유형 중 가장 미미한 편이며 다른 유형과 달리 2017년에 지원 규모가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기타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무상지급 규모는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전년대비 174억원 증가함.
 - 2015년 대비 2019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체 공공기관의 증가율은 16.0%이며 유형별 증가율은 공기업 12.0%, 준정부기관 11.0%, 기타공공기관 26.3%로 나타남.
 - 공기업의 복리후생비 지원규모는 2015년 3,732억원에서 2019년 4,180억원으로 약 12.0% 증가(448억원)하였으며, 준정부기관의 경우 2015년 1,824억원에서 2019년 2,025억원으로 11.0% 증가(201억원)함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의 증가율(16.0%)에는 못 미치는 수준임.
 - 시장형 공기업¹⁸⁴⁾의 증가율은 전체 공공기관 증가율보다 약간 높은 13.2%임.
 -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전체 공공기관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26.3%)을 나타내며, 다른 유형보다 2배 이상 높은 증가율 수준을 보이고 있음.

184) 2015년 2,042억원 → 2019년 2,312억원(270억원 증가)

〈그림 Ⅲ-32〉 최근 5년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현황(무상지원 기준)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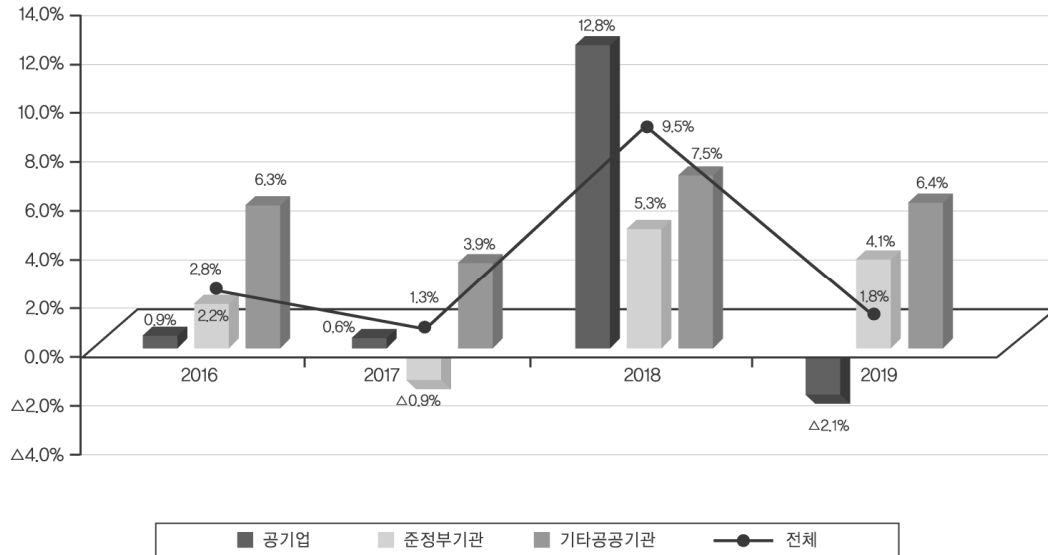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2020. 4. 29.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복리후생비 지원규모 증감률 추이(무상지원 기준)를 살펴보면, 공공기관 전체적으로는 2017년까지 둔화된 증가세가 2018년에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9년에는 다시 증가세가 둔화된 모습을 보임.

- 공기업의 경우, 증가율 자체는 2018년에는 전년대비 12.8% 증가율을 보이며 크게 반등하였으나, 2019년에는 전년대비 2.1% 감소하였음.
-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지원규모는 준정부기관이 2017년에 소폭 감소(전년 대비 $\Delta 0.9\%$)한 것을 제외하면, 최근 4년간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 Ⅲ-33〉 최근 4년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증감률 추이(무상지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2020. 4. 29.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보육비, 문화여가비, 행사지원비, 의료비, 선택적복지, 학자금 등 주요 복리후생비 항목별 지급액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표 Ⅲ-63>과 같음.

- 2019년 보육비는 2015년 대비 크게 증가(366억원, 120.2%)하였으며, 2018년과 대비해서도 크게 증가(88억원, 15.1%)함.
 -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
- 2019년 문화여가비는 2015년 대비 증가(85억원, 27.3%)하였으나, 전년도와 대비하면 증가폭이 둔화(47억원, 13.3%)한 모습임.
 - 문화여가비는 2015~2019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부휴가 권장정책에 따른 문화활동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행사지원비는 2016년 소폭 감소한 이후 꾸준히 오르며, 2015년 대비 14.4%, 2018년 대비 8.0%씩 상승함.
- 2019년 의료비는 2015년에 대비할 때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209억원, 29.5%), 2015년에 한차례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임.
- 선택적 복지는 다른 항목에 비해 규모가 큰 복리후생 항목으로 2019년 규모는 3,401억원임.

- 2017년에는 지원 규모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8년 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년대비 167억원이 증가하여 5.2%의 증가율을 보임.
- 2019년 학자금은 2015년 대비해서 감소(△186억원, △17.3%)한 모습이며, 2018년 대비해서도 감소한 수준을 보임(△124억원, △12.2%).

〈표 III-63〉 복리후생비 주요항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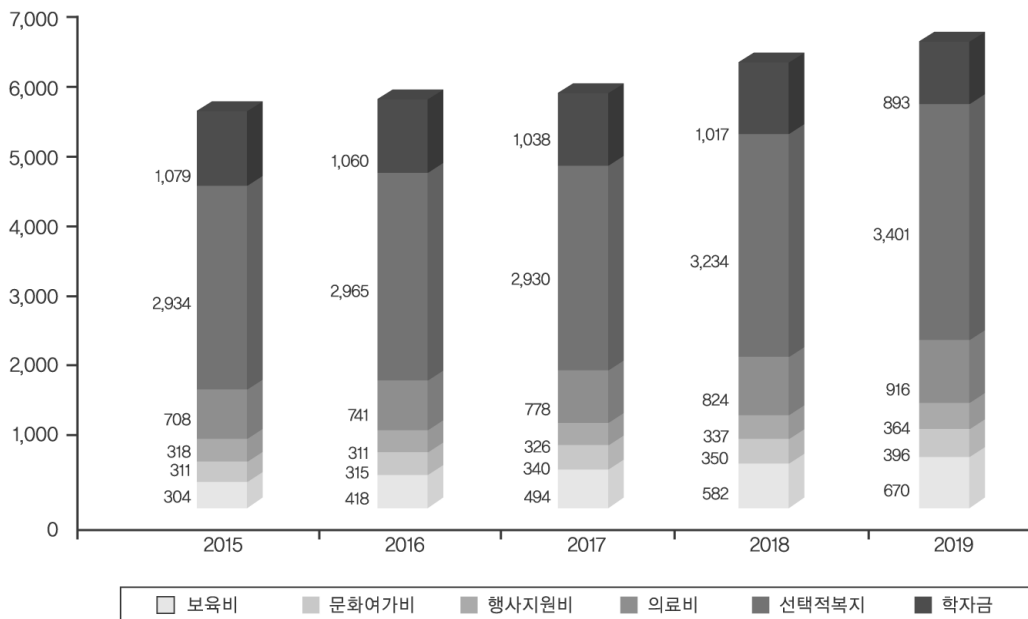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15년 대비		'18년 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보 육 비	304	418	494	582	670	366	120.2	88	15.1
문화여가비	311	315	340	350	396	85	27.3	47	13.3
행사지원비	318	311	326	337	364	46	14.4	27	8.0
의 료 비	708	741	778	824	916	209	29.5	92	11.2
선택적복지	2,934	2,965	2,930	3,234	3,401	467	15.9	167	5.2
학 자 금	1,079	1,060	1,038	1,017	893	△186	△17.3	△124	△12.2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통계다운로드」에 게시된 복리후생비 자료(2020.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34〉 최근 5년간 복리후생비 주요항목 추이

(단위: 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통계다운로드」에 게시된 복리후생비 자료(2020.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는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844억원, △26.6%)한 데 이어 2019년에도 감소하였음(△126억원, △5.4%).
- 2015년에는 경영실적의 호전과 2015년 예산편성지침상 직원 1인당 기금누적액 상한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가 증가함.
 - 2019년 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총액 2,197억원에서 공기업 출연금은 약 1,124억원으로 전체의 51.2%를 차지하며, 2017년까지 크게 증가하다가 2018년부터 전년대비 대폭 감소(△940억원, △35.6%)하였으며, 2019년에도 추가로 감소함(△574억원, △33.8%).
 - 2019년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감소한 것은 시장형 공기업에서 790억원이 감소(△81.2%)가 발생한 데 기인함.
 - 준정부기관의 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203억원)는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66.4% 정도(약 81억원) 증가함.
 - 기타공공기관의 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는 전체의 39.6% 수준인 869억원 수준이며 전년대비 72.8% 정도(약 366억원) 증가함.

〈표 III-64〉 최근 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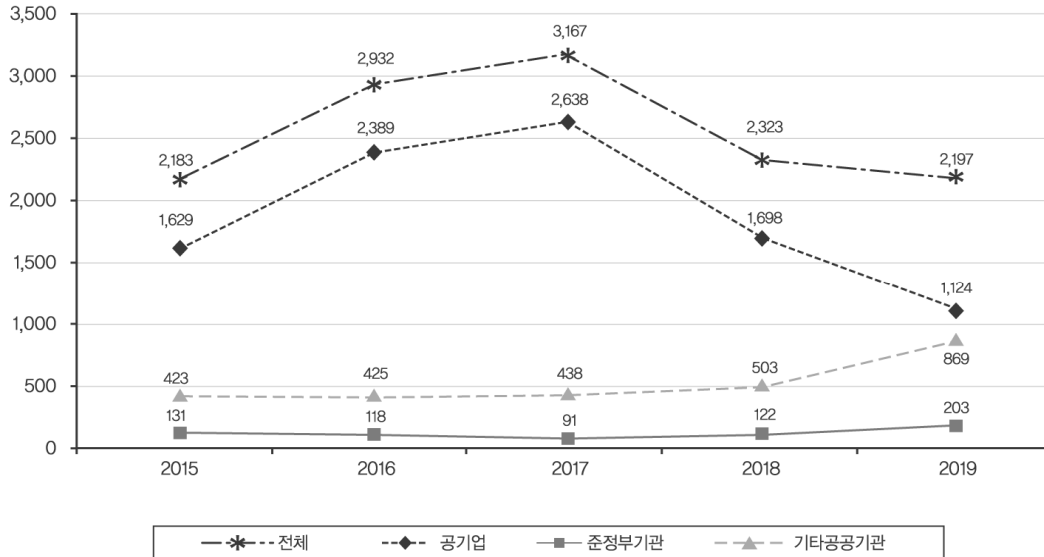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A)	'19년 (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2,183	2,932	3,167	2,323	2,197	△126	△5.4
공기업	1,629	2,389	2,638	1,698	1,124	△574	△33.8
· 시장형	1,260	2,157	2,363	973	183	△790	△81.2
· 준시장형	369	231	275	725	941	216	29.8
준정부기관	131	118	91	122	203	81	66.4
· 기금관리형	72	45	33	42	139	97	231.0
· 위탁집행형	59	73	58	80	65	△15	△18.8
기타공공기관	423	425	438	503	869	366	72.8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2020.4.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35〉 최근 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

(단위: 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2020.4.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6. 외부 평가결과

가.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¹⁸⁵⁾

1) 기관 평가제도 개요

-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운법」 제48조에 근거하여 기관 경영실적평가(이하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함.¹⁸⁶⁾
- 경영실적평가는 기관의 경영실적에 대한 외부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성을 확보하고 경영개선을 유도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1984년에 최초 실시되어 35년째 시행 중인 대표적인 공공기관 관리정책 중 하나임.

185)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2019. 12.,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계획」,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0. 2. 26.,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0. 6. 19.,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0. 6. 19., 「202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등 참고

186) 「공운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던 기관장평가(공공기관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는 2018년도 평가부터 기관평가에 통합하여 실시하였으므로 별도로 다루지 않음

- 기획재정부는 매년 3~6월 사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경영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음.
 - 기타공공기관은 「공운법」 제4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기관 경영평가의 대상은 아니나 주무부처 주관하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¹⁸⁷⁾
 - 기획재정부는 경영실적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수·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토록 함.
 - 기관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2018년(2017년도 평가)부터 경영평가단을 공기업 평가단과 준정부기관 평가단으로 분리함.
 - 경영실적평가의 평가지표체계, 평가유형,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대상 연도 개시 전에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평가편람을 통해 사전에 정하고 있음.
 -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임직원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고 우수기관과 부진기관에 대해 차별화된 조치를 시행함.
 - 성과급 지급률은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함.
 - A등급 이상을 받은 우수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음.
 - D등급 이하인 실적부진 기관은 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에 대해 해임 건의 등 인사 조치를 받을 수 있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경상경비예산이 삭감(0.5~1%p 이내)될 수 있으며,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여 이행상황을 점검받아야 함.
- 2019년도 경영실적평가는 기획재정부가 「공운법」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2020.3~6월)하고, 그 최종결과와 후속조치를 2020년 6월 19일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음.¹⁸⁸⁾
- 2020년 실시한 2019년도 경영실적평가는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을 기준으로 하여 129개 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3개)을 대상으로 실시됨.
 - 2020년 평가단은 교수·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유형별로 평가단을 구성함.

187)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준용하여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의무는 없음

188) 「공운법」 제48조 제7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경영실적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함

- 경영평가위원 선정을 위해 인터넷 공모¹⁸⁹⁾ 시민·사회단체 추천, 관련 부처 추천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풀을 구성함.¹⁹⁰⁾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공기업 평가단 37명, 준정부기관 평가단 63명 외에 감사 직무수행실적¹⁹¹⁾을 평가하기 위해, 별도로 감사평가단(10명)을 구성함.
 - 2020년에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엄격한 방역대책하에 기관별 실사를 원격 화상회의로 진행하였음.
 - 비대면 또는 분산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¹⁹²⁾하였으며, 불가피한 경우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한 후 대면평가를 시행함.
 -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상회의, 인원제한, 거리두기를 하였음.
 - 감염예방을 위한 위생관리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소독제 비치, 열 탐지기 등을 활용하고 방역책임자를 지정함.
 - 2019년도 경영실적평가에서는 평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실사과정에서 서비스 수요자 및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관단 제도를 기관 전체로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미시행함.
 - 2018년도 평가에서는 128개 기관 중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220명)한 바 있음.
- 2019년도 경영실적평가 대상기관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경영실적평가는 129개(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3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5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됨.
 - 2019년 1월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유형 변경으로 평가대상기관의 수가 전년대비 1개 기관¹⁹³⁾ 증가함.
 - 공기업은 2개 유형(공기업1, 공기업2), 준정부기관은 3개 유형(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강소형)으로 평가유형을 구분함.

189)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알리오시스템 등을 통해 경영평가위원 후보자를 공모('19. 12. 30. ~ 20. 1. 17.)

190) 경영평가위원 후보풀

(단위: 명)

'18년도 평가위원	시민단체 추천 등	인터넷 공모	소계
99	97	263	459

191) 가사 직무수행실적평가는 감사 개인에 대한 평가이므로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

192)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평가 워크숍을 분산 개최하고, 국민참관단 제도를 시행하지 않음

193)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 시,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주식회사 에스알, 창업진흥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은 2020년 최초로 경영평가를 수검하게 됨. 반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 지정된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2019년도 평가 대상기관 중 최초로 기관평가를 수검한 기관은 5개이며, 이 중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유형이 변경된 기관은 1개이고, 나머지 4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기관임.
 - 2019년 공공기관 지정 시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유형이 변경된 주식회사 에스알은 공기업2 유형으로 평가받았으며,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된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재단법인 대한건설 기계안전관리원, 한국보육진흥원 등 4개 기관은 강소형 유형으로 평가받음.
- 2019년도 평가대상 기관 중 평가유형이 변경된 기관은 3개 기관임.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18년도 평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으나 2019년도 평가에서는 강소형으로 변경되었으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2개 기관은 2018년도 강소형에서 2019년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평가유형이 변경됨.
- 2020년 공공기관 지정 결과에 따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19년도 기관평가에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기금관리 유형으로 평가받았으며,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2개 기관은 2019년도 기관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2020년 1월 지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기관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등 2개 기관임.¹⁹⁴⁾

194)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0. 1. 29.

〈표 III-65〉 2019년도 기관평가 대상기관(129개)

유 형	평가대상기관
공 기 업 (36개)	공기업 I (10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 기 업 (36개)	공기업 II (26개)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u>주식회사 에스알</u>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준 정 부 기 관 (93개)	기금 관리형 (13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 집행형 (37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철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강소형 (43개)
	국립생태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독립기념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u>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u>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u>창업진흥원</u> ,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u>한국건강증진개발원</u>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u>한국보육진흥원</u>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주. 1. 신규 평가 대상기관(5개)은 이탤릭체 및 밑줄로 표시

2. 2018년도 경영실적평가 대상기관 중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4개 기관은 2019. 1월 공공기관 지정 시 유형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어 2019년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3.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구)사회보장정보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구)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국가철도공단((구)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은 기관명이 변경됨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2019. 12. p. 10 및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계획」,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2. 26.를 참고하여 작성

- 2019년도 경영실적평가는 2018년도 평가와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가치' 중심의 평가체계 기초를 유지함.
- 경영실적평가의 평가지표는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 등 2개 범주, 20여 개 평가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¹⁹⁵⁾ 공기업·준정부기관 간 평가체계 및 지표를 차별화하였음.
 - 공기업 위주로 설계된 평가지표체계를 유형별로 달리하여 '경영관리: 주요사업' 배점을 공기업(55:45), 준정부기관(45:55)으로 차별화함.¹⁹⁶⁾
 -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배점이 2017년 평가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모두 11점이었으나, 2018년·2019년 평가에서는 공기업 24점, 준정부기관 22점으로 크게 확대됨.¹⁹⁷⁾
 - 특히,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19.3월)에 따라 적부평가제를 도입하고, 임원책임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련 평가¹⁹⁸⁾를 대폭 강화함.
 - 안전관련 배점을 기존 2점에서 최대 6점으로 강화함.
 - 부적절한 채용관행, 갑질 등 윤리경영도 중점 점검 하고, 작년부터 정례화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함.
 - 주요사업 평가에서는 주거복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에너지 전환 정책,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 주요 정부정책의 국민체감 성과 창출 여부를 중점 평가함.
 - 이 과정에서 소외계층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도 함께 평가함.
 -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 혁신지향 조달 등 혁신성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평가함.
 - 이와 관련하여 2018년에 '혁신성장 가점' 지표를 신설하였음(공기업 2점, 준정부 1점).
 - 지난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 및 조기집행 노력, 수출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업체 지원 노력 등도 평가에 반영함.
 - 2019년도 경영실적평가는 2017년·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기관 간 과열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과거 실적을 토대로 등급구간을 산정하는 절대평가 제도를 적용하였음.
 - 2016년도 경영실적평가까지는 종합점수와 범주별 점수를 바탕으로 한 상대평가

195) 2019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체계는 <부록 7> 참고

196)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추진」, 보도자료, 2017. 12. 28.

197)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0. 6. 19

198) <안전평가 강화 내용>

① 적부평가제 도입: 중대재해 발생,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만점 또는 0점 부여
 * (적합) 재해·사고 미발생 + 안전법령 미위반 → 최대 6점
 (부적합) 중대재해 발생 + 안전법령 위반 → 0점
 ② 임원책임 강화: 경영실적 부진 + 중대사고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장 해임 건의

결과만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하였으나, 2017년도 평가부터는 종합 및 범주별 등급 산정 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각각 50%씩 병용하여 평가등급을 산정함.

- 상대평가의 경우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경영실적이 개선되었어도 다른 기관에 비해 개선이 낮으면 등급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함.
-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통해 각각 산출된 종합점수와 범주별 점수를 바탕으로 하여 6개 등급(탁월(S)/우수(A)/양호(B)/보통(C)/미흡(D)/아주미흡(E))으로 기관의 평가등급을 산출함.

2) 2019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 2019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이하 ‘기관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2019년도 기관 평가결과¹⁹⁹⁾를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와 비교해 보면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임.

- 2018년도 대비 양호등급 이상(A, B) 비율이 소폭 상승(55.4→55.8%)하고, 미흡등급 이하(D, E) 비율은 유사함(13.3→13.2%).
- 유형별로는 양호등급 이상(A, B)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분포비율이 각각 55.6%, 62.0%로 높고, 미흡등급 이하(D, E)는 준정부기관 및 강소형이 높은 비율로 분포하였음(각각 14.0%, 16.3%).

□ 2019년도 기관 평가결과의 상대평가 종합등급을 구체적으로 보면, 총 129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 종합등급이 A등급(우수)은 21개 기관, B등급(양호)은 51개 기관, C등급(보통)은 40개 기관, D등급(미흡)은 16개 기관, E등급(아주미흡)은 1개 기관임.

- 2018년도 평가결과와 마찬가지로 최상위 등급인 S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은 없음.
- 전년보다 평가대상기관이 1개 증가하였고, A등급인 기관이 1개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등급에서 분포 기관수가 2018년도와 동일함.
- 종합등급이 A등급인 기관은 공기업 유형의 한국감정원,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기관,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함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10개 기관, 그리고 강소형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5개 기관으로 총 21개 기관임.

- 총 6개 기관이 2017년도부터 3년 연속 종합등급 A를 유지하고 있는 바, 공기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정부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3개 기관, 강소형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임업진흥원 등 2개 기관이 해당함.
-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임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은 2016년도부터 4년 연속 종합등급에서 A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이 외 15개 기관은 2018년도보다 경영성파가 개선되어 평가등급이 상승함.
- 종합등급 E등급인 기관은 (재)우편물류지원단 등 1개 기관임.
- 대한석탄공사는 2016년도부터 3년 연속으로 기관평가에서 E등급을 받았으나, 2019년도 평가에서는 D등급으로 1단계 상승함.

□ 최근 3년 평균('16~'18년)대비, 2019년도 종합등급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유사하나, 2019년도 종합등급이 양호등급 이상(A, B)인 기관의 비율이 55.8%로 3년 평균인 53.2%보다 조금 높음.

〈표 III-66〉 2019년도 평가유형별 종합등급 분포(상대평가)

(단위: 개)

구 분		연도별	기관수	S (탁월)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아주미흡)
공기업		2018	35	0	6	15	9	4	1
		2019	36	0	6	14	13	3	0
준 정 부 기 관	· 위탁집행/ 기금관리	2018	50	0	9	17	18	6	0
		2019	50	0	10	21	12	6	1
	· 강소형	2018	43	0	5	19	13	6	0
		2019	43	0	5	16	15	7	0
	전 체		2018	128	0	20	51	40	16
(100%)				(0.0%)	(15.6%)	(39.8%)	(31.3%)	(12.5%)	(0.8%)
2019			129	0	21	51	40	16	1
			(100%)	(0.0%)	(16.3%)	(39.5%)	(31.0%)	(12.4%)	(0.8%)
		‘16~’18 평균	(100%)	(0.0%)	(14.3%)	(38.9%)	(33.0%)	(10.2%)	(3.6%)

주: 1.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함. 절대평가 종합등급 분포는 <표 III-75>에 제시
 2. 등급구간은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 등을 활용하여 설정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 6. 20. 및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19.를 참고하여 작성

〈표 III-67〉 2019년도 종합등급별 기관 현황(상대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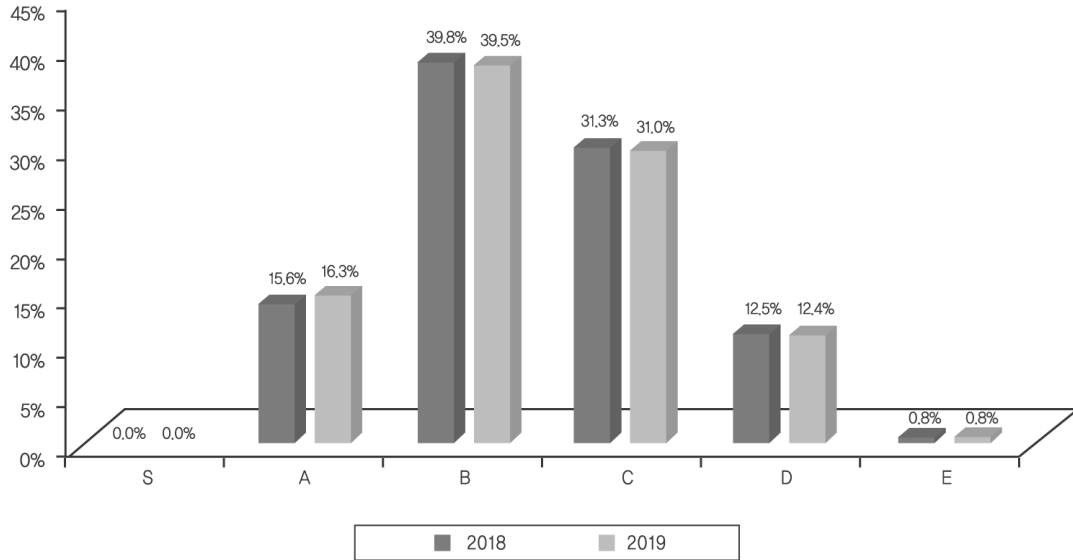
등급	공기업(36개)	준정부기관(50개)	강소형(43개)
S	-	-	-
A	한국감정원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철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임업진흥원
	(6)	(10)	(5)
B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신용보증기금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독립기념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	(21)	(16)
C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중부발전(주)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아시아문화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3)	(12)	(15)
D	대한석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철도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시청자미디어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	(6)	(7)
E	-	우체국물류지원단	-
		(1)	

주: 1.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절대평가 종합 평가결과는 <표 III-76> 제시)

2.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위탁집행 유형의 준정부기관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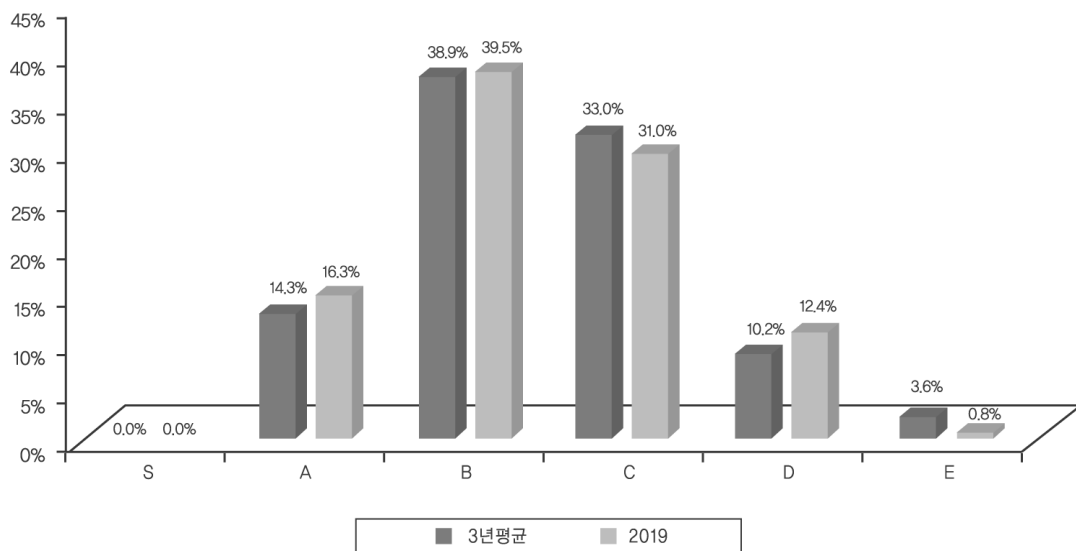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19.

〈그림 III-36〉 전년대비 2019년도 평가등급별 분포(상대평가)



주: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19.를
 참고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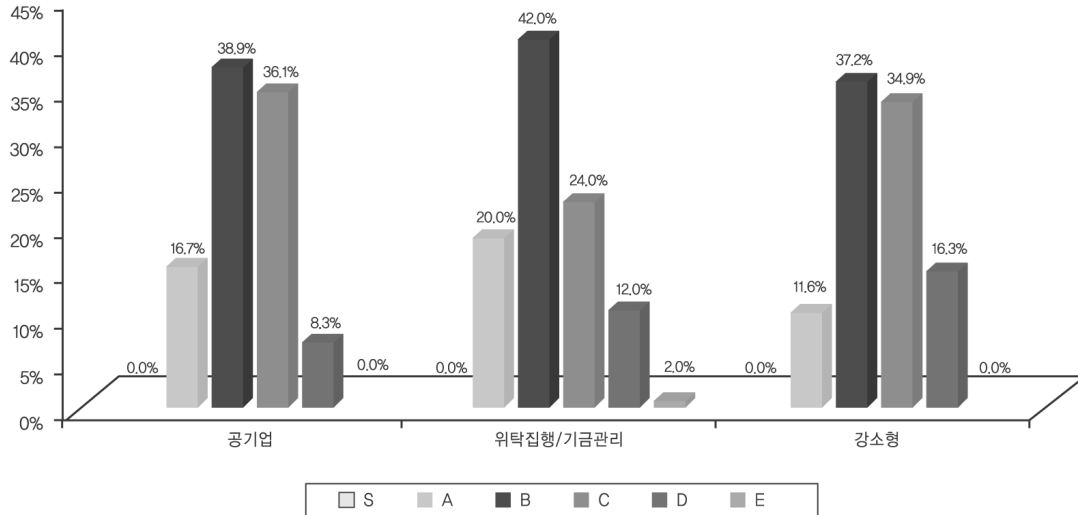
〈그림 III-37〉 최근 3년 평균 대비 2019년도 평가등급별 분포(상대평가)



주: 1.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
 2. 3년평균은 2016년부터 2018년도의 평가결과를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19.를
 참고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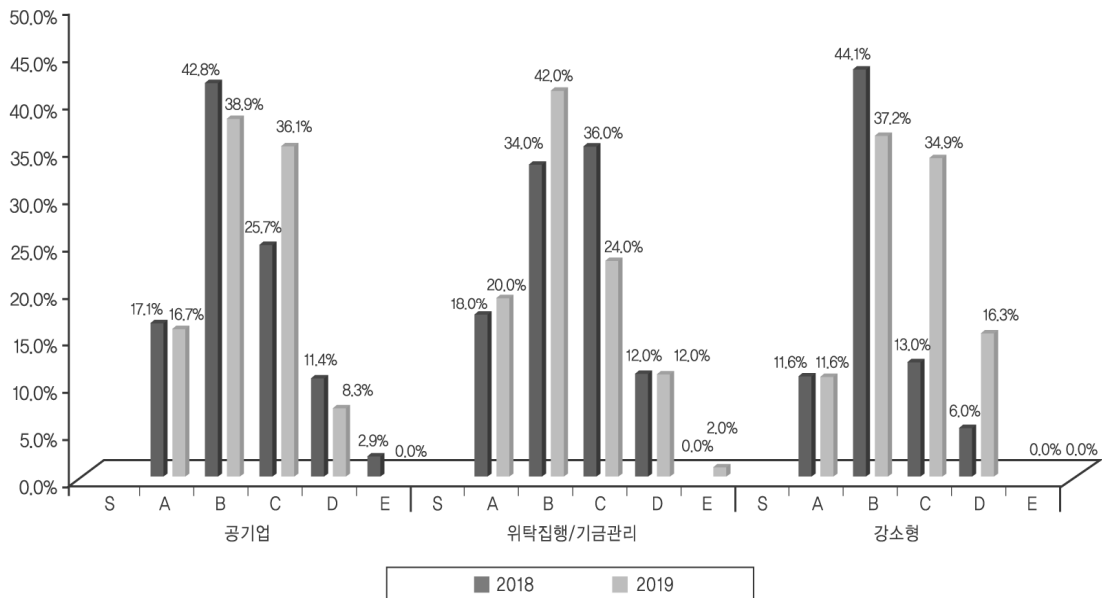
- 기관 평가결과의 상대평가 종합등급 분포를 평가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B등급의 분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C등급의 분포가 크다는 점에서 동일함.
- 종합등급 분포는 평가유형별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거나, 일부 차이가 있음.
- 모든 유형에서 B등급의 분포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C등급의 분포가 큰 것은 동일하며, 모든 유형에 S등급은 없음.
 - 다만, 공기업과 강소형은 B등급과 C등급 간 비중 차이가 각각 2.8%p, 2.3%p로 크지 않으나,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에서는 B등급과 C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가 18%p로 매우 크게 나타남.
 - 공기업과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은 'B등급 > C등급 > A등급 > D등급' 순으로 등급이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에는 E등급인 기관이 있다는 점이 차이점임.
 - 강소형은 다른 유형과 달리 A등급인 기관보다, D등급인 기관의 비중이 높음.
- 전년대비 종합등급 변동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A등급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고, B·C등급의 분포는 크게 변화하였으며, D등급 이하의 분포변화는 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 공기업 유형은 2018년도에 B등급과 C등급 분포의 차이가 컸으나, 2019년도 평가에서는 B등급이 감소하고, C등급이 크게 늘어나 두 등급 간 분포의 차이가 17.1%에서 2.8%로 크게 감소함.
 - 이와 반대로 2018년도에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의 B등급과 C등급 분포는 유사했으나, 2019년도에 B등급이 크게 늘어나고, C등급이 크게 감소하여 두 등급 간 분포의 차이가 2.0%p에서 18%p로 크게 증가하였음.
 - 강소형 유형은 2018년도에 B등급과 C등급 분포의 차이가 31.1%p로 매우 컸으나, 2019년도 평가에서 B등급이 감소하고, C등급이 매우 크게 증가하여 두 등급 간 분포의 차이가 28.8%p감소하여, 2.3%p가 되었음.
 - 미흡 이하 등급(D, E)의 분포는 공기업 유형은 감소하였으며,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과 강소형 유형에서는 증가하였음.

〈그림 Ⅲ-38〉 2019년도 평가유형별 등급 분포(상대평가)



주: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절대평가의 유형별 등급 분포는 <그림 Ⅲ-41>에 제시)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19.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39〉 평가유형별 전년대비 평가등급 분포 비교(상대평가)



주: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 6. 20. 및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19.를 참고하여 작성

- 2018년도 및 2019년도 기관평가를 모두 수검한 1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대비 평가등급 변동내역을 살펴본 결과, 평가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43개 기관으로 전체의 34.7%를 차지하고, 평가등급이 하락한 기관은 38개로 30.6%를 차지함.
- 전년대비 평가등급이 개선된 기관 중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장학재단, 국가철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전KPS(주) 등 6개 기관은 평가등급이 전년도에 비해 2단계 상승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 특히 한국국제협력단은 2017년도 평가등급이 E등급이었으나, 2년 연속 평가등급이 2등급씩 상승하여 2019년도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였음.
 - 2년 연속 평가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7개이고, 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2개 기관은 2년 연속 평가등급이 상승하여 2019년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으로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²⁰⁰⁾
- 평가등급이 전년도보다 하락한 기관 중 전년도보다 평가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한 기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철도공사 등 5개 기관임.
-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개 기관은 2년 연속 평가등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3년 연속 평가등급이 하락한 기관은 없음.

〈표 III-68〉 전년대비 2019년도 평가등급 변동 요약(상대평가)

(단위: 개)

구 분	기관수 (124개)	변동폭	
		1단계	2단계
평가등급 상승	43 (34.7%)	37	6
평가등급 유지	43 (34.7%)	-	-
평가등급 하락	38 (30.6%)	33	5

주: 1.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

2. 2019년 공공기관 지정결과,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된 주식회사 에스알과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은 2018년도 경영평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 6. 20. 및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19.를 참고하여 작성

200) 독립기념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3개 기관은 2년 연속 평가등급이 상승하여 2019년도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으며,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아시아문화원 등 2개 기관은 2년 연속 평가등급이 상승하여 2019년도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음

〈표 III-69〉 전년대비 2019년도 평가등급 변동 현황(상대평가)

구분	기관명
등급 상승 (43개)	(공기업)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독립기념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아시아문화원,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급 유지 (43개)	(공기업) (주)강원랜드,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주) (준정부기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급 하락 (38개)	(공기업)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철도공사 (준정부기관)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주: 1.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

2. 2019년 공공기관 지정결과,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된 주식회사 에스알과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은 2018년도 경영평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 6. 20. 및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19.를 참고하여 작성

□ 상대등급을 기준으로 2019년도 기관 평가결과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표 III-70>, <표 III-71>과 같이 나타남.

〈표 III-70〉 2019년도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평가등급 분포(상대평가)

(단위: 개)

구 분	기관수	S (탁월)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아주미흡)
기획재정부	2	-	1	-	1	-	-
교육부	3	-	-	2	1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	-	6	2	1	1
외교부	1	-	1	-	-	-	-
행정안전부	1	-	-	-	-	1	-
문화체육관광부	7	-	1	-	6	-	-
농림축산식품부	6	-	-	2	4	-	-
산업통상자원부	31	-	6	10	12	3	-
보건복지부	9	-	2	4	1	2	-
환경부	5	-	-	5	-	-	-
고용노동부	5	-	-	2	2	1	-
여성가족부	2	-	-	2	-	-	-
국토교통부	15	-	4	4	3	4	-
해양수산부	9	-	-	5	3	1	-
중소벤처기업부	5	-	1	2	1	1	-
방송통신위원회	2	-	-	-	1	1	-
금융위원회	4	-	2	2	-	-	-
공정거래위원회	1	-	-	-	1	-	-
국가보훈처	2	-	-	1	-	1	-
식품의약품안전처	1	-	1	-	-	-	-
인사혁신처	1	-	-	1	-	-	-
경찰청	1	-	-	1	-	-	-
소방청	1	-	-	1	-	-	-
산림청	2	-	1	1	-	-	-
농촌진흥청	1	-	1	-	-	-	-
특허청	1	-	-	-	1	-	-
기상청	1	-	-	-	1	-	-
합 계	129		21	51	40	16	1

주: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19.를 참고하여 작성

〈표 Ⅲ-71〉 2019년도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평가등급 현황(상대평가)

주무부처	기관명
기획재정부 (2개)	(A등급) 한국조폐공사 (C등급) 한국재정정보원
교육부 (3개)	(B등급)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C등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개)	(B등급)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C등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D등급) 한국과학창의재단 (E등급)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외교부 (1개)	(A등급) 한국국제협력단
행정안전부 (1개)	(D등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화체육관광부 (7개)	(A등급) 한국관광공사 (C등급)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아시아문화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축산식품부 (6개)	(B등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C등급)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마사회
산업통상자원부 (31개)	(A등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에너지공단 (B등급)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C등급) (주)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 (D등급) 대한석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보건복지부 (9개)	(A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B등급) 국민연금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C등급)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D등급)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환경부 (5개)	(B등급)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노동부 (5개)	(B등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C등급)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D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주무부처	기관명
여성가족부 (2개)	(B등급)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교통부 (15개)	(A등급)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B등급)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C등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D등급)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해양수산부 (9개)	(B등급)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C등급)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D등급)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중소벤처기업부 (5개)	(A등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B등급)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C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D등급) 창업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2개)	(C등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D등급) 시청자미디어재단
금융위원회 (4개)	(A등급)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B등급)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정거래위원회 (1개)	(C등급) 한국소비자원
국가보훈처 (2개)	(B등급) 독립기념관 (D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1개)	(A등급)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사혁신처 (1개)	(B등급) 공무원연금공단
경찰청 (1개)	(B등급)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1개)	(B등급)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림청 (2개)	(A등급) 한국임업진흥원 (B등급)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농촌진흥청 (1개)	(A등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청 (1개)	(C등급)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상청 (1개)	(C등급)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주: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19.를
참고하여 작성

□ 범주별 상대평가 등급을 살펴보면,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에서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음.

○ 공기업 유형 중 한국감정원,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기관은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에서 모두 A등급을 받음.

- 공기업 유형 중 경영관리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감정원,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개 기관이며,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감정원,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기관임.

- 대한석탄공사는 경영관리 범주에서 E등급을 받았으며, 주요사업 범주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음.

-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남부발전(주)는 주요사업 범주에서 C등급을 받았으나, 경영관리 범주에서 대한석탄공사는 E등급을 받았고, 한국남부발전(주)는 A등급을 받아, 범주 간 등급 차이가 2단계 이상으로 나타남.

○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 중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 모두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 개 기관임.

- 경영관리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8개 기관²⁰¹⁾이고,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9개²⁰²⁾임.

-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 간 등급이 2단계 이상 차이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환경공단 등 15개 기관임.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범주 간 등급이 3등급 차이나는 기관으로, 경영관리 범주에서 D등급을 받았으나,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아 종합등급은 C등급을 받음.

201) 경영관리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8개 기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가철도공단이 해당됨

202)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9개 기관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해당됨

-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경영관리 범주에서 E등급을 받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주요사업 범주에서 E등급을 받음.
- 강소형유형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3개 기관은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 종합등급 모두에서 A등급을 받음.
- 경영관리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7개 기관이고,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아시아문화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8개 기관임.
- 범주 간 등급이 2단계 이상 차이나는 기관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아시아문화원, 창업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14개 기관임.
-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범주 간 등급이 4등급 차이나는 기관으로, 경영관리 범주에서 E등급을 받았으나,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아 종합등급은 C로 평가받았음.

〈표 III-72〉 2019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상대평가, 공기업 유형)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S	-	-	-
A	한국감정원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6)	한국감정원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7)	한국감정원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6)
B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14)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주) 해양환경공단 (11)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12)
C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중부발전(주) (13)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PS(주) (14)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11)
D	대한석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철도공사 (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마사회 한국철도공사 (3)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철도공사 (7)
E		대한석탄공사 (1)	

주: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절대평가 결과는 <표 III-77>에 제시)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19.

〈표 III-73〉 2019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상대평가,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S	-	-	-
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철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10)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철도공단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9)
B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신용보증기금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16)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교통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17)
C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정보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12)	국립공원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18)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4)
D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정보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7)	국민체육진흥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환경공단 (9)
E	우체국물류지원단 (1)	우체국물류지원단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

주: 1.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절대평가 결과는 <표 III-78>에 제시)

2. 준정부기관 중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인 준정부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19.

〈표 III-74〉 2019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상대·절대평가, 강소형 유형)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S	-	-	-
A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임업진흥원 (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7)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아시아문화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8)
B	국립생태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독립기념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6)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독립기념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7)	국립생태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독립기념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8)
C	국제방송교류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아시아문화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5)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
D	시청자미디어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7)	국제방송교류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5)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5)
E		한국디자인진흥원 (1)	창업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주: 강소형 유형은 지표체계 변동으로 인해 절대평가를 적용하지 않아 상대평가 결과와 절대평가 결과가 동일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19.

- 2017년도 경영평가부터 기관 실적만을 기준으로 평가등급을 정하는 절대평가 등급제가 최초로 도입된 이후, 2019년도 평가에서도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함께 실시됨.
- 총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절대평가 등급이 A등급(우수)은 13개 기관, B등급(양호)은 61개 기관, C등급(보통)은 43개 기관, D등급(미흡)은 11개 기관이고, E등급(아주미흡) 기관이 1개이고, S등급(탁월)에 해당하는 기관은 없음.
 - 2019년도 평가에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종합등급이 모두 A등급인 기관은 13개 기관이고, 절대평가 종합등급이 A등급인 기관은 모두 상대평가 종합등급에서 A등급을 받음.²⁰³⁾
 - 절대평가 등급이 D등급인 기관은 공기업 유형의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2개 기관, 위탁집행 유형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2개 기관, 강소형 유형의 시청자미디어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7개 기관임.
 - 이 기관들은 상대평가 종합등급도 모두 D등급을 받음.
 - (재)우체국물류지원단은 절대평가 종합등급과 상대평가 종합등급 모두 E등급임.
- 전년대비 2019년도 기관 절대평가 종합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전년도 분포와 유사함을 알 수 있음.
- 두 해 모두 B등급 > C등급 > A등급 > D등급 순으로 분포가 유사함.
 - 다만, 2019년도 평가에서는 E등급인 기관이 있다는 데 차이가 있음.
 - 2018년도에 비해 2019년도 절대평가 결과는 B등급의 비중은 늘어나고 A·C·D등급의 비중은 감소하였음.

203) 2019년도 상대평가 종합등급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절대평가 종합등급에서는 A등급을 받지 못한 기관은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8개 기관이며, 이 기관들은 2019년도 절대평가 결과 B등급(양호)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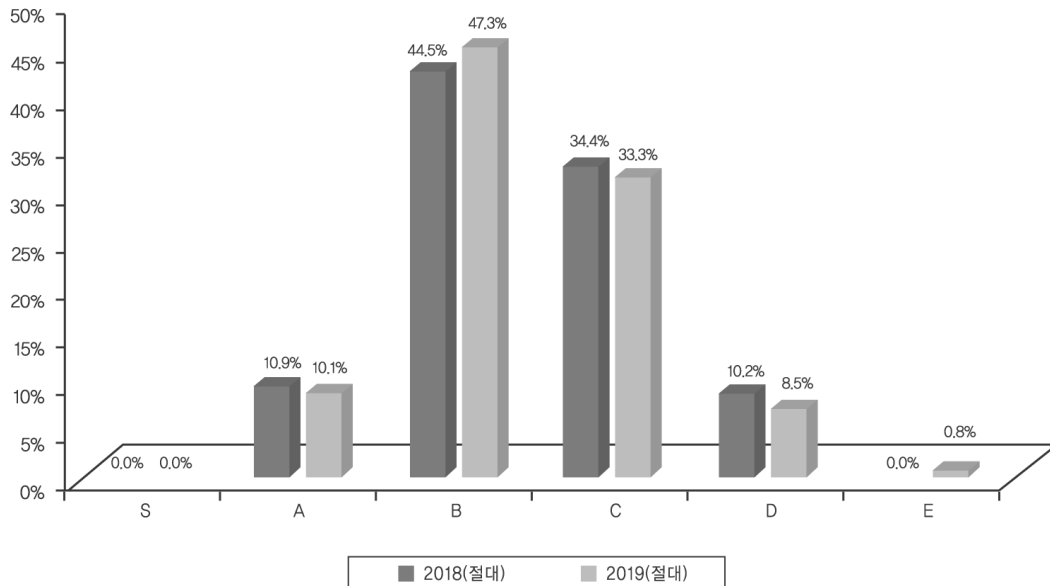
〈표 Ⅲ-75〉 2019년도 평가유형별 평가등급 분포(상대·절대평가)

(단위: 개)

구 분		구분	S (탁월)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아주미흡)	계
공기업		상대	0	6	14	13	3	0	36
		절대	0	6	14	14	2	0	
준정부 기관	· 위탁집행/ 기금관리	상대	0	10	21	12	6	1	50
		절대	0	2	31	14	2	1	
	· 강소형	상대·절대	0	5	16	15	7	0	43
전 체		상대	0	21 (16.3%)	51 (39.5%)	40 (31.0%)	16 (12.4%)	1 (0.8%)	129 (100%)
		절대	0	13 (10.1%)	61 (47.3%)	43 (33.3%)	11 (8.5%)	1 (0.8%)	

주: 강소형은 지표체계 변동으로 인해 절대평가를 적용하지 않아 상대평가 결과와 절대평가 결과가 동일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19.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40〉 전년대비 2019년도 평가등급 분포 비교(절대평가)



주: 기관 평가결과 중 절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 6. 20., 「2018년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 2019. 8. 및 「2018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2019. 8.,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19.를 참고하여 작성

〈표 III-76〉 2019년도 종합등급별 기관 현황(절대평가)

등급	공기업(36개)	준정부기관(50개)	강소형(43개)
S	-	-	-
A	한국감정원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6)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2)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임업진흥원 (5)
B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31)	국립생태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독립기념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 산림복지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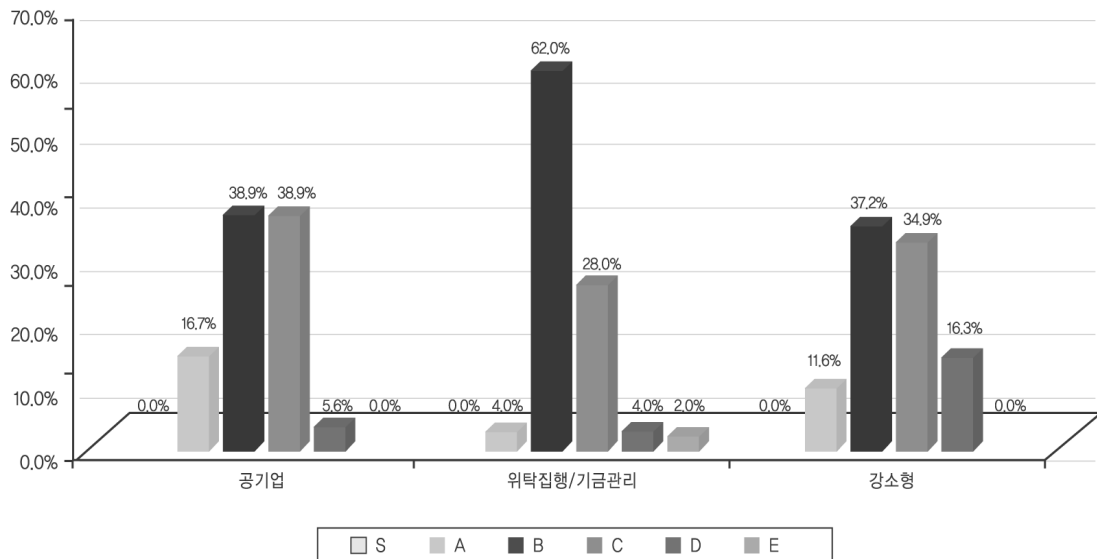
등급	공기업(36개)	준정부기관(50개)	강소형(43개)
C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중부발전(주) (14)	국민체육진흥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14)	국제방송교류재단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아시아문화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5)
D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2)	시청자미디어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7)
E	-	우체국물류지원단 (1)	

주. 1. 준정부기관(50개)은 기금관리·위탁집행 유형인 준정부기관을 의미
 2. 기관 평가결과 중 절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상대평가 등급결과는 <표 III-67>에 제시)
 3. 강소형은 지표체계 변동으로 인해 절대평가를 적용하지 않아 상대평가 결과와 절대평가 결과가 동일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19.를
 참고하여 작성

□ 평가유형별 기관 절대평가 결과의 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기업 유형,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 강소형 유형 모두 B등급인 기관의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C등급인 기관의 비중이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차이가 있음.
- 다만, 공기업 유형은 B등급인 기관의 비중과 C등급인 기관의 비중이 각각 38.9%로 동일함.
- 공기업 유형과 강소형 유형에서 S등급, E등급인 기관의 비중이 0%임.
-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은 B등급인 기관의 비중과 C등급인 기관의 비중이 34.0%p로 크게 차이하며, A등급과 D등급이 각각 4.0%로 동일하게 분포하고 있음.
- 강소형 유형의 경우 절대평가를 적용하지 않아 상대평가와 동일하게 B등급의 비중이 가장 크고, 0%인 S, E등급을 제외하면, A등급의 비중이 가장 낮음.

〈그림 III-41〉 2019년도 평가유형별 평가등급 분포(절대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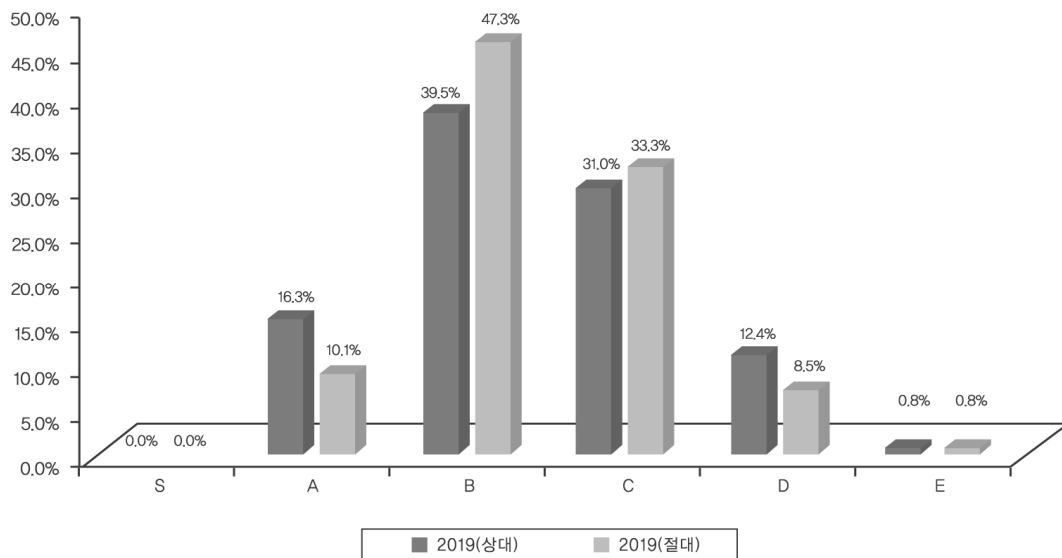
주: 1. 기관 평가결과 중 절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상대평가의 유형별 등급 분포는 <그림 III-38>에 제시)

2. 강소형은 지표체계 변동으로 인해 절대평가를 적용하지 않아 상대평가 결과와 절대평가 결과가 동일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19.를 참고하여 작성

- 기관의 상대평가 결과와 절대평가 결과의 평가등급별 분포를 비교해 보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분포가 비슷한 모양을 보임.
- 평가결과 등급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모두 B등급 > C등급 > A등급 > D등급 > E등급 > S등급 순으로 분포하고 있음.
- 평가결과 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관의 비중은 상대평가 55.8%, 절대평가 57.4%로 절대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기관의 비중이 크게 나타남.
 - 다만, 절대평가보다 상대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의 비중이 6.2%p 높게 나타남.
- 평가결과 등급이 D등급 이하인 기관의 비중은 상대평가 결과가 절대평가 결과보다 높은 비중을 보임.

〈그림 III-42〉 2019년도 평가등급별 분포(상대·절대평가)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19.를 참고하여 작성

- 범주별 절대평가 등급을 살펴보면,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에서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음.
- 공기업 유형 중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 모두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남동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개 기관임.
 -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7개이며, 경영관리 범주에서도 A등급을

- 받은 2개 기관을 제외한 5개 기관은 경영관리 범주에서 양호 등급을 받음.²⁰⁴⁾
- 경영관리 범주 절대평가 결과 E등급을 받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이며, 주요사업 범주 절대평가 결과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음.
 - 두 범주에서 모두 D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철도공사 1개 기관임.
-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 중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에서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으며,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A등급을 받은 기관도 없음.
-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13개이고, 이 중 2개 기관은 경영관리 범주에서 B등급을 받고, 8개 기관은 C등급을 받았으며, 3개 기관은 D등급을 받아 등급 간 차이가 3등급이 발생하였음.²⁰⁵⁾
 - 경영관리 범주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토정보 공사 등 2개 기관이고, 주요사업 범주에는 D등급과 E등급인 기관이 없음.
- 강소형 유형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범주별 평가등급 결과가 동일함.²⁰⁶⁾

204)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고,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양호 등급을 받은 5개 공기업은 한국감정원, 한국 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임

205)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고, 경영관리 범주에서 D등급을 받아 범주간 등급 차이가 3등급이 난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3개 기관이 해당함

206) 강소형의 상대·절대평가 등급 결과는 <표 III-74>에 제시

〈표 III-77〉 2019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절대평가, 공기업 유형)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S	-	-	-
A	한국감정원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6)	한국남동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7)
B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14)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양환경공단 (15)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14)
C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태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중부발전(주) (14)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주태도시보증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16)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주태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중부발전(주) (14)
D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철도공사 (2)	한국철도공사 (1)
E	-	대한석탄공사 (1)	-

주: 기관 평가결과 중 절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상대평가 등급결과는 <표 III-72>에 제시)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19.를
 참고하여 작성

〈표 Ⅲ-78〉 2019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절대평가,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S	-	-	-
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13)
B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31)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가철도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 국토정보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철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30)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C	국민체육진흥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신용보증기금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23)	국민체육진흥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7)
D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2)	국립공원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17)	-
E	우체국물류지원단 (1)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토정보공사 (2)	-

주: 1. 준정부기관 중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인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함
 2. 기관 평가결과 중 절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상대평가 등급결과는 <표 III-73>에 제시)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19.를
 참고하여 작성

- 2019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로 ① 부진기관 인사조치, ② 성과급 차등 지급, ③ 부진기관 경영개선 점검 및 차년도 예산 반영 조치 등을 시행함.²⁰⁷⁾
- 상대평가 종합등급이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은 기관의 장은 인사조치의 대상이 됨.
- 상대평가 종합등급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의 장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의 장은 해임 건의의 대상이 되고, 당해 연도 D등급의 받은 기관의 장은 경고조치의 대상이 됨.
 - 2019년도 평가에서 해임건의 대상자는 상대평가 종합등급에서 E등급을 받은 1개 기관의 장이나, 해당 기관장은 기 해임되어 2020년도에는 해임 건의 대상자가 없음.²⁰⁸⁾
 - 기관평가 종합등급(상대)이 '미흡 등급 이하(D, E)'로, 실적이 부진하여 기관장 경고조치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기관장은 17명이며, 이 중 2명은 제외하고 15명을 경고 조치함.²⁰⁹⁾²¹⁰⁾
-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기관인 한국철도공사의 기관장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관련자 인사 조치를 요구함.
- 「공운법」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등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귀책사유 및 책임 정도를 감안하여 공운위 의결을 거쳐 평가 등급 또는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 조정 하는 것이 원칙임.
 -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관련지표 등급 하향²¹¹⁾ 등으로 종합등급(상대)이 D등급을 받아, 성과급 지급률이 0%이므로, 성과급에 대한 추가 조치는 없음.
 - 다만, 『경영평가편람』에 따라²¹²⁾ 기관장 경고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를

207)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발표」, 보도자료, 2020. 6. 19.

208) 상대평가 종합등급에서 E등급이나, 既 해임되어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은 우체국물류지원단임

209) 경고조치에서 제외한 기관장은 우체국물류지원단(既 해임), 한국산업단지공단(既 임기만료) 등 2개 기관의 기관장임

210) 경영실적이 부진하여 기관장 경고조치를 받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철도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시청자미디어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15개 기관임

211) 한국철도공사 고객만족도 점수는 0점 처리하고, 관련 비계량지표(리더십, 윤리경영) 등급은 하향조정하였음

212)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3. 경영실적 보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조치(p.65)

-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귀책사유 및 책임정도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다만, 오류가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관련되는 지표의 하향조정(최대 0점)
- 당초 결정된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한 삭감

요구함.

- 중대재해가 발생한 9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경고조치를 시행함.
 -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은 총 11명이나, 2명은 경고조치 대상에서 제외함.²¹³⁾
 -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경고조치 대상은 (주)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9개 기관의 기관장임.
- 2019년도 경영평가 결과 실적부진 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기관, 중대재해 발생기관 등의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함.
 - 상대평가 종합등급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경상경비를 조정하는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함.²¹⁴⁾
 -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기관²¹⁵⁾은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방지 등을 위한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함.
 - 중대재해가 발생한 11개 기관²¹⁶⁾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 방지 등 안전관련 개선 계획을 제출 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임.
- 기관 평가 성과급 지급 대상은 범주별(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상대·절대등급이 C등급 이상인 127개 기관임.²¹⁷⁾
 - 성과급 지급 기준은 기관의 실적 향상도를 반영하기 위해 범주별(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로 상대평가 등급과 절대평가 등급을 50:50으로 반영하여 차등 지급함.²¹⁸⁾

- 해당기관에 대한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요청

4.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및 사회공헌에 대한 조치(p.65)

- 채용비리, 양성평등위반, 최저임금 미준수, 고용차별, 조세포탈, 회계부정, 재난·사고, 불공정거래 행위 등 공공기관(임직원 포함)의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또는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의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등급 또는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213) 한국도로공사 기관장은 기 의원면직되었고, 한국수자원공사 기관장은 기 임기 만료하여 제외함
 214) 구체적인 사항은 「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할 예정임
 215) 한국철도공사가 이에 해당함
 216)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은 (주)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1개 기관임
 217) 성과급 지급률이 0%인 기관은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철도공사 등 2개 기관임
 218) 성과급 지급률은(상대 50%) 종합등급 25% - 경영관리 12.5% - 주요사업 12.5%, (절대 50%) 종합등급 25% - 경영관리 12.5% - 주요사업 12.5%를 반영

- 성과급 지급률은 202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함.
- 코로나 19 위기와 관련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기관장·감사·상임이사는 결정된 성과급의 10% 이상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함.
-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형 기관²¹⁹⁾은 결정된 성과급의 15% 이상을 자율 반납할 것을 권고함.
- 다만, 2020년 중 자율적으로 임금을 이미 반납한 경우는 해당 기(既) 반납분을 제외하고, 반납분은 각종 기부처에 자발적으로 기부하여 위기극복 등에 활용하도록 함.
- 직원은 단체협약을 거쳐 최소한 성과급의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함.²²⁰⁾
- 2019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은 <표 III-79>, <표 III-80>와 같음.

219) 금융형 준정부기관(8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해당함

220)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각 주무부처에 상기 권고사항을 준용하도록 협조 요청함

〈표 III-79〉 2019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공기업)

(단위: %)

구 분			S	A	B	C	D~E
직원	지급한도		'19년 월기본급의 250%이내				
	총 합	상대	62.5	50	37.5	25	-
		절대	62.5	50	37.5	25	-
	경영관리	상대	31.25	25	18.75	12.5	-
		절대	31.25	25	18.75	12.5	-
	주요사업	상대	31.25	25	18.75	12.5	-
		절대	31.25	25	18.75	12.5	-
종전 투자기관 직원	지급한도		'19년 월기본급의 300%이내				
	총 합	상대	75	60	45	30	-
		절대	75	60	45	30	-
	경영관리	상대	37.5	30	22.5	15	-
		절대	37.5	30	22.5	15	-
	주요사업	상대	37.5	30	22.5	15	-
		절대	37.5	30	22.5	15	-
기관장	지급한도		'19년 기본연봉의 120%이내				
	총 합	상대	30	24	18	12	-
		절대	30	24	18	12	-
	경영관리	상대	15	12	9	6	-
		절대	15	12	9	6	-
	주요사업	상대	15	12	9	6	-
		절대	15	12	9	6	-
상임이사	지급한도		'19년 기본연봉의 100%이내				
	총 합	상대	25	20	15	10	-
		절대	25	20	15	10	-
	경영관리	상대	12.5	10	7.5	5	-
		절대	12.5	10	7.5	5	-
	주요사업	상대	12.5	10	7.5	5	-
		절대	12.5	10	7.5	5	-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19.를 참고하여 작성

〈표 III-80〉 2019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준정부기관)

(단위: %)

구 분			S	A	B	C	D~E
직원	지급한도		'19년 월기본급의 100%이내				
	총 합	상대	25	20	15	10	-
		절대	25	20	15	10	-
	경영관리	상대	12.5	10	7.5	5	-
		절대	12.5	10	7.5	5	-
	주요사업	상대	12.5	10	7.5	5	-
		절대	12.5	10	7.5	5	-
중전 투자기관 직원 ^{주)}	지급한도		'19년 월기본급의 300% 이내				
	총 합	상대	75	60	45	30	-
		절대	75	60	45	30	-
	경영관리	상대	37.5	30	22.5	15	-
		절대	37.5	30	22.5	15	-
	주요사업	상대	37.5	30	22.5	15	-
		절대	37.5	30	22.5	15	-
기관장 상임이사	지급한도		'19년 기본연봉의 60%이내				
	총 합	상대	15	12	9	6	-
		절대	15	12	9	6	-
	경영관리	상대	7.5	6	4.5	3	-
		절대	7.5	6	4.5	3	-
	주요사업	상대	7.5	6	4.5	3	-
		절대	7.5	6	4.5	3	-

주: 「2020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중전의 정부투자기관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19.를 참고하여 작성

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²²¹⁾

1)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서비스의 실질적 수요자인 고객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만족도 형태로 평가함으로써, 공급자 중심의 경영평가를 보완하고자 실시되고 있음.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1999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매년 기획재정부가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된 후 추진함.
- 도입 당시에는 구 정부투자기관(현, 공기업이 대부분)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2004년에는 구 정부산하기관으로, 2005년에 각 부처 자율혁신기관(현, 기타공공기관이 대부분)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이 확대됨.
- 2011년도부터는 직접고객 외에 일반 국민의 공공기관 평가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체감도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2018년도부터는 ‘사회적 가치 기여도 조사’로 대체됨.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2007년부터 「공운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과 시행령 제17조 제1항과 제3항에 근거해 실시됨.
- 또한 「공운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이 공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III-81〉 「공운법」 제13조

제13조(고객현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①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고객현장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기본 임무	
2.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바람직한 서비스의 수준	
3.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처리, 시정 절차 및 배상 등의 책임	
4.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노력 및 계획 등	
②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현장을 제정하여 공표하거나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 고객현장의 제정·공표, 고객만족도 조사의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1)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2019. 8. 27. 참고

- 고객만족도 조사는 주관기관에 따라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와 '주무부처 주관 조사'로 구분되어 시행됨.
-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전체 및 기타공공기관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2019년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는 244개 기관이 대상임.²²²⁾
 - '주무부처 주관조사'는 기타공공기관 중 국민생활과 밀접성이 낮거나 기관 규모가 작아 통합조사의 실익이 부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2019년 주무부처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은 76개임.²²³⁾
 - 출연연구기관, 30인 미만의 소규모 기관 등이 주무부처 주관조사의 대상이 됨.
 - 2019년에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6개)도 예산확보 등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업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주무부처 주관조사를 수검하게 됨.²²⁴⁾
 - 공공기관 중 주된 고객이 중앙행정기관이거나 불특정 외국인 또는 모회사 등으로 고객 형성이 미흡한 기관(19개)은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한국전력공사가 모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6개 발전자회사(공기업), 특수한 고객이 주된 고객인 세종학당재단 등이 해당됨.
-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는 2015년부터 기능별로 그룹을 구분하여 그룹 내에서 상대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2018년까지 그룹별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2019년 상대평가를 완화하는 방향을 조사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그룹분류가 폐지됨.
- 2016년까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5개 그룹과 기타공공기관 4개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나 고객만족도 조사 점수의 상향 평준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기능 중심으로 조사그룹을 개편함.²²⁵⁾
 - 기능과 주요사업에 따라 그룹을 세분화하여 동일 그룹 내 기관 간 동질성을 제고함으로써 상대평가를 강화함.
 - 2017년 개편된 조사대상 공공기관 그룹 분류는 다음의 <표 III-82>와 같으며 공공기관 간 서비스품질 경쟁 강화를 위해 그룹별로 상대평가를 실시(S-A-B-C등급)함.
 - 그룹별로 S-A-B-C 등급을 1:4:4:1의 비율로 부여하고 있음.

222) 2019년 공공기관 기준임(2020년 공공기관 기준 242개)

223) 2019년 공공기관 기준임(2020년 공공기관 기준 73개)

224)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조사 제외

225) 공기업·준정부기관 10개 그룹과 기타공공기관 9개 그룹으로 분류

- 그러나 기존의 서열등급 부여 방식이 기관 간 과다경쟁을 유발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2019년 조사에서 상대평가를 완화하고 절대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그룹분류가 폐지됨.

〈표 III-82〉 고객만족도 조사그룹 분류

기관유형	조사그룹		기관유형	조사그룹	
공기업 · 준정부 기관	고용·복지		기타 공공 기관	산업	
	문화	관광		의료	
		관광·예술·언론		교육·연구	
	교육			SOC	
	금융			공공안전	
	에너지			문화	관광
	SOC				체육·언론·예술
	공공안전			복지	
	산업			금융	
	연구			-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9. 3. 28.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2015년부터 PCSI 2.0 모델을 적용하고 있으며, 고객 만족도 지수는 서비스 품질, 사회적 책임, 불일치의 3가지 선행요인과 만족도 측정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도출함.
- PCSI 2.0 모델은 종전 PCSI 모델을 개선한 것으로 두 모델을 비교하면 <표 III-83>과 같음.
- 개인이 고객인 경우 서비스 환경 품질에 대해 조사하며, 법인이 고객인 경우 관계 여건 품질에 대해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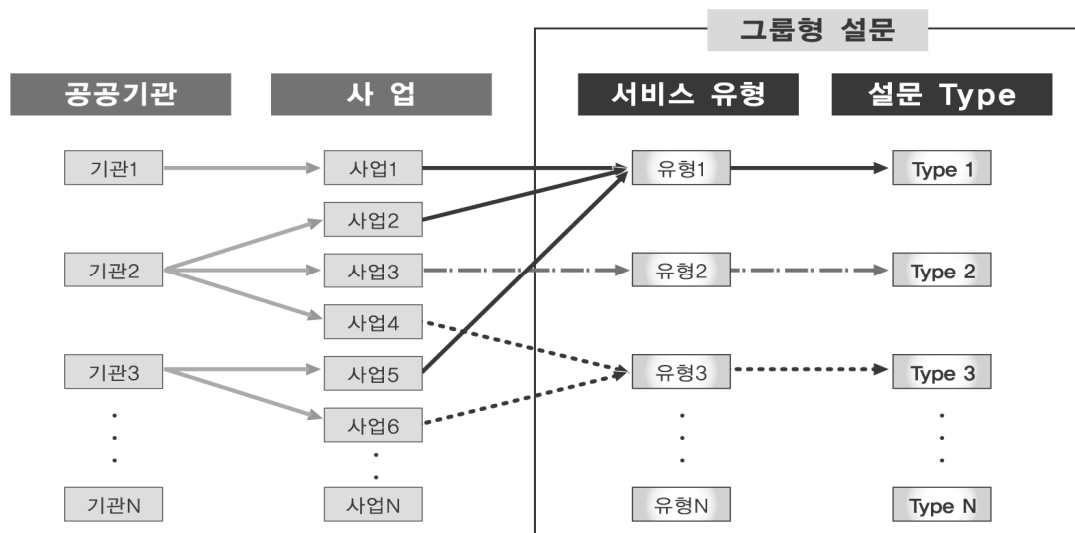
〈표 III-83〉 PCSI 모델과 PCSI 2.0 모델 비교

구 분		PCSI	PCSI 2.0	
서비스품질 모형	서비스상품 품질	편익성	본원적 문제해결	
		전문성	서비스 효익성	
		혁신성	서비스 완결성	
	서비스전달 품질	지원성	인적상호작용	
		공감성	커뮤니케이션	
		대응성	고객케어	
	서비스환경 품질	공통	개인고객용	법인고객용
		쾌적성	물리적 환경	협력
		편리성	제도/절차/시스템환경	상호호혜
		심미성	인적자원 역량환경	관계 동등성
	사회품질	청렴성	-	
		공익성	-	
		안정성	-	
사회적책임 모형	사회적책임	-	정책타당성	
		-	지속가능성	
		-	윤리성	
서비스 비교평가 모형	불일치	-	기대 대비 비교	
		-	이상점 대비 비교	
		-	다른 기관 대비 비교	
고객만족 모형	전반적 만족	절대적 만족	-	
		상대적 만족	인지적 만족	욕구 충족
		감정적 만족		체감 만족
	요소만족	서비스 상품만족	감정적 만족	긍정적 감정
		서비스 전달만족		부정적 감정
		서비스 환경만족	-	
	사회적만족	사회적 책임만족	-	
성과모형	기관성과	신뢰	신뢰	
		지지		
		인식전환		
	사회성과	국민행복	국민행복	
		국가발전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2016. 7. 1.

- 2017년까지는 전체 기관이 공통 설문문항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2018년 조사부터는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설문을 다양화하였으며 2019년 조사까지 유지됨.
- 2017년까지 유지된 설문지는 기관 설문 유형을 개인과 법인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조사 대상 기관별, 사업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2018년 변경된 설문지는 공공서비스의 특징을 반영하여 이용 동기(자발·비자발), 서비스 형태(유형·무형), 이용 목적(과정지향·결과지향) 등에 따라 8종류로 세분화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응답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함.

〈그림 Ⅲ-43〉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개편(2018년)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2018. 8. 24.

- 기획재정부는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일괄 발표하고, 알리오시스템²²⁶⁾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경영실적평가의 국민소통 지표에 반영하고 있음.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국민소통 지표로 전체 100점에서 1점을 반영하고 있음.

226)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통해 공개

- 2017년까지는 전체 100점에서 2점 반영되던 것을 2018년부터 1점으로 축소함.
-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의 경영실적평가에서 국민평가(고객만족도) 지표로 반영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에 따라 지표와 가중치를 달리 적용함.

〈표 III-84〉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통합조사 경영평가 반영안

$$\text{국민소통지수} = (0.8 \times \text{고객만족도지수}) + (0.2 \times \text{사회적가치 기여도지수})$$

* 사회적가치 기여도지수가 없는 경우 결측 처리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2019. 8. 27.

2) 2019년 고객만족도 조사제도 개선사항

- 기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제도가 서열등급 부여 방식으로 결과를 산출하여 기관 간 과다경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2019년 조사부터 상대평가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조사제도를 개편함.
 - 기존의 서열등급 부여 방식은 상대평가를 강화하여 기관 간 과도한 경쟁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공정성 훼손 행위 및 과다한 조사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관의 자율적인 고객만족 경영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조사부터 상대평가를 완화하고 절대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사제도를 개편함.
- 또한 사업평가 방식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지수를 그대로 반영하던 기존 사업별 평가결과 산출방식에서 최근 3년간 사업별 조사결과 평균치를 기초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에 따라 S(만족)/U(불만족)²²⁷⁾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기존 사업평가 방식은 공기업·준정부기관 9개, 기타공공기관 10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 내에서 기관이 받은 만족도 점수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서열등급(S-A-B-C)을 부여하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함.
 - 그룹을 분류하여 그룹 내에서 기관의 점수를 서열 등급화하는 기존의 상대평가 방식을 폐지하고, 각 사업별 과거 점수를 토대로 S(만족)/U(불만족) 여부만을 판단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방법을 개편함.

227) S: Satisfactory(만족), U: Unsatisfactory(불만족)

- 전년도 유형별(공기업/준정부/기타) 평균점수²²⁸⁾를 고려하여 각 사업의 3년간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95~105% 수준으로 적정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로 S(만족)/U(불만족)를 판정함.
- 유형별 평균점수 이하인 사업은 점수 향상을 위해 100~105% 수준의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하고, 평균점수 이상인 사업은 점수 유지를 목표로 하는 95~100%의 완화된 목표치를 설정함.
- 구간별 목표치의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은 특정 목표값을 부여하였음.

3) 2019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201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85>와 같음.
 - 2020년 기준 340개 공공기관 중 201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은 총 316개 기관임.
 - 공기업·준정부기관 118개와 기타공공기관 198개가 이에 해당함.
 - 2020년 공공기관(340개) 중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19년도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은 243개 기관²²⁹⁾으로 수검기관 전체의 76.9%를 차지함.
 - 25개 공기업, 93개 준정부기관, 그리고 125개 기타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함.
 - 2019년도 주무부처 주관 201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 73개 기관은 모두 기타공공기관으로, 23.1%를 차지함.
 - 2020년 공공기관(340개) 중 201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하지 않은 기관은 총 24개 기관임.
 - 201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제외된 20개 기관 중 18개 기관은 「2019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개 기관은 고객 특성이 조사에 적합하지 않아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조사 기술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본계획 발표 이후 조사대상에서 제외됨.

228) 2018년 유형별 평균점수: 공기업 88.7점, 준정부기관 86.9점, 기타공공기관 84.4점

229)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2019. 8. 27.)에 기재된 수검기관은 244개 기관이나 이 중 2개 기관(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이 2020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었으며 국제방송교류재단과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기본계획 발표 이후 조사대상에서 제외됨. 3개 기관(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해양진흥공사)은 부처조사 대상 기관이었으나 기본계획 발표 이후 통합조사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0년 공공기관 기준 분석대상은 243개임

- 2020년 공공기관 지정 시 신규로 지정된 4개 기관은 201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하지 않음.

〈표 III-85〉 2019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 현황

(단위: 개)

구 분			조사 미수검 기관 현황					조사 수검 기관 현황		
			합계	조사 제외	조사 유예	신규 지정	수시 지정	합계	기재부 통합조사	주무부처 조사
공 기 업	시장형	16	6	6	0	0	0	10	10	0
	준시장형	20	5	5	0	0	0	15	15	0
	소 계	36	11	11	0	0	0	25	25	0
준 정 부 기 관	기금관리형	13	0	0	0	0	0	13	13	0
	위탁집행형	82	2	2	0	0	0	80	80	0
	소 계	95	2	2	0	0	0	93	93	0
기타공공기관		209	11	7	0	4	0	198	125	73
전 체		340	24 (100%)	20 (83.3%)	0 (0.0%)	4 (16.7%)	0 (0.0%)	316 (100.0%)	243 (76.9%)	73 (23.1%)

주. 1. 2020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340개)을 대상으로 201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미수검 사유와 조사 주관기관 현황을 정리

2. 201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하였으나 2020년에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된 2개 기관(사단법인 한국산학 연합회,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은 분석대상(316개)에서 제외하였으며, 기본계획상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발표 이후 조사제외 된 국제방송교류재단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역시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3. 공공기관 유형은 2020년 공공기관 지정결과를 기준으로 구분함. 따라서 2020년 공공기관 지정 시 공공기관 유형이 변경된 3개 기관은 201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수검 당시 공공기관 유형(2019년 기준)과 2020년 유형이 다름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기타공공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 신규지정 및 수시지정은 2020년 중 발생한 건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기관별 공시자료(2020. 6. 15.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20년 공공기관 기준으로 201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을 조사 주관기관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III-86>과 같음.

○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 중 4개 기관은 2018년까지는 주무부처 주관 조사 대상이었으나 2019년도 조사부터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로 편입됨.

-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수목원관리원이 이에 해당함.

- 2019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316개 기관 중 「공운법」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를 최초로 수검하는 기관은 8개 기관임.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최초 수검하는 기관 중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매년 조사에서 제외되었으나 2019년부터 조사대상에 포함됨.
- 그 외 6개 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은 모두 2019년에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임.

〈표 Ⅲ-86〉 2019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2020. 1월 기준)

구분	기관명
기획 재정부 주관 통합 조사 (243개)	(공기업) (주)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공단 (준정부기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독립기념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용보증기금, 아시아문화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예금보험공사,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래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구분	기관명
기획 재정부 주관 통합 조사 (243개)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재)APEC기후센터, (재)국악방송,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중소기업연구원,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재)한식진흥원, (주)공영홈쇼핑, (주)위터웨이플러스,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부산과학관,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노사발전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식품안전정보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전남대학교병원, 전략물자관리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쟁기념사업회, 제주대학교병원, 주택관리공단(주),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태권도진흥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벤처투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잡월드,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향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환경보건협회

구분	기관명
주무 부처 주관 조사 (73개)	(기타공공기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88관광개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전직교육원, 국토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산업연구원, 새만금개발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외동포재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부법무공단,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조사 미수검 기관 (24개)	(공기업)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준정부기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타공공기관) (재)축산환경관리원, 세종학당재단, 아동권리보장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투자공사,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주: 1. 2020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340개)을 대상으로 하며 기관 유형은 2020년 공공기관 유형을 기준으로 함
 2. 밑줄 처리된 기관은 2020년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2019. 8. 27. 및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기관별 공시자료(2020. 6. 15.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312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9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등급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I-87>과 같음.²³⁰⁾
-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는 2018년 조사까지 수준등급과 더불어 그룹별 상대등급을 발표하였으나 2019년 조사부터 상대평가를 완화하고 절대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으로 상대등급은 발표하지 않음.
 - 그룹분류가 폐지됨에 따라 그룹별 상대등급 부여도 폐지됨.
- ‘우수’ 기관이 82개, ‘양호’ 기관이 129개, ‘보통’인 기관이 77개, ‘미흡’ 기관은 24개이며, 312개 기관 중 2019년에 최초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8개 기관은 모두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남.
-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2개 기관은 고객만족도 등급이 ‘보통’ 수준임.
 -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5개 기관은 모두 ‘양호’ 수준이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우수’ 수준임.
 - ‘우수’ 및 ‘양호’ 수준인 기관이 전체의 65.6%(211개)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양호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최하위 수준인 ‘미흡’에 해당하는 기관은 전체 312개 기관 중 24개 기관으로 11.1%를 차지함.
 - ‘미흡’인 기관 중 18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미흡’인 기관 전체의 75.0%를 차지함.
 - ‘미흡’인 기관 중 공기업은 1개 기관(주강원랜드)이며 준정부기관은 5개 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임.

230) 316개 기관 중 4개 기관(코레일관광개발주, 한국마사회,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기관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기획재정부에서 조사결과를 미공개함에 따라 제외하고 분석함

〈표 III-87〉 2019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별 분포

구분	기관명
우수 (82개)	(공기업)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준정부기관)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환경공단 (기타공공기관) (재)예술의전당, 경상대학교병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부산과학관, 국립암센터, 국방기술품질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외동포재단,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쟁기념사업회,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u>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u>,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잡월드,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한의학진흥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양호 (129개)	(공기업)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양환경공단 (준정부기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독립기념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용보증기금, 아시아문화원, 예금보험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구분	기관명
양호 (129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주)위터웨이플러스, (주)한구건설관리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경북대학교병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방과학연구소, 국립해양박물관, 국토연구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동북아역사재단, 대한적십자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산업연구원, 새만금개발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부산대학교병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부법무공단, 주택관리공단(주),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재단,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보통 (77개)	(공기업)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준정부기관) 국립생태원,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중소기업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기타공공기관) (재)APEC기후센터, (재)국악방송,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중소기업연구원,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재)한식진흥원, 88관광개발(주), (주)공영홈쇼핑, 강원대학교병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방전직교육원, 기초과학연구원, 노사발전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통일연구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구분	기관명
보통 (77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환경보건협회
미흡 (24개)	(공기업) (주)강원랜드 (준정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기타공공기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식품안전정보원,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코레일로지스(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 1. 고객만족도 조사 주관기관(기획재정부 또는 주무부처)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주관기관별 조사에서 측정된 고객만족도 등급을 기재

2. 2020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9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31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

(2020년 신규 지정기관, 2019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은 불포함)

3. 밑줄 처리된 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 최초 수검기관(8개)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20. 6. 15.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의 기관유형별 등급 분포는 <표 III-88>과 같음.

○ 공기업 유형은 고객만족도가 '우수' 등급인 기관이 다른 두 유형에 비해 많아 고객만족도 수준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음.

- 201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받은 22개 공기업 중 '우수' 등급인 기관이 10개(45.5%)이고 '양호' 등급인 기관도 8개(36.4%)로, '양호' 이상인 기관이 전체의 81.8%를 차지함.

- 고객만족도 등급이 '보통' 등급인 기관은 3개 기관이며, '미흡' 등급인 기관은 (주)강원랜드 1개 기관임.

○ 201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준정부기관은 93개 기관이며, 이 중 71개 기관(76.3%)이 '양호' 수준 이상임.

- '우수' 등급인 준정부기관은 25개로 전체의 2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호' 등급인 준정부기관은 46개로 전체의 49.5%를 차지함.

-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양호' 등급인 기관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17개 기관(18.3%)이 '보통' 수준이며 최하위 등급인 '미흡'에 해당하는 기관은 5개 기관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함.
- 201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대부분의 기관(206개, 66.0%)이 '양호'와 '보통' 등급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상위 등급에 분포한 공공기관은 82개로 26.3%, 최하위 등급인 공공기관은 24개로 7.7%를 차지함.

〈표 III-88〉 2019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요약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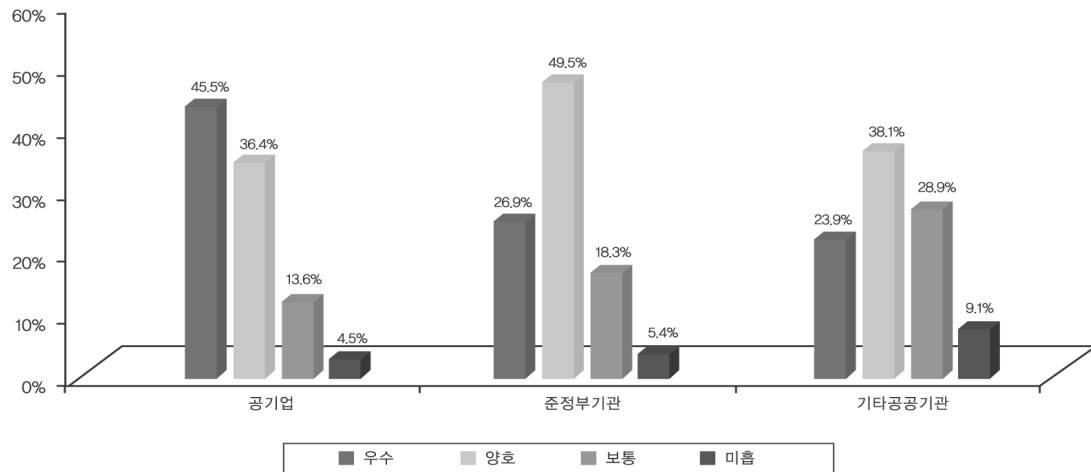
구 분			조사대상	고객만족도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공 기 업	시장형	16	10	5	2	2	1
	준시장형	20	12	5	6	1	0
	소 계	36	22	10	8	3	1
준 정 부 기 관	기금관리형	13	13	5	7	1	0
	위탁집행형	82	80	20	39	16	5
	소 계	95	93	25	46	17	5
기타공공기관		209	197	47	75	57	18
합 계		340	312 (100%)	82 (27.9%)	129 (37.7%)	77 (23.3%)	24 (11.1%)

주: 1. 2020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340개)을 대상으로 하며 기관 유형은 2020년 유형을 기준으로 구분함

2. 조사대상기관(312개)은 2020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 또는 주무부처가 실시한 2019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 중 조사결과를 미공개 한 4개 기관(코레일관광개발주, 한국마사회,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을 제외한 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20. 6. 15.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44〉 2019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등급 분포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20. 6. 15.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2018년도 고객만족도 수준과 2019년도 수준을 비교해 보면, 전년도 등급을 유지한 기관이 62.6%(166개)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고객만족도 수준의 변화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표 Ⅲ-89>).
- 전년도와 동일한 등급을 유지한 기관 중 공기업은 8개, 준정부기관은 56개, 기타공공기관은 102개임.
- 고객만족도 수준이 2018년도에 비해 개선된 기관은 70개로 분석대상기관(265개)의 26.4%를 차지함.
 - 4개 공기업, 16개 준정부기관 및 50개 기타공공기관이 전년도보다 고객만족도 등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고객만족도 등급이 개선된 70개 기관 중 부산대학교치과병원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2단계 상승하였으며 한국한의학진흥원은 3단계 상승함.
 - 이 외 67개 기관은 고객만족도 등급이 전년대비 1단계 상승함.
- 2018년도에 비해 고객만족도 수준이 악화된 기관은 293개로 전체의 10.9%를 차지함.
 - 4개 공기업, 5개 준정부기관 및 20개 기타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함.
 - 이 중 충남대학교병원과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는 2018년 '우수'에서 2019년 '보통'으로 2단계 하락함.
-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고객만족도 등급 변동 현황 및 내역은 <표 Ⅲ-89>, <표 Ⅲ-90>, <표 Ⅲ-91>과 같음.

〈표 III-89〉 전년대비 2019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비교

구 분			2019년도 조사대상기관	2018년도 대비 등급 개선수준			
				분석 대상기관	상승 (▲)	유지 (-)	하락 (▼)
공 기 업	시장형	16	10	7	2	3	2
	준시장형	20	12	9	2	5	2
	소 계	36	22	16	4	8	4
준 정 부 기 관	기금관리형	13	13	9	3	5	1
	위탁집행형	82	80	68	13	51	4
	소 계	95	93	77	16	56	5
기타공공기관		209	197	172	50	102	20
전 체		340	312	265 (100%)	70 (26.4%)	166 (62.6%)	29 (10.9%)

주: 1. 기관 유형은 2020년 유형을 기준으로 구분함

2. 조사대상기관(312개)은 2020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 또는 주무부처가 실시한 2019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임. 분석대상기관(265개)은 2020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8년 및 2019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모두 수검한 기관임(2019년~2020년 신규지정기관 및 지정해제기관, 2019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 등은 불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20. 6. 15.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표 III-90〉 전년대비 2019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 변동 현황

(단위: 개)

구 분	기관수 (265개)	변동폭		
		1단계	2단계	3단계
등급 상승	70 (26.4%)	67	2	1
등급 유지	166 (62.6%)	-	-	-
등급 하락	29 (10.9%)	27	2	-

주: 2020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8년 및 2019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모두 수검한 기관을 기준으로 분석
(2019년~2020년 신규 지정기관 및 지정 해제기관, 2019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 등은 불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20. 6. 15.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표 III-91〉 전년대비 2019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 변동 내역

구분	기관명
등급 상승 (70개)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조폐공사 (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공영홈쇼핑,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부산과학관, 국방과학연구소, 국립중앙의료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영화진흥위원회,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쟁기념사업회, (주)중소기업유통센터,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잡월드,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등급 유지 (166개)	(공기업) (주)강원랜드,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준정부기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독립기념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예금보험공사,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수산물자원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재)APEC기후센터,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중소기업연구원,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재)한실진흥원, 88관광개발(주), (주)위터웨이플러스,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구분	기관명
등급 유지 (166개)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경북대학교병원, 광주과학기술원, 국방전직교육원, 국립해양박물관, 국토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노사발전재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동북아역사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산업연구원, 서민금융진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부법무공단, 제주대학교병원, 중소기업은행, 충북대학교병원, 통일연구원, 코레일로지스(주),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환경보건협회
등급 하락 (29개)	(공기업) 여수광양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준정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타공공기관) 강원대학교병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부산대학교병원, 식품안전정보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주택관리공단(주), 충남대학교병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 2020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8년 및 2019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모두 수집한 기관을 기준으로 분석
(2019년~2020년 신규 지정기관 및 지정 해제기관, 2019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 등은 불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20. 6. 15.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²³¹⁾

1)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의료기관 및 국공립대학 등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 측정을 실시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기능),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및 제27조의3(조사·평가 결과의 공개)에 근거하여 청렴도 측정을 실시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근거에 따라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 기능,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권한을 가짐.
 - 청렴도는 각 기관의 주요 대민·대관업무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와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 그리고 정책고객평가로 구성됨.
 - 청렴도 설문조사는 전화조사와 온라인(이메일, 모바일)조사를 병행하며 평가자가 조사방식을 선택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정책고객은 방문조사를 병행함.
 - 종합청렴도 점수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함.
-
-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공기관,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 지방의회 등 크게 4가지 그룹으로 구분하여 측정을 실시함.²³²⁾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가 포함되며, 「공운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대부분은 이 중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함.
 -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의 경우, 법인격을 갖춘 공공의료기관이 대상이 되며, 「공운법」상 공공기관 중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국공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 국립

231)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2019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및 「2019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참고

232)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2019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2019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및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 자료, 2020. 1. 29. 참고

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병원 등이 그 대상이 됨.

-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의 경우, 국공립대학 및 관련 법인이 대상이 되며, 「공운법」상 공공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4개 과학기술원이 그 대상이 됨.²³³⁾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2019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은 총 690개 기관으로, 이 중 187개 기관이 「공운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함.

〈표 III-92〉 2019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청렴도 측정 유형별)

(단위: 개)

청렴도 측정 유형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	「공운법」상 공공기관 (2020년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중앙행정기관	45	-
	지방자치단체	243	-
	교육청	91	-
	공직유관단체	230	166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46	17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35	4
합계		690	187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2019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2019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및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 자료, 2020. 1. 29.를 참고하여 작성

2) 2019년도 청렴도 측정 모형²³⁴⁾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설문조사 결과(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하며, 공공의료기관과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도 유사한 모델을 적용하되, 부분적으로 기관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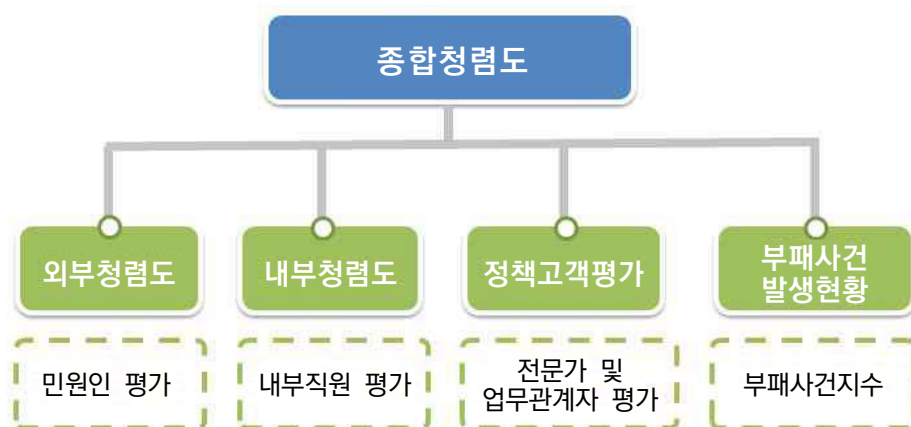
- 청렴도 측정은 2002년 최초 시행 이후 두 차례(2008년, 2012년)의 개편을 통해 현재의 종합 청렴도 모형에 이룸.

233)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234)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2019. 6.,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2019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2019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및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0. 1. 29. 참고

- 종합청렴도 점수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책고객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I·II유형에 국한하여 실시함.²³⁵⁾
 - 외부청렴도란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부패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대민업무일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민원인이, 대기관업무일 경우에는 상대 공직자가 평가자가 됨.
 - 내부청렴도란 소속직원이 내부고객의 입장에서 해당기관의 내부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내부 직원 등이 평가자가 됨.
 -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 학부모 등 정책고객의 입장에서 해당기관의 정책 및 업무전반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임.

〈그림 III-45〉 종합청렴도 구성 체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매뉴얼」, 2019. 2.

-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우수기관에 대한 측정 면제(1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지표 합리화 등 측정 범위 및 모형을 개선함.
- 2019년도 청렴도 측정 시, 2018년도 1등급 기관 중 2016~2017년도 청렴도 2등급 이상이면서 3년간 부패사건 감점이 없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분류하여 청렴도 측정을 면제하였으며 한국감정원이 이에 해당함.
- 또한 2019년도 청렴도 측정에서는 유사·중복 항목을 통합 조정하여 설문을 간소화·정교화하고, 공직유관단체 부패사건지수에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²³⁶⁾와

235) 국민권익위원회,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매뉴얼」, 2019. 2.

236) 부패내용, 관행화·조직화 및 부정적 파급력 정도

기관정원, 부패금액 등을 반영한 정량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지표를 종전보다 합리화 하여 모형의 정교화를 꾀함.

〈그림 III-46〉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주: 1. 종합청렴도 모형의 외부·내부 청렴도는 각 설문조사 결과를 의미

2. 공직유관단체 I, II 유형은 외부청렴도(0.622), 내부청렴도(0.224), 정책고객평가(0.154)를 가중합산

3. 정책고객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는 외부청렴도(0.763)와 내부청렴도(0.237)를 가중합산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은 2018년도부터 응답자 중심에서 업무·영역 중심으로 측정 모형을 개편하고, 설문영역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진료비 청구영역을 감점으로 대체하여 측정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옴.
 - 종전의 측정 모형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유사했다면, 개편된 측정 모형은 의료기관의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체감이 쉽도록, 업무·영역 중심으로 전면 개편함.
 -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의 조직문화 항목을 재편하여 내부업무영역을 신설하고, 내·외부 포괄적인 부패수준을 진단함.
 -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①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 ② 내부직원, ③ 환자 보호자, ④ 이·퇴직자, ⑤ 관리·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고, 부패사건과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을 적용해 점수를 산출함.

- 2019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은 측정의 적절성 제고를 위해 인식문항을 구체화 하고,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지표를 합리화하였으며, 결과 산정 및 발표방식을 종전의 통합관리에서 2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결과의 합리성을 제고함.
 - 친절도로 인식될 수 있는 환자진료 분야의 설문 항목에 ‘투명성’ 개념을 명확히 하여 설문결과의 정확도를 제고함.
 - 2016년 이전 발생사건은 가중치를 감경하는 등 부패사건 발생시점에 따라 차등 감점을 적용하여 부패수준 진단의 타당성을 제고함.
 - 기존에는 전체 공공의료기관을 통합하여 등급을 산정하였으나, 의료기관의 설립 목적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립대학병원 등(16개)과 국립·지방의료원(30개) 유형으로 나누어 등급을 산정함.

〈그림 III-47〉 2019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은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강의·연구 등 내부 활동의 비중이 큰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특화모형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음.
 - 과거의 청렴도 사업주기를 고려하여 4년제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측정하되, 전문대학 및 교육대학은 부정기적으로 청렴도를 측정함.
 - 2018년도의 경우 교육대학을 측정 대상에 포함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4년제 국공립대학에 대해서만 청렴도 측정을 실시함.
 - 설문조사 결과는 계약, 연구, 행정, 조직문화제도 영역의 점수를 가중치에 따라 합산하고,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점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함.
 - 계약영역은 대학과 계약업무를 경험한 입찰참가자를 포함한 외부민원인이 평가하며, 연구·행정·조직문화제도 영역은 교직원, 연구원, 조교 등 내부 구성원이 평가함.
- 2019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에서는 측정대상 합리화와 설문문항에 대한 간소화가 이루어짐.
 - 청렴도 결과가 지속적으로 우수한 기관에 대해 1년 측정을 면제하는 등 측정대상을 합리화함.
 - 연구영역의 심층 진단을 위해 기존에 행정과 통합하여 측정하던 것을 분리하였으며, 설문문항을 합리적으로 조정(간소화)함.
 -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 등 대학의 고질적인 부패취약분야인 연구영역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종전의 행정영역에 포함시켜 측정하던 것을 별도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함.

〈그림 III-48〉 2019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모형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3) 2019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²³⁷⁾

- 2020년도에 지정된 공공기관(340개) 중 2019년도 청렴도 측정을 수검한 기관은 총 187개 기관으로, 전체 대비 55% 정도가 청렴도 측정의 대상이 됨.²³⁸⁾
- 34개 공기업, 81개 준정부기관 및 72개 기타공공기관이 청렴도 측정의 대상이 됨.
 - 187개 기관 중 166개 기관이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수검함.
 - 공공의료기관 및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모두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함.

〈표 III-93〉 2019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공공기관(「공운법」상 공공기관 기준)

(단위: 개)

구 분		「공운법」상 공공기관 (2020년도 기준)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36	34
	준정부기관	95	81
	기타공공기관	209	51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17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4		
합계		340	187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2019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2019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및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0. 1. 29. 참고

- 2019년도에 신규 측정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은 없으며, 전년대비 측정 기관 수가 2개 감소함.
- 2018년도에 189개 기관이 청렴도 측정 대상이었으나, 2019년도 측정 대상은 187개 기관으로 한국감정원과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 측정 대상에서 제외됨.
 - 한국감정원은 201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19년도 청렴도 측정을 면제받음.

237)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2019. 6. 및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참고

238) 공공기관의 유형 분류는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0. 1. 29.에 따름

-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은 2018년도에는 청렴도 측정의 대상이 되었으나, 교육대학 등에 대한 과거 측정주기 등을 고려하여 2020년도 이후 측정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여 2019년도 측정 대상에서 제외됨.

〈표 III-94〉 2019년도 유형별 청렴도 측정 대상 공공기관

구분	유형	해당 공공기관명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공직유관 단체)	I (21개)	(공기업) (주)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기타공공기관) 대한적십자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II (34개)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주) (준정부기관)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환경공단 (기타공공기관) 한국수출입은행,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III (39개)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준정부기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생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타공공기관) 국방기술품질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구분	유형	해당 공공기관명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공직유관 단체)	IV (33개)	(공기업)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준정부기관) 국제방송교류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기타공공기관)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노사발전재단, 대한체육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투자공사, 환경보전협회
	V (14개)	(공기업)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준정부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타공공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정부법무공단, 한국벤처투자
	연구원 (25개)	(기타공공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화학연구원
공공 의료 기관 청렴도 측정	국립 대학 병원 등 (16개)	(기타공공기관)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지방 의료원 (1개)	(기타공공기관) 국립중앙의료원
국공립 대학 청렴도 측정	대학교 (4개)	(기타공공기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주: 2020년도 공공기관 유형을 기준으로 함(2020년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2019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2019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및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 자료, 2020. 1. 29. 참고

□ 청렴도 측정 수검 유형 변경은 대부분 기관규모 변동에 기인하나, 일부 기관은 수행업무나 기능을 고려하여 조정함.

-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I 유형(3천명 이상), II유형(1천명 이상~3천명 미만), III유형(4백명 이상~1천명 미만), IV유형(2백명 이상~4백명 미만), V유형(2백명 미만)으로 나뉘며, 기관정원이 변경되는 경우 수검 유형이 변경됨.
-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공직유관단체 V유형에서 연구원 유형으로 변경됨.
- 2019년도 청렴도 측정기준,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수검 유형 변경이 발생함(<표 III-95>).

〈표 III-95〉 2019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유형 변경 현황

구분	유형	해당 공공기관명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공직유관 단체)	I	(변경 없음)
	II	(편입: III → II)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II	(편입: IV → III)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외: III → II)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외: III → V) 한국벤처투자
	IV	(편입: V → VI)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외: IV → III)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V	(편입: III → V) 한국벤처투자 (제외: V → VI)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외: V → 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편입: V → 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및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은 유형 변경사항이 없어 제외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2019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2019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및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 자료, 2020. 1. 29. 참고

4) 2019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²³⁹⁾

- 청렴도 측정 결과는 유형 내 등급으로 발표되며 2019년도 청렴도 측정을 수검한 기관의 청렴도 등급은 유형 내 상대등급으로 부여되고,²⁴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공직유관단체는 다시 연구원, 기관규모(정원)에 따른 5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결과를 발표함.
 - 결과 발표 시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은 국립대학병원 등과 국립·지방의료원 등 2개의 유형으로 분류되고,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은 유형구분 없이 하나의 유형으로 결과를 발표함.
 - 그동안 청렴도 결과 발표 시 기관 등급과 함께 청렴도 점수가 발표되어 순위 위주의 보도 양산, 기관 간 지나친 경쟁유발로 인한 우수사례 공유 저해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2018년도 측정결과부터는 청렴도 등급만 발표하고 있음.
- 2019년도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은 10점 만점에 평균 8.19점으로 전년대비 평균 0.07점 상승하였고, 공공의료기관은 10점 만점에 7.41점으로 전년 대비 0.10점 하락하였으며, 국공립대학의 경우 10점 만점에 7.69점으로 전년대비 0.15점 상승함.
 - 「공운법」상 공공기관의 대부분이 속한 공직유관단체 유형의 종합청렴도는 8.46점으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공직유관단체의 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는 전년대비 다소 하락한 모습임.
 -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모든 영역별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함.²⁴¹⁾
 -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는 2015년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2019년도 공공기관,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종합하여,

239)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2019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2019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및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지경」 보도 자료, 2020. 1. 29. 참고

240) 공직유관단체 I 유형(3천명 이상), II 유형(1천명 이상~3천명 미만), III 유형(4백명 이상~1천명 미만), IV 유형(2백명 이상~4백명 미만), V 유형(2백명 미만)

241) 2019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결과 발표 시, 유형별 등급 산정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8년도 등급을 2019년도 방식으로 재산정하여 발표함. 이에 따라 201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시 등급과 2019년도에 발표된 2018년도 등급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 중 「공운법」상 공공기관을 선별하여 분석한 결과, 3등급을 받은 기관이 79개로 가장 많았음.²⁴²⁾

- 2019년도에 「공운법」상 공공기관 중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기관은 8개 기관으로, 2018년도 결과 대비 4개 기관이 증가함.
- 전년대비 3등급 및 4등급 기관도 증가하였으며, 5등급 기관은 13개가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종합청렴도 수준이 개선됨.

〈표 III-96〉 2018년도 및 2019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비교

(단위: 개)

구 분	「공운법」 상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 공공기관	등급 분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19년도	340	187	8	49	79	41	10
2018년도	339	189	4	50	73	39	23
증 감	+ 1	▲ 2	+ 4	▲ 1	+ 6	+ 2	▲ 13

주: 2018년도 수검기관 중 2019년도 청렴도 측정 제외 기관은 한국감정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2019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2019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및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0. 1. 29.를 참고하여 작성

□ 청렴도 측정 유형별로 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 I~V 유형과 연구원 유형 및 공공의료기관에서는 등급별로 기관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을 수검하는 4개 기관²⁴³⁾은 모두 4~5등급에 머물러 있어 상대적으로 청렴도 개선이 필요함.

-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기관 정원을 기준으로 I~V 유형으로 구분하고²⁴⁴⁾, 그 외에 연구원유형을 따로 구분하여 유형 내 등급을 산정하고 있음.
 - 공직유관단체 I 유형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5등급을 받은 기관은 대한적십자사임.

242) 종합청렴도 등급 판정은 측정 대상기관 유형별로 다른 등급구간을 적용하는데, 종합청렴도 등급구간은 유형별로 유형내 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설정함(1등급이 최상위 등급이고, 5등급이 최하위 등급임)

243)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244) 공직유관단체 I 유형(3천명 이상), II 유형(1천명 이상~3천명 미만), III 유형(4백명 이상~1천명 미만), IV 유형(2백명 이상~4백명 미만), V 유형(2백명 미만)

- 공직유관단체 II 유형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중부발전(주)이며, 5등급을 받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한국환경공단임.
- 공직유관단체 III 유형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이며, 동 유형에서 5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임.
- 공직유관단체 IV 유형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으며, 5등급은 대한체육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임.
- 공직유관단체 V 유형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여수광양항만공사이며, 5등급 기관은 없음.
- 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유형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전기연구원이며, 5등급 기관은 없음.
-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국립·대학병원 등과 국립·지방의료원으로 유형이 나뉘는데 대학병원 중 1등급을 받은 기관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과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며, 전남대학교병원은 5등급을 받음.
- 국립의료원에 해당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은 4등급을 받음.
-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의 경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4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세 개 기관²⁴⁵⁾은 5등급을 받음.

〈표 III-97〉 2019년도 청렴도 측정 유형별 종합청렴도 등급 현황

구분	기관명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공직유관 단체)	I (1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2등급)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전KPS(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산업은행 (3등급)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철도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중소기업은행 (4등급) (주)강원랜드,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5등급) 대한적십자사
	II (1등급) 한국중부발전(주) (2등급)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출입은행

245)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구분	기관명
공공 기관 청렴도 측정 (공직유관 단체)	II (3등급)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DN(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4등급)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립공원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5등급) 대한석탄공사, 한국환경공단
	III (1등급)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2등급)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3등급) 해양환경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립생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등급) 예금보험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5등급) 한국콘텐츠진흥원
	IV (2등급) 국제방송교류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재정정보원,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3등급)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노사발전재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투자공사, 환경보전협회 (4등급)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등급) 대한체육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V (1등급) 여수광양항만공사 (2등급) 울산항만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등급)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영화진흥위원회

구분		기관명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공직유관 단체)	V	(4등급)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부법무공단, 한국벤처투자
	연구원	(1등급) 한국전기연구원 (2등급)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등급)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화학연구원 (4등급)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한의학연구원
공공 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국립 대학병원 등	(1등급)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2등급)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3등급) 경상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4등급)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5등급) 전남대학교병원
	국립·지방 의료원	(4등급) 국립중앙의료원
국공립 대학 청렴도 측정	국공립 대학	(4등급)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등급)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2019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및 「2019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참고

□ 「공운법」상 공공기관 유형에 따라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공기업의 청렴도 수준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공기업의 경우,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1등급을 받았으며, 전체 측정 대상 공기업의 82.4%가 3등급 이상을 받아 청렴도 수준이 다른 유형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준정부기관의 경우, 3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이 76.5%에 해당하며, 1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년 연속 1등급을 받음.

-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3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이 63.9%를 차지하며 다른 유형에 비해 전반적으로 등급이 낮은 것으로 보이나, 2018년도의 54.7%에 대비하면 개선된 모습임.
 - 2018년도에는 1등급 기관이 없던 것에 비해 2019년도 측정에서는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3개 기관이 1등급을 받아 일부 개선이 확인됨.
- 최하위 등급(5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기업 1개, 준정부기관 2개, 기타공공기관 3개 등 총 6개 기관이었으며, 모든 유형에서 5등급을 받은 기관 수가 전년대비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청렴도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공기업 중 5등급 기관은 전년대비 2등급 하락한 대한석탄공사가 유일함.
 - 2018년도에 5등급을 받았던 (주)강원랜드, 부산항만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는 2019년도 측정에서 등급이 상승하여 각각 4등급, 3등급, 3등급을 받음.
 - 준정부기관 중 5등급 기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환경공단임.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유형이 공직유관단체 IV에서 공직유관단체 III으로 유형이 변경되었고 청렴도 등급이 2단계 하락함.
 - 한국환경공단은 2018년도에 이어 연속으로 5등급을 받음.
 - 기타공공기관은 광주과학기술원,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울산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병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7개 기관이 5등급을 받음.
 - 광주과학기술원, 대한체육회, 울산과학기술원은 3년 연속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함.
 - 특히, 대한체육회와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2010년도 이후 주로 4~5등급 수준에 머물러 있어, 기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 Ⅲ-98〉 2019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및 전년대비 등급 개선수준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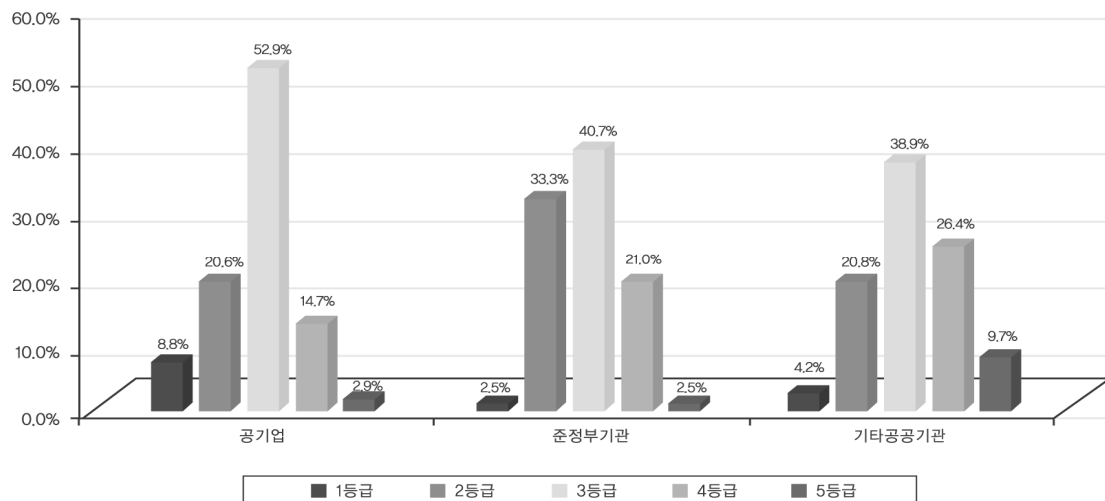
구 분			종합청렴도 등급						전년대비 등급 개선수준				
			측정 대상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분석 대상	상승 (▲)	유지 (-)	하락 (▼)	
공 기 업	시 장 형	(16)	16	2	4	8	2	0	16	9	5	2	
	준시장형	(20)	18	1	3	10	3	1	18	8	4	6	
	소 계	(36)	34	3	7	18	5	1	34	17	9	8	
준 정 부 기 관	기금관리	(13)	12	1	5	5	1	0	12	5	5	2	
	위탁집행	(82)	69	1	22	28	16	2	69	20	29	20	
	소 계	(95)	81	2	27	33	17	2	81	25	34	22	
기타공공기관			(209)	72	3	15	28	19	72	25	25	22	
전 체			(340)	187 (100%)	8 (4%)	49 (26%)	79 (42%)	41 (21%)	10 (5%)	187 (100%)	67 (36%)	68 (36%)	52 (28%)

주: 1. 공공기관이 수집한 청렴도 측정 종류(공공기관,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 등)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별조사에서 측정된 청렴도 등급을 기준으로 작성

2. 2020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8년도 및 2019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을 모두 수집하고 점수결과를 공개한 18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2019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2019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및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0. 1. 29.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49〉 2019년도 공공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2019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2019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및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0. 1. 29.를 참고하여 작성

□ 유형별로 등급 상승 폭이 큰 기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기업 중 부산항만공사(5→3등급), (주)한국가스기술공사(5→3등급), 여수광양항만공사(3→1등급), 주택도시보증공사(4→2등급)의 종합청렴도 등급이 전년대비 2단계 상승함.
- 준정부기관 중 신용보증기금,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전력거래소가 각각 4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5등급에서 3등급으로 2단계 상승함.
- 기타공공기관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018년도에 5등급을 받았으나 2019년도에는 3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아 상당한 개선성과를 보임.
 - 중소기업은행,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도 각각 5등급에서 3등급으로 2단계 상승함.

□ 전년대비 2단계 등급이 하락한 기관은 공기업 3개 기관, 준정부기관 5개 기관, 기타공공기관 3개 기관 등 11개 기관임.

- 공기업 중 대한석탄공사(3→5등급), 한국도로공사(2→4등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1→3등급)의 종합청렴도가 2단계 하락함.
- 준정부기관 중 예금보험공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3등급에서 5등급으로 2단계 하락함.
- 기타공공기관 중 국방과학연구소, 정부법무공단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대한적십자사는 3등급에서 5등급으로 2단계 하락함.

〈표 III-99〉 2019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등급 현황

구분	기관명
1등급 (8개)	(공기업)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여수광양항만공사 (준정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타공공기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한국전기연구원
2등급 (49개)	(공기업)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울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전KPS(주) (준정부기관) 국가철도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타공공기관)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등급 (79개)	(공기업)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전KDN(주), 해양환경공단 (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생태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 경상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국방기술품질원, 기초과학연구원, 노사발전재단, 영화진흥위원회,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중소기업은행, 충남대학교병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투자공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화학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환경보건협회

구분	기관명
4등급 (41개)	(공기업) (주)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정부기관) 예금보험공사, 국립공원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도로교통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기타공공기관)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방과학연구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정부법무공단,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벤처투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한의학연구원
5등급 (10개)	(공기업) 대한석탄공사 (준정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환경공단 (기타공공기관) 광주과학기술원,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울산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병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주: 공공기관이 수집한 청렴도 측정 종류(공공기관,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 등)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별조사에서 측정된 청렴도 등급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2019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2019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및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0. 1. 29.를 참고하여 작성

☐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를 부처별로 등급 분포와 등급 개선 수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III- 100>, <표 III- 101>과 같음.

<표 III-100>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의 2019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및 전년대비 개선 수준

(단위: 개)

구 분	종합청렴도 등급						전년대비 등급 개선수준			
	소계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분석 대상	상승 (▲)	유지 (-)	하락 (▼)
기획재정부	4	0	2	2	0	0	4	1	1	2
교육부	18	2	2	5	8	1	18	5	7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4	1	11	11	8	3	34	10	15	9
외교부	1	0	0	0	1	0	1	0	0	1
행정안전부	1	0	0	1	0	0	1	0	0	1
문화체육관광부	8	0	1	3	2	2	8	1	4	3

구 분	종합청렴도 등급						전년대비 등급 개선수준			
	소계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분석 대상	상승 (▲)	유지 (-)	하락 (▼)
농림축산식품부	6	0	2	3	1	0	6	2	2	2
산업통상자원부	34	3	11	16	3	1	34	15	12	7
보건복지부	12	1	2	5	3	1	12	5	3	4
환경부	7	0	1	3	2	1	7	3	3	1
고용노동부	6	0	1	4	1	0	6	4	0	2
여성가족부	2	0	0	2	0	0	2	0	2	0
국토교통부	13	0	6	5	2	0	13	5	7	1
해양수산부	10	1	2	5	2	0	10	7	0	3
중소벤처기업부	5	0	2	1	2	0	5	2	2	1
국무조정실	3	0	0	2	1	0	3	1	1	1
방송통신위원회	1	0	0	1	0	0	1	0	0	1
원자력안전위원회	1	0	0	1	0	0	1	0	1	0
금융위원회	7	0	3	3	1	0	7	3	2	2
공정거래위원회	1	0	0	0	1	0	1	0	1	0
국가보훈처	1	0	0	1	0	0	1	0	0	1
인사혁신처	1	0	0	1	0	0	1	0	1	0
경찰청	1	0	0	0	1	0	1	0	0	1
식품의약품안전처	1	0	0	1	0	0	1	0	1	0
소방청	1	0	1	0	0	0	1	1	0	0
방위사업청	2	0	0	1	1	0	2	0	1	1
농촌진흥청	1	0	1	0	0	0	1	1	0	0
기상청	1	0	1	0	0	0	1	1	0	0
산림청	1	0	0	1	0	0	1	0	1	0
법무부	2	0	0	0	1	1	2	0	0	2
특허청	1	0	0	1	0	0	1	0	1	0
전 체	187	8	49	79	41	10	187	67	68	52

주: 1. 공공기관이 수검한 청렴도 측정 종류(공공기관,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 등)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별조사에서 측정된 청렴도 등급을 기재

2. 정부 부처 중 청렴도 측정 수검기관이 없는 부처는 제외하고 작성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2019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및 「2019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를 참고하여 작성

〈표 III-101〉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의 2019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현황

주무부처	기관명
기획재정부 (4개)	(2등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3등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18개)	(1등급)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2등급)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3등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경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4등급)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장학재단 (5등급) 전남대학교병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4개)	(1등급) 한국전기연구원 (2등급)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등급)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4등급)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한의학연구원 (5등급)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외교부 (1개)	(4등급) 한국국제협력단
행정안전부 (1개)	(3등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화체육관광부 (8개)	(2등급) 국제방송교류재단 (3등급)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4등급)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등급) 대한체육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주무부처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6개)	(2등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3등급) 한국마사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4등급)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34개)	(1등급)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무역보험공사 (2등급)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전KPS(주),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거래소 (3등급)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4등급) (주)강원랜드,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지역난방공사 (5등급) 대한석탄공사
보건복지부 (12개)	(1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2등급) 국민연금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4등급)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등급) 대한적십자사
환경부 (7개)	(2등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등급) 국립생태원, 환경보전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등급) 국립공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 (5등급) 한국환경공단
고용노동부 (6개)	(2등급) 근로복지공단 (3등급)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여성가족부 (2개)	(3등급)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주무부처	기관명
국토교통부 (13개)	(2등급)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3등급)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공항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4등급)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수산부 (10개)	(1등급) 여수광양항만공사 (2등급) 울산항만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3등급)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등급)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수산자원공단
중소벤처기업부 (5개)	(2등급)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유통센터 (3등급) 중소기업진흥공단 (4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국무조정실 (3개)	(3등급)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등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방송통신위원회 (1개)	(3등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원자력안전위원회 (1개)	(3등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금융위원회 (7개)	(2등급)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 (3등급)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4등급) 예금보험공사
공정거래위원회 (1개)	(4등급) 한국소비자원
국가보훈처 (1개)	(3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사혁신처 (1개)	(3등급) 공무원연금공단
경찰청 (1개)	(4등급) 도로교통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1개)	(3등급)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소방청 (1개)	(2등급)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주무부처	기관명
방위사업청 (2개)	(3등급) 국방기술품질원 (4등급) 국방과학연구소
농촌진흥청 (1개)	(2등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상청 (1개)	(2등급)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산림청 (1개)	(3등급)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법무부 (2개)	(4등급) 정부법무공단 (5등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특허청 (1개)	(3등급)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 1. 공공기관이 수검한 청렴도 측정 종류(공공기관,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 등)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별조사에서 측정된 청렴도 등급을 기재
 2. 정부 부처 중 청렴도 측정 대상이 없는 부처는 제외
 3. () 안은 부처별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 중 등급을 공개한 기관수를 의미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2019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2019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를 참고하여 작성

라.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²⁴⁶⁾

1) 통합공시제도 개요

☐ 「공운법」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과 그 부설기관은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시해야 함.

○ 2020년 9월 현재 경영공시 의무대상인 340개 공공기관과 23개 부설기관은 최근 5년간 경영정보를 알리오시스템에 공시 중임.

☐ 정부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이하 「통합공시기준」)」 제4조와 <별표1>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에게 5개 대항목 하위에 총 42개 항목에 대한 경영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246)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개선방안(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0. 2. 26. 및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 2020. 3., 「2019년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0. 3. 31., 「2019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0. 3. 31. 등을 참고

- <표 III-102>와 같이 통합공시기준 <별표1>에 명시된 공시대상 항목과 항목별 공시기준은 「공운법」 제11조 제1항 1호에서 16호에 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 통합공시 항목 42개 중 3개 항목은 기획재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음.²⁴⁷⁾
- 기획재정부는 통합공시기준 <별표2>의 공시위반 수준에 따른 별점 부과를 위해 공시항목을 공시주기(정기공시-수시공시)와 항목의 중요도(중요항목-기타항목)를 반영하여 구분하고 있음.
 - 통합공시 매뉴얼에서 통합공시 항목별(42개)로 하위단위를 세항목과 세세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중요도를 고려하여 각각 주요항목과 기타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음.
 - 5개 대항목에 대한 항목 체계와 공시주기 현황은 <표 III-103>과 같음.

<표 III-102> 공공기관 통합공시항목과 관련 「공운법」 조항(2020. 9월 기준)

구 분		관련 「공운법」 조항 (제11조 제1항 각 호)
대항목	공시항목명	
I.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제1호
II. 기관운영	2. 임직원 수	제3호
	3. 임원현황	제3호
	4. 신규채용 현황 및 유연근무 현황	제3호, 제16호
	5. 임원연봉	제3호, 제4호
	6. 직원 평균보수	제4호
	7. 기관장 업무추진비	제16호
	8. 복리후생비	제4호
	9. 그 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제4호, 제16호
	10. 임원 국외출장 내역	제16호
	11. 노동조합 관련현황	제16호
	12. 내부규정	제9호
	13. 징계현황	제13호
	14.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제14호
	15.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운영 현황	제16호

247) 기획재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3개 항목은 경영실적 평가결과,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임

구 분		관련 「공운법」 조항 (제11조 제1항 각 호)
대항목	공시항목명	
III.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16. 요약 재무상태표	제2호
	17. 요약 손익계산서 (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제2호
	18. 수입·지출현황	제1호, 제2호, 제4호
	19. 주요사업	제16호
	20. 투자집행내역	제16호
	21. 자본금 및 주주현황	제2호
	22. 장단기 차입금현황	제2호
	23. 투자 및 출자현황	제5호
	24. 연간 출연 및 증여	제16호
	25. 경영부담 비용추계	제16호
	26.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15호
	27. 12개 주요기관의 상세부채정보	제16호
	28. 납세정보 현황	제16호
	29. 감사보고서	제2호
IV. 대내외평가	30. 국회 지적사항	제12호
	31.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제12호, 제11호
	32. 경영실적 평가결과	제8호
	33. 경영평가 지적사항	제8호
	3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제6호
	35.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	제7호
	36. 이사회 회의록, 내부 감사결과	제9호, 제10호
V. 공지사항	37. 경영혁신사례	제16호
	38. 임직원 채용정보	제16호
	39. 계약정보(기관별 용역 등 수의계약 정보)	제16호
	40. 연구보고서	제16호
	41. 안전관리 현황	제16호
	42. 기타정보공개	제16호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개선방안(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2. 26. 및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 2020. 3.을 참고하여 작성

〈표 III-103〉 공공기관 통합공시항목 구분(2020. 9월 기준)

(단위: 개)

구 분	항목별 하위 단위수준			공시주기(90개 세항목 기준)		
	항목	세항목	세세항목	정기공시		수시공시
				주요항목	기타항목	
	42	92	123	29	36	25
I. 일반현황	1	1	1	-	1	-
II. 기관운영	14	43	69	18	17	8
III.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14	30	34	11	13	5
IV. 대내외평가	7	9	9	-	4	5
V. 공지사향(정보센터)	6	9	10	-	1	7

주: 공시주기는 92개 세항목 중 세세항목의 공시주기가 상이한 2개 세항목을 제외한 90개 세항목을 대상으로 구분
 - '23.투자 및 출자현황' - '퇴직임직원 채용현황'의 세항목 중 퇴직임원 채용현황은 수시공시에 해당하고 퇴직
 직원 채용현황은 정기공시(주요항목)에 해당
 - '41.안전관리 현황' - '사고현황'의 세항목 중 산업재해는 수시공시에 해당하고 안전사고는 정기공시(주요항목)에
 해당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개선방안(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2.26. 및 「공공기관 통합공
 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 2020.3.을 참고하여 작성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관련 정책 현안과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공운법」 제11조 및 통합공시기준을 개정하고 공시항목과 항목별 공시 기준을 정비해 왔으며 최근 5년간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6년에는 「공운법」 제11조 제1항을 개정하여(2016. 9. 23. 시행) 징계현황,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임원 성별 현황,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 수당의 항목별 공시, 지침·예규 등 내부규정 항목을 추가함.²⁴⁸⁾
- 2017년 2월에는 통합공시기준을 개정하여 일·가정 양립 관련 항목을 신설하고 이에 관련된 세부공시기준 5개²⁴⁹⁾를 추가하여 2017년도 정기공시부터 반영함.²⁵⁰⁾
- 2018년 2월에는 아래 사항에 대해 통합공시기준을 개정함.²⁵¹⁾
 - 성별 임금현황, 조세포탈현황(유죄판결 확정내역), 채용단계별 상세정보에 대한 세부공시기준을 추가함.

248)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보도자료, 2016. 9. 22.

249) 유연근무제 성별 실시 인원수, 육아휴직 제도현황 및 성별 사용자수, 출산휴가 제도현황 및 성별 사용자수, 유산·사산휴가 제도현황 및 사용자수,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무제 운영현황

250)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인력운영방안 확정 및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 보도자료, 2017. 2. 9.

251)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8. 2. 22.

- 공공기관의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장·단기 차입금 현황 갱신주기를 현행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함.
-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요약대차대조표 (또는 요약재무상태표)' 항목 명칭을 '요약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2018년 3월에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정에 따라 통합공시기준을 개정함.²⁵²⁾
 -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정한 항목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시하되, 공개하지 않는 사항은 회의록의 일부 등으로 최소화하도록 함.
 - 공시항목별로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도록 함.
 - 대항목인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VI)'을 삭제하고 하위 2개 항목을 정비하는 등 통합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을 개정함.
- 2018년 8월에는 「공운법 개정 시행(2018. 9. 27. 시행)²⁵³⁾에 앞서 통합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을 정비하기 위하여 통합공시기준을 개정함.²⁵⁴⁾
 - 투자 및 출자현황 항목에 공시하던 출자회사 정보 중 퇴직 임원에 한해 공시 하던 채용정보를 인사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퇴직 임·직원으로 확대하여 공시하도록 함.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항목을 신설하여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중 기관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공시하도록 함.
- 2019년 3월에는 「공운법」 개정(2018. 12. 31 개정, 2019. 7. 1 시행) 및 「공공기관 안전강화종합대책」에 따라 안전 분야 공시 확대 등을 위해 관련 공시항목의 세부 공시기준을 정비함.²⁵⁵⁾
 - 「공운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기존 공시내용인 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과 함께 추가적으로 임원의 성별 임금현황도 공시하기로 함.

252)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18. 3. 8.

253) 「공운법」 개정사항(2018. 3. 27. 일부 개정) 중 통합공시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항목에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이 자회사 등에 취업한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함 (제11조 제1항 제5호)

- 경영공시사항에 공공기관이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추가하여 일반국민이 해당 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 정도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제1항 제15호 신설)

254)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18. 8. 24.

255)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19. 3. 28.

- 공공기관의 자발적 안전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 분야 공시 항목(사망자 수 및 재해통계,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신설함.
- 이 외에 공공기관의 공시부담 경감과 공시주기 현실화를 위해 퇴직직원 취업현황 항목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항목의 공시주기를 수사에서 정기²⁵⁶⁾로 변경함.
- 2020년 2월에는 통합공시기준 제12조(정의), 제14조(불성실공시 사후조치 등) 및 <별표2> 불성실공시에 대한 별점기준을 개정하여 공시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기관의 공시담당자 개인에 대한 페널티를 완화함.²⁵⁷⁾
 - 불성실공시 유형을 세분화하여 위반 수준에 따른 별점 차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통합공시기준 제12조를 개정하여 기존에 포괄적으로 정의되었던 ‘허위공시’는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단순 과실(경과실)에 의한 수정은 ‘공시 오류’로 별도로 구분하기로 함.
 - 그리고 세분화된 불성실공시 유형에 따라 <별표2>의 불성실공시에 대한 별점 기준도 정비하여 기존의 단순했던 허위공시 별점체계(4단계)를 허위공시와 공시오류로 구분하여 각각 2단계의 별점체계로 개편함.
 - 기관 공시담당자 개인에 대한 페널티 완화를 위해 통합공시기준 제14조 개정을 통해 종전의 불성실공시기관²⁵⁸⁾ 전체에 요구하던 기관 담당자 인사조치를 연간 별점 중 고의·중과실에 의한 별점이 50% 초과하는 불성실공시 기관에만 요구하기로 기준을 완화함.
 - 이 외에 공시 정보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1인당 복리후생비 공시 기준을 일원화²⁵⁹⁾하고 경영평가 조치결과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²⁶⁰⁾ 공시시기를 종전 차년도 1분기 정기공시에서 당해 연도 4분기 정기공시로 변경함.
 - 또한 2017년부터 기금계정의 공시기준이 국가회계기준으로 완전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재정상태표 기준의 작성을 폐지하고 요약재정상태표로 작성 기준을 일원화함.

256) 퇴직직원 취업현황 항목은 연 4회 분기별로 정기공시하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항목은 연 1회 10월에 정기공시하기로 함

257)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개선방안(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0. 2. 26.

258) 연간 별점 40점 초과 기관

259)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1인당 복리후생비 산출(1인당 복리후생비=복리후생비/상시근로자수)

260) 알리오시스템 ‘33.경영평가 지적사항’ 항목에 당해 연도 실시한 경영평가의 지적사항을 3분기에 공시하고, 이에 후속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공시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공시정보의 품질 관리를 위해 통합 공시기준 제10조(공시정보의 확인·검증)에 따라 통합공시점검을 실시하여 공시정보 및 첨부자료의 정확성, 충분성, 적시성 등을 확인 및 검증하고 있음.
- 2006년 알리오시스템 구축과 2007년 최초 통합공시 이후 공시항목이 꾸준히 증가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공시정보의 품질 관리가 중요해짐.
 - 이에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에 대한 검증 및 점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공시 품질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을 꾸준히 추진함.
 - 2013년 추진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부채, 복리후생 관련 공시정보가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성실히 공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2014년 초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초 실시됨.
 - 2015년에는 불성실공시에 대한 사후조치 기준을 개선하여 불성실공시를 공시 불이행, 허위공시, 공시변경으로 유형화하고 공시유형별로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을 달리 부과하도록 벌점체계를 전면 개편함.
 - 2016년에는 종전의 처벌위주 점검 체계를 개선하고자 통합공시기준에 우수 공시기관 선정근거를 명문화하고 우수공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시작함.²⁶¹⁾
 - 2018년에는 우수공시기관의 선정기준²⁶²⁾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신규 공공기관 공시담당자 교육 실시, 정부-공공기관 공시담당자 간 Q&A코너 개설, 공시 미흡기관 현장 컨설팅 실시 등 공시품질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함.
 - 2019년에는 종전까지 연 1회 실시하던 공시점검을 연 2회로 확대하여 공시 오류의 신속한 수정을 위해 노력함.
 - 2020년에는 공시점검에 따른 기관 공시담당자 인사조치가 과도하여 담당자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담당자 개인에 대한 인사조치 요건을 강화하고 불성실공시 유형을 세분화하여 위반수준에 따른 벌점 체계를 정비함.
 - 그리고 2020년부터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공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공공기관과 신규 지정 공공기관²⁶³⁾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 매뉴얼 교육, 멘토 지정 등 공시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함.²⁶⁴⁾

261) 2015년에는 우수공시기관에 대한 명문화된 근거 규정은 없었으나, 우수공시기관은 선정하여 발표하였음

262) ('16년) 무벌점기관 → ('17년) 무벌점기관이면서 최근 3년간('15~'17년) 벌점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기관

263) 2020년 상반기 통합공시 점검('20. 3. 31.) 결과에 따라 총 25개 공공기관이 선정됨

- 통합공시기준 제13조(불성실공시 별점부과)에 따라 공공기관이 불성실공시를 하는 경우 항목의 중요도 및 과실 정도에 따라 별점을 달리 부과함.
- 2020년 2월 통합공시기준 개정에 따라 불성실공시는 미공시(고의·중과실/경과실), 허위공시, 공시오류, 지연공시, 공시변경 등 5개 유형으로 분류됨.
- ‘허위공시’는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를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하여 외부에 적발된 경우로 한정하고 단순과실에 의한 수정은 ‘공시오류’로 분류하여 별점을 부과하도록 유형을 세분화함.
 - 위반 수준은 중과실과 경과실로 구분되는데, 중과실은 공시 오류로 인해 해당 항목의 의미상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이며, 경과실은 공시항목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기재 오류를 의미함.
 - 수치 입력의 오류, 특별한 사유가 없는 미공시 등은 중과실에 해당하며 단순한 계산의 실수, 첨부파일 오류나 매뉴얼이 모호한 경우 해석상 오류 등은 경과실 사례로 볼 수 있음.

〈표 III-104〉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별점 부과 체계

구분		정기공시				수시공시	
		주요항목		기타항목			
		고의· 중과실	경과실	고의· 중과실	경과실	고의· 중과실	경과실
불성실공시 유형	미공시	5점	3점	3점	1.5점	3점	3점
	지연공시	-				1~2.5점	
	허위공시	5점	-	3점	-	3점	-
	공시오류	-	3점	-	1.5점	-	1.5점
	공시변경	0.5점				0.1점	

주: 지연공시는 수시공시 항목에만 적용되며 공시시한 위반수준(위반일)에 따라 별점을 차등 적용함
(1주일 이내 1점, 1주일 초과~1개월 이내 1.5점, 1개월 초과~6개월 이내 2점, 6개월 초과 2.5점)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개선방안(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2. 26.

- 통합공시기준 제14조(불성실공시 사후조치 등)에 따라 점검결과 별점이 부과된 기관에 대해서는 별점 정도에 따라 정기공시 후 1년 이내에 사후조치로 ‘기관주의’ 조치,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 및 관련자 인사조치 등을 실시함.

- 연간 누적별점이 20점을 초과한 기관의 경우 ‘기관주의’ 조치의 대상이 되며, 연간 누적별점이 40점을 초과한 기관이거나 2년 연속 별점 20점을 초과하고 전년대비 별점이 증가한 기관은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됨.
-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기관과 ‘불성실공시기관’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불성실공시 예방교육을 받아야 함.
- ‘불성실공시기관’은 알리오시스템에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내역이 3개월간 게시되며 전체 별점 중 담당자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별점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담당자 인사조치를 요구받게 됨.

〈표 III-105〉 통합공시 점검 별점에 따른 사후조치

구분	기관주의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기준	· 연간 20점 초과	· 연간 40점 초과 · 2년 연속 연간 별점 20점 초과하고 전년대비 증가
조치 내역	· 개선 계획서 제출 및 불성실공시 예방 교육	· 개선계획서 제출 및 불성실공시 예방 교육 · 알리오에 지정 내역 게시(3개월) · 고의·중과실 별점이 50%이상 시 관련자 인사조치 요구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3. 31.

- 이 외에도 사후조치로 무별점기관은 우수기관으로 알리오시스템에 게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에 점검결과를 반영함.
- 해당연도 무별점기관 중 최근 3년 동안 별점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기관은 우수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 알리오시스템에 해당 기관 명단을 공개함.
 - 3년 연속 무별점기관의 경우 차기 점검 1회에 한해 점검 대상에서 제외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통합공시 점검결과를 경영평가 계량지표에 반영(가중치 1점)하여 평가함.
 - 2020년부터 공시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평가 점수에서 공시오류의 경중에 따라 점검결과 반영점수 구간을 세분화²⁶⁵⁾해 경영평가의 변별력을 강화함.
 -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에 점검결과를 통보하여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권고함.

265) 최저 0.5점, 최고 1.0점

2) 2019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 기획재정부는 2019년 공공기관 중 331개 기관²⁶⁶⁾을 대상으로 2019년도 통합공시 점검을 실시함.

- 노무법인과 회계법인이 공동으로 점검을 실시해 항목별 위반 정도에 따라 별점을 부과함.
- 공공기관의 공시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상·하반기 2회에 나누어 점검을 실시함.
 - 2018년도 점검에 이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신규 채용과 임직원 채용정보는 상·하반기 모두 점검함.
- 2019년 기준 42개의 통합공시항목 중 기관운영·재무 관련 18개 항목²⁶⁷⁾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함.
 - 2019년 상반기 기관운영 관련 점검항목은 4개로 2018년에 비해 직원평균보수 항목이 추가되었고 휴가·휴직제도, 기관장업무추진비, 징계현황, 계약정보 항목은 제외됨.
 - 2019년 하반기 기관운영 관련 점검항목은 5개로 전년대비 임직원 수, 그 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운영현황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노동조합 관련 현황, 소송 및 법률자문 항목은 제외됨.
 - 2019년 상반기 재무 관련 점검항목은 5개로 2018년에 비해 연간 출연 및 증여,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항목이 추가됨.
 - 2019년 하반기 재무 관련 점검항목은 4개로 전년대비 장단기차입금 현황,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항목이 추가되고 투자 및 출자현황, 자본금 및 주주현황은 제외됨.

266) 2019년도 지정된 339개 기관 중 2018년도 점검 시 3년 연속 무벌점기관(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에너지공단 등 7개 기관)과 기관이 청산된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 점검대상에서 제외

267) 통합공시 점검항목은 공공기관 관리 정책과 국민적 관심 측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선정함

〈표 Ⅲ-106〉 2019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항목

구분	기관운영 항목	재무 항목
상반기 점검항목	직원평균보수, 복리후생비, 신규채용 및 유연근무 현황, 임·직원 채용정보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연간 출연 및 증여,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하반기 점검항목	임직원수, 신규채용 및 유연근무 현황, 그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운영현황, 임·직원 채용정보	수입·지출현황, 장단기차입금 현황, 납세정보 현황,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주: 밑줄 친 항목은 정기공시항목 중 주요항목에 해당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0. 3. 31.

- 통합공시점검이 최초로 이루어진 2013년도 점검부터 2019년도 점검까지 별점 현황과 점검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Ⅲ-107>과 같음.
- 2019년도 점검결과 평균별점과 사후조치 대상기관이 2018년도 점검결과에 비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 2013년도 통합공시점검이 처음 실시된 이래 2017년도 점검까지는 평균별점과 사후조치대상 기관의 수가 꾸준히 감소했으나 2018년도 점검에서는 공시점검 2회 실시, 점검 대상항목 확대²⁶⁸⁾ 및 채용정보 중점 점검으로 인해 별점 수준이 다소 증가함.
 - 2019년도 점검에서는 평균별점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기타공공기관에서의 개선이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2018년도 11.4점이던 평균별점이 2019년도에는 9.1점으로 크게 감소함.
 - 2019년도 점검에서는 기관주의 및 불성실공시 등 사후조치 대상기관도 27개 기관에서 20개 기관으로 전년대비 7개 기관이 감소하여 2017년도 점검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됨.
 - 반면 우수공시기관 수는 2018년도 점검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다 2019년도 점검에서는 2017년도 수준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임.
 - 점검항목별 결과를 살펴보면, 임직원 수, 신규채용 및 복리후생 등 기관운영 항목의 지적건수가 수입·지출, 법인세 등 재무 항목보다 많은 편임.

268) (2017) 14개 항목 점검 → (2018) 18개 항목 점검

- 기관운영 항목에서 지적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은 재무항목에 비해 하위 공시내용이 세분화되어 있고, 수시공시 항목(채용정보 등)이 다수 포함된 데에 기인함.
- 기관운영 항목 대상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공시품질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규 채용, 임·직원 채용정보 등 주요항목에 대한 주기적인 재점검하는데 따른 학습효과와 공공기관의 공시 노하우 축적에 기인함.
- 재무 항목 대상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공시품질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나 주요항목인 재무상태표과 손익계산서 항목은 매년 점검을 통해 지적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2019년도에 점검대상으로 신규 편입된 항목 중 임직원수 항목은 별도정원과 비정규직 현황의 잦은 변동으로 지적건수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항목은 최초 점검이 이루어진 항목이기 때문에 지적건수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표 III-107〉 공공기관 통합공시 별점 현황(2014~2019년)

(단위: 개, 점)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소계	공기업	준정부	기타
점검 대상	296	311	319	329	335	331	34	88	209
평균 별점	21.3	10.8	9.5	7.4	8.5	7.7	2.6	6.4	9.1
우수공시기관	3	16	18	22	35	22	8	7	7
사후조치대상	151 (50.2%)	43 (13.8%)	26 (8.1%)	20 (6.0%)	27 (8.0%)	20 (6.0%)	-	2	18
기관주의	129	35	23	17	20	16	-	2	14
불성실공시기관	22	8	3	3	7	4	-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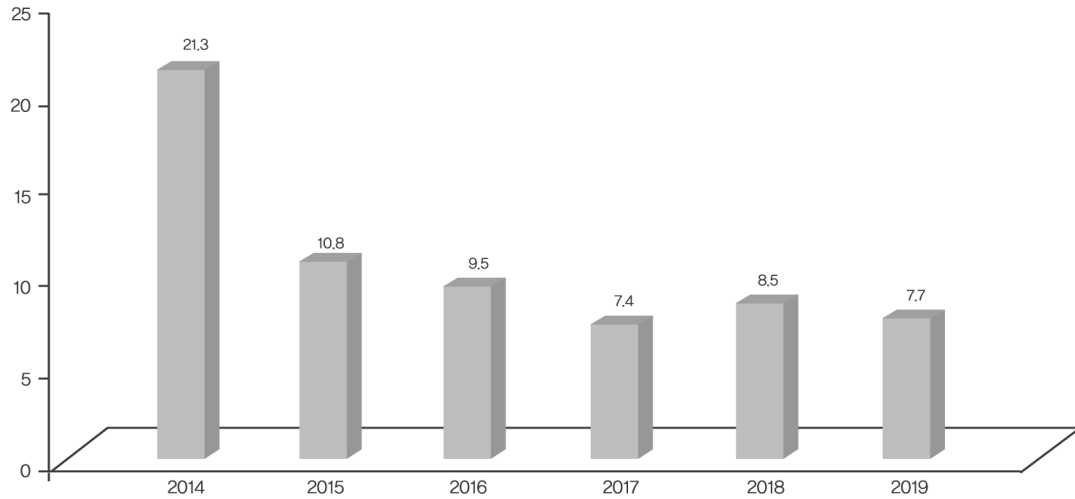
주: 1. 2014년도 기관주의 및 불성실공시기관의 수는 2014년 당시 별점기준으로 지정된 사후조치 대상기관이 아닌 2015년도에 개정된 별점 기준을 적용한 결과임

2. 공공기관 유형은 해당연도 공공기관 지정결과를 기준으로 구분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8. 3. 21 및 「2019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3. 31.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50〉 공공기관 통합공시 평균 벌점(2014~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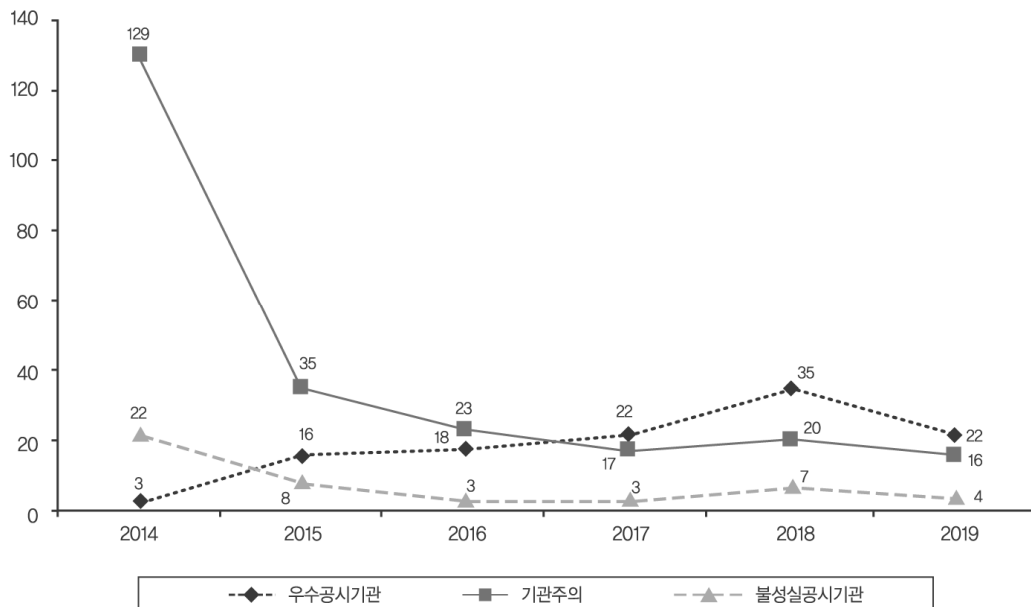
(단위: 점)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8. 3. 21 및 「2019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3. 31.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51〉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2014~2019년)

(단위: 개)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8. 3. 21 및 「2019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3. 31.를 참고하여 작성

- 2019년도 통합공시점검에서는 총 22개 기관이 우수공시기관²⁶⁹⁾으로 선정됨.
- 우수공시기관은 알리오시스템에 기관 명단을 게시하고 있음.
 - 우수공시기관 중 최근 3년(2017~2019년) 연속으로 무벌점을 달성한 기관은 2020년도 통합공시점검을 면제하고 무벌점기관으로 간주됨.
 -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9개 기관이 이에 해당함.
- 2019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불성실공시기관 및 기관주의 등 사후조치 대상기관은 총 20개 기관임.
- 불성실공시기관²⁷⁰⁾은 4개 기관으로 전년대비 3개 기관이 감소함.
 - 서울대학교병원, 원주대치과병원은 벌점 40점 초과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은 2년 연속 벌점이 20점을 초과하고 전년대비 벌점 증가로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됨(<표 III-108>).
 - 불성실공시기관은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알리오시스템 및 기관 홈페이지에 불성실공시 지정내역이 3개월간 게시되고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받을 수 있음.
 - 기관주의 조치 대상인 기관은 16개 기관으로 전년대비 4개 기관이 감소함.
 - 연간 벌점이 20점을 초과하되 40점 미만인 기관²⁷¹⁾은 기관주의 조치를 대상이 되며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269) 최근 3년 연속 무벌점기관 또는 2019년 무벌점기관 중 최근 3년간 벌점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기관을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

270) 2019년 누적 벌점이 40점을 초과하거나 2년 연속 연간 벌점이 20점을 초과하고 전년대비 증가한 기관을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

271) 벌점 20점 초과~40점 미만 기관 중 2018년도 점검에 이어 2019년도 점검에서도 벌점이 2년 연속 20점을 초과하고 전년대비 벌점이 증가한 기관은 기관주의가 아닌 불성실공시 대상으로 지정됨

〈표 III-108〉 2019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구 분	판단기준	기관명	후속조치
우수 공시 기관 (22개)	3년 연속 무별점 (9개)	(공기업)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감정원	- 알리오시스템 게시 - 차년도 점검 시, 무별점으로 간주
		(준정부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기타공공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무별점기관 중, 최근 3년 별점이 지속 감소기관 (13개)	(공기업) 부산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준정부기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세라믹기술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타공공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행정연구원	
불성실 공시 기관 (4개)	별점 40점 초과 (2개)	(기타공공기관) 서울대학교병원, 원주대치과병원	- 개선계획서 제출 - 알리오시스템 및 기관 홈페이지 게시 - 고의·중과실 별점 50% 이상시 인사조치
	2년 연속 별점이 20점을 초과하고 전년대비 증가 (2개)	(기타공공기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단법인한국에너지재단	
기관주의 (16)	별점 20점 초과	(준정부기관) 아시아문화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개선계획서 제출
		(기타공공기관) (주)공영홈쇼핑,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대구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한적십자사,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울산과학기술원, 전쟁기념사업회, 정부법무공단, 한국벤처투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 공공기관 유형은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결과를 기준으로 분석함

- 2020년 공공기관 지정 시,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한국수목원관리원은 2019년 유형인 기타공공기관에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0.3.31.

□ 2019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에 따른 별점 구간별 기관 분포는 <표 III-109>와 같이 나타남.

○ 2019년도 점검대상인 331개 기관 중 별점 0점인 기관은 34개(10.3%)이고 사후조치 대상이 되는 별점 20점 초과²⁷²⁾ 기관은 20개(6.0%)임.

- 전체 공공기관의 83.6%(277개)가 별점 0점 초과~1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함.

○ 공공기관 유형에 따라 별점 분포 형태가 다르게 나타남.

- 공기업은 별점 0점 초과~10점 이하 구간인 기관이 61.8%(21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별점 0점인 기관이 35.3%(12개)이고 별점 10점 초과 기관은 1개임.

- 준정부기관은 기타공공기관 전체적으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두 유형 모두 별점 0점에서 10점 이하 기관 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공공기관은 별점 10점 초과~20점 이하인 기관이 28.2%(59개), 별점 20점 초과인 기관이 7.7%(16개)로 별점이 높은 구간의 기관 비중이 다른 두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별점 20점을 초과한 20개 기관 중 18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함.

<표 III-109> 2019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별점 분포 현황

(단위: 개, %)

구 분	소계	0점	0점초과~ 10점이하	10점초과~ 20점이하	20점초과~ 30점이하	30점초과~ 40점이하	40점초과
공기업	34 (100)	12 (35.3)	21 (61.8)	1 (0)	0 (0)	0 (0)	0 (0)
준정부기관	88 (100)	9 (10.2)	56 (63.6)	21 (23.9)	2 (2.3)	0 (0)	0 (0)
기타공공기관	209 (100)	13 (6.2)	119 (56.9)	59 (28.2)	16 (7.7)	0 (0)	2 (1)
합계	331 (100)	34 (10.3)	196 (59.2)	81 (24.5)	18 (5.4)	0 (0)	2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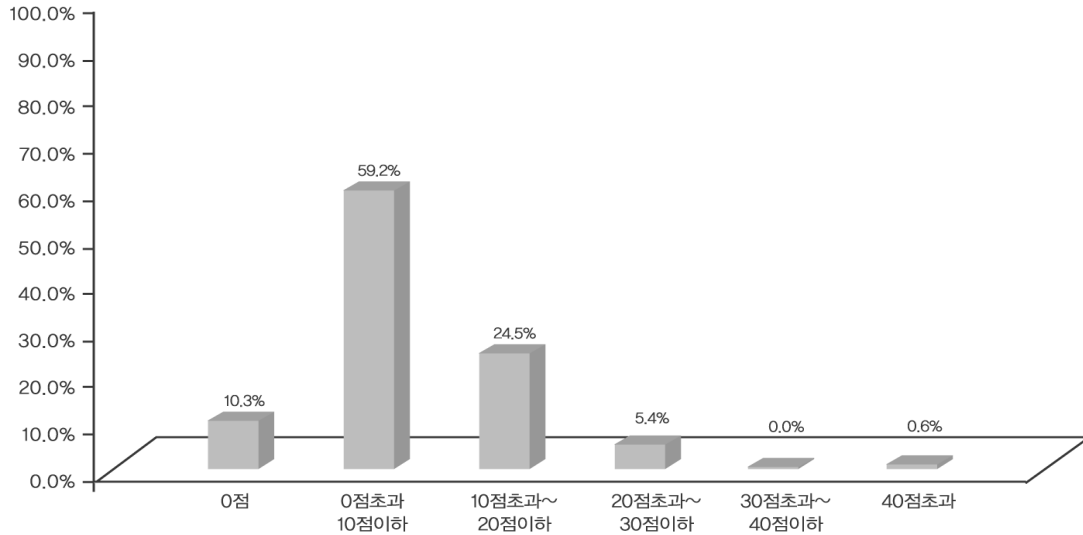
주: 1. () 안은 비중 표시

2. 2년간 별점이 20점을 연속 초과하여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결과에 대해서 해당 표를 통해서는 파악할 수 없음

3. 공공기관 유형은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결과를 기준으로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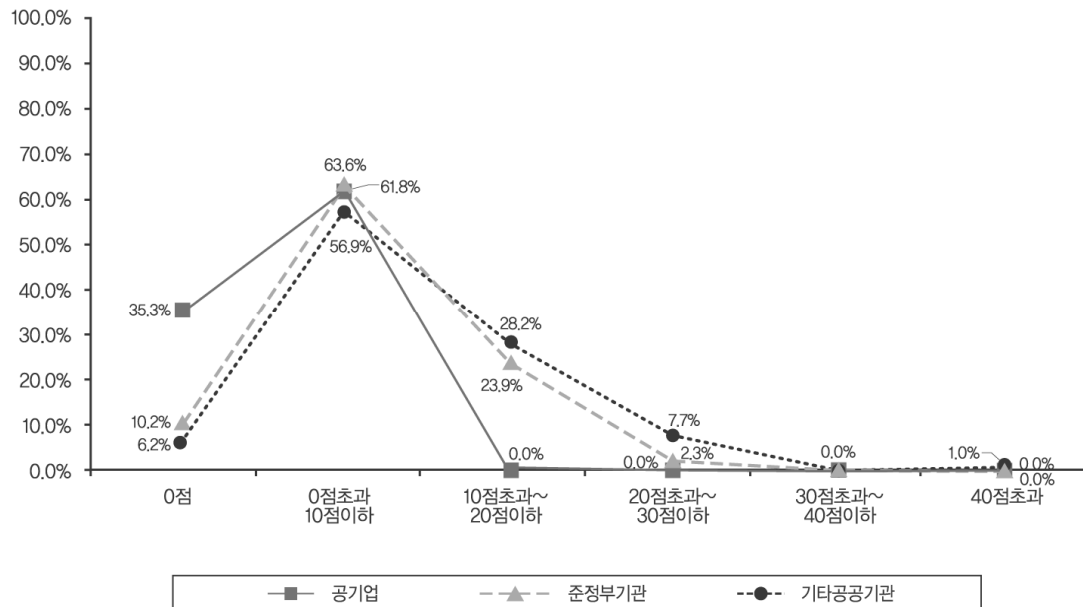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19.1.30. 및 「2019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 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3.31.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52〉 2019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별점 분포 현황(전체 기관)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19. 1. 30. 및 「2019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 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3. 31.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53〉 2019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별점 분포 현황(유형별)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19. 1. 30. 및 「2019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 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3. 31.을 참고하여 작성

□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의 별점 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III-110>과 같음.

<표 III-110>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의 2019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별점 분포

(단위: 개)

구 분	소계	0점	0점초과~ 10점이하	10점초과~ 20점이하	20점초과~ 30점이하	30점초과~ 40점이하	40점초과
기획재정부	4	1	3	0	0	0	0
교육부	22	1	8	10	1	0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5	3	26	12	4	0	0
외교부	3	0	3	0	0	0	0
통일부	2	0	1	1	0	0	0
법무부	3	0	2	0	1	0	0
국방부	3	0	1	1	1	0	0
행정안전부	3	0	1	2	0	0	0
문화체육관광부	32	0	23	7	2	0	0
농림축산식품부	11	0	5	6	0	0	0
산업통상자원부	38	12	22	3	1	0	0
보건복지부	24	2	8	11	3	0	0
환경부	11	0	6	4	1	0	0
고용노동부	11	2	5	4	0	0	0
여성가족부	5	1	1	3	0	0	0
국토교통부	25	1	20	4	0	0	0
해양수산부	15	3	9	3	0	0	0
중소벤처기업부	12	1	9	0	2	0	0
국무조정실	24	2	16	5	1	0	0
방송통신위원회	2	0	1	1	0	0	0
원자력안전위원회	3	1	2	0	0	0	0
금융위원회	6	1	5	0	0	0	0
공정거래위원회	2	0	2	0	0	0	0
인사혁신처	1	1	0	0	0	0	0
국가보훈처	3	0	1	1	1	0	0
관세청	1	0	1	0	0	0	0
방위사업청	2	0	2	0	0	0	0
문화재청	1	0	1	0	0	0	0
산림청	3	0	2	1	0	0	0
농촌진흥청	1	0	1	0	0	0	0
특허청	5	1	4	0	0	0	0
식품의약품안전처	4	0	3	1	0	0	0
기상청	2	1	1	0	0	0	0
경찰청	1	0	1	0	0	0	0
소방청	1	0	0	1	0	0	0
합계	331	34	196	81	18	0	2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19. 1. 30. 및 「2019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 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3. 31.을 참고하여 작성

- 2019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전체 통합공시점검 대상기관 331개 중 32개 기관이 전년도에 비해 후속조치 수준이 개선되었고 30개 기관은 후속조치 수준이 하락하였음.
- 후속조치 수준이 전년대비 1단계 개선된 기관은 29개로, 기관주의를 받았다가 사후조치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14개 기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전년대비 후속조치 수준이 2단계 이상 개선된 기관은 3개임.
 - 기타공공기관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제주대학교병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은 2018년도에는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2019년도에는 사후조치대상²⁷³⁾에 해당하지 않게 됨.
 - 후속조치 수준이 전년대비 1단계 악화된 기관은 29개로, 사후조치대상이 아니었다가 기관주의를 받은 경우가 17개 기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전년대비 후속조치 수준이 2단계 이상 하락한 기관은 1개임.
 - 준정부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018년도 우수 공시기관이었으나 2019년도에는 기관주의를 받음.

〈표 Ⅲ-111〉 2019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전년대비 변동 현황

구 분		기관명
개선된 기관 (32개)	1단계 개선 (29개)	[사후조치대상 아님 → 우수 공시기관(12개)] (공기업: 4개) 부산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준정부기관: 3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기타공공기관: 5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행정연구원
		[기관주의 → 사후조치대상 아님(14개)] (준정부기관: 2개)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기타공공기관: 12개) 강원대학교병원, 광주과학기술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방전직교육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부산대학교병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환경보건협회
		[불성실 공시기관 → 기관주의(3개)] (기타공공기관: 3개) 대한적십자사,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원자력의학원

273)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공시기관

구 분	기관명
2단계 개선 (3개)	[불성실 공시기관 → 사후조치대상 아님(3개)] (기타공공기관: 3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제주대학교병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하락한 기관 (30개)	[우수 공시기관 → 사후조치대상 아님(17개)] (공기업: 1개)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정부기관: 9개)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장학재단 (기타공공기관: 7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후조치대상 아님 → 기관주의(9개)] (기타공공기관: 9개) (주)공영홈쇼핑, 국립대구과학관,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울산과학기술원, 정부법무공단, 한국벤처투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한의학진흥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관주의 → 불성실 공시기관(3개)] (기타공공기관: 3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2단계 하락 (1개)	[우수 공시기관 → 기관주의(1개)] (준정부기관: 1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주: 공공기관 유형은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결과를 기준으로 분석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9. 3. 28. 및
 「2019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3. 31.을 참고
 하여 작성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공공기관 현황 편람』, 2019. 10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 향상을 위한 '19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계획」, 2019. 11
- , 「2019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비율 89.4%로 역대 최고 수준 달성」, 보도자료, 2020. 2. 20.
- ,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보도자료, 2017. 10. 25.
- ,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자료(4차)」, 2020. 1. 31.
-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결정 19만3천명(전환완료 17만 4천명), '20년까지 계획(20만 5천명) 대비 94.2% 달성」, 보도자료, 2020. 2. 3.
-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보도자료, 2019. 2. 27.
- , 「정부,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추진」, 보도자료, 2019. 12. 6.
- ,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지원」, 보도자료, 2020. 1. 13.
- 관계부처합동,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 2020. 3. 23.
- , 「2019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조사 결과 발표」, 보도참고자료, 2020. 7. 24.
- ,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 보도참고자료, 2019. 11. 8.
- 국토교통부, 「국토부·이전기관 맞손, 올해 지역 발전사업 본격 추진」, 보도자료, 2020. 3. 24.
- ,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 보도자료, 2019. 12. 25.
- , 「중전부동산 매각현황(2020. 7. 15 기준)」, 2020. 7. 15.
- , 「지방이전 공공기관 보유 19개 중전부동산 새주인 찾는다」, 보도자료, 2019. 7. 2.
- , 「철도공사·수자원공사 등 21개 기관에서도 지역인재 뽑는다」, 보도자료, 2020. 5. 27.
- , 「혁신도시,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보도자료, 2020. 2. 19.
- 국민권익위원회,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매뉴얼」, 2019. 2.
- ,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 , 「2019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 , 「2019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 ,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2016. 7. 1.
- , 「'14~'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4. 9. 22.
- , 「'15~'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5. 9. 16.
- , 「'16~'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6. 9. 2.
- , 「'17~'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7. 8. 30.
- , 「'18~'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8. 8. 31.
- , 「'20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5.
- , 「2017년도 공공기관 인력운영방안 확정 및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 보도자료, 2017. 2. 9.
- , 「2017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8. 3. 21.
- ,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 6. 20.
- ,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019. 3. 28.
- ,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2018. 8. 24.
- , 「2018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9. 3. 28.
- , 「2018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2019. 8.
- , 「2019~2023년 공공기관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9. 9. 2.
- , 「2019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19. 1. 30.
- , 「2019년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0. 3. 31.
- ,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19.
- ,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0. 6. 19.
- ,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계획」,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2. 26.
- ,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0. 4. 29.
- , 「2019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2019. 8. 27.
- , 「2019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3. 31.
- ,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2018. 1. 12.
- ,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2019. 12. 27.

- , 「2020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0. 1. 29.
- , 「202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2019. 1. 30.
- , 「202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2019. 12. 4.
- , 「'20년 정부출자기관 배당 결과 공표-정부배당금 1조 4,040억원, 평균 배당성향 32.5%」, 보도자료, 2020. 5. 20.
-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추진」, 보도자료, 2017. 12. 28.
- ,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 전략 추진- 중점 5대 분야 가시적 성과 목표 설정·이행」, 보도자료, 2020. 7. 21.
- ,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 전략」,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보고안전자료, 2020. 7.
- , 「공공기관 성과 향상 및 개방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인사혁신 3대 과제추진」, 보도자료, 2020. 4. 28.
- ,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기본계획(안)」, 2020. 6. 5.
- ,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2020. 6. 8.
- , 「공공기관 통합공시 개선방안(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2. 26.
- ,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 2020. 3.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보도자료, 2016. 9. 22.
-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8. 2. 22.
-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8. 3. 8.
-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8. 8. 24.
-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9. 3. 28.
-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3. 31.
- , 「기재부, 공공기관 공시 역량 강화지원 프로그램 시행」, 보도자료, 2020. 6. 17.
- , 「동절기 및 설 명절 연휴 대비 공공기관 특별 안전점검회의 개최」, 보도자료, 2020. 1. 17.
- , 「안일환 2차관,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범사업 착수-심사단 구성 및 착수회의

- 개최」, 보도자료, 2020. 7. 31.
- , 「양충모 재정관리관,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 개최, 보도자료, 2020. 6. 16.
- , 『2018년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2019. 8.
- ,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2019. 12.
- , 『2020 기금현황』, 2020. 4. 21.
- (주)강원랜드, 『결산서(2019)』, 2019. 3.
- , 『사업보고서(2019)』, 2020. 3.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결산서(2019)』, 2019. 3.
- , 『사업보고서(2019)』, 2019. 3.
- 중소기업은행, 『사업보고서(2019)』, 2020. 3.
- 한국가스공사, 『결산서(2019)』, 2020. 3.
- , 『사업보고서(2019)』, 2020. 3.
- 한국전력공사, 『결산서(2019)』, 2020. 3.
- , 『사업보고서(2019)』, 2020. 3.
- 한국전력기술(주), 『결산서(2019)』, 2020. 3.
- , 『사업보고서(2019)』, 2020. 3.
-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업보고서(2019)』, 2020. 3.
- , 「IR(2019년 4분기 경영실적)」, 2020. 2.
- 한전KPS(주), 『사업보고서(2019)』, 2019. 3.
- 『이데일리』, “공공부문이 앞장” 文 당부에도... 공공기관 절반 채용 줄였다, 2020. 5. 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07046625766952&mediaCodeNo=257&OutLnkChk=Y>, 검색일자: 2020. 9. 21.
- 『대전일보』, 한국철도공사 비정규직 '0명' 정규직 전환 완료, 2018. 8. 26.,
http://www.daeje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31787, 검색일자: 2020. 9. 21.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홈페이지, <http://innocity.molit.go.kr/v2/>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 (주)강원랜드, <http://kangwonland.high1.com>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http://www.grandkorea.com>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시스템), <http://www.alio.go.kr>

중소기업은행, <http://www.ibk.co.kr>

한국가스공사, <http://www.kogas.or.kr>

한국전력공사, <http://home.kepco.co.kr>

한국전력기술(주), <http://www.kepco-enc.com>

한국지역난방공사, <http://www.kdhc.co.kr>

한전KPS(주), <http://www.kps.co.kr>

부 록



- 부록 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현황
- 부록 2. 공공기관 일반현황
- 부록 3. 이전 공공기관별 2019년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적
- 부록 4. 2020년 기금 현황
- 부록 5.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35개 기금 현황
- 부록 6. 공공기관 관리 기금별 개요
- 부록 7. 2019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체계

부 록 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현황(340개, 2020. 9월 현재)

(단위: 개)

주무부처	공기업(36)		준정부기관(95)		기타공공기관(209)
	시장형(16)	준시장형(20)	기금관리형(13)	위탁집행형(82)	
기획재정부 (4)		한국조폐공사 (1)		한국재정정보원 (1)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2)
교육부 (2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2)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부설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19)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45)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부설기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부설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0)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부설기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대구경북과학기술원(부설기관: 한국여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설기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부설기관: 녹색기술센터), 한국과학기술원(부설기관: 고등과학원,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부설기관: 재료연구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부설기관: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부설기관: 세계김치연구소),

주무부처	공기업(36)		준정부기관(95)		기타공공기관(209)
	시장형(16)	준시장형(20)	기금관리형(13)	위탁집행형(8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4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부설기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부설기관: 안전성평가연구소) (35)
외교부 (3)				한국국제협력단 (1)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2)
통일부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
법무부 (3)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3)
국방부 (3)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3)
행정안전부 (3)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
문화체육관광부 (32)		그랜드코리아레저(주)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2)	국제방송교류재단, 아시아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4)	재단법인 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의전당, 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포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5)

주무부처	공기업(36)		준정부기관(95)		기타공공기관(209)
	시장형(16)	준시장형(20)	기금관리형(13)	위탁집행형(82)	
농림축산식품부 (12)		한국마사회 (1)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5)	(재)한식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재)축산환경관리원 (6)
산업통상자원부 (40)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강원랜드 (12)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5)	한국무역보험공사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13)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9)
보건복지부 (27)			국민연금공단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부설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서울요양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8)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18)
환경부 (11)		한국수자원공사 (1)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4)	(주)위터웨이플러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6)

주무부처	공기업(36)		준정부기관(95)		기타공공기관(209)
	시장형(16)	준시장형(20)	기금관리형(13)	위탁집행형(82)	
고용노동부 (11)			근로복지공단 (1)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6)
여성가족부 (5)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
국토교통부 (25)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7)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철도공단 (6)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10)
해양수산부 (16)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2)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3)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4)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기관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7)
중소벤처기업부 (11)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	(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
국무조정실 (2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부설기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부설기관: KDI국제정책대학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주무부처	공기업(36)		준정부기관(95)		기타공공기관(209)
	시장형(16)	준시장형(20)	기금관리형(13)	위탁집행형(82)	
국무조정실 (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설기관: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4)
방송통신위원회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		시청자미디어재단 (1)	
원자력안전위원회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3)
금융위원회 (8)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4)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4)
공정거래위원회 (2)				한국소비자원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
국가보훈처 (3)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	88관광개발㈜ (1)
인사혁신처 (1)			공무원연금공단 (1)		
식품의약품안전처 (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3)
관세청 (1)					(재)국제원산지정보원 (1)

주무부처	공기업(36)		준정부기관(95)		기타공공기관(209)
	시장형(16)	준시장형(20)	기금관리형(13)	위탁집행형(82)	
방위사업청 (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2)
경찰청 (1)				도로교통공단 (1)	
소방청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	
문화재청 (1)					한국문화재단 (1)
산림청 (4)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3)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1)
농촌진흥청 (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	
특허청 (5)				한국특허전략개발원 (1)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부설기관: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4)
기상청 (2)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	(재)APEC기후센터 (1)

부 록 2 공공기관 일반현황(2020.9월 기준)

1 공기업(36개)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1] 시장형 공기업(16개)						
(주)강원랜드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1998.06.29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 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폐광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도모를 목적으로 함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kangwonland.highl. com
부산항만공사	해양 수산부	항만공사법	2004.01.16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부산항을 경 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 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www.busanpa.com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 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1999.02.01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 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운송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www.airport.kr
인천항만공사	해양 수산부	항만공사법	2005.07.11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인천항을 경 쟁력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www.icpa.or.kr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가스공사법	1983.08.18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 편익과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www.kogas.or.kr
한국공항공사	국토 교통부	한국공항공사법	2002.03.02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고, 항공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www.airport.co.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광물자원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광물자원공사법	1967.06.05	국내 및 해외 광물자원을 개발하고, 광물자원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반곡동)	www.kores.or.kr
한국남동발전(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법률	2001.04.02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함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충무공동)	www.koenergy.kr
한국남부발전(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법률	2001.04.02	친환경 전력공급을 기반으로 미래 에너지산 업을 선도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 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4층, 30~35층	www.kospo.co.kr
한국동서발전(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법률	2001.04.02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함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95	www.ewp.co.kr
한국서부발전(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법률	2001.04.02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기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게 하여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www.iwest.co.kr
한국석유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석유공사법	1979.03.03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05	www.knoc.co.kr
한국수력원자력(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법률	2001.04.02	친환경, 고품질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우 수기술의 공유를 통해 국가 에너지 경쟁력과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www.khnp.co.kr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전력공사법	1961.07.01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 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www.kepco.co.kr
한국중부발전(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법률	2001.04.02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 안정적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함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대천동)	www.komipo.co.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	1985.11.01	효율적인 집단에너지 공급을 통해 기후변화 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절약 및 국민생활의 편의 증진에 기여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www.kdnc.co.kr

[2] 준시장형 공기업(20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한국가스공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1993.05.27	천연가스 생산기지 및 전국 주배관망 등 천 연가스 설비의 예방점검과 책임정비를 통해 천연가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산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227	www.kogas-tech.co.kr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문화체육 관광부	상법 및 카지노 영업허가	2005.09.06	외국 관광객 유치증진 및 외화획득증대, 한 국카지노 산업의 투명성 및 국제 경쟁력 제고, 이익금의 관광인프라 구축 및 주주 가치의 극대화와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공기업의 사 회적 책임 수행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10	www.grandkorea.com
대한석탄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대한석탄공사법	1950.11.01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가 공·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 탄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민생 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85	www.kocoal.or.kr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 수산부	항만공사법	2011.08.19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라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여수항과 광 양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 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www.ygpa.or.kr
울산항만공사	해양 수산부	항만공사법	2007.07.05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라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울산항을 경 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 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울산항마린센터	www.upa.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국토 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	2002.05.15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 로써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이바 지 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www.jdcenter.com
주식회사 에스알	국토 교통부	상법 및 철도사업법 제5조	2013.12.27	이용자의 고속철도 서비스 선택권 확대와 합 리적 경쟁을 통한 철도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1	www.srail.co.kr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 교통부	주택도시보증법 제16조	1993.04.24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 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보증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 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www.khug.or.kr
한국감정원	국토 교통부	한국감정원법	1969.04.25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을 위한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www.kab.co.kr
한국도로공사	국토 교통부	한국도로공사법	1969.02.15	도로의 설치 및 관리와 이에 관련된 사업을 통해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 달에 이바지함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www.ex.co.kr
한국마사회	농림축산 식품부	한국마사회법	1949.09.29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 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www.kra.co.kr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2012.05.23	광고판매 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방송통신 광고 진흥사업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목 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25)	www.kobaco.co.kr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법	1967.11.16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 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www.kwater.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1975.10.01	발전소 설계기술 고도화를 기반으로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여 고객만족과 인류번영을 추구함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 (울곡동)	www.kepco-enc.com
한국조폐공사	기획 재정부	한국조폐공사법	1951.10.01	은행관주화주민등록증여권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공공보안제품의 제조 및 이와 관련된 사업수행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www.komsco.com
한국철도공사	국토 교통부	한국철도공사법	2005.01.01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www.korail.com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 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09.10.01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www.lh.or.kr
한전KDN(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1992.01.23	전력사업과 관련된 시스템 통합(SI) 및 시스템운영(SM) 사업 수행,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수행, 지능형 전력망 (Smart-Grid) 관련 사업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함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61	www.kdn.com
한전KPS(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1984.04.01	발전·송전 등 전력설비 성능과 신뢰도 제고로 전력의 안정적 공급 및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11	www.kps.co.kr
해양환경공단	해양 수산부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	2008.01.21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 및 해양오염방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깨끗하고 풍요로운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녹색실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www.koem.or.kr

② 준정부기관(95개, 부설기관 4개 별도)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3개)						
공무원연금공단	인사 혁신처	공무원연금법 제1조 및 제4조	1982.02.01	공무원의 퇴직,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www.geps.or.kr
국민연금공단	보건 복지부	국민연금법 제24조	1987.09.18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www.nps.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1995.05.01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으로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0	www.kcomwel.or.kr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 기업부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	1989.04.01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www.kibo.or.kr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	1974.01.11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 사망 및 직무상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빛가람동)	www.tp.or.kr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 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	1989.04.20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www.kspo.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1976.06.01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www.kodit.co.kr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제3조	1996.06.01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www.kdic.or.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1979.01.17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충무공동)	www.kosmes.or.kr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보험법 제37조	1992.07.07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4 (서린동)	www.ksure.or.kr
한국언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2010.02.01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및 신문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www.kpf.or.kr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1962.04.06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정리 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등의 지원,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처리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www.kamco.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004.03.01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1229-1) 부산국제금융센터	www.hf.go.kr

[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82개, 부설기관 4개)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1966.04.30	우체국 금융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체국예금보험 사업의 향상·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841(영등포동 4가)	www.posid.or.kr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1980.08.26	안전·신속정확한 우편물류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76	www.pola.or.kr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1930.12.03	우편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우정문화를 창달함으로써 우정사업 발전과 국민문화 생활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83(영등포동 7가)	www.pos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2000.07.0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반곡동)	www.hira.or.kr
국립공원공단	환경부	국립공원공단법	1987.07.01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및 지형·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반곡동)	www.knps.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국립생태원	환경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3.10.28	생태와 생태계 조사연구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www.nie.re.kr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2000.07.01	건강보험사업과 장기요양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 보건 및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www.nhis.or.kr
(부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3조 및 제62조	2000.03.03	가임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에 대한 요양,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www.nhimc.or.kr
(부설) 서울요양원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3조 및 제70조	2014.11.1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개발 및 급여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 향상과 장기요양 기관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릉로 590길 50 (세곡동 520번지)	www.서울요양원.kr
국제방송교류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민법 제32조	1996.04.10	방송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우호 친선 도모하고 방송영상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지원해 방송영상 광고 산업의 진흥 및 문화예술의 선양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51	www.arirang.com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제16조	2002.12.30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신기술 심사·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토교통기술 발전·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www.kaia.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농림수산물교육 문화정보원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	2012.05.23	농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식품·농촌 정 보화의 촉진, 농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농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농산 물의 안전정보 제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www.epis.or.kr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농림축산 식품부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2009.10.02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 발사업 기획·관리 및 평가의 효율적 지 원을 목적으로 함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45 (빛가람동 352-1)	www.ipet.re.kr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촌 진흥청	농촌진흥법 제33조	2009.09.07	정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고자 함	전북 익산시 평동로 457 (송학동 381)	www.fact.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1962.06.21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전문인력의 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정 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13	www.kotra.or.kr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도로교통법 120조	1954.02.12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 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 의 위험과 장애를 예방하고자 함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 (반곡동)	www.koroad.or.kr
독립기념관	국가 보훈처	독립기념관법	1986.08.20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함으로써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민족 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	www.i815.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2014.01.01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흥동) 대림빌딩 2~3,11,16층	www.semas.or.kr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법 제90조의2	2015.05.15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시청자 미디어 교육·체험·홍보, 미디어 교육 확대와 미디어 격차 해소,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 등의 사업을 통해 국가 미디어 사업에 이바지 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23	www.kcmf.or.kr
아시아문화원	문화체육 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2015.10.01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관련 홍보·교육연구 및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국립아시아문화전당)	www.aci-k.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2005.09.01	연구개발특구 혁신생태계 육성과 공공 기술 사업화 촉진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www.innopolis.or.kr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 관리원	국토 교통부	민법 제32조	1997.12.23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 및 성능평가 등에 관련한 연구 및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 하여, 건설기계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 유지를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54	www.kcesi.or.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	2009.08.24	정보통신산업의 효율적 지원과 진흥기 반 조성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0	www.nipa.kr
(부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2014.03.31	국가 SW정책 중앙연구소로서 SW를 활 용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 혁신을 도모하는 정책대안 수립에 기여 하고자 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12번길 22 글로벌R&D센터 A동 4층	www.spri.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	2002.01.22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 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함으로써 경영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 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도룡동) TBC센터 6,7,8,10 층	www.tipa.or.kr
창업진흥원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	2019.10.24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기반 예비 창업자의 창업을 촉진시켜 창업기업 성 장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경제 발 전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캐피탈타워 5층	www.kised.or.kr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법 제36조	2001.07.27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원활 및 가축개량의 촉진을 통하여 국내산 축산물 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에 기여하고 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www.ekape.or.kr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	1974.01.11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 으로써 가스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스안전산업 발 전에 기여함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www.kgs.or.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여성 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	2015.01.01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족서비스 전달 체계 지원으로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가족역량 강화 도모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서울지방조달청사) 본관 4~6층	www.kihf.or.kr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	2014.07.29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하여 필요한 정책수립의 지원과 사업평 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빌딩 24층	www.khealth.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 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2006.03.31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고 용관련 통계의 작성·보급 등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 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함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www.keis.or.kr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	1967.12.21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의 구축을 지원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02 삼릉빌딩	www.kofac.re.kr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 관광부	한국관광공사법	1962.06.26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 발,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 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kto.visitkorea.or.kr
한국광해관리공단	산업통상 자원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	2006.06.01	광해방지사업과 석탄산업 지원사업 및 지역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 써 광산지역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 (반곡동)	www.mireco.or.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1999.04.22	교육과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 조사·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 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 지함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 (동내동) KERIS 빌딩	www.keris.or.kr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 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법	1981.07.0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 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www.kotsa.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국제협력단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법	1991.04.0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의 인권 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 협력 및 우호협력관계 증진,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www.koica.go.kr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 교통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2조	1977.07.0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지적측량 등 수행을 목적으로 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	www.lx.or.kr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청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	2009.12.30.	기상산업의 진흥 발전,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정로 2가, 충정빌딩)	www.kmiti.or.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보건 복지부	민법 제32조 및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2005.12.27	노인일자리 개발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 인증 평가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www.kordi.or.kr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축산 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	1967.12.01	농수산식품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수급을 안정시키고, 식품 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빛가람동)	www.at.or.kr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 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00.01.01	환경친화적인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www.ekr.or.kr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	1970.05.19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www.kidp.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전파법 제66조	1972.07.21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통신전파의 진흥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전파이용 기회 확대와 방송통신전파 진흥에 기여함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0	www.kca.kr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보건 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2007.04.04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당 업무 종사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www.kohi.or.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 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1999.02.06	보건산업의 육성·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www.khidi.or.kr
한국보육진흥원	보건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제8조	2009.12.23	효과적인 보육관련 사업 수행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과 체계적인 보육정책 지원을 통한 영유아와 부모, 보육교직원 등 수요자의 만족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4,5,6층	www.kcpi.or.kr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 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1981.11.0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40 (반곡동)	www.bohun.or.kr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건 복지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2009.12.07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지원 및 법령에 의해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	www.ssis.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	2016.04.18	국민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층(둔산동 아너스빌)	www.fowi.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	2009.05.04	산업기술혁신 촉진 및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2-7, 12-14, 16-17, 21층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	2009.05.04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과 국가 혁신역량 제고에 기여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	www.keit.re.kr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	1997.01.10	산업단지의 조성 및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과 기업체의 산업활동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www.kicox.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 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1987.12.09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예방에 힘쓰도록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www.kosha.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1982.03.18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통해 산업인력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교동)	www.hrdkorea.or.kr
한국석유관리원	산업통상 자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	1983.11.0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유통관리, 연구개발, 시험조사 등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위탁 또는 지정받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www.kpetro.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1977.06.01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소방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소방제품 및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대국민 소방 안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www.kfi.or.kr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제33조	1987.07.01	소비자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www.kca.go.kr
한국수목원관리원	산림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4	2017.05.17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위해 기후 및 식생대별로 조성한 국립수목원을 운영·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3층	www.kiam.or.kr
한국수산자원공단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2010.11.18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 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www.fira.or.kr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관리법 제55조	2016.07.01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과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한 생활과 행복 실현을 목적으로 함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02	www.koelsa.or.kr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1995.04.19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 이에 관한 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통해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	www.kistec.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7.02.13	식품·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과 그와 관 련된 종합적인 지원 사업 및 그 밖에 식품·축산물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전문·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156	www.haccp.or.kr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	1980.07.04	에너지효율향상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 산 및 산업육성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우정동)	www.energy.or.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법 제13조	2009.05.04	에너지기술개발 및 에너지기술 혁신기 반을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 이며 환경 친화적인 국가에너지 수급구조 실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www.ketep.re.kr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법	2009.06.26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 하게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학술 및 과 학기술 진흥과 연구역량 제고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www.nrf.re.kr
(부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한국연구재단 정관 제18조의3	2014.04.01	ICT R&D 기획 및 전략수립,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반조성, 기술사업화 등 전 주기 지원을 통한 정보통신기술 및 산 업진흥을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www.iitp.kr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산업통상 자원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8조	2009.01.01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방 사성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 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 하여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	www.korad.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2009.07.23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와 관련한 국제 협력·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임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www.kisa.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2012.01.26	산림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와 임산물의 생산유통정보제공 등을 통한 산림소득증대 및 산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www.kofpi.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1990.09.01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59(구미동)	www.kead.or.kr
한국장학재단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09.05.07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 고등교육 장학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육성에 기여함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신암동)	www.kosaf.go.kr
한국재정정보원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법	2016.07.0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정책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재정정보화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남대문로 5가)	www.kpfis.or.kr
한국전기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제74조	1974.06.07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및 전기안전에 관한 연구홍보 등을 통해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함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www.kesco.or.kr
한국전력거래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제35조	2001.04.02	전력시장의 공정한 운영과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전력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25	www.kpx.or.kr
한국정보화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	1987.01.30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서비스 확충,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함으로써 창조적 지식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행복 실현에 이바지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53	www.nia.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국가철도공단	국토 교통부	국가철도공단법	2004.01.0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www.kr.or.kr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여성 가족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	1993.02.15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	www.kyci.or.kr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여성 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	2010.08.18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체험활동을 진흥시켜 청소년의 잠재역량 계발과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수련참여교류권리 증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진양빌딩 2, 5층	www.kywa.or.kr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	2009.05.07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도모하고, 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www.kocca.kr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청	발명진흥법 제55조의2	2012.12.21	정부 및 민간의 연구개발 과정에 고도의 지식재산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식재산 연계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8층	www.kista.re.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 수산업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2019.07.01.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함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	www.komsa.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1998.01.01	해양수산인력의 교육·기술훈련 등을 통한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 도모에 기여함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동삼동)	www.seaman.or.kr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한국환경공단법	2010.01.01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종합환경연구단지	www.keco.or.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2009.04.08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한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www.keiti.re.kr
해양수산 과학기술진흥원	해양 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2005.11.16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양수산 과학기술 육성 및 해양수산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 8~10층	www.kimst.re.kr

③ 기타공공기관(209개, 부설기관 19개 별도)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사)남북교류협력 지원협회	통일부	민법 제32조	2007.05.18	정부 위탁업무 수행 및 정책건의, 남북교류 협력 관련 조사연구 및 분석 등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97, 고려대연각센터빌딩 601호	www.sonosa.or.kr
(제)APEC기후센터	기상청	민법 제32조	2005.06.09	아태지역의 기후변화 및 변동의 파급 효 과를 경감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이상기후 감시 및 최적의 기후예측정보를 생산함으로써 아태지역 의 변형 실현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7로 12	www.apcc21.org
(제)국제원산지정보원	관세청	민법 제32조	2010.01.22	자유무역협정 및 원산지 관련 연구조사 정보 보급 확대 등을 통하여 우리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경제발 전에 기여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www.origin.or.kr
(제)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체육 관광부	민법 제32조	2006.01.12	예술유통의 활성화와 예술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 로써, 예술현장의 자생력 제고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57길 (연건동) 홍익대학교 대학로캠퍼스 교육동 12층	www.gokams.or.kr
(제)우체국시설관리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2000.11.23	우정사업조직에 속한 부동산의 효율적 관 리운영으로 우정자산의 적극적 활용 및 가치향상을 도모, 우정시설의 최적화와 국민의 우체국 이용편의 및 우정 사업 중 사자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2(구의동) 동서울우편물류센터 4층	www.poma.or.kr
(제)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	행정 안전부	민법 제32조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2014.06.03	일제강제동원 피해·희생자 추모사업 및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조사연 구 등 피해구제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603호	www.ilje.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벤처 기업부	민법 제32조	2004.07.01	국내외 중소기업 관련 경제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이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이를 널리 보급, 활용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 1가길 77	www.kosbi.re.kr
(재)축산환경관리원	농림축산 식품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8조의2	2015.05.08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이용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7층(나성동, 한림프라자)	www.ilem.or.kr
(재)한국스마트그리드 사업단	산업통상 자원부	민법 제32조	2007.04.02	스마트그리드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저탄소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13 전기회관 10층	www.smartgrid.or.kr
(재)한식진흥원	농림축산 식품부	민법 제32조	2010.03.10	한식, 식문화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강남대로27 aT센터 601호	www.hansik.or.kr
(주)공영홈쇼핑	중소벤처 기업부	상법	2015.03.05	중소기업 상품 및 농축수산물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지원함으로써 합리적 소비문화와 국민경제 건인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상암동)	www.gongyoung.kr
(주)워터웨이플러스	환경부	상법	2011.04.26	벚길경관유지관리, 마리나 운영, 강문화관 운영·관리 및 관광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옥로 270번길 74	www.waterway.or.kr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국토 교통부	상법	1993.12.06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선진건설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함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40 (울곡동 790)	www.korcm.co.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88관광개발(주)	국가 보훈처	상법 및 보훈기금법 제7조 제6항	1987.07.30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보훈 기금 증식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88골프 장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설립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석성로 521번길 169(청덕동)	www.88countryclub .co.kr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농림축산 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	2003.06.27	효율적인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리 및 수입식용축산물 검역을 통해 축산물의 위 생안전성을 향상시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양축농가의 소득 증대 및 축산 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www.lhca.or.kr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교육부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1997.05.07	치의학에 관한 연구와 진료를 하계 함으 로써 치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 건강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www.gwnudh.or.kr
강원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2000.05.08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치의학 및 간호 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 바지하고자 함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	www.knuh.or.kr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 노동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997.12.0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퇴직공제사업, 건설근로자의 복 지증진사업 및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사업 등을 실시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국제빌딩 10층	www.cwma.or.kr
게임물관리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2013.12.23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 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 지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www.grac.or.kr
경북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07.02.10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 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www.knuh.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교육부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2016.06.01	고등교육법에 의한 치의학 및 치의학 관련 학문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치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75	www.knudh.kr
경상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87.02.21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	www.gnuh.co.kr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2005.07.01	경제·인문·사회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국가의 연구사업 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 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 3,4,8,9층	www.nrc.re.kr
(부설) 육아정책연구소 ²⁷⁴⁾	국무 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관 제4조의2 및 한국교육개발원 정관 제5조의2	2005.09.30	국가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육아정책개발 관련 연구업무를 종합·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육아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함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9층	www.kicce.re.kr
과학기술일자리 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2012.12.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성과의 활용·확산을 지원하여 과학기술 진흥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13(충정로3가) 삼창빌딩 7층, 10층	www.compa.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7.01.05	과학기술 활동 및 과학기술부문과 관련된 경제사회의 제반문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B동) 5,6,7층, 연구지원동 3층	www.stepi.re.kr
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광주과학기술원법	1993.11.17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 양성, 국책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응용연구, 국내외 산학연과의 공동연구 및 광주첨단과학산업기지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www.gist.ac.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2014.06.3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 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연구사업 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 5,6,7층	www.nst.re.kr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보건복지부	민법 제32조	2011.12.27	생명윤리 정책에 관한 전문적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의생명과학 및 그 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발전하는 과정에서 안전하게 연구, 개발 및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 성하는데 기여함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 다동빌딩 5층	www.nibp.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	평생교육법 제19조	2008.02.15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www.nile.or.kr
국립광주과학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2013.07.23	과학기술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전사· 교육함으로써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 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35	www.sciencecenter. or.kr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환경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5.06.03	국가 생물주권의 조기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2길 137	www.nnibr.re.kr
국립대구과학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2013.06.24	과학기술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 교육프로그 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함으 로써 과학기술 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기여함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대로 6길 20	www.dnsm.or.kr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문화체육 관광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5조	2004.07.20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이용촉진과 박 물관문화예술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진하고 편익을 도모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www.cfnmk.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국립부산과학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2015.07.13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기여 하고 과학기술 문화를 창달, 과학기술자 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 며 동남권 지역의 과학문화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밖 과학교육 활성화에 기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6로 59	www.sciport.or.kr
국립암센터	보건 복지부	암관리법 제27조	2000.03.22	암관리법에 따라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 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www.ncc.re.kr
국립중앙의료원	보건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0.04.02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높은 공공의료를 선도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과 국가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www.nmc.or.kr
국립해양박물관	해양 수산부	국립해양박물관법 제3조	2012.07.09	해양문화와 해양산업의 유산을 발굴·보존 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	www.knmm.or.kr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 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5.04.20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 자원의 보전 및 해양수산업발전에 기여함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101번길 75	www.mabik.re.kr
국방과학연구소	방위 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법	1970.08.06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고 만군기술협력사업과 민간 장비의 시험평가 지원 사업을 수행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www.add.re.kr
국방기술품질원	방위 사업청	방위사업법 제32조	2006.02.02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기술기 획, 연구와 기술 정보의 확보, 유통, 관리, 품질보증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연구 업무 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 국방의 완수에 기여하고자 함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www.dtaq.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국방전직교육원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법	2015.01.01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 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기여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대로 83(창곡동)	www.moti.or.kr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축산 식품부	식물방역법 제29조의2	2012.02.10	미국캐나다 및 칠레, 뉴질랜드 등으로 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아시아매미나방(AGM) 검사 및 증명서 발급으로 국내 수출산업을 지원하고, 식물의 검역 및 방제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탁 받은 식물검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영리 공익업무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제903호	www.ipab.or.kr
국토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8.10.04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함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www.krihs.re.kr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무 조정실	국토연구원 정관 제28조	2007.06.15	건축도시 분야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공공적 가치 구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www.auri.re.kr
기초과학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2011.11.21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 및 기초과학 기반 순수 기초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창조적 지식 및 원천기술 확보와 우수 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5(도룡동 3-1)	www.ibs.re.kr
(부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 및 기초과학연구원 정관 제37조의2	2005.10.01	전문적인 수학연구를 통해 수학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수학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및 산업과의 연계강화를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길 70	www.nims.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노사발전재단	고용노동부	민법 제32조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2007.04.05	노사공동 사업을 통한 노사자율의 상생 노사관계 발전 도모, 노사공동의 고용안정, 전직지원, 노사관계 관련 업무의 전문적 수행, 우리나라와 외국의 노사관계 제도, 관행에 대한 국제적 상호 이해 촉진과 민간노동 외교 활성화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www.nosa.or.kr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63조의2	2004.05.19	정부의 농업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및 감독함으로써 농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2층	www.apfs.kr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2004.09.07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 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중앙대로 333	www.dgist.ac.kr
(부설) 한국뇌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뇌연구촉진법 제17조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정관 제3조	2011.12.14	뇌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뇌 분야에서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발전시킴을 목적으로 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61	www.kbri.re.kr
대구경북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010.12.14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88 커뮤니케이션센터	www.dgmif.re.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9.12.29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한 문제를 조사연구 분석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www.kiep.go.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	법률구조법 제8조	1987.09.01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 변호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26	www.klac.or.kr
대한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 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2005.11.25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종목별 경기단체,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및 사도 지부를 지원육성하고 유형별 장애인체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우수한 선수와 지도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 및 국제스포츠 교류활동을 통한 국제 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벨로드롬 1층	www.koreanpc.kr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1905.10.27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 정신의 이상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고자 함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	www.redcross.or.kr
대한체육회	문화체육 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1920.07.13	체육운동 범국민화로 국민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국위선양에 기여하며 올림픽의 원칙과 가치 확산, 스포츠를 통한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올림픽컨벤션)센터	www.sports.or.kr
동북아역사재단	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006.09.22	동북아시아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지속적·종합적 연구 및 분석을 실시하고, 체계적·전략적 정책을 개발하며, 홍보·교육활동과 교류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바른역사인식을 공유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본관	www.nahf.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행정 안전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2001.11.12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 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www.kdemo.or.kr
부산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56.11.01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치의학·한의학·약 학·간호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 상에 기여함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www.pnuh.or.kr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교육부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2011.09.01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함으 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함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www.pnudh.co.kr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2010.09.2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의 자립정착 및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4-5-14층	www.koreahana.or. kr
산업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6.01.07	국내외의 산업기술에 관련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조사하고 연구하여 이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수립에 이바지하 고 이를 널리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기 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 고자 함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www.kiet.re.kr
새만금개발공사	국토 교통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	2018.09.21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sdco.or.kr/
서민금융진흥원	금융 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2016.09.23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서민 생 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4, 5층	www.kinfa.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서울대학교병원	교육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1978.07.15	서울대학교병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www.snuh.org
(부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육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제3조 및 서울대학교병원정관 제4조	2003.04.15	서울대학교병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	www.snubh.org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교육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2004.09.01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www.snudh.org
세종학당재단	문화체육 관광부	국어기본법 제19조의2	2012.10.24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 서초평화빌딩 11, 12층	www.ksif.or.kr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000.07.22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61	www.slc.or.kr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위생법 제67조	2009.06.25	식품안전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고, 식품 이력추적관리 사업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 식품안전관리 향상과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36, 5층(원남동, 보령빌딩)	www.foodinfo.or.kr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벤처 기업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2000.08.07	16개 신용보증재단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도모, 재보증업무 및 개인에 의한 신용보증 수행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나라키움대전센터 12~15층 (월평동)	www.koreg.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아동권리보장원	보건 복지부	아동복지법 제10조의2	2019.07.16	아동정책 및 아동복지 관련 사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6~7층	www.ncrc.or.kr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6.09.01	국내외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급·교육함으로써 국가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www.keei.re.kr
영상물등급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	1999.06.07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을 연령별로 등급분류함으로써 영상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1, 3층	www.kmrb.or.kr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1973.04.03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경남정보대 산학캠퍼스 13,14층	www.kofic.or.kr
예술의전당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1987.01.07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공간의 운영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www.sac.or.kr
오송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보건 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010.12.15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23	www.kbiohealth.kr
울산과학기술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울산과학기술원법	2007.09.13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및 외국과의 교육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함	울산광역시 울주군 유니스트길 50	www.unist.ac.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재단법인 국악방송	문화체육 관광부	민법 제32조	2000.02.14	방송을 통해 국악 및 한국전통문화예술을 국민에 홍보·보급·교육함으로써 국악의 진흥을 도모하는 한편, 한국전통문화예술의 발전 및 지역문화복지 향상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4길12 7, 10~12층	www.igbf.kr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건 복지부	민법 제32조	2010.10.26	의료기관 인증 및 평가 통합, 환자안전활동 지원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 수준 제고를 통하여 국민 건강을 유지·증진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0, 10층	www.koiha.or.kr
재단법인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중소벤처 기업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2008.02.19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으로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제고 및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www.debc.or.kr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보건 복지부	민법 제32조	2017.06.27	인체조직의 채취, 가공 및 분배 등을 공익적으로 수행하여 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07, 3층	kptb.kr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산업통상 자원부	민법 제32조	2006.12.26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하고, 에너지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홍보, 국제 협력 등의 사업을 통하여 에너지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152	www.koref.or.kr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2013.01.04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상·지원 활성화 및 제도·환경 개선을 통해 우수 여성과학기술인재를 양성·활용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3층 309호	www.wiset.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보건 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	2019.07.16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수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13, 5층	www.kdisw.or.kr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보건 복지부	민법 제32조	2017.04.01	뇌사 또는 사망자의 송고한 기증 정신을 바탕으로 윤리적이고 안전한 기증의 관리 를 수행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과 의학 발 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6 국민연금공단충정로사옥 5층	www.kodal458.kr
재외동포재단	외교부	재외동포재단법	1997.10.30	재외동포들의 민족적 유대감 유지와 거주 국의 모범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	www.okf.or.kr
전남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93.03.27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치의학 및 간호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 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이 바지함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	www.cnuh.com
전략물자관리원	산업통상 자원부	대외무역법 제29조	2007.06.05	전략물자의 수출입업무와 관리업무를 효 율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16층	www.kosti.or.kr
전북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94.07.04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치의학 및 간호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 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 지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www.jbuh.co.kr
전쟁기념사업회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법 제3조	1989.01.31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전쟁 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 예방과 조국의 평 화적 통일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www.warmemo.or.kr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5.02.04	국내·외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방송분야의 정책·제도·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 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급·활용하게 함으 로써 국가의 정보통신정책의 수립과 국민 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8	www.kisdi.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정부법무공단	법무부	정부법무공단법	2008.02.15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 하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8길 12	www.kgls.or.kr
제주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2001.11.01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치의학 및 간호 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 및 제주지역의 보건의료사업에 이바지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 13길 15	www.jejunuh.co.kr
주택관리공단(주)	국토교통부	상법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2항	1998.09.28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의거, 한 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관리 및 임대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함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37 (충무공동 225-8)	www.kohom.or.kr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1995.12.21	중소기업제품 판매시설의 설치와 운영, 도·소매, 홍보·전시, 통신판매·전자상거래 등 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목동)	www.sbdc.or.kr
중소기업은행	금융 위원회	중소기업은행법	1961.08.01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 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 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50번지)	www.ibk.co.kr
충남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72.07.01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www.cnuh.co.kr
충북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91.07.20	교육법에 의한 의학, 치의학, 간호학, 약 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www.cbnuh.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코레일관광개발(주)	국토 교통부	상법 및 (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2004.08.11	철도 인프라와 민간관광 전문경영 노하우 접목을 통한 고품격 서비스 제공으로 철도 부가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8	www.korailtravel.com
코레일네트웍스(주)	국토교통부	상법 및 (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2004.09.21	철도인프라를 활용한 부대수익 창출 및 사업다각화로 철도 경영개선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69(한강로 2가 391) 용산푸르지오써밋 13층, 14층	www.korailnetworks. com
코레일로지스(주)	국토 교통부	상법 및 (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2003.12.31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등 국가물류장애 발생 시 적극적 대응 조치를 통한 물류대 란 최소화 및 철도수송의 약점인 일관수 송 (Door-to-Door) 서비스 구축으로 고객 편의 및 철도수송량 증대를 목적으로 함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175	www.koraillogis.com
코레일유통(주)	국토 교통부	상법 및 (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2004.12.02	철도 역사 구내영업과 광고사업의 체계적인 개발운영을 통해 철도고객의 니즈 충족 및 한국철도공사 수익경영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www.korailretail.com
코레일테크(주)	국토 교통부	상법 및 (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2004.12.09	안정적인 철도시설물 유지관리 및 KTX차 량 등 정비 외주화 위탁업무 수행으로 철 도공사 인력효율화와 경영개선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76	www.korailtech.kr
태권도진흥재단	문화체육 관광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2005.07.01	태권도원 조성운영 및 태권도 진흥에 기 여함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태권도원	www.tpf.or.kr
통일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1.02.02	민주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국가의 통일정책 수립 지원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www.kinu.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고용 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9조	1998.02.05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기능기술자, 기능장 등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산학협력사업, 지역산업인력개발 및 취약계층 직업능력 개발교육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함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www.kopo.ac.kr
한국개발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1.03.11	경제사회 현상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고 국민의 이해 증진, 재정사업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 사업 및 연구,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의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www.kdi.re.kr
(부설) KDI국제정책대학원	국무 조정실	한국개발연구원 정관 제4조	1997.12.05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개발 및 공공 정책 분야의 고급 국제 전문인력 양성과 개발정책교육 관련 연구와 자문의 체계적 수행을 목적으로 함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www.kdischool.ac.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3.06.11	건설 및 국토관리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과 성과 확산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함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www.kict.re.kr
한국고전번역원	교육부	한국고전번역원법	2007.11.23	고전문헌을 수집·정리·번역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1로 85	www.itkc.or.kr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문화체육 관광부	민법 제32조	2010.04.01	창의적인 공예문화, 디자인문화, 전통생활 문화의 확산과 진흥을 통하여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회관 4-5층	www.kcdf.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2007.12.03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새로이 발생하는 산업분야 및 거래행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법집행의 효율성을 지원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	www.kofair.or.k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	1999.02.01	과학기술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조사분석평가와 예산의 배분·조정,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연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과학기술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www.kistep.re.kr
(부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관 제3조	2007.11.01	과학기술인력의 자기계발과 변화혁신에 필요한 교육 제공 및 조사연구를 통해 국가R&D 투자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4길 45	www.kird.re.kr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66.02.10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창조적 원천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그 성과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www.kist.re.kr
(부설) 녹색기술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관 제32조의2	2013.02.01	녹색기술 연구개발 정책수립과 녹색기술 관련 국가 간 연계협력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17층	www.gtck.re.kr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원법	1971.02.16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적 중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을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www.kaist.ac.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부설) 고등과학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3조의2 및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44조	1996.10.01	창조적이고 선도적인 세계적 수준의 기초 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기초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할 미래형 과학 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85	www.kias.re.kr
(부설) 나노종합기술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한국과학기술원법 제3조의2,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44조	2004.05.04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기업의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www.nmfc.re.kr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한국과학기술원법 제3조의2 및 제14조의3,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44조	1990.09.07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적 재능이 뛰어난 영재 조기 발굴 및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체계적 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105-47	www.ksa.hs.kr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62.01.01	국가 과학기술 정보 분야의 전문 연구기 관으로서 국가 과학기술 진흥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	www.kisti.re.kr
한국교육개발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2.08.30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함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7	www.kedi.re.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8.01.0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며 각종 교육평가를 연구·시행 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국가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교학로 8	www.kice.re.kr
한국교통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7.08.25	교통물류정책 및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교 통정책에 관련된 국내외 각종 정보를 수집, 조사, 분석하여 이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교통발전에 기여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www.koti.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법	1987.03.02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37	www.kida.re.kr
한국국제교류재단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1991.12.30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 증진을 목적으로 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	www.kf.or.kr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	보건 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2006.08.18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 재능빌딩 6-8층	www.kofih.org
한국기계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6.12.30	기계분야의 연구개발, 성과확산, 신뢰성평가 등을 통해 국가 및 산업계의 발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56	www.kimm.re.kr
(부설) 재료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기계연구원 정관 제32조의2	2007.04.27	소재분야의 산업원천기술 개발 및 성과확산, 신뢰성평가, 시험평가 등을 통해 국가 및 산업계의 발전에 기여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97(상남동 66번지)	www.kims.re.kr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 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2조의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	1991.11.02	고급기술기능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이론과 현장실기 및 학습조직화 능력을 겸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인력개발담당자 및 실천공학기술자의 양성」에 기여함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충절로 1600	www.koreatech.ac.kr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8.08.01	국가과학기술발전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연구 시설·장비 및 분석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 연구지원 및 공동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www.kbsi.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정관 제32조의2	2005.10.01	핵융합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탐구, 기술 선도, 개발 및 보급 등을 수행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www.nfri.re.kr
한국나노기술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2003.12.23	나노소자, 화합물 반도체분야의 연구개발 및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나노기술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www.kanc.re.kr
한국노동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8.05.09	노동관계 제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분 석함으로써 합리적인 노동정책개발과 노 동문제에 관한 국민 일반의 인식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www.kli.re.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8.04.01	농림경제 및 농어촌사회 발전에 관한 중 합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경 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www.krei.re.kr
한국데이터산업 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1993.02.04	데이터 산업의 성장과 데이터의 사회적 활용 증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사회의 혁신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42 부영빌딩 7~8층	www.kdata.or.kr
한국도박문제 관리센터	문화체육 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2013.08.28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 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예방 및 치유 재활 사업과 활동을 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남산스퀘어 8층	www.kcgp.or.kr
한국등산·트레킹 지원센터	산림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2008.07.29	건전한 등산·트레킹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등산·트레킹활동 지원에 이바지함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상로67(비래동)	www.komount.kr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산업통상 자원부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 41조	2010.06.24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 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함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www.kiria.org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문화번역원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진흥법 제13조	1996.05.06	체계적인 한국문학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 및 교류를 통하여 한국문학의 발전 및 세계화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12길 32(삼성동)	www.litkorea.or.kr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기본법 제11조의2	2002.12.04	문화예술의 발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 추진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www.kcti.re.kr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	2005.02.03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 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 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YTN 뉴스퀘어 11~12층	www.arte.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	2005.08.26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 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 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함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www.arko.or.kr
한국문화재단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9조	1980.04.01	우리의 문화재를 보호·보존하고, 전통생활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발하여 이를 보급, 활용함으로써 우수한 우리의 민족 문화를 널리 보전 선양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삼성동)	www.chf.or.kr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체육 관광부	민법 제32조	2002.12.23	문화관련 공공기관의 문화정보화 촉진과 문화정보의 지식화 관련 정책개발 및 사 업을 지원함으로써, 창의적 지식정보사회 의 기반구축 및 문화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6층/8층	www.kcisa.kr
한국문화진흥 주식회사	문화체육 관광부	상법 제288조	1984.01.24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광주시 삼지곡길 95 (삼동)	www.newseoulgolf. co.kr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청	발명진흥법 제52조	1994.12.26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 하고 발명가의 이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 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계의 기술혁 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www.kipa.org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법무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1953.03.05.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 및 재범방지 활동을 통해 안전한 공동체를 구현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40 산학연유치지원센터 3층	www.koreha.or.kr
한국법제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0.07.30	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고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입법정책수립의 지원 및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과 아울러 법률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	세종특별자치시 국제연구원로 15	www.klri.re.kr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 기업부	상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9	2005.06.29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촉진 등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 빌딩	www.k-vic.c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1.07.01	보건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복지 및 사회정책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연구분석하고 의견수렴과 이해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장단기 보건의료·사회복지 정책 수립에 이바지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www.kihasa.re.kr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 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9조	2008.12.23	의약품·의료기기·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상·유효성 및 경제적 효과 등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분석·제공하여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보건의료정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재원 투자의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	www.neca.re.kr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보건 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1992.04.20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연구·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www.kuksiwon.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1989.12.04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345	www.kasfo.or.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1952.02.15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협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공덕동)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www.bokji.net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0조	2010.12.31	사회적기업의 설립운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새마을금고빌딩(6~8층)	www.socialenterprise.or.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1조	1966.04.13	기술혁신성과물에 대한 시험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함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0 (충무공동)	www.ktl.re.kr
한국산업은행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1954.04.01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www.kdb.co.kr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부	수도법 제56조	2002.01.21	회원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여 공공복리 증진, 물산업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244(대림동 651-5)	www.kwwa.or.kr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5.02.01	생명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공공인프라 구축운동을 통해 국가생명과학기술, 산업 발전 및 국가사회현안 해결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www.kribb.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9.10.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생산기술 분야의 산업원천 기술개발 및 실용화,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및 성 과확산 등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www.kitech.re.kr
한국세라믹기술원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의2	2009.05.04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분석평가, 기술지 원 및 정책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세 라믹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01	www.kicet.re.kr
한국수자원조사 기술원	환경부	민법 제32조	2017.12.20	건전한 물 순환과 맑은 물의 안정적 공 급, 물관련 재해 피해 최소화 등에 필요 한 정확하고 공정한 수자원 기초자료의 생산·분석·제공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 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11층(1103~1105호), 12층	www.kihs.re.kr
한국수출입은행	기획 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법	1976.07.01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 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 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www.koreaexim.go. kr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	농림축산 식품부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	2011.02.25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기 업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추진함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www.foodpolis.kr
한국식품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7.12.31	식품 분야의 연구개발, 공익가치창출, 성 과확산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245	www.kfri.re.kr
(부설) 세계김치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김치산업진흥법 제13조 및 한국식품연구원 정관 제31조의2	2010.01.01	김치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국가기술혁신을 주도하고, 국내 김치산업을 식품산업의 대표적인 성장동 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는데 기여함	광주광역시 남구 김치로 86(임암동)	www.wikim.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	2003.03.05	양성평등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의 남녀 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기반의 조성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www.kigepe.or.kr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수산부	어촌어항법 제57조	1994.03.30	어촌 및 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한라시그마벨리 12층	www.fipa.or.kr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7.09.07	에너지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 등을 통해 국가 성장동력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52	www.kier.re.kr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산업통상자원부	민법 제32조	1992.03.25	에너지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의 보급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에너지문화를 진흥시킴으로써 사회의 공익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418	www.keia.or.kr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	2019.12.19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등 우리 사회의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을 통해 성평등 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보호되는 사회실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www.stop.or.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3.04.21	여성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능력개발, 여성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증진 및 여성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www.kwdi.re.kr
한국영상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1974.01.18.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www.koreafilm.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인 복지법 제8조	2012.11.19	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 2층	www.kawf.kr
한국예탁결제원	금융 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1974.12.6	증권등의 발행 및 유통 원활화 등 종합증권서비스 제공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을 지원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www.ksd.or.kr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 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1990.02.14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 보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62	www.kins.re.kr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	2012.11.06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에 관한 정책과 제도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력을 기획, 관리하여 원자력·방사선 안전기반 조성에 이바지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49	www.kofons.or.kr
한국원자력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59.02.03	원자력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학술의 진보, 에너지 확보 및 원자력의 이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www.kaeri.re.kr
한국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제13조의2	1963.12.17	방사선 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와 암 진료, 국가적인 방사선비상 진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및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75	www.kirams.re.kr
(분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원자력의학원 정관 제32조의2	2010.07.16	정부의 과학기술진흥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확대와 핵심연구기능의 지방분산 정책시행방사능 재난시 현장 비상진료기능 및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 확대에 기여함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길 40	www.dirams.re.kr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제6조	2006.06.30	원자력통제 전문기관으로서 원자력 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통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34	www.kinac.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의료기기안전 정보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료기기법 제42조	2012.05.18	국내·외 신개발 의료기기 동향 및 임상정 보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기술지원 등 으로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고 의료기기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마리오타워 305호	www.nids.or.kr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보건복지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2012.04.09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 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남대문로 5가) 서울시티타워 20층	www.k-medi.or.kr
한국약품안전 관리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약사법 제68조의3	2012.01.06	의약품 등으로 인한 부작용 및 품목허가 정보·품목신고정보 등 의약품 등의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 제공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 하기 위함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30 5층	www.drugsafe.or.kr
한국잡월드	고용 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2	2011.11.03	청소년 등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직 업관 형성과 직업선택 지원에 기여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부당구 분당수서로 501	koreajobworld.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	1989.04.28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 구·평가 및 정책개발, 복지진흥, 자립지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www.koddi.or.kr
한국저작권보호원	문화체육 관광부	저작권법 제122조2	2016.09.30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사항 심의,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저작권보호기술 연구 등의 수행을 통하여 저작권산업 발전과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산업진흥원 4층, 9층, 10층	www.kcopa.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저작권법 제112조	2009.07.23	저작권과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 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 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권리자 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 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5 층	www.copyright.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전기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6.12.29	전력·전기 관련 연구개발, 시험·인증 서비 스 제공을 통해 국가 전력·전기산업 발전 에 기여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로 10번길 12	www.keri.re.kr
한국전력국제원자력 대학원대학교	산업통상 자원부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제30조	2011.09.19	전력 및 원자력산업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실무형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저 탄소·녹색성장을 선도하여 세계적인 에너 지변화 흐름에 앞장서며, 국제적 인적 네 트워드를 육성하여 한국 원전의 해외수출 에 이바지함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658-91	www.kings.ac.k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6.12.30	정보, 통신, 전자, 방송 및 관련 융합기술 분야 의 핵심미래기술의 연구개발, 성장동력 창출 및 성과확산을 통해 국가경제사회발전에 기 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www.etri.re.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2.07.15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 을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재 정·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정책 수립을 지 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www.kipf.re.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청	민법 제32조	2015.12.04	지식재산보호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통해 지식재산보호지원 및 국내 산업발전과 지식재산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www.koipa.re.kr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청	발명진흥법 제51조	2005.12.09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 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 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3, 9층	www.kiip.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48.09.13	국내외 육상·해저 지질조사, 지하자원의 탐사·개발·활용,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변화 대응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	www.kigam.re.k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7.09.10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에 관한 연 구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 및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www.krivet.re.kr
한국천문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4.09.13	천문·우주과학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여 천문·우주과 학의 국가적 발전을 달성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776	www.kasi.re.kr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6.03.02	철도, 대중교통, 물류 등 공공교통 분야의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을 통해 국가 및 산 업계 발전에 기여함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월암동)	www.krri.re.kr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9.06.17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잠재력 계발, 청소년의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 청소년 인권과 참여를 위한 사회 환경 개선, 소외 계층 청소년 복지·지원 등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와 정책연구를 통하여, 미래사회의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 창조에 기여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www.nypi.re.kr
한국체육산업개발(주)	문화체육 관광부	상법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정관 제55조	1990.07.25	88 서울올림픽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 복합문화 및 레저 공간 제공으로 국민건강과 행복 증진, 다양한 수익사업 운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역도경기장	www.ksponco.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	2012.07.27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출판문화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함으로써 국가 지식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www.kpipa.or.kr
한국투자공사	기획재정부	한국투자공사법	2005.07.01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17,18,19층	www.kic.kr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청	민법 제32조	1995.07.07	산업계, 연구소, 학계 등에 국내외 지식재산권 및 기술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정보화하고 보급함으로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 발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37, 5층(둔산동, KDB빌딩)	www.kipi.or.kr
(부설) 특허정보진흥센터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정관 제35조	2011.07.15	산업계, 연구소, 학계 등에 국내외 지식재산권 및 특허기술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조사분석제공하여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기술발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탄방동)	www.pipc.or.kr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5.12.24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서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67	www.kriss.re.kr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육부	민법 제32조	1978.06.30	한국문화의 심층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고, 나아가 미래 한국의 좌표를 탐구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www.aks.ac.kr
한국한의학진흥원	보건복지부	한의학육성법 제13조	2019.06.12	한의학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한의학 기술 개발 및 산업진흥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	경상북도 경산시 화랑로 94 (갑제동)	www.nikom.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한의학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4.08.06	한의학 이론 및 기술, 한의의료행위 등에 대한 전문작·체계적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확산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www.kiom.re.kr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9.10.10	항공우주과학기술영역의 새로운 탐구, 기술 선도,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84	www.kari.re.kr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해양 수산부	항로표지법 제41조	2018.7.18	항로표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항로표지 관련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함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9 다올비즈니스센터 601호~ 603호	www.katon.or.kr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 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2012.07.01	해양과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85	www.kiost.ac.kr
(부설) 극지연구소	해양 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4조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관 제46조	2004.04.16	남북극이 갖는 정치·경제적 중요성 증 대에 따른 극지활동의 확대와 국제수준의 극지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26	www.kopri.re.kr
(부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해양 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4조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관 제46조	2013.10.28	선박해양플랜트 분야 원천기술 개발, 응용 및 실용화 연구 등 종합연구역량 확보를 통하 여 국가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창조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32	www.kriso.re.kr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7.04.18	해양수산물 및 해운항만 산업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과제를 종합·체계적으로 조사·연 구하고, 해양수산물 및 해운항만 관련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분석·보급함으로 써 해양수산물 및 해운항만 관련 국가의 정 책수립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www.kmi.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양수산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2006.01.31	수로조사에 관한 기술기준제도를 연구개발하고 해양에 관한 자료를 수집·제공함으로써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자원의 개발·이용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1305호 (호서대벤처타워)	www.khra.kr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2018.07.05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씨1동 7층(우동, 해운대아이파크)	www.kobc.or.kr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	2018.06.08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발굴, 개발, 금융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살기 좋은 지구촌 건설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50층 (여의도동, Three IFC)	www.kindkorea.or.kr
한국행정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1.09.27	행정체제의 발전과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행정에 관련된 정보·자료를 수집·관리·지원하며,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업을 추진함으로써 국가행정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www.kipa.re.kr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9.03.16	각종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www.kic.re.kr
한국화학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6.09.02	화학 및 관련 융복합 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 공공인프라 서비스를 통해 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www.kRICT.re.kr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화학연구원 정관 제31조의2	2002.01.01	화학바이오 등 각종 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연구, 관련 기술개발, 산학연 지원 등을 통한 국가산업 발전 및 국민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www.kitox.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3.01.29	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과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통하여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 8층~11층	www.kei.re.kr
한전원자력연료 주식회사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1982.11.11	고품질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연료를 생산공 급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자립에 이바지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덕진동)	www.knfc.co.kr
항공안전기술원	국토 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법	2013.04.19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항공 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항공안전 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www.kiast.or.kr
환경보전협회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	1978.10.06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 육홍보 및 생태복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켜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빌딩 4, 6, 8층	www.epa.or.kr

274) 육아정책연구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부설기관임

부 록 3 이전 공공기관별 2019년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적²⁷⁵⁾²⁷⁶⁾

구분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채용 대상		
		의무채용 대상인원 (A)	지역인재 채용실적 (B)	지역인재 채용률 (B/A, %)
108개 이전 공공기관 전체 합계	'19	5,886	1,527	25.9
	'18	6,076	1,423	23.4
부산 지역 합계 (11개 기관)	'19	431	154	35.73
	'18	511	164	32.1
게임물관리위원회	'19	-	-	-
	'18	8	2	25.0
영상물등급위원회	'19	-	-	-
	'18	-	-	-
영화진흥위원회	'19	6	5	83.3
	'18	-	-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9	-	-	-
	'18	-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	-	-	-
	'18	-	-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9	-	-	-
	'18	6	3	50
한국남부발전(주)	'19	199.5	84.5	42.4
	'18	120	61	50.8
한국자산관리공사	'19	94	28	29.8
	'18	124	33	26.6
한국주택금융공사	'19	53.5	12.5	23.4
	'18	83	18	21.7
한국예탁결제원	'19	50	13	26
	'18	43	11	25.6
주택도시보증공사	'19	28	11	39.3
	'18	127	36	28.3
대구 지역 합계 (9개 기관)	'19	425.75	122	28.66
	'18	511.75	141.5	27.7

275)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보도자료, 2020. 2. 19.을 참고하여 작성(「공운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실적을 제외함)

276) 세종 지역 소재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규정을 적용받음

구분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채용 대상		
		의무채용 대상인원 (A)	지역인재 채용실적 (B)	지역인재 채용률 (B/A, %)
한국감정원	'19	14	5	35.7
	'18	19	6	31.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9	-	-	-
	'18	7	2	28.6
한국산업단지공단	'19	37.25	9	24.2
	'18	22	10	45.5
한국사학진흥재단	'19	8	7	87.5
	'18	15	10	66.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9	7	2	28.6
	'18	8.75	3	34.3
한국가스공사	'19	165	43	26.1
	'18	329.5	80	24.3
신용보증기금	'19	126.5	32	25.3
	'18	78.5	20.5	26.1
한국정보화진흥원	'19	35	12	34.3
	'18	17	7	41.2
한국장학재단	'19	33	12	36.4
	'18	15	3	20.0
경북 지역 합계 (8개 기관)	'19	710.5	183.5	25.83
	'18	613	144	23.5
한국도로공사	'19	190	43	22.6
	'18	206	41	19.9
한국교통안전공단	'19	120	30	25
	'18	83	17	20.5
한국건설관리공사	'19	-	-	-
	'18	-	-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19	54	16	29.6
	'18	31	10	32.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9	18	4	22.2
	'18	-	-	-
대한법률구조공단	'19	-	-	-
	'18	-	-	-
한국수력원자력(주)	'19	320.5	87.5	27.3
	'18	293	76	25.9

구분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채용 대상		
		의무채용 대상인원 (A)	지역인재 채용실적 (B)	지역인재 채용률 (B/A,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9	8	3	37.5
	'18	-	-	-
광주·전남 지역 합계 (13개 기관)	'19	1,610.5	395.5	24.56
	'18	1,698	359	21.1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9	33	8	24.2
	'18	22	5	22.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	-	-	-
	'18	-	-	-
한국전력공사	'19	992	217	21.9
	'18	1,123	219	19.5
한국농어촌공사	'19	32	16	50
	'18	38	8	21.1
한국전력거래소	'19	39	11	28.2
	'18	87	23.5	27.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9	-	-	-
	'18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9	15	5	33.3
	'18	16	4	25.0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9	-	-	-
	'18	-	-	-
한국콘텐츠진흥원	'19	17	9	52.9
	'18	-	-	-
한전KPS(주)	'19	338	86	25.4
	'18	203	43	21.2
한국인터넷진흥원	'19	24	9	37.5
	'18	15	9	60.0
한전KDN(주)	'19	112.5	31.5	28
	'18	184	46.5	25.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9	8	3	37.5
	'18	10	1	10.0
울산 지역 합계 (7개 기관)	'19	370.75	101	27.24
	'18	491.5	116.8	23.8
한국석유공사	'19	-	-	-
	'18	33	7	21.2

구분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채용 대상		
		의무채용 대상인원 (A)	지역인재 채용실적 (B)	지역인재 채용률 (B/A, %)
한국동서발전(주)	'19	62	18	29
	'18	127	26	20.5
한국에너지공단	'19	54	16	29.6
	'18	28	7	25.0
에너지경제연구원	'19	-	-	-
	'18	-	-	-
근로복지공단	'19	38.75	12	31
	'18	160	41.75	26.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	106	25	23.6
	'18	46.5	9	19.4
한국산업인력공단	'19	110	30	27.3
	'18	97	26	26.8
강원 지역 합계 (10개 기관)	'19	650	166	25.54
	'18	497	144.5	29.1
한국관광공사	'19	33	8	24.2
	'18	33	6	18.2
한국광물자원공사	'19	-	-	-
	'18	-	-	-
대한석탄공사	'19	20	10	50
	'18	-	-	-
한국광해관리공단	'19	8	3	37.5
	'18	8	3	37.5
도로교통공단	'19	102	24	23.5
	'18	14	4	28.6
국립공원관리공단	'19	-	-	-
	'18	19	9	47.4
국민건강보험공단	'19	367	90	24.5
	'18	299	94.5	31.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9	40	9	22.5
	'18	46	12	26.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9	71	16	22.5
	'18	78	16	20.5
대한적십자사	'19	9	6	66.7
	'18	-	-	-

구분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채용 대상		
		의무채용 대상인원 (A)	지역인재 채용실적 (B)	지역인재 채용률 (B/A, %)
충북 지역 합계 (10개 기관)	'19	212	58	27.36
	'18	151	32	2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	-	-	-
	'18	-	-	-
한국가스안전공사	'19	122	36	29.5
	'18	57	12	21.1
한국소비자원	'19	23	6	26.1
	'18	26	5	19.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9	-	-	-
	'18	-	-	-
한국교육개발원	'19	-	-	-
	'18	7	2	28.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9	-	-	-
	'18	-	-	-
한국고용정보원	'19	54	13	24.1
	'18	31	6	19.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	-	-	-
	'18	-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9	-	-	-
	'18	-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9	13	3	23.1
	'18	30	7	23.3
전북 지역 합계 (6개 기관)	'19	400	102	25.5
	'18	610	119	19.5
국민연금공단	'19	141	35	24.8
	'18	219	44	20.1
한국전기안전공사	'19	19	10	52.6
	'18	94	21	22.3
한국국토정보공사	'19	220	51	23.2
	'18	297	54	18.2
한국식품연구원	'19	-	-	-
	'18	-	-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9	-	-	-
	'18	-	-	-

구분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채용 대상		
		의무채용 대상인원 (A)	지역인재 채용실적 (B)	지역인재 채용률 (B/A,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9	20	6	30
	'18	-	-	-
경남	'19	822	185	22.51
	'18	816	164.5	20.2
한국토지주택공사	'19	438	96	21.9
	'18	352	65	18.5
한국남동발전(주)	'19	77	17	22.1
	'18	73	15	20.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9	-	-	-
	'18	-	-	-
한국세라믹기술원	'19	-	-	-
	'18	-	-	-
중소기업진흥공단	'19	54	13	24.1
	'18	124	27	21.8
한국시설안전공단	'19	50	12	24
	'18	7	2	28.6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9	117	28	23.9
	'18	250	51.5	20.6
한국저작권위원회	'19	-	-	-
	'18	-	-	-
주택관리공단(주)	'19	-	-	-
	'18	10	4	40.0
국방기술품질원	'19	86	19	22.1
	'18	-	-	-
제주 지역 합계 (3개 기관)	'19	23	5	21.74
	'18	31	6	19.4
공무원연금공단	'19	23	5	21.7
	'18	31	6	19.4
한국국제교류재단	'19	-	-	-
	'18	-	-	-
재외동포재단	'19	-	-	-
	'18	-	-	-
충남 지역 합계 (2개 기관)	'19	230	55	23.91
	'18	146	32	21.9

구분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채용 대상		
		의무채용 대상인원 (A)	지역인재 채용실적 (B)	지역인재 채용률 (B/A, %)
한국중부발전(주)	'19	140	34	24.3
	'18	101	23	22.8
한국서부발전(주)	'19	90	21	23.3
	'18	45	9	20.0
세종 지역 합계 (19개 기관, 예외적용)	'19	-	-	-
	'18	-	-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9	-	-	-
	'18	-	-	-
국토연구원	'19	-	-	-
	'18	-	-	-
한국법제연구원	'19	-	-	-
	'18	-	-	-
한국개발연구원	'19	-	-	-
	'18	-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9	-	-	-
	'18	-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	-	-	-
	'18	-	-	-
한국교통연구원	'19	-	-	-
	'18	-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	-	-	-
	'18	-	-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19	-	-	-
	'18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	-	-	-
	'18	-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	-	-	-
	'18	-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	-	-	-
	'18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9	-	-	-
	'18	-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9	-	-	-
	'18	-	-	-

구분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채용 대상		
		의무채용 대상인원 (A)	지역인재 채용실적 (B)	지역인재 채용률 (B/A, %)
산업연구원	'19	-	-	-
	'18	-	-	-
한국노동연구원	'19	-	-	-
	'18	-	-	-
축산물품질평가원	'19	-	-	-
	'18	-	-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9	-	-	-
	'18	-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9	-	-	-
	'18	-	-	-

부록 4 2020년 기금 현황(67개 기금)²⁷⁷⁾
Ⅰ 사회보험성 기금(6개)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 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법 제78조	1995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법 제76조	1960년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법 제101조	1988년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군인연금기금	군인연금법 제37조	1960년	국방부	국방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2	1974년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2002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

277)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 기금현황』, 2020. 4. 21. 참고(<부록 5>과 <부록 6>에 동일하게 적용)

② 금융성 기금(8개)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 제1조	1989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4조	1972년	금융위원회	농협중앙회	-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	1985년	금융위원회	-	한국은행
무역보험기금	무역보험법 제30조	1969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	1994년	기획재정부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1976년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	2003년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 및 제59조의2	1987년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

③ 사업성 기금(48개)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1992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1972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	1995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1972년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1972년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	-
국유재산관리기금	국유재산법 제26조의2	2011년	기획재정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제교류기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	1991년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제질병퇴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3조	2017년	외교부	-	한국국제협력단
군인복지기금	군인복지기금법 제1조	1996년	국방부	국방부	-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	1993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금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2002년	환경부	금강수계관리위원회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3조	2002년	환경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남북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법 제3조	1991년	통일부	-	한국수출입은행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1966년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업재해보험기금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	2005년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	농협경제지주
농지관리기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	1981년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대외경제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	1986년	기획재정부	-	한국수출입은행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1973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	2010년	문화재청	문화재청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28조	2009년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	2000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3조	2011년	법무부	법무부	-
보훈기금	보훈기금법 제1조 및 제3조	1981년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공탁법 제28조	2016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
사학진흥기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	1989년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7조의2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석면피해구제기금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	2011년	환경부	환경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2015년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산물발전기금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46조	1999년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 (수산물발전기금 사무국)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1967년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1996년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
언론진흥기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2002년	환경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
영화발전기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 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원자력진흥법 제17조	1996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원자력진흥법 제17조	201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응급의료기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	1994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	1998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11	2017년	국토교통부	-	손해보험협회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기금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2004년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8조	1991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사업법 제48조	2001년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
정보통신진흥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	2005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	1981년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 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1978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3조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기본법 제53조	1989년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
축산발전기금	축산법 제43조	1974년	농림축산식품부	-	농협경제지주 (축산발전기금사무국)
한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 제20조	1999년	환경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

4 계정성 기금(5개)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 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공공자금관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	1994년	기획재정부	-	한국은행
공적자금상환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 1항	2003년	금융위원회	-	한국은행
복권기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	2004년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
양곡증권정리기금	양곡관리법 제25조	1994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거래법 제13조	1967년	기획재정부	-	한국은행

부 록 5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35개 기금 현황²⁷⁸⁾

기금명	소관부처	기금설치 근거법령	기금 직접관리기관	기금 위탁관리기관 ²⁷⁹⁾
공무원연금기금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공단	-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기본법	-	한국연구재단
국민연금기금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
국유재산관리기금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제교류기금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	-
국제질병퇴치기금	외교부	국제질병퇴치기금법	-	한국국제협력단
근로복지진흥기금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공단	-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	-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남북협력기금법	-	한국수출입은행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업재해보험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재해보험법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지관리기금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한국농어촌공사

278) 2020년 9월 현재 「국가재정법」 제5조 및 [별표2]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총 67개로 이 중 35개 기금을 30개 공공기관이 직접관리 또는 위탁관리하고 있음

기금명	소관부처	기금설치 근거법령	기금 직접관리기관	기금 위탁관리기관 ²⁷⁹⁾
대외경제협력기금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기금	산업통상자원부	무역보험법	한국무역보험공사	-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송통신발전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사학진흥기금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사학진흥재단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기획재정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신용보증기금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	-
언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언론진흥재단	-
영화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진흥위원회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예금보험공사	-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진흥법	-	한국연구재단

기금명	소관부처	기금설치 근거법령	기금 직접관리기관	기금 위탁관리기관 ²⁷⁹⁾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진흥법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림축산식품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정보통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법	-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역신문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	한국언론진흥재단

279) 기금의 관리운용주체인 소관부처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공공기관임

부 록 6 공공기관 관리 기금별 개요²⁸⁰⁾

1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공단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76조 ○ 목적: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			
(2)설치연도	1960년	(3)운용개시연도	1960년	
(4)주무부처	인사혁신처	(5)관리주체	공무원연금공단	
(6)조성재원 (제66조 및 제76조)	○ 적립금 및 결산상 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 (제76조) ○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및 지자체 보수예산 및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의 9.0%(‘20년 기준)를 각각 징수하며, 부족분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전금으로 충당 (제66조) * ‘15년 공무원연금법개정으로 ‘20년까지 단계적 인상(‘16년 8.0%→‘20년 9.0%)			
(7)기금의 용도 (제73조)	○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8)여유자금 운용범위 (제74조)	○ 기금증식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취득 ○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재정자금에의 예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한 대부 ○ 기타 기금증식사업 또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Tel: 064-802-2050)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280)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 기금현황』(2020. 4. 21) 중 공공기관이 직접 또는 위탁 관리하는 35개 기금에 대한 개요부분을 발췌함

② 과학기술진흥기금 (한국연구재단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 목적: 과학기술 진흥 및 과학기술문화 창달의 효율적 지원			
(2)설치연도	1992년	(3)운용개시연도	1992년	
(4)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관리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조성재원 (제22조제2항)	○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기금운용수익금 및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등 * 복권수익금: 매년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중 12.583%			
(7)기금의 용도 (제22조제3항)	○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 또는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 전시용 장비, 관련부대시설의 확보 지원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등			
(8)여유자금 운용범위 (제35조)	○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채신관서, 기타 금융회사에의 예치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Tel: 044-202-4844)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연구재단 기금관리팀(Tel: 042-869-6021)		
		인력규모: 7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615	614	614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③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공단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국민연금법 제101조 ○ 목적: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국민연금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			
(2)설치연도	1988년	(3)운용개시연도	1988년	
(4)주무부처	보건복지부	(5)관리주체	보건복지부	
(6)구성재원 (제101조)	○ 연금보험료 ○ 기금 운용 수익금 ○ 적립금 ○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7)기금의 용도 (제46조, 제50조, 제102조)	○ 국민연금급여 지급(제50조) ○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증진 사업(제46조) ○ 기금 본래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제102조)			
(8)여유자금 운용범위	○ 기금운용의 목표수익률과 허용범위기준을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산군별 배분비율 및 기대수익률 등을 설정 ○ 기금운용자산군: 주식, 채권 및 기타금융상품, 대체투자 등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Tel: 044-202-3605)		
	위탁관리	기관명: 국민연금공단 예산부(Tel: 063-713-5132)		
		인력규모: 7,125명(본부 1,215명, 일선기관 5,910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59,242	64,921	75,066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④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 목적: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설비용, 그 밖의 경비 지원 및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의 예방·치유		
(2)설치연도	1972년	(3)운용개시연도	1989년
(4)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5)관리주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6)구성재원 (제20조제2항)	가. 국민체육진흥계정(국민체육진흥공단 직접 관리) ○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 제22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 제2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나.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위탁 관리)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제1항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7)기금의 용도 (제22조)	가. 국민체육진흥계정(국민체육진흥공단 직접 관리) ○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 사업 ○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 선수·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광고나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 제14조제4항에 따른 장려금 및 생활 보조금의 지원 ○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용자 ○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 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 기관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지원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나.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위탁 관리)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제2항 -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의 예방치유와 한국도박문제센터 운영 등				
(8)여유자금 운용범위	○ 금융기관 예치 및 연기금투자폴 등				
(9)회계방식	○ 국민체육진흥계정 : 복식부기 방식 ○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 국가회계				
(10)기금관리방식	국민체육 진흥계정	직접 관리	부서명: 국민체육진흥공단 자금운용팀(Tel: 02-410-1314)		
	사행산업 중독예방 치유계정	위탁 관리	기관명: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기금관리팀(Tel: 02-740-9152)		
			인력규모: 1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⑤ 국유재산관리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국유재산법 제26조의2 ○ 목적: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 증진			
(2)설치연도	2011년	(3)운용개시연도	2012년	
(4)주무부처	기획재정부	(5)관리주체	기획재정부	
(6)조성재원 (제26조의3)	○ 정부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국유재산법 제26조의 4에 따른 차입금 ○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증권은 제외)와 관련된 수입금 -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제57조의 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수입금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수입금			
(7)기금의 용도 (제26조의5)	○ 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제26조의6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위탁료 등의 지출 ○ 제42조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 제57조에 따른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8)여유자금 운용범위	○ 금융기관에의 예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연기금투자권에 예치 ○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방법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Tel: 044-215-5254)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자산관리공사(Tel: 051-794-4881)		
		인력규모: 18명 (※기금운용 5명, 위탁개발 13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2,111	2,465	2,751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⑥ 국제교류기금 (한국국제교류재단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 ○ 목적: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				
(2)설치연도	1991년	(3)운용개시연도	1992년		
(4)주무부처	외교부	(5)관리주체	한국국제교류재단		
(6)조성재원 (제14조)	○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 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 기금 운용 수익금 ○ 그 밖의 수익금				
(7)기금의 용도 (제6조)	○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 국외 한국연구의 지원 및 연구 결과의 보급 ○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제반 활동 ○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친선의 증진				
(8)여유자금 운용범위	○ 적립 기금: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운용 ○ 운용 기금: 환금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탁 또는 신탁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한국국제교류재단 대외협력부(Tel: 064-804-1033)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7 국제질병퇴치기금 (한국국제협력단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3조 ○ 목적: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			
(2)설치연도	2017년	(3)운용개시연도	2017년	
(4)주무부처	외교부	(5)관리주체	외교부	
(6)조성재원 (제3조)	○ 정부 출연금 ○ 법정부담금(출국납부금,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 제1항 근거) ○ 기금운용수익금			
(7)기금의 용도 (제4조)	○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 지원 ○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지원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8)여유자금 운용범위 (제8조)	○ 금융기관에의 예치 ○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 국채·공채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 (Tel: 02-2100-8459)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국제협력단 국제질병퇴치기금실 (Tel: 031-740-0592)		
		인력규모: 12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150	346	543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⑧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공단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 ○ 목적: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			
(2)설치연도	1993년	(3)운용개시연도	1994년	
(4)주무부처	고용노동부	(5)관리주체	근로복지공단	
(6)조성재원 (제88조)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수익금 * 복권수입금의 35% 중 5.310% ± 가감 조정 ○ 보증료, 구상금, 기금운용수익금 등			
(7)기금의 용도 (제91조)	○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생활안정자금 융자 또는 지원 ○ 저소득근로자의 보증부담 해소를 위한 신용보증 지원 ○ 선택적 복지제도 및 근로자지원프로그램 관련 지원 ○ 우리사주제도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지원 ○ 퇴직연금사업 등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등			
(8)여유자금 운용범위	○ 금융기관에의 예탁 ○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 정부의 주관 또는 감독 하에 운용되는 투자물에 예치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근로복지공단 기획조정본부 조직예산부 (Tel: 052-704-7778)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9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기술보증기금법 제1조 ○ 목적: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2)설치연도	1989년	(3)운용개시연도	1989년	
(4)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5)관리주체	기술보증기금	
(6)조성재원 (제13조제1항)	○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 정부의 출연금 ○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7)기금의 용도 (제28조)	○ 기술보증 ○ 기술평가 ○ 보증연계투자 ○ 구상권관리 ○ 기술·경영지도 등 ○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기술신탁관리			
(8)여유자금 운용범위	○ 금융기관 예치 ○ 연기금투자펀드 투자 ○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정한 채권 매입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기술보증기금 경영기획부(Tel: 051-606-7401) 자산운용실(Tel: 051-606-7565)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Ⅹ 남북협력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남북협력기금법 제3조 ○ 목적: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			
(2)설치연도	1991년	(3)운용개시연도	1991년	
(4)주무부처	통일부	(5)관리주체	통일부	
(6)조성재원 (제4조)	○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자금 ○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기금의 운용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7)기금의 용도 (제8조)	○ 남북한 주민의 남북왕래에 필요한 경비지원 ○ 남북간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 남북간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또는 용자 ○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지원 등			
(8)여유자금 운용범위	○ 적격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정기예금, CD, MMDA 등) ○ 국채, 공채의 매입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 기타 유가증권(수익증권/MMF 등, 한정)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Tel: 02-2100-5744)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본부(Tel: 02-3779-6643)		
		인력규모: 40명(본부 39명, 일선기관 1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2,270	2,250	2,250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Ⅱ 농산물가격안정기금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 목적: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촉진 및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 도모			
(2)설치연도	1966년	(3)운용개시연도	1968년	
(4)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5)관리주체	농림축산식품부	
(6)조성재원 (제55조)	○ 정부의 출연금 ○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 농산물 수입이익금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7)기금의 용도 (제57조)	○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 농산물의 수출촉진 및 보관·관리와 가공 ○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의 출하촉진·시설 및 운영 ○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기타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가격안정 및 종자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8)여유자금 운용범위 (제60조의2)	○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 ○ 국채·공채,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Tel: 044-201-2225)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재무관리처 기금관리부 (Tel: 061-931-1120)		
		인력규모: 11명(본사 11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1,373	1,417	1,354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12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 ○ 목적: 거대재해로 인하여 농작물과 양식수산물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농어업재해보험의 운영위험을 국가가 일부 인수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농어업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설치연도	2005년	(3)운용개시연도	2005년	
(4)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5)관리주체	농림축산식품부	
(6)구성재원 (제22조)	○ 법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받은 재보험료 ○ 정부출연금 ○ 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 제2항에 따른 차입금			
(7)기금의 용도 (제23조)	○ 재보험금의 지급 ○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의 지출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재보험사업을 유지·개선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8)여유자금 운용범위	○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치 ○ 국채, 공채 또는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Tel: 044-201-1796)		
	위탁관리	기관명: 농업정책보험금융원(Tel: 02-3775-6788)		
		인력규모: 5명 (본부 5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604	575	592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Ⅲ 농지관리기금 (한국농어촌공사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 ○ 목적: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공급			
(2)설치연도	1981년	(3)운용개시연도	1981년	
(4)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5)관리주체	농림축산식품부	
(6)조성재원 (제32조)	○ 정부출연금 ○ 제33조에 따른 차입금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관리부담금 납입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농어촌정비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조성된 재산의 매각대금,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 ○ 기금운용수익금 ○ 기금을 투입하여 발생한 해외농업개발 수익금 ○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상환금			
(7)기금의 용도 (제34조)	○ 농지의 매매·매입사업, 장기임대차사업, 교환,분리·합병사업, 재개발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 ○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8)여유자금 운용범위 (제34조3)	○ 금융기관에 예치 ○ 다른 기금으로 예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Tel: 044-201-1731)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Tel: 061-338-5931)		
		인력규모: 13명(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 13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1,713	1,762	1,763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14 대외경제협력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 ○ 목적: 개도국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			
(2)설치연도	1986년	(3)운용개시연도	1987년	
(4)주무부처	기획재정부	(5)관리주체	기획재정부	
(6)조성재원 (제4조)	○ 정부출연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경제단체의 출연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 기금의 운용수익금			
(7)기금의 용도 (제7조)	○ 개도국의 산업발전 및 대한민국과 개도국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사업에 대한 자금의 대출 또는 출자 등 ○ 한국수출입은행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5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출의 이율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경우 그 대출에 따른 손실 보전 ○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8)여유자금 운용범위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2조 (여유자금의 운용) 1. 국채·공채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3. 은행에의 예치 또는 단기 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Tel: 044-215-8775)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수출입은행 경험총괄부(Tel: 02-6255-5351)		
		인력규모: '19년말 현재 177명 (본부 123명, 사무소 27명, 파견·연수·휴직 등 27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16,176	18,003	20,243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㉔ 무역보험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무역보험법 제30조 ○ 목적: 무역보험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			
(2)설치연도	1969년	(3)운용개시연도	1969년	
(4)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5)관리주체	한국무역보험공사	
(6)구성재원 (제31조, 제35조제1항)	○ 정부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출연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 보험료, 회수금, 이자, 기타 기금운용수익 및 공사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			
(7)기금의 용도 (제35조제2항)	○ 보험금, 이자, 공사 운영경비 및 기타 기금 운용 필요경비			
(8)여유자금 운용범위 (제33조)	○ 금융기관에의 예입 ○ 국채·지방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 제2호,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한국무역보험공사 기획조정실 기금예산팀 (Tel: 02-399-5779)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Ⅳ 문화예술진흥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 목적: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지원			
(2)설치연도	1973년	(3)운용개시연도	1973년	
(4)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5)관리주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6)조성재원 (제17조)	○ 정부의 출연금 ○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를 대신하여 출연하는 금액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7)기금의 용도 (제18조)	○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 남북 및 국제 문화예술 교류 ○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8)여유자금 운용범위	○ 제1금융권 예치 ○ 연기금투자폴 예치 등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획조정부 (Tel: 061-900-2120)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28조 ○ 목적: 방사성폐기물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2)설치연도	2009년		(3)운용개시연도	2009년	
(4)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5)관리주체	산업통상자원부	
(6)조성재원 (제29조)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납입금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7)기금의 용도 (제30조)	○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 기금의 조성과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8)여유자금 운용범위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20.2)				
	구분		투자기간	투자 가능 자산군	
	단기 자금	현금성	3개월 미만	(확정형) MMDA, CD, CP, 정기예금, RP (실적형) MMF, 연기금투자상품 혼합형 상품(단기매치형)	
		유동성	3개월~1년미만		
	중장기자금		1년 이상	(확정형) CD, 정기예금 (실적형) 주식형 펀드(국내, 해외), 채권형 펀드(국내, 해외), 혼합형 상품 대체투자 상품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Tel: 044-203-5340)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금관리센터 (Tel: 02-6456-8510)			
		인력규모: 10명(본부 10명, 일선기관 -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1,470	1,256	1,377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18 방송통신발전기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 ○ 목적: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2)설치연도	2000년 ²⁸¹⁾	(3)운용개시연도	2000년	
(4)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5)관리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6)구성재원 (제25조제5항)	○ 통신 주파수 할당대가의 일부(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배분) ○ 방송사업자의 분담금 ○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			
(7)기금의 용도 (제26조)	○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 ○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 「전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 그 밖에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8)여유자금 운용범위	○ 금융기관(채신관서 포함)에의 위탁 ○ 공공자금관리기관에의 예탁 ○ 연기금투자폴에의 예탁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Tel: 044-202-6224) 방송통신위원회 재정팀(Tel: 02-2110-1375)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 (Tel: 061-350-1230)		
		인력규모: 27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 지급 방식	부서운영비 ²⁸²⁾ 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3,868	4,161	4,276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대하: %, 대출: %)	-	-	-

281) 2000년 1월 기금설치 이후 2011년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확대 개편

282) 기금 징수운용관리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기금관리비를 의미

1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2 ○ 목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설치			
(2)설치연도	1974년	(3)운용개시연도	1975년	
(4)주무부처	교육부	(5)관리주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6)조성재원 (제53조의2)	○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설치 ○ 기금은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			
(7)기금의 용도 (제4조)	○ 부담금의 징수 ○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 자산의 운용 ○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			
(8)여유자금 운용범위	○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 유가증권의 매입 ○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 ○ 기금 증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그 밖에 기금 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자금운용관리단 투자전략팀 (Tel: 02-769-4090)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㉔ 사학진흥기금 (한국사학진흥재단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 ○ 목적: 사학기관의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진흥에 이바지함			
(2)설치연도	1989년	(3)운용개시연도	1989년	
(4)주무부처	교육부	(5)관리주체	한국사학진흥재단	
(6)조성재원 (제18조)	○ 정부의 출연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공공자금 관리기금 및 주택 도시기금 차입금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 채권을 발행하여 생긴 자금 ○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7)기금의 용도 (제19조)	○ 사학기관의 재산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 사학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연구 사업 ○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사업 ○ 관리·처분이 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처분 ○ 그 밖에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8)여유자금 운용범위	○ 통화금융기관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한국사학진흥재단 자산운용부 (Tel: 053-770-2550)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0조 ○ 목적: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여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2)설치연도	1994년	(3)운용개시연도	1995년	
(4)주무부처	기획재정부	(5)관리주체	신용보증기금	
(6)조성재원 (제31조)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 제1호 외의 자의 출연금 ○ 보증료 수입 ○ 기금의 운용수익 ○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7)기금의 용도 (제32조)	○ 보증채무의 이행 ○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8)여유자금 운용범위 (제28조)	○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포함)·사채· 그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신용보증기금 인프라보증부(Tel: 053-430-4477)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㉔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 ○ 목적: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업기술의 진흥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			
(2)설치연도	2015년	(3)운용개시연도	2015년	
(4)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5)관리주체	산업통상자원부	
(6)조성재원 (제37조의4, 제37조의5)	○ 산업기술개발사업 등에 따른 기술료 ○ 오존층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과 같은 법 제24조의5에 따른 가산금 ○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정부 또는 정부외의 출연금 ○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익금			
(7)기금의 용도 (제37조의4, 제37조의5)	○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협력사업의 지원 ○ 산업기술의 사업화 지원 또는 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위한 사업 또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8)여유자금 운용범위	○ 금융기관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 정부의 주관 또는 감독 하에 운용되는 연기금투자품 ○ 자금의 안정성·유동성이 높고 수익성 제고가 가능한 금융상품 등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Tel: 044-203-4517)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금관리팀(Tel: 02-6009-4330)		
		인력규모: 9명(일선기관(부담금관리) 별도 3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1,210	1,199	1,200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㉓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목적: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2)설치연도	2015년	(3)운용개시연도	2015년	
(4)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5)관리주체	중소벤처기업부	
(6)조성재원 (제20조)	○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한다)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			
(7)기금의 용도 (제21조)	○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 ○ 소상공인 과밀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등			
(8)여유자금 운용범위	○ 소상공인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대기성 자금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Tel: 042-481-4361)		
	위탁관리	기관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금관리실 (Tel: 042-363-7100)		
		인력규모: 5명(본부 5명, 일선기관 -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24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 목적: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2)설치연도	1976년	(3)운용개시연도	1976년	
(4)주무부처	금융위원회	(5)관리주체	신용보증기금	
(6)구성재원 (제6조제1항)	○ 정부의 출연금 ○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 기업의 출연금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7)기금의 용도 (제23조)	○ 기본재산의 관리 ○ 신용보증 ○ 보증연계투자 ○ 경영지도 ○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			
(8)여유자금 운용범위 (제40조)	○ 금융회사 등에 예치 ○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Tel: 053-430-4109)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㉔ 언론진흥기금 (한국언론진흥재단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 목적: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잡지의 진흥			
(2)설치연도	2010년	(3)운용개시연도	2010년	
(4)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5)관리주체	한국언론진흥재단	
(6)조성재원 (제34조제2항)	○ 정부의 출연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 언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7)기금의 용도 (제35조제1항)	○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한 지원 ○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관련 인력양성, 조사·연구, 정보화 사업 지원 ○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 ○ 독자 권익 및 언론공익사업 지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운영 ○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잡지사업자에 대한 융자 ○ 해외 한국어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지원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여유자금 운용범위	○ 국가재정법 제63조 (기금자산운용에 원칙)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한국언론진흥재단 기획예산팀(Tel: 02-2001-7711)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26 영화발전기금 (영화진흥위원회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목적: 영화예술의 질적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			
(2)설치연도	2007년	(3)운용개시연도	2007년	
(4)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5)관리주체	영화진흥위원회	
(6)조성재원 (제24조)	○ 정부의 출연금 ○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 영화상영권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7)기금의 용도 (제25조)	○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 소형영화·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등			
(8)여유자금 운용범위	○ 금융기관에의 예입 ○ 국채, 지방채 및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 기타 유가증권 및 부동산의 매입			
(9)회계방식	○ 기업회계기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기획조정본부 기획예산팀 (Tel: 051-720-4837)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예금보험공사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 ○ 목적: 금융구조조정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공적자금 부채 상환			
(2)설치연도	2003년	(3)운용개시연도	2003년	
(4)주무부처	금융위원회	(5)관리주체	예금보험공사	
(6)조성재원 (제26조의3)	○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 제26조 제1항에 따른 차입금 ○ 제30조의3에 따른 특별기여금 ○ 제35조에 따라 취득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 제35조의2에 따라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 상환기금의 운용수익과 그밖의 수입금			
(7)기금의 용도 (제26조의3)	○ 예금보험기금채권(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및 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 보험금,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의 전출			
(8)여유자금 운용범위 (제25조)	○ 국채·공채의 매입 및 예금보험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부보금융회사에 예치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9)회계방식	○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예금보험공사 기금관리실(Tel: 02-758-0161)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1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한국연구재단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원자력진흥법 제17조 ○ 목적: 원자력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데 소모되는 재원을 확보			
(2)설치연도	1996년	(3)운용개시연도	1997년	
(4)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관리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구성재원 (제17조제3항)	○ 원자력진흥법 제13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 * 발전용원자로 전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 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 ○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동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한 자금 및 그 밖의 수익금			
(7)기금의 용도 (제19조)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자재 및 장비 지원사업 ○ 원자력 관련 인력양성사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8)여유자금 운용범위 (시행령 제 22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매입 ○ 금융회사 등에 예치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Tel: 044-202-4651)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연구재단 재정기금실(Tel: 042-869-6024)		
		인력규모: 3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156	106	106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28-2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원자력진흥법 제17조 ○ 목적: 원자력안전법 제1조에 따른 안전규제사업을 실시하는데 소모되는 재원을 확보			
(2)설치연도	2016년	(3)운용개시연도	2016년	
(4)주무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5)관리주체	원자력안전위원회	
(6)조성재원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 제1항)	○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금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 ○ 이 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보상료 등			
(7)기금의 용도 (제111조의4 제2항)	○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 원자력통제 ○ 원자력이용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등			
(8)여유자금 운용범위	○ 확정금리형 상품 ○ MMF, MMDA, RP, CD 등 ○ 연기금 투자품 ○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및 기타 수익증권 등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Tel: 02-397-7385)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원자력안전재단(Tel: 031-626-9735)		
		인력규모: 6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1,543	1,552	1,384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3조 ○ 목적: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업인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확보			
(2)설치연도	2004년	(3)운용개시연도	2004년	
(4)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5)관리주체	농림축산식품부	
(6)조성재원 (제14조제3항)	○ 정부의 출연금 ○ 정부외의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의한 특별적립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차입금, 수입이익금, 기금운용수익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3에 따른 전입금			
(7)기금의 용도 (제15조)	○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 지원 ○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 농산물 수입이익금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지출 ○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등			
(8)여유자금 운용범위	○ 여유자금은 기금의 운용여건에 따라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하되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운용(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26조 및 제27조)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Tel: 044-201-1721)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관리부 (Tel: 061-931-1126)		
		인력규모: 5명(본부 5명, 일선기관 0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455	842	585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30 전력산업기반기금 (한국전력공사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전기사업법 제48조 ○ 목적: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 충당			
(2)설치연도	2001년	(3)운용개시연도	2001년	
(4)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5)관리주체	산업통상자원부	
(6)구성재원 (제50조)	○ 부담금 및 가산금 * 부담금: 전기요금 × 3.7%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등			
(7)기금의 용도 (제49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전력수요 관리사업 ○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원사업 ○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 전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8)여유자금 운용범위	○ 금융기관에 예치 ○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 연기금 투자폴 예탁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Tel: 044-203-5150)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Tel: 02-6007-0321)		
		인력규모: 41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5,766	5,825	6,354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㉔ 정보통신진흥기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 ○ 목적: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설치			
(2)설치연도	2005년 ²⁸³⁾	(3)운용개시연도	2005년	
(4)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관리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조성재원 (제42조)	○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 전파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가 ○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 차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7)기금의 용도 (제44조)	○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 정보통신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 정보통신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 전파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가 반환금 등			
(8)여유자금 운용범위	○ 금융기관(채신관서 포함)에의 위탁 ○ 공공자금관리기관에의 예탁 ○ 연기금투자폴에의 예탁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Tel: 044-202-6124)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 (Tel: 061-350-1230)		
		인력규모: 12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 ²⁸⁴⁾ 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21,062	24,758	24,546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283) 1993년 1월 기금설치 이후, 1996년 1월부터 정보화촉진기금으로 개편하여 일반 및 연구개발계정으로 구분·운용해오다 2005년 1월부터 현재의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개편함(기존 정보화촉진기금의 연구개발계정만 승계, 일반계정은 폐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 및 제59조의2 ○ 목적: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활성화 및 노후생활자금의 원활한 공급			
(2)설치연도	1987년	(3)운용개시연도	1988년	
(4)주무부처	금융위원회	(5)관리주체	한국주택금융공사	
(6)조성재원 (제56조, 제59조의3)	○ 정부, 금융기관 출연금 ○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보증료 수입금, 보증기금의 운용수익 ○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운용하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 정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차입			
(7)기금의 용도 (제57조, 제59조의4)	○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8)여유자금 운용범위 (제58조, 제59조의5)	○ 금융기관에의 예치 ○ 국채, 지방채 또는 정부·지자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채권의 매입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 주식(출자증권 포함)·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Tel: 051-663-8495)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33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 ○ 목적: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2)설치연도	1981년	(3)운용개시연도	1981년	
(4)주무부처	국토교통부	(5)관리주체	국토교통부	
(6)조성재원 (제5조)	○ 자체재원: 대출금 회수, 이자수입 등 ○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주택법」 제56조 제 2항 등 - 차입금: 국민주택채권, 기타민간예수금(청약저축) 등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4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 등 - 정부내부지출: 농특·공자기금 예수금, 복권기금전입금 등			
(7)기금의 용도 (제9조)	○ 국민주택의 건설 및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 정비사업 용자 및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출자, 투자, 용자 ○ 예탁금·국민주택채권·청약저축·차관자금 등의 원리금 상환			
(8)여유자금 운용범위 (제9조4 및 시행령 제17조)	○ 현금성 및 유동성: MMDA, MMF 등 ○ 중장기: 정기예금, Wrap, 연기금투자폴 등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Tel: 044-201-3339)		
	위탁관리	기관명: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사업본부(Tel : 051-998-2213)		
		인력규모 : 192명(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사업본부 현원)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249,121	242,161	156,516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 목적: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2)설치연도	1978년	(3)운용개시연도	1979년	
(4)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5)관리주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조성재원 (제64조)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 채권발행 조성자금 및 복권수익금, 공자기금 예수금 ○ 기금운용 수익금 등			
(7)기금의 용도 (제67조)	○ 창업기업지원, 신성장기반 등 융자지출 ○ 연수사업, 창업성공패키지 등 경상지출 ○ 전산시스템구축,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등 자본지출 * 사용 용도는 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요약시 위 내용과 같음			
(8)여유자금 운용범위	○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대기성 자금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금관리실 (Tel: 055-751-9431~2, 9435)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㉔ 지역신문발전기금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3조 ○ 목적: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2)설치연도	2004년	(3)운용개시연도	2005년	
(4)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5)관리주체	문화체육관광부	
(6)조성재원 (제13조제2항)	○ 정부의 출연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7)기금의 용도 (제15조)	○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지원 ○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 지역신문의 정보화 지원 ○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여유자금 운용범위	○ 금융기관 예치 및 연기금투자품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Tel: 044-203-3219)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언론진흥재단(Tel: 02-2001-7821)		
		인력규모: 4 명(본부 4명, 일선기관 0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560	552	602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8실지급	‘19실지급	‘20계획
		-	-	-

부 록 7 2019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체계²⁸⁵⁾²⁸⁶⁾²⁸⁷⁾²⁸⁸⁾
① 공기업 유형의 지표 및 가중치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55)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6	
	- 전략기획	2	2	
	- 경영개선	2	2	
	- 리더십	2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4	17	7
	- 일자리 창출	7	4	3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	3	1
	- 안전 및 환경	5	5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	2	3
	- 윤리경영	3	3	
	3. 업무효율	5		5
	4. 조직·인사·재무관리	7	4	3
	- 조직·인사 일반 (삶의 질 제고)	2	2	
	- 재무예산 운영·성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5	2	3 (1)
주요사업 (45)	5. 보수 및 복리후생비	8	5	3
	- 보수 및 복리후생	3	3	
	- 총인건비관리	3		3
	- 노사관계	2	2	
	6. 혁신과 소통	5	3	2
	- 혁신노력 및 성과	3	3	
	- 국민소통	2		2
소 계		55	35	20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45	21	24
합 계		100	56	44

285)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2019. 12.

286) 평가지표체계는 평가유형(공기업,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강소형)에 따라 평가지표와 지표별 가중치가 다르게 구성

287)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결측 처리

288) 2019년도에 선정된 과제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그 성과가 우수한 기관은 최대 1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차등가산하고, 우수 협조기관의 경우 기여도에 따라 차등가점을 부여(최대 0.2점)

②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강소형)의 지표 및 가중치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45)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6	
	- 전략기획	2	2	
	- 경영개선	2	2	
	- 리더십	2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5	7
	- 일자리 창출	6	3	3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2	1
	- 안전 및 환경	5	5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	2	3
	- 윤리경영	3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4	3	1
	- 조직·인사 일반 (삶의 질 제고)	2	2	
	- 재무예산 운영·성과	2	1	1
	4. 보수 및 복리후생비	8	5	3
	- 보수 및 복리후생	3	3	
	- 총인건비관리	3		3
	- 노사관계	2	2	
	5. 혁신과 소통	5	3	2
	- 혁신노력 및 성과	3	3	
	- 국민소통	2		2
	소 계	45	32	13
주요사업 (55)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55	24	31
합 계		100	56	44

③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의 지표 및 가중치²⁸⁹⁾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50)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6	
	- 전략기획	2	2	
	- 경영개선	2	2	
	- 리더십	2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5	7
	- 일자리 창출	6	3	3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2	1
	- 안전 및 환경	5	5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	2	3
	- 윤리경영	3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9	3	6
	- 조직·인사 일반 (삶의 질 제고)	2	2	
	- 재무예산 운영·성과	2	1	1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5
	4. 보수 및 복리후생비	8	5	3
	- 보수 및 복리후생	3	3	
	- 총인건비관리	3		3
	- 노사관계	2	2	
	5. 혁신과 소통	5	3	2
	- 혁신노력 및 성과	3	3	
	- 국민소통	2		2
	소 계	50	32	18
주요사업 (50)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50	24	26
합 계		100	56	44

289)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평가유형은 강소형 유형이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므로 기금관리형 유형의 평가지표 체계를 적용

연구총괄

- 변민정 (공공기관연구센터 정책사업팀장)

분야별 집필진

- 강연지 (공공기관연구센터 정책사업팀 연구원)
- 김정은 (공공기관연구센터 정책사업팀 연구원)
- 오윤미 (공공기관연구센터 정책사업팀 선임연구원)
- 유승현 (공공기관연구센터 정책사업팀 선임연구원)
- 이주경 (공공기관연구센터 정책사업팀 선임연구원)
- 이 슬 (공공기관연구센터 정책사업팀 선임연구원)
- 정예슬 (공공기관연구센터 경영혁신연구팀 선임연구원)
- 홍소정 (공공기관연구센터 공공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 김혜진 (공공기관연구센터 인턴사원)

문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044-414-2306)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soe.kipf.re.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0 공공기관 현황편람

발행일 : 2020. 10.

발행처 : 기획재정부

(044) 215-551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044) 414-2306

인 쇄 : 일지사(02-503-6971)
